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동남아



SOUTHEAST ASIA

목 차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말레이시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
제2장 통관제도	6
제3장 검역제도	12
제4장 라벨링 제도	17

베트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31
제2장 통관제도	32
제3장 검역제도	71
제4장 라벨링 제도	88
제5장 부록	99

싱가포르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29
제2장 통관제도	130
제3장 검역제도	133
제4장 라벨링 제도	137
제5장 수입제도 특이사항	143

목 차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인도네시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49
제2장 통관제도	150
제3장 검역제도	169
제4장 라벨링 제도	173
제5장 수입제도 특이사항	178

필리핀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93
제2장 통관제도	194
제3장 검역제도	232
제4장 라벨링 제도	241
제5장 부록	247

태국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81
제2장 통관제도	282
제3장 검역제도	305
제4장 라벨링 제도	310
제5장 별첨	324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Ⅱ

말레이시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5
	제2장 통관제도	6
	1. 관련 기관	6
	2. 통관절차	6
	3. 제출서류	8
	4. 관세제도	10
	제3장 검역제도	12
	1. 관리 · 법률체계	12
	2. 품목별 검역절차	13
	3. 제출서류	15
	제4장 라벨링 제도	17
	1. 관리 · 법률체계	17
	2. 표시사항	17
	3. 라벨링 샘플	26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	--------------------

수출계약	거래선(바이어) 발골 계약 진행
------	----------------------



서류준비	수입신고서 및 통관 관련 서류 준비
------	---------------------



선적/출항	수출통관 포워딩 업체 지정 운송
-------	-------------------------



수입신고/검사	수입신고서 제출 품목별 담당 부서를 통한 검사 진행
---------	---------------------------------



통관/국내유통	세관서류 제출 세금납부 수입업체 화물인수
---------	------------------------------

제 2 장 통관제도

1. 관련 기관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http://www.miti.gov.my
- 말레이시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가경쟁력 향상 및 무역진흥 투자유치를 위한 법 제정 및 수행을 관장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http://www.mida.gov.my
- 외국인투자자 및 관련된 국가정책을 수행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www.customs.gov.my
-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수입 통관 및 관세 징수 업무를 총괄	
농업 및 농업기반산업부(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o-based Industry)	www.moa.gov.my
- 조곡 및 쌀 규정(Paddy and Rice Regulation Act)에 따라 쌀의 수출입 허가를 담당	

2. 통관절차

가. 수입신고 준비

- 모든 수입품은 “관세법령 1996(Customs Duties Order 1996)”에 명시된 말레이시아 세관 관세 번호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 수입신고 전, 수출상품이 수입규제 혹은 금지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함. 이에 해당하면, 수입허가(IP)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허가 신청은 무료임. 말레이시아 “관세법(Customs Act 1967)”에 따라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군은 4가지로 구분되며, 수입허가 취득은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만이 가능함

〈수입금지 또는 허가가 필요한 제품군〉

구분	품목
완전 수입 금지 품목 Absolute Prohibition	피라나 등
수입면허가 필요한 품목 Conditional Prohibition except under Import license	설탕 등
특정 취급 조건에 따라야 하는 품목 Conditional Prohibition except in the manner provided * 담당 부서의 승인과 같이 특정 조건이 필요한 품목	동·식물, 우유 및 유제품, 조곡/쌀, 양배추 등
말레이시아 표준 준수가 필요한 품목 Conditional Prohibition except conforming to Malaysian standard	일부 시멘트품목, 세라믹품목 등

* 자세한 품목 및 조건은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참고

* 조곡/쌀은 Padiberas Nasional Berhad(BERNAS)를 통해 국영무역으로 이루어지며, 검역규정 1981에 따라 DOA(Director General of Agriculture Depart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발급)

나. 수입신고

- 말레이시아의 수입품은 모두 Customs No.1 양식으로 수입신고를 한다. 수입신고서는 관할 수입지역의 관세청에 제출하거나 다강넷(DagangNet)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음

다강넷(DagangNet)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단일창구로 통관과 관련된 모든 업체와 기간은 다강넷을 이용하며, 수출입업체는 다강넷의 전자신고(myTRADELINK)를 이용하여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함¹⁾

<http://www.dagangnet.com/>

<http://www.mytradelink.gov.my>

- 말레이시아에서는 포워딩사가 관세사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포워딩사가 수입 신고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 포워딩 업체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타 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받으면 제품의 검역이 진행됨
- Customs Golden Client(CGC) 제도를 통해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최소한의 데이터와 서류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줌
-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목록 등의 서류제출 및 선박도착 예상시간을 확정하는 경우 선통관이 가능
- 물품이 도착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함

〈적하목록 제출시점〉

선박	물품 도착 후 24시간 이내
항공기	항공기가 도착한 시점
철도	철도가 도착한 시점

다. 검사/검역

- 말레이시아 수출입식품검역처에서 수입식품 검역을 총괄하며, 품목마다 검역 수행 기관 및 제출서류가 다름. 검역은 크게 식물성 제품과 동물성 제품으로 나누어 진행
- 물품검사 비율은 5% 정도로 통관이 어렵지 않으나 한번 적발되면 수입허가가 취소되고 3년을 소급하여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의

1) 다강넷을 이용한 식품 수입허가 신청 절차

ePermit 시스템을 통해 허가 신청서를 제출 → MAQIS 책임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증 → MAQIS 책임자는 허가 신청서를 승인 → 승인 내용을 세관 정보시스템에 전송

라. 관세납부 및 물품 반출

- 관세율은 보통 종가(ad valorem) 기준으로 부과
- 수입통관할 때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판매세, 소비세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모든 통관절차를 마친 화물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말레이시아 국내로 유통됨

3.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서류명	발급기관	제출사유	표기언어
Customs No. 1 (K1) (세관신고서)	말레이시아 관세청	세관 신고 양식 (세관 출입 서류)	영어, 말레이어
선하증권(Bill of Lading) 혹은 항공화물운송장	운송사	입국 권한 증명에 필요한 문서	영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또는 견적 송장	수출자	거래 상품 주요사항 명기, 매매계약 조건 이행 여부 증명	영어
포장목록(Packing List)	수출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	영어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대한상공회의소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함	영어
분석서, 카탈로그 등	-	-	영어

① Customs No. 1 (K1)

말레이시아 | 9

4. 관세제도

가. 관리 · 법률체계

관리기관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주요업무> - 관세 징수 업무 담당 -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제품의 국가 표준 준수 여부 검사 - 간접세 행정업무 - 마약 유입 단속 -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MAQIS)와 함께 신선 농산물 검역 시행
관련규정	- Customs Act 1967(관세법 1967) - Customs Order (Prohibition of Exports)
품목분류기준	- 관세법 1967에 따라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를 사용
관세부여 기준	-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의 과세 가격에 대해 0~50% 사이에 보통 종가세(Ad Valorem) 기준으로 적용됨(그러나 원료, 기계, 주요 식량, 식료품 및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되지 않거나 낮게 부과됨).
협정세율	- 한-아세안 FTA협정세율 적용(원산지증명서 필요, HS-code 확인 필수)
관세를 확인	http://tariff.customs.gov.my
납부	- 납부기관 : 관세청의 관세청장이 승인하는 기관 통해 관세 납부 - 납부시점 : 제품 보세구역 반출되기 전 - 납부수단 : 현금, 수표 또는 은행 어음

나. 관세 정책

① 동향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했으나 최근 현지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고관세를 부과함

② 한-아세안 FTA

- 2006년 아세안국가들과 한국 사이 상품 자유 무역 협정 체결된 이후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편

③ 품목별 현황

(a) 농산물

- 2017년 기준 말레이시아 농산물의 평균 양허 관세율은 8.1%, 평균 실행 관세율은 55.8%, 비농산물의 경우 5.3%와 14.9%이며 전체적으로는 12.3%와 5.7%를 기록함

- 2017년 기준농산물의 경우 전체 품목의 약 31.6%가 0~5%의 관세율을, 16.7%의 품목이 5~1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약 50% 정도가 10% 이내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교해 관세율이 낮은 편

Summary		Total	Ag	Non-Ag	WTO member since	1995
Simple average final bound		21.3	55.8	14.9	Binding coverage:	Total 84.3
Simple average MFN applied	2017	5.7	8.1	5.3		Non-Ag 81.9
Trade weighted average	2016	4.5	12.9	3.8	Ag: Tariff quotas (in %)	5.7
Imports in billion US\$	2016	159.3	12.5	146.8	Ag: Special safeguards (in %)	5.5

Frequency distribution		Duty-free	0 <= 5	5 <= 10	10 <= 15	15 <= 25	25 <= 50	50 <= 100	> 100	NAV in %
Tariff lines and import values (in %)										
Agricultural products										
Final bound		12.9	31.6	16.7	12.0	8.3	4.0	3.3	11.0	21.1
MFN applied	2017	74.7	10.9	4.2	1.6	2.6	3.6	0.6	1.8	4.9
Imports	2016	62.5	14.5	4.4	5.0	1.9	6.3	0.2	3.8	8.4
Non-agricultural products										
Final bound		5.0	31.4	6.1	1.2	19.0	19.1	0.0	0	0.1
MFN applied	2017	64.9	8.6	7.7	4.7	10.0	4.0	0.0	0	0.0
Imports	2016	78.1	5.5	3.5	3.1	5.8	3.9	0.0	0	0.0

* 말레이시아 관세율, 출처 : WTO 통계(http://stat.wto.org/TariffProfiles/MY_e.htm)

(b) 수산물

- 한-아세안 FTA에 따라 협상 품목에 대한 한국산 수산물의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
- 말레이시아 수산물 양허 관세율은 7.7% 수준이나, MFN(최혜국대우)에 따른 세율은 0.7% 수준. MFN 기준으로 대부분 품목 관세는 0%이고 일부 가공품은 5~15%까지 관세가 부과됨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기관

식품안전품질부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FSQD)	http://fsq.moh.gov.my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로 식품의 수입과 관련된 요건을 규제 - 식품법 1983(Food Act 1983) 및 식품규정 1985(Food Regulation 1985)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 식품의 정기 검사 실시, 표본 추출, 식품 시설 검사, 식품 수입관리 활동 및 면허를 포함하는 식품안전 프로그램 수행	
수출입식품검역처 (Malaysian Quarantine Inspection Services, MAQIS)	http://www.maqis.gov.my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수산물의 병충해와 오염도를 검사	
수의검역부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http://www.dvs.gov.my
- 1953년 동물법(2006년 개정)과 동물 식품법(2009년)에 따라 동물의 수입과 수출 검역을 담당하며 검역 승인 후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행	
수산부 (Department of Fisheries Malaysia)	https://www.dof.gov.my/
- 농업 및 농업기반산업부 소속 부서 - 수산물(어류, 갑각류 등) 수출입을 담당	

나. 법률체계 : Malaysia Food Act 1983 / Food Regulations 1985

- 말레이시아의 “식품법 1983”과 “식품 규정 1985”는 식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사람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식품 표준, 식품 위생, 식품 수출입, 식품광고 및 실험실 인가를 포함한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규제
- 식품안전품질부(FSQD)가 법의 이행 및 관리에 책임을 지며, 식품안전을 위한 정기 점검, 샘플검사, 시설 점검 등의 활동을 수행

2. 품목별 검역절차

가. 검역 절차



나. 품목별 절차

①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주관	농업부(작물보호 및 식물검역부서)
절차	농업부에 검역 신청을 한 뒤, 검역비용을 납부 → 검역이 승인되면 세관에 자동으로 통지
제출서류	식물검역증명서 ※ 국내 식물검역증명서 발급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간	최대 5일 소요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은 ‘유해성 농작물 규정 법안 1981’에 따라 현행 식물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말레이시아는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IPPC) 가입국으로,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식물 및 식물제품은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ISPM)과 수입국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동반되어야 함

② 동물성 제품(돼지고기 제외)

주관	수의검역부
절차	온라인(e-permit1)이나 서면(form A)으로 수의검역부에 검역신청서 제출한 뒤 검역비용 납부 → 해당제품의 검역이 승인되면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가 발행 → 승인내역과 증명서가 자동으로 세관에 통지
제출서류	할랄인증서
기간	1일 소요
비용	품목마다 검역비용이 다름 * 품목별 비용 확인 : http://www.mytradelink.gov.my (myTRADELINK Portal > TRADE REPOSITORY > PERMIT ISSUING AGENCY >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제품은 ‘도축법 1975’에 따라 ‘할랄(HALAL)인증’을 받아야 하며,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개발부서(JAKIM)가 인정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제품이어야 함. 육류에서 돼지고기는 수입이 제외됨
- 말레이시아로 육류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동물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선적 전이나 해당 화물이 수출국을 출발하기 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③ 수산식품

주관	수산부
제출서류	건강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CITE 허가증, 원산지증명서, 식물위생증명서
기간	품목별로 다름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수산법 1985(Fisheries Act 1985)”에 따라 관리

④ 가공식품

- 수입식품검역처에서 식품첨가물검사 등 식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

3. 제출서류

가. 검역 관련 서류

서류명	발급기관
수입허가서 (Import Permit)	말레이시아 관련 부서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출국 관련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건강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수출국 관련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비 안전에 대한 명시서	연방 혹은 도시 건강관리 기관
할랄 인증서	할랄 인증기관

나. 서류 샘플

① (수산물)수입허가서



JABATAN PERIKANAN MALAYSIA
DEPARTMENT OF FISHERIES MALAYSIA
AKTA PERIKANAN MALAYSIA 1986 / FISHERIES ACT 1982
SEKSYEN 40, KAWALAN KE ATAS KAWALAN BAWAH / SECTION 40, CONTROL OF LIVE FISH

No. Permit / Permit No.:
 JPM53110000000010
 LBP/1/1H/00003/10

PERMIT IMPORT IMPORT PERMIT			
1. Konsili / Pengimport (Nama dan Alamat) <i>Consignee / Importer (Name and Address)</i> DRT Trader 17th Floor, HP tower Jln Oluanggang Bukit Damansara		5. Sumber / Source* Akuakultur	
2. Konselor / Pengeksport (Nama dan Alamat) <i>Consignor / Exporter (Name and Address)</i> Consignor Sdn Bhd Jalan Kelang Lama Kuala Lumpur		6. Jenis komoditi / Type of Comodity Ikan Hiasan - 7. Tujuan transaksi / Purpose of transaction* Perniagaan 8. Negara Asal / Country of Origin SINGAPORE 9. No. Sijil Kesihatan / Health Certificate No. - 10. Syarat-syarat khas / Special conditions Pemeriksaan Keselamatan di Stesen MAQIS WP Labuan.	
3. Nama Dan Alamat Agen Yang Dibenarkan (bagi pihak pengimport) <i>Name and Address of Authorized Agent (for importer)</i>		11. Sah sehingga / Valid until 14/11/2010 12. Peta masuk / Entry point LABUAN - SABAH 13. Tarikh import / Date of import 31/10/2010 14. No. Pendaftaran / Pendaftaran / vessel Flight No. / Vehicle No. / Vessel No. KSI 4453	
4. Bil. No. Nama Sains/ Nama Biasa (jika ruang tidak mencukupi sila kopikan lampiran) <i>Scientific and Common Name (if space is insufficient please enclose attachment)</i>	1. <i>Poecilia reticulata</i> Guppy 2. <i>Xiphophorus helleri</i> Swordtails	Kuantiti (ekor/kg/pokok) Quantity (piece/kg) 10.00 KGM 5000.00 KGM	Nilai (RM) Value (MYR) 30.00 5000.00
Jumlah / Total		5010.00	5030.00
Tempoh: Place Jabatan Perikanan Malaysia Pejabat: Melaka Wilayah Persekutuan Labuan Tarikh: 26/10/2010 Date (Maglis Approver (En. Arshad)) RETUA PENGARAH PERIKANAN DIRECTOR GENERAL OF FISHERIES MALAYSIA			

② 할랄인증서

No. Standard : MS 1500 : 2009
Standard No.



A44682

KERAJAAN MALAYSIA
GOVERNMENT OF MALAYSIA

Sijil Pengesahan
CERTIFICATE OF AUTHENTICATION
HALAL

Adalah dengan ini diperakumka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RUMAH SEMBELIHAN
(AYAM SEMBELIHAN)

- yang dikeluarkan / diedarkan / diuruskan oleh: Manufactured / distributed / managed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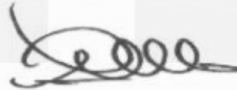
HLRB PROCESSING SDN BHD
LOT 1828, 1829 & 1830, MUKIM SERKAM
77300, MERLIMAU, JASIN, MELAKA

telah mematuhi hukum syarak dan Standard Halal Malaysia dan diluluskan oleh Panel Pengesahan Halal
has complied with Islamic Law and Malaysian Halal Standard and approved by Halal Certification Panel of

JABATAN AGAMA ISLAM MELAKA,

No. Ruj: / Ref No. :
JAKIM/(S)/(22.00)/492/2/ 3 002-12/2008

Terdapat di:
15, Jalan 1/10
15, Jalan 1/10
15, Jalan 1/10
15, Jalan 1/10
15, Jalan 1/10



Kelua Pengarah / Director General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관리기관	식품안전품질본부(The Food Safety and Quality Division, FSQD) - 주요업무 : 수입식품 라벨링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의 적용 및 집행
관련규정	- Food Act 1983 (식품법 1983) - Food regulations 1985 (식품규정 1985)
비고	식품규정 1985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품법 1983 및 식품규정 1985에 따른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구 분	필수 / 선택	샘 플 사 진
제품명	필수	
성분	필수	
중량	필수	
제조사 및 수입업체 정보	필수	
유통기한	필수	
보관방법 (유통기한이 보관방법에 따라야할 경우)	선택	
기타정보(영양정보, GMO여부, 식품첨가제, 방사선조사식품여부 등)	선택	

나. 표기방식

① 사용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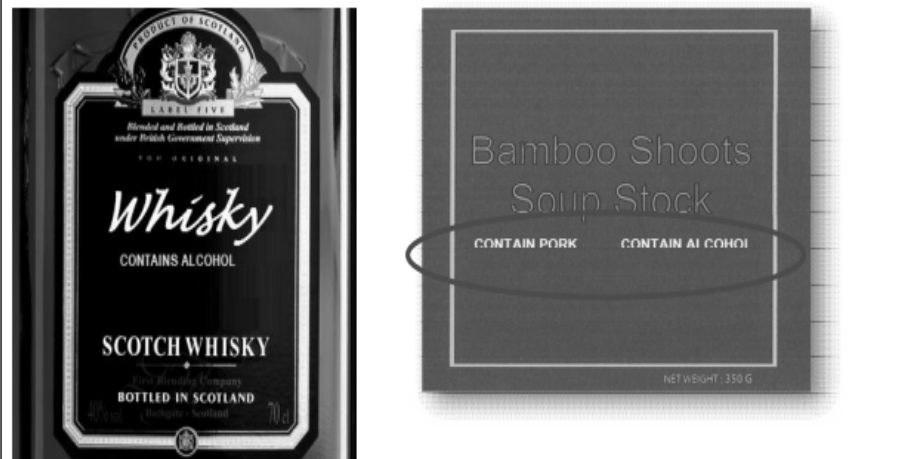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제조/포장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음

- 수입식품은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병행표기 가능
- 다른 언어의 번역은 본래의 의미와 같아야 함

② 기본 표기사항

- 식품명은 눈에 띄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라벨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내용과 비교해 더 눈에 띄어야 함
- 제품 명칭은 원재료의 일반적 명칭 또는 학명으로 표기
- 혼합식품일 경우 ‘mixed’ 또는 ‘blended’라고 표기. 단, 본 규정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식품별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야 함
- 식품에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가 포함되어 있거나, 돼지 또는 소고기에서 나온 부산물, 돼지비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CONTAINS(포함사항)’라고 표기
- 식품에 알코올이 첨가된 경우 ‘CONTAINS ALCOHOL’이라고 기재함. 이때, 반드시 밑줄 없이 굵은 대문자로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 위 두 경우 모두 제품명 밑에 기재

Example:



③ 성분표기

- 물, 식품첨가물, 영양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각 성분의 적절한 명칭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일 경우 중량에 따른 비율의 내림차순으로 기재

Example:

A food product contains the following ingredients:

Ingredients	%
Non-dairy creamer	43.25
Inulin	6.25
Young barley leaves	1.00
Instant coffee powder	12.50
Sugar	37.00
Total	100.00

The list of ingredients shall be written on the label in the following order:

Ingredients:

Non-dairy creamer, sugar, instant coffee powder, inulin and young barley leaves

- 식용 지방 또는 기름이 함유된 경우 해당 지방 또는 기름의 이름을 원재료를 함께 기재
〈예시〉 Vegetable oil (Palm oil, corn oil)
- 동물에서 추출한 성분이나 첨가물인 경우 해당 동물의 일반적인 명칭을 함께 표기
〈예시〉 Collagen(Fish)
- ④ 과민증을 불러일으키는 식품
 - 식품 목록
 - (a) 밀, 호밀, 보리 및 귀리를 포함한 글루텐 함유 곡물
 - (b) 땅콩과 콩을 포함한 견과류 제품
 - (c) 어류 및 어류 제품
 - (d) 우유 및 우유 제품(유당 포함)
 - (e) 달걀 및 달걀 제품
 - 표기법 예시
Ingredients : Malt extract (barley), sugar, skimmed milk powder, cocoa, maltodextrin, palm oil and vitamin C
- ⑤ 첨가물
 -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경우 “Contains permitted(관련 식품첨가물 유형)”로 기재
 - 식품개선제(Food Conditioner)가 첨가된 경우 “Contains (식품개선제 분류) as permitted food container.”로 기재
 - 향미증진제를 첨가된 경우 “Contains (향미증진제의 화학명) as permitted flavour enhancer.”로 기재

⑥ 중량 표시

- 최소 순중량 또는 부피 또는 내용물의 수에 대한 문구가 포장지에 표시되어야 하며 글자의 높이는 동일해야 함

Correct: Net weight: 450 g Minimum volume: 250 ml 	Incorrect: Weight 1 kg Minimum volume : 500 ml 
--	--

⑦ 제조자/수입자/원산지의 이름 및 주소

- 모든 식품 라벨은 제조자/수입자/원산지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함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제조 또는 포장된 식품은 다음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함
 - (i)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자의 이름 및 주소
 - (ii) 제조 또는 포장 권리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 (iii) (i) 및 (ii) 단위의 에이전트 이름 및 주소.
- 수입 식품의 경우, 식품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 (i) 해외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
 - (ii) 제조 또는 포장 권리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 (iii) (i) 및 (ii)의 에이전트 이름 및 주소
 - (iv) 말레이시아 내 수입업체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 (v) 식품의 원산지

Example of local product: Manufactured by: ABC Sdn Bhd No. 81, Jalan Puteri 5/3 Bandar Puteri, 47100 Puchong Selangor	Example of imported product: Manufactured by: XYZ International 10 Mahunga Drive, Mangere Bridge 1 Auckland 2021, New Zealand Imported by: XYZ Sdn Bhd Lot 16, Jalan 19/11 46300 Petaling Jaya Selangor Product of New Zealand
---	--

⑧ 유통기한 표시

○ 유통기한 필수표시 제품

- 비스킷, 빵
- 영유아 캔 식품
- 영유아 시리얼 제품
- 초콜릿, 화이트초콜릿, 밀크초콜릿
- 코코넛제품(크림, 우유류, 페이스트, 크림파우더, 건조코코넛)
- 밀폐된 용기에 담긴 마가린을 제외한 식용 지방 및 식용기름
- 유통기한이 18개월 미만인 식품첨가물
- 이유식
- 액상란, 액상난황, 액산난백, 건조란, 건조난황, 건조난백
- 일자 표시가 필요한 저열량 식품
-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육류
- 우유 및 유제품(200ml 이하의 우유 및 경성치즈를 제외)
- 탄산이 들어가지 않은 살균 청량음료 및 U.H.T 청량음료
- 영양 보충제 또는 식품으로 판매되는 영양보충제
- 살균 과일 주스
- 살균 채소 주스
- 피넛버터
- 소스
- 특수목적 식품
- 세리카야(Serikaya)

○ 유통기한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 EXPIRY DATE 또는 EXP DATE(날짜, 일/월/년 또는 월/년)
- USE BY(날짜, 일/월/년 또는 월/년)
- CONSUME BY 또는 CONS BY(날짜, 일/월/년 또는 월/년)
- BEST BEFORE 또는 BEST BEF(날짜, 일/월/년 또는 월/년)

○ 유통기한 날짜는 세리프체가 아닌 굵은 대문자로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 필수표시제품 목록에 없더라도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⑨ 기타사항

○ 식품 요소의 그림은 라벨에만 기재

○ 섭취방법을 기재할 경우 ‘SERVING SUGGESTION’ 또는 ‘RECIPE’라고 대문자로 글자 크기가 6포인트 이상으로 제품 이미지와 가깝게 표기

- 로고는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이어야 하며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삭제
- 생균 배양(Probiotic culture)이 포함된 경우 다음 항목이 표기
 - (a) “CONTAINS (state quantity) OF PROBIOTIC CULTURES”
(주 : 첨가된 생균 배양물이 계속 유효하며, 유통기한 내 생존 가능한 생균이 106 cfu/ml 또는 cfu/g 이상이어야 함)
 - (b) 생균 배양의 속, 종 및 변종의 명세
(참고 : 식품규정 1985 별표 12 A(the Twelfth A Schedule, Food Regulation 1985)에 명시된 생균 배양만 식품에 첨가될 수 있음)
 - (c) 포장 개봉 전후의 보관 방식
- 생균 배양물의 증식 및 유지에 사용된 배지가 동물에서 유래된 경우 해당 동물의 일방명칭을 표기해야 함
“MEDIA USED FOR PROPAGATION OF PROBIOTIC CULTURES DERIVED FROM (the common name of such animal)”
- 생균 배양물이 첨가된 식품 포장에는 “생균 배양물이 장이나 내장의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는 유사한 문구를 표기할 수 있음

다. 영양성분 표기

- 필수적으로 표기하여야 하는 식품
 - 조리된 시리얼과 빵(Prepared cereal food and bread)
 - 우유제품(Milk product)
 - 밀가루 과자(Flour confection)
 - 통조림 고기, 생선, 야채(Canned meat, fish and vegetable)
 - 통조림 과일 및 다양한 과일 주스(Canned fruit and various fruit juices)
 - 샐러드 드레싱 및 마요네즈(Salad dressing and mayonnaise)
 - 청량음료(Soft drink)
- 영양성분은 100g(ml) 당 및 1회 제공분에 대한 형태로 표기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은 필수로 표기

Example: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 size: 250 ml		
Servings per package: 4		
	Per 100 ml	Per serving (250 ml)
Energy	35 kcal (147 kJ)	88 kcal (370 kJ)
Carbohydrate	5.4 g	13.5 g
Protein	1.2 g	3.0 g
Fat	0.9 g	2.3 g

- 즉석 섭취가 가능한 음료의 당분은 아래의 형태로 표기

“Carbohydrate…g

Total sugars…g”

Example:

Product name: Grape-Flavoured Drink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 size: 250 ml		
Servings per package: 4		
	Per 100 ml	Per serving (250 ml)
Energy	35 kcal (147 kJ)	88 kcal (370 kJ)
Carbohydrate	5.4 g	13.5 g
Total sugars	4.5 g	11.4 g
Protein	1.2 g	3.0 g
Fat	0.9 g	2.3 g

- 지방산을 표기하는 경우 포화지방산, 단불포화지방산, 고도불포화지방산 및 트랜스 지방산의 네 가지 유형으로 표기

“Fat …g

consturated fatty acids …g

Polyunsaturated fatty acids …g

Saturated fatty acids …g

Trans fatty acids …g”

Example: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 size : 200 ml		
Servings per package : 5		
	Per 100 ml	Per serving (200 ml)
Energy	44 kcal	88 kcal
Protein	0.5 g	1.0 g
Carbohydrate	10.5 g	21.0 g
Fat	5.8 g	11.6 g
consisting of		
Monounsaturated fatty acids	2.1 g	4.2 g
Polyunsaturated fatty acids	1.0 g	2.0 g
Saturated fatty acids	2.4 g	4.8 g
Trans fatty acids	0.3 g	0.6 g

✓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 size : 200 ml		
Servings per package : 5		
	Per 100 ml	Per serving (200 ml)
Energy	44 kcal	88 kcal
Protein	0.5 g	1.0 g
Carbohydrate	10.5 g	21.0 g
Fat	5.8 g	11.6 g
consisting of		
Saturated fatty acids	2.4 g	4.8 g
Trans fatty acids	0.3 g	0.6 g

✗

- 비타민과 무기질(미네랄)은 영양소 기준치(NRV)에 기재되어 있고, 1회 제공분이 기준치의 5% 이상인 경우만 표기.(5% 미만은 표기하지 않음)

Example:

The 5% NRV for each vitamin and mineral is as follows:

	Unit	NRV	5% NRV
Vitamin A	µg	800	40
Vitamin D	µg	5	0.25
Vitamin E	mg	10	0.5
Vitamin C	mg	60	3
Thiamine	mg	1.4	0.07
Riboflavin	mg	1.6	0.08
Niacin	mg	18	0.9
Vitamin B ₆	mg	2	0.1
Folic acid	µg	200	10
Vitamin B ₁₂	µg	1	0.05
Calcium	mg	800	40
Magnesium	mg	300	15
Iron	mg	14	0.7
Zinc	mg	15	0.75
Iodine	µg	150	7.5
Protein	g	50	2.5

라. 금지사항

- 관련 기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르지 않는 한 등급, 품질, 우수성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표기할 수 없음

〈예시〉

- 선별된 재료(Selected Ingredients)
- 품질(Quality)
- 고객만족(Satisfaction guaranteed)
- 품질보증(Quality guaranteed)
- 우수한 품질(Made from quality)
- 보건부 승인(Getting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Health)
- 품질관련 참조사항(Using a reference letter of clasification (..) MOH / 163 / S / 25 No JLD)
- 규정에 따른 강도, 순도, 품질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한(pure)”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 “합성(compounded)”, “약물첨가(medicated)”, “강장(tonic)”, “건강(health)”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예시〉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 건강식품(Health food)

○ 다음의 부재에 대해 표기할 수 있음

- (a)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라드, 첨가된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 (b) 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첨가물 또는 영양보충제

〈예시〉

- No pork/ No lard(돼지고기, 비계 무첨가)
- No alcohol(알코올 무첨가)
- Does not contain boric acid(붕산 무첨가)
- Does not contain cyclamate(시클라메이트 무첨가)

○ 다음의 표기는 금지

- (a) 특정 식품이 모든 필수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공급원이라는 내용
- (b) 균형 잡힌 식단이나 다양한 음식의 섭취가 모든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 (c) 입증할 수 없는 내용
- (d) 식품이 질병, 장애 또는 다른 생리학적 기능을 예방, 완화, 치료 또는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
- (e) 소비자가 유사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
- (f) 소비자의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이용하는 내용

〈예시〉

- ABC제품을 먹으면 일일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음
(Eat ABC products to meet your daily nutrient requirements)
- 이 식품들은 당뇨 치료에 효과적임(These foods are good for diabetes)
- 면역성 증진(Increase immunity)
- 두뇌발달(For the development of the mind)
- 임상시험을 한/임상시험을 통해 증명된(Clinically tested / proven)
- 광범위한 연구(Extensive research)
-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Scientifically proven)
- 유전자 변형 식품이 포함되지 않음(The product does not contain genetically modified ingredients)

- “유기농의(organic)”, “효소가 함유된(biological)”, “환경친화적인(ecological)”, “생체역학의(biodynamic)”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관련 규정인 Malaysian Standard MS 1529(The Production, Processing, Labelling and Marketing of Organically Produced Foods)을 준수한 식품의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음

- “영양분이 풍부한(nutritious)” 또는 유사한 단어는 아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표기할 수 있음
- (a) 식품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 (b) 식품이 100g당 40kcal 또는 100ml당 20kcal 이상의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 (c) 식품은 100g 당 5g 또는 100ml 당 2.5g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한 경우
 - (d) 적어도 4종류의 비타민과 2종류(나트륨 제외)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e) (a), (b)에 언급된 영양소의 양

3. 라벨링 샘플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라 벨 링 사 진
제품명	Sunchang Gung Tae Yang Cho Gochujang 500g	
성분	Red Pepper powder, Starch syrup, ...	
중량	500g	
제조사 및 수입업체 정보	SAJO HAEPYO CORPORATION Cheong Fatt Food Sdn. Bhd.	
유통기한	별도표시	
보관방법	8℃ 이하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라 벨 링 사 진
제품명	YOPOKKI HOT&SPICY CUP	
성분	Rice, Salt, Citric Acid ...	
중량	140g	
제조사 및 수입업체 정보	Young Poong Co., Ltd Woori Pacific Sdn. Bhd.	
유통기한	별도표시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베트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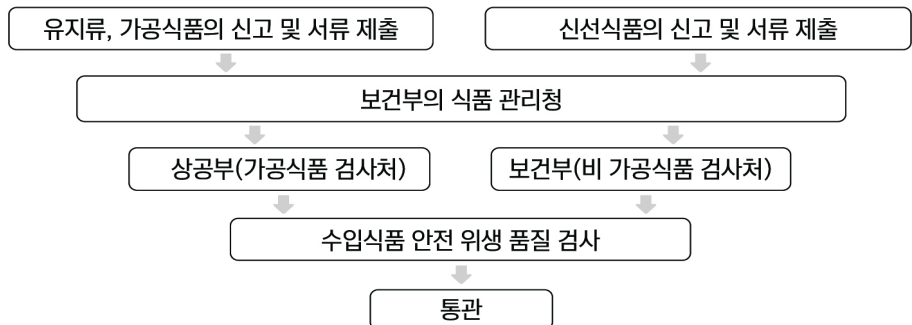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31
	제2장 통관제도	32
	1. 베트남 통관 개요	32
	2. 관리 · 법률체계	34
	3. 통관절차	46
	4. 제출서류	59
	5. 관세제도	59
	6. 통관 관련 기타 참고사항	64
	제3장 검역제도	71
	1. 관리 · 법률체계	71
	2. 품목별 검역절차	80
	3. 제출서류	87
	제4장 라벨링 제도	88
	1. 관리 · 법률체계	88
	2. 표시사항	91
	3. 라벨링 샘플	98
	제5장 부록	99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가. 베트남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요 내용	비고
1	수출계약	· 거래선(바이어)발굴 · 계약 진행	
2	서류준비	· 선하증권 · 세관 수입신고서 · 포장명세서 · 터미널 처리비용 · 상업송장 · 검사증명서 · 기술표준 및 위생증명서	·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 제품명, 구성성분, 영양성분, 중량, 제조사 정보, 유통기한, 원산지 * 베트남어로 명확하게 기입해야 함
3	선적/출항	· 수출통관 · 포워딩 업체 지정 · 운송	· 주요항만 뱅크 항, 다낭 항, دن부 항, 하이퐁 항
4	수입신고/검사	· 수입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 유자류, 음료, 제과, 원료,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하여 검사 진행	· 보건부 식품관리청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 감독
5	세금납부	· 제품가격 + 수입 관세 + 부가세	·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pus.customs.gov.vn) 관세 행정 절차 처리, e-서류 신청, 지방세관 관련 행정 절차 수행 가능
6	통관	· 세관 서류 제출 · 세금납부 · 현지 바이어 화물 인수	

나.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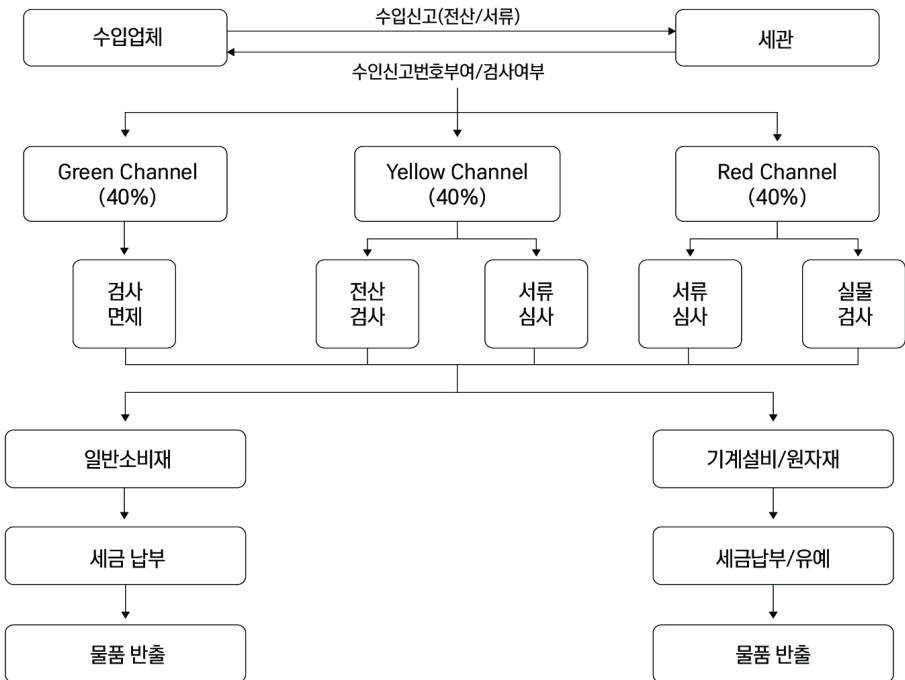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입 프로세스 인포그래픽, 2017

제 2 장 통관제도

1. 베트남 통관 개요

- 베트남 수출 및 통관 프로세스
 - 수입 신고 및 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출
- 베트남의 통관절차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 베트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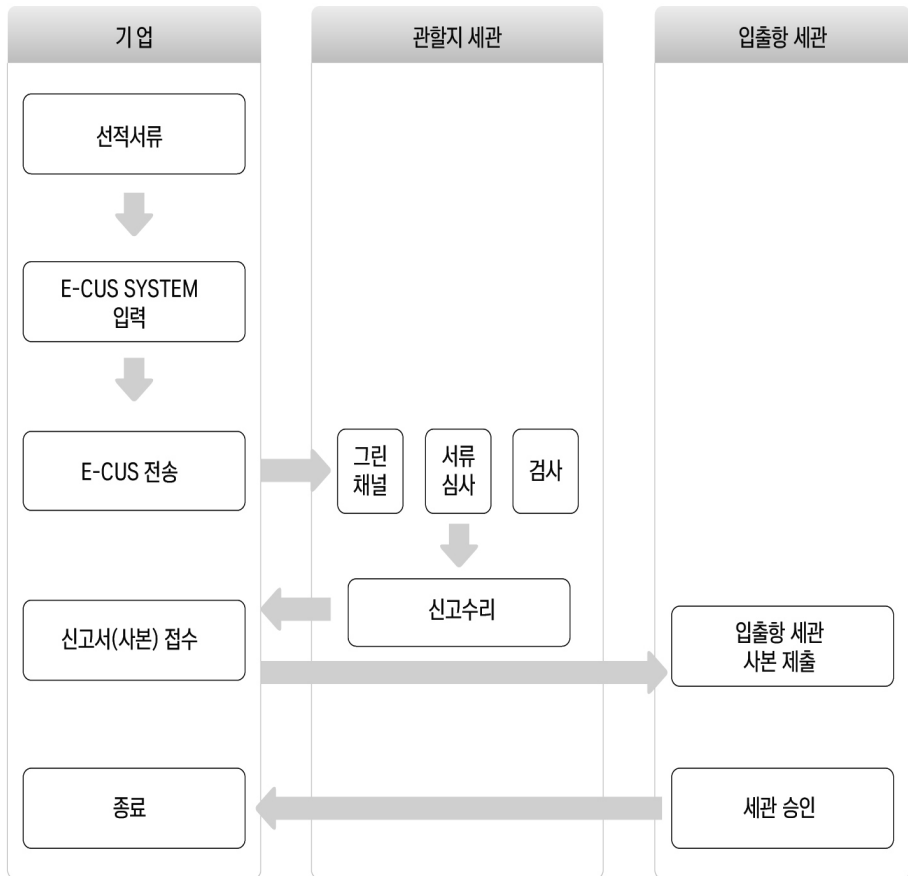
- 베트남 세관 시스템 선진화 사업
 - 베트남 세관 시스템 선진화 사업을 통해, VNACCS¹⁾와 VCIS²⁾를 구축. 2016년에 VNACCS · VCIS 시스템을 기반으로 베트남 전국에서 세관 자동화가 100% 실시됨

1) VACCS(베트남 자동 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 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2) VCIS(베트남 세관 인공지능 정보 시스템; Vietnam customs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

- 또한 VASSCM³⁾과 전자세관도장(E-Customs Seal)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관 시스템을 첨단화 및 개혁하고 있음

〈VNACCS(베트남 자동 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



* 출처 : 베트남 관세관(주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 통관환경 및 관세제도, 2018

○ 수출 및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 호치민시 기준 베트남에서의 수출과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108시간, 138시간임

3) VASSCM(베트남 항구 세관관리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 Viet Nam Automated System For Seaport Customs Management)

○ 한국-베트남 해상운송 소요 기간 및 비용⁴⁾

〈한국-베트남 해상운송 예상 소요 기간〉

	해상운송 소요기간
한국 선적대기시간	1~6일
항해일수(한국, 부산발 - 호치민/하노이착)	6~7일
통관 소요기간(서류 제출일 기준)	3~5일
현지 내륙 운송 기간	1~3일
합계 예상 소요 기간	11~21일

〈부산-호치민간 컨테이너비용 (단위 : 달러)〉

항목 구분	호치민발 - 부산착		부산발 - 호치민착		비고
	20피트	40피트	20피트	40피트	
운송료	50.00	100.00	200.00	400.00	선사별로 상이
THC	90~100	140~150	100.00	150.00	공장위치에 따라 상이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N/A	N/A	N/A	N/A	
B/L fee	30.00	30.00	30.00	30.00	

2. 관리·법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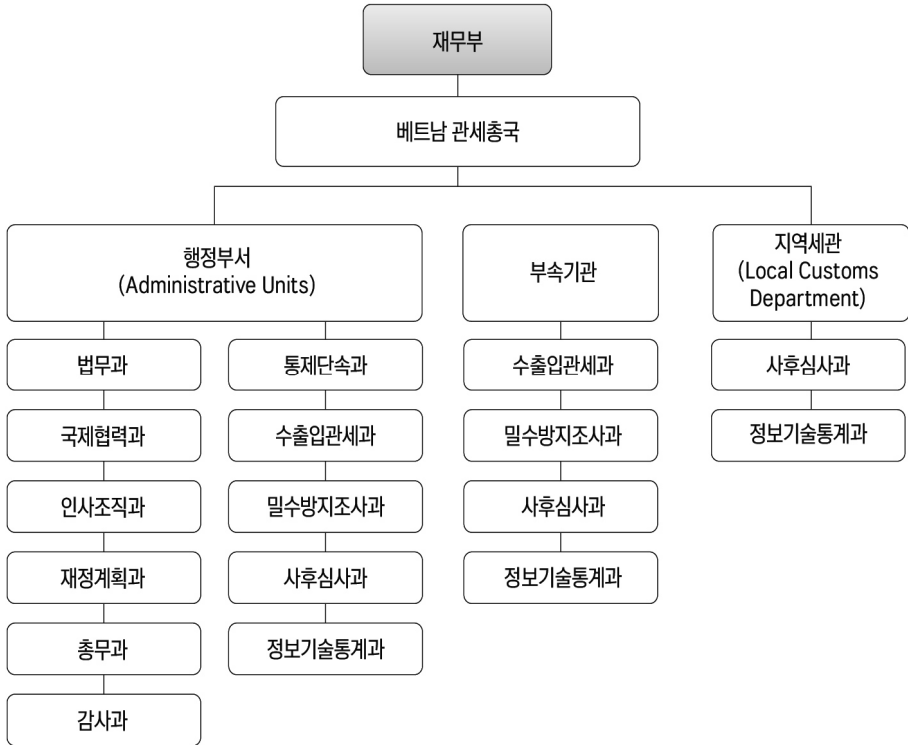
가. 관리체계

○ 관리기관

- 베트남의 통관 및 관세제도는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에서 담당함
- 관세총국은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함. 관세총국은 통관절차의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감독, 관세법규에 따른 세관 관련 업무의 집행과 수출입 관세 및 정부에서 위임받은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에 대한 조사, 통제 및 단속 등의 기능과 업무를 함

4) 출처 : KOTRA, 국가·지역정보 베트남, 현지 진출 물류 기업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2018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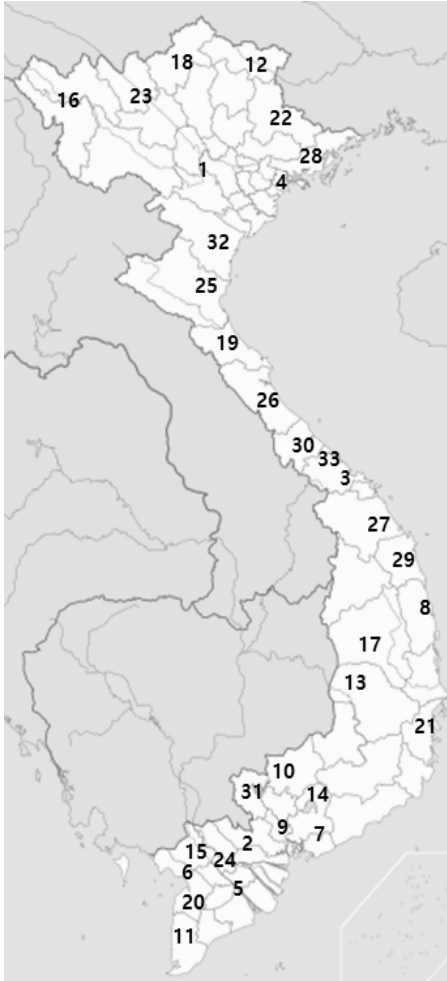
- 베트남 관세총국의 조직구조는 본청(관세총국)-지방청(시·성 관세국)-일선 세관(관세지국)의 3중 구조로 되어 있음. 전국 63개 시·성 중 33개 지역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음
- 통관 행정기관 조직구조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베트남, 2015

- 국경 감시소·세관 출장소
 - 국경 감시소·세관 출장소는 현재 185개가 설치됐으며, 이들 세관 집행 기구는 성급·지방·시급 세관의 산하 기구로서 이들 세관의 업무를 보좌함. 베트남에서는 지방 관세 조직이 각 직할시 및 성(省)의 소속으로 각 건별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관세국마다 다른 경우가 많음
 - 베트남의 세관은 한국처럼 중앙 통제 하에 운용되고 있으나 세관 직원은 성 세관별로 자율 선발하는 체계이며, 세관원의 권한이 막강한 편임

〈베트남 세관 리스트〉



	세관이 있는 지역
1	하노이(Hà Nội)
2	호치민(HCM)
3	다낭(Đà Nẵng)
4	하이퐁(Hải Phòng)
5	칸토(Cần Thơ)
6	안장(An Giang)
7	바리아-붕타우(Bà Rịa-Vũng Tàu)
8	빈딘(Bình Định)
9	빈중(Bình Dương)
10	빈 푸옥(Bình Phước)
11	카마우(Cà Mau)
12	까오방(Cao Bằng)
13	닥락(Đắk Lắk)
14	동나이(Đồng Nai)
15	동탑(Đồng Tháp)
16	디엔비엔(Điện Biên)
17	곤똥(Gia Lai-Kon Tum)
18	하안장(Hà Giang)
19	하띤(Hà Tĩnh)
20	키엔지앙(Kiên Giang)
21	칸호아(Khánh Hoà)
22	랭선(Lạng Sơn)
23	라오까이(Lào Cai)
24	롱안(Long An)
25	네안(Nghệ An)
26	꽝빈(Quảng Bình)
27	꽝남(Quảng Nam)
28	꽝닌(Quảng Ninh)
29	꽝나이(Quảng Ngãi)
30	꽝찌(Quảng Trị)
31	띠이닌(Tây Ninh)
32	탄호아(Thanh Hoá)
33	뚜아띠엔(Thừa Thiên)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베트남, 2016

○ 베트남 항만 체계

- 베트남 항만은 ‘베트남 항만 마스터플랜 비전 2020에 관한 결의안(Decision 2190/QSS-TTg)’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됨. 이 중 베트남의 북부, 중부, 남부를 대표하는 3대 대표 항구는 하이퐁항(Hai Phong), 다낭항(Da Nang), 호치민항(Hochiminh)임

○ 주요 통관부서 연락처

부서	웹사이트	전화	이메일	주소
관세총국 ⁵⁾	customs.gov.vn	+84-24) 3944-0833	webmaster@ customs.gov.vn	Block E3, Duong Dinh Nghe Street, Yen Hoa, Cau Giay, Hanoi, Vietnam
하노이 관세국	hanoicustoms.gov.vn	+84-24) 3791-0169	hqhanoi@ customs.gov.vn	No. 129, Nguyen Phong Sac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Capital, Vietnam
호치민 관세국	haiquan.hochiminhcity.gov.vn	+84-28) 3829-1422	webmasterhcm@ customs.gov.vn	No. 02, Ham Nghi Street, Ben Nghe Ward, 1 District, HCM City, Vietnam

나. 법률체계

○ 관세법(정부, 법, No. 54/2014/QH13, 공포일 2014/06/23, 발효일 2015/01/01)

조항	주제	세부내용
제18조	세관신고인의 의무	· 신고서, 회계장부, 입증서류 등 5년 보관, 세무조사 협조 등을 5년 보관해야 함 · 세무조사 협조 등
제24조	세관신고 시 제출서류	·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서류
제25조	세관신고서 제출	· 화물도착 30일 이내, 수출 출경 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함
제29조	수출입신고 자진 수정	· 신고서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수정 가능(초과 시 패널티)
제29조	통관절차 미완료에도 화물반출 가능	· 30일내 보완해야 함(우대기업, 국방 등)
제61~63조	보세창고	· (영업용) 보세창고(kho ngoại quan) : 시·성 관세국장을 거쳐, 관세총국장이 설치허가 부여 · 자가 보세창고(Kho bảo thuế) : (기업단위 보세화물 창고) 시·성 관세국장이 설치허가 및 감독 · 영업용 보세창고內 물품보관 기간 : 물품반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12개월) · 보세창고 주인은 관할관세국장에게 3개월마다 운영상황 보고, 자가창고에는 수출생산 원재료 반입

5)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조항	주제	세부내용
제77조	통관 후 세무조사	· 목적 : 수출입물품 화주, 통관 위임받은 자, 수출입 업체/개인의 통관 신고 정확성/진실성 확인 · 사유 : 세액사기, 무역사기, 수출입 관리규정 위반 등 가능성이 있을 경우 · 실시 제척기간 : 세관신고서 등록일부터 5년 (서류 5년 보관), 조세법 위반 시효 도과 : 10년 소급 추정 · 실시 권한보유자 : 성급, 성 합동, 중앙직할시급 세관국장 및 관세총국장
제85조	과세시점 / 납부기한	· 신고서 등록 시점부터 기산(수출입세법 제8조) · 통관(Thông quan, Customs Clearance) 또는 반출(Giải phóng, Release) 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 · 금융기관 세액보증 경우, 물품 통관 또는 반출 가능하나, 그 날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지연가산금 부과하며 최대 보증기한은 통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제86조	과세가격 산정	· 수출 물품 가격 :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수출입세법 제8조) · 수입 물품 가격 : 최초 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수출입세법 제8조) · 적용환율 : 베트남국가중앙은행(SBV)이 과세시점에 발표한 고시환율 · 적용세율 : 우대세율 (MFN), 특별우대세율(FTA), 일반세율(우대세율의 150%)

- 원산지 규정 시행령(정부, 시행령, No. 19/2006/ND-CP, 공포일 2006/02/20, 발효일 2006/03/07) 통관 관련 주요내용

조	주제	내용
13조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규정	· 다음의 경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절차 시점에 세관 기관에 제출해야 함 ① 수입자가 특혜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세금 우대 및 비관세 제도의 혜택이 해당 국가 또는 국가 집단의 원산지를 가진 물품에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물품을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② 쌍방적 또는 일방적 기준에서 베트남이 정한 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받는 국가의 원산지의 물품인 경우 ③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 타국,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있는 국가그룹의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조약에 따라 지정되는 물품인 경우 ④ 사회 안정, 공동체의 건강 또는 위생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 통제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베트남 또는 국제단체가 지정하여 통보하는 물품의 경우 ⑤ 덤핑방지관세, 보조관세, 보호조치, 할당관세조치, 수량제한조치를 적용하는 시점에 베트남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의 경우
14조	수입 물품 원산지 사전 인증	· 수입자가 수입 화물의 원산지를 사전에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예정인 화물의 원산지 관련 공문 및 서류를 수입 전에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조	주제	내용
1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 확정 및 검사 절차	① 수입자의 통관신고서를 받은 후에 세관 기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진행함 ②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사전 인증 시에 제시된 물품과 같은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재확인할 필요가 없음. 수입된 화물이 원산지 사전 인증 시에 제시된 물품과 같지 않은 경우 세관은 법적 근거에 따라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재확인함 ③ 원산지 및 관련 정보의 신뢰도에 의심이 생기는 경우 세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관련 증명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 검사의 요청 시 검사 사유, 원산지증명서와 물품의 원산지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 사유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함 ④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 물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세관 절차에 따라 통관이 허용됨 ⑤ 검사 결과는 수입자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하며 늦어도 150일을 넘지 않아야함

다. 관련제도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및 서류〉

단계	필요 절차 및 서류
1) 품목확인	1. 베트남의 HS 6단위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2. 베트남 HS 최종단위별 협정세율 확인 3. 베트남에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2)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준비	-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재료 구매입증 서류 - 원재료 역내산 증빙서류 - FTA BOM, 제조공정도(원산지 소명서 제출할 경우, 생략 가능) (상기의 서류를 선적 시, 선적일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관세청 / 상공회의소 인증 발급(출력)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 베트남 된장, 2017

〈식품 품목별 식품안전 관련 상품안전성 공표 및 등록 방식〉

구분	기업 자체적 상품의 안전성 공표	베트남 행정기관에 의한 상품의 안정성 공표
대상	· 포장된 가공 식품 · 식품 첨가제 · 식품 가공 보조제 · 식품 용기 · 식품 접촉 포장재	· 건강보호식품(건강 보조제, 식이 보조제) · 의약품 영양식품 · 특수 식이용 식품 ·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 식품 사용 허용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식품 첨가제 ·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식품 첨가제
관할 기관 제출 서류	① 자체 상품 공표서 1부(동 시행령 첨부 부록I - 2번 양식) ②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원본 또는 인증 사본)	- 수입 제품의 경우 ① 상품 공표서 1부(동 시행령 첨부 부록 - 2번 양식) ②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로서 사용자의 안전 또는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③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④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공표된 상품의 효능 또는 상품의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구성 성분의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개인 또는 단체의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⑤ 수입 건강보호식품의 경우 GMP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비고	· 수출품 생산 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는 제외 ·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기업 자체적인 상품 재공표 필요 ·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	·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상품 재공표가 요구됨. ·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

* 출처 :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장벽 대거 완화, 2018

- 등록 시 제출 서류 요건

• 서류 공통 요건

- 1) 모두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함.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함. 관련 자료는 상품 공표서 등록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함

•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관련 요건

- 1) 발급 기관 및 기한 :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ISO 17025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발급일이 상품 공표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여야 함
- 2) 검사 결과 내용 :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원칙에 따라 보건부가 발행한 식품안전 기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보건부 발행 관련 규정 부재 시에는 개인·단체가 공표한 관련 기준(표준)에 따른 안전 기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의 효능입증 자료 요건

- 1) 해당 상품의 최소 매일 섭취량이 자료에 제시된 해당 성분 섭취량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함

- 자체 상품 및 상품 공표서 등록 절차

- 기업 자체적 상품 공표 : 대중 매체 및 자사 웹사이트 상에 상품을 공표하거나 본사 공식방식으로 상품 공표
- 지정기관에 서류 제출 : 직접 방문 제출 및 우편 송부 방식으로 제출함. 제출기관은 중앙 직할시, 성 단위 인민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임
- 서류 접수 및 상품 공표 정보 공시 : 직접 방문 제출 및 우편 송부 방식으로 제출

- 상품 공표서 등록 절차

- 상품 공표서 등록 서류 제출 :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함⁷⁾. 제출기관은 품목별로 상이함
- 서류 접수 및 접수증 발표 : 적법한 서류 접수일을 기점으로 기능성식품은 근무일 기준 21일, 나머지 품목은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접수증이 발부됨. 접수 기관이 제출서류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 사실을 발견할 시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서 기업에 통보함. 1회에 한해 서류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함

7) 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 공표일 2018/02/02, 발효일 2018/02/02, 첨부 부록 1-2번 양식

- 서류 접수 기관의 상품 공표 정보 공시 : 서류 접수 기관은 등록 서류를 제출한 기업과 상품명을 기관 웹사이트 및 식품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공시
- 식품안전성 공표 등록 시 주의 사항
 - 과거에는 보건부 및 지역 보건기관에 식품안전 공표 및 식품등록 관련 서류 접수가 일임되었음. 그러나 2018년에 No. 15/2018/ND-CP이 실행되면서 일부 서류 접수 업무가 지방 행정기관에 이양됨. 이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 품목별 상품 공표 등록 서류 접수 기관
 - 보건부
 - 1) 건강기능식품
 - 2)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
 - 3) 보건부 장관 규정 식품에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첨가제
 - 4)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첨가제
 - 중앙 직할시·성 단위 인민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
 - 1) 의료영양식품
 - 2) 특수 식이용 식품
 - 3)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
- 자유판매증명서(CFS : Certificate of Free Sales)
 - 자유판매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임. 베트남 보건부(www.moh.gov.vn)의 식품관리청에 수입 식품 등록 시 필요함(부록7 참조)
 - 식품, 건강식품 및 의약품 관련 제품은 식약청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농산물 및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받은 이후 수입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구비 서류로는 수출필증(수출면장),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검사성적서 원본(영문) 등이 있음
 - 한국에서 발급받은 자유판매증명서는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거쳐 베트남 수입식품 등록 시 제출할 수 있음. 베트남 대사관 인증이란,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외교통상부 및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임. 베트남 대사관 인증 시 국가에서 지정한 변호사 번역 공증이 필요함

- 대사관 인증 비용은 평균 10만 원~15만 원이며, 소요 기간은 3일~10일임.
구비 서류로는 수출필증, 영업허가서,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 검사성적서 등이 있음. 대사관 인증은 외교통상부 발급대행기관 아포스티유(www.apostiu.com)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음

○ 기능성식품 등록 및 절차

- 베트남에 기능성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5개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베트남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안전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홍삼 제품도 기능성식품에 포함됨
- 서류제출
 -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식품위생안전국에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출 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고 우편이나 식품위생안전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함
 - 필요한 제출 서류 및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식품기준공보문서
 - ① 사업자가 발행한 기본기준서(도장 있는 것, 관능지표 주요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화학·물리·미생물·중금속 등 위생에 관한 지표 성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보관방법 포장방법 생산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
 - ② 베트남 업체의 사업등록증이나 외국 생산자의 설립 허가서
 - ③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 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 ④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GMP인증서 HACCP 또는 그에 상당한 인증서
 - ⑤ 원산지 국가의 관리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자유판매허가서나 보건인증서
 - ⑥ 상품의 임상연구결과나 특별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서류
 - ⑦ 라벨이나 라벨을 찍은 사진 라벨내용 요약서 라벨이 부착된 샘플
 - ⑧ 제품 샘플 2개
- 접수증 발급
 - 식품위생안전국은 서류 접수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함
- 보완서류 제출
 - 서류접수기관은 서류를 검사하며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등록을 원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법 규정에 따라 보완서류에 대한 문서를 전송함

- 심사
 - 필수서류를 모두 갖추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 심사를 진행.
10일 후 심사신청서를 관한기관에 제출해야 함
- 심사결과 발표 & 승인
 - 등록을 원하는 회사에게 심사결과를 보내고 서류를 보관
 - 베트남에 수입 기능성식품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일 이상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 소요됨. 심사비용은 한 개의 상품을 한 번 심사하는데 50,000동(한화 약 2,800원), 수입식품기준인증서 발급에 50,000동이 소요됨
- 베트남 AEO 제도(우대기업 제도, 2011.05 도입)
 - 개요
 - 2년간의 기업 실력과 규정 준수를 보고 요건을 맞추면 우대혜택 제공
 - 요건
 - 최근 2년간 관세 및 기타 세법 규정을 준수
 - 회계 관리 및 감사와 관련 규정 준수
 - 내부통제체계 및 전산납부
 - 직전 2년간 거래 실적
 - 1) 연간 1억 달러(USD) 이상 수출입 실적 / 연간 4천만 달러(USD) 이상 수출실적 보유 제조기업
 - 2) 연간 3천만 달러 이상 농산물 수출실적 보유기업 / 연간 2만 건 이상 신고 실적 보유 통관대행업체
 - 혜택
 - 통관 시 서류 및 물품 검사 면제(불충분한 서류로도 30일 이내 보완조건으로 통관 가능)
 - 세관 통관절차에 있어서의 우대
 - 수입요건 검사 필요물품 경우 자가 창고로 물품 반출 가능(보관 목적)
 - 관세 환급 신청 시 선 환급 후 검사 가능
 - 통관 후 사후심사 면제(단, 3년에 1회 심사)
 - 최대 40일까지 관세납부 유예(익월 10일까지 납부)
 -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등으로부터 간접수입 시 선 수입 후 신고 가능
 - 현황(2018.04 기준)
 - 현재 총 65개의 기업이 우대기업으로 지정됨
 - 그 중 한국기업이 12개고 일본기업이 13개임

3.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 요약

○ 베트남 수출 전 준비사항

- 수입계약서, 선하증권 혹은 항공운송장, 포장명세서, 상업송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함. 일부 서류에 대해 원본 혹은 베트남어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된 서류 준비필요
-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구비
- 통관 진행 시 화물의 실제 상황과 서류상의 차이가 없도록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해야 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식품 및 주류에 대해 국가 식품안전 검역 규정인 No. 28/2013/TT-BCT를 2013년 11월 제정함. 이에 따르면, 산업무역부에서 지정된 국가 검역기관에서 수입요건 인증서(Notification of foodstuff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와 서류검토 인증서(Notification of foodstuff only inspected dossier) 중 한 가지를 발급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함

○ 수입 신고

- 종이서류에 의한 수출입 통관신고와 전자통관시스템(VNACCS/VCIS)에 의한 신고 방식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신고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추세
-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신고 수리의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3가지 채널(그린채널, 옐로우채널, 레드채널)로 분류하여 진행함

○ 세관 서류심사 및 통관 검사

- 수입대행사의 실적에 따라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중 세 종류로 구별해
-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를 진행함
- 일반 통관의 경우, 샘플 검사는 물량의 10%를 진행하고 있으나 통관절차 위반, 관세법 위반의 전례가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시행함

○ 관세 납부

-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품목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별 소비세를 납부함. 관세 납부 시기는 관세 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반출 전·후 납부 대상으로 나뉨

- 반출 전 납부 대상은 물품이 정부 지정 소비재인 경우, 설립연도가 1년이 되지 않은 기업, 1회 이상 범법 처벌 이력이 있거나 납부 유예 기간 중 범법 처벌 이력이 있는 업체로 지정함
-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es)는 담배와 주류, 특정 금액 이상의 승용차, 비행기, 요트 등에 부과됨. 일반적으로 수입 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CIF)을 기초로 산정됨.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해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과됨.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10~80%이며, 주류의 경우 30~60%인 것으로 확인됨

○ 물품반출 및 환급

- 관세 환급은 환급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함. 관세 환급 시에도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소요량 정산서, 대금결제 확인서를 마련하여 세무국에 제출함. 환급대상 세금은 수출 관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이며 관세는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함

나. 통관절차

○ 통관절차 진행 시 세관신고인, 세관 기관, 세관공무원의 책임

- 통관절차 진행 시 세관신고인 책임
 - 세관신고서 작성 및 제출, 통관 관련 증명 서류 제출
 - 운송수단에 대한 실물 검사를 위해 규정된 장소로 물품, 운송수단 이동
 - 법률 규정에 따라 세액을 납부, 기타 재정적 의무의 이행
- 통관절차 진행 시 세관 기관, 세관공무원 책임
 - 통관 서류의 접수 및 등록
 - 통관 서류의 심사, 물품 및 운송수단의 실물의 검사
 - 세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법과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세금 및 기타 납부액을 징수
 - 통관절차가 완료된 물품의 통관, 물품의 출고, 운송수단의 확인 등 결정

○ 통관 진행 장소

- 세관 서류의 접수, 등록 및 검사, 물품 및 운송수단의 실물을 검사하는 세관 기관 장소임
- 세관 서류의 접수, 등록 및 검사를 하는 장소는 관세총국, 관세국임

- 물품의 실물검사 장소

- 육로, 국제 열차의 철도역, 국제 민용 공항, 국제 우체국, 수출입·입출국 및 국경 통과 활동을 수행하는 항만, 내륙 수로항, 내륙에 설립된 물품의 수출입항 등의 관문 검사 장소
- 관세지국
-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른 중점 검사 장소
- 생산 기반 및 시설의 검사 장소, 박람회 및 전람회가 진행되는 장소
- 보세창고, 관세 유보 지역, 컨테이너 화물 집하장 구역의 검사 장소
- 육로의 수출입 구역 내 인접국과 베트남 세관 기관 간의 일반 검사 장소
- 관세총국 총국장의 필요에 의해 결정한 기타 장소

○ 세관신고 및 서류제출 기한

- 세관신고인은 다음의 기한 내에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신고서를 신고 및 제출해야 함
 - 수출 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은 물품이 국경 세관 등의 지점에 도착하고 난 뒤 세관에 통보해야 하며, 늦어도 해당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4시간 전에는 세관에 통보해야 함. 물품이 속달우편 서비스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2시간 전에는 세관에 통보해야 함
 - 수입 물품의 경우 물품이 국경 세관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서는 해당 신고서의 등록일로부터 15일 동안 세관 절차 진행의 효력을 지님
 - 전자 세관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 기관은 세관 서류의 심사, 물품의 실물 검사를 진행하고 그때 세관신고인은 세관 서류 관련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함. 단, 해당 증명서가 국가의 정보 시스템 중 하나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세관신고서의 신고 시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의 등록에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세관 공무원의 통관절차

- 세관 공무원은 세관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 후 관세법 제54/2014/QH13호와 관련 법령, 시행규칙에 따라 등록, 검사해야 함. 세관 공무원이 통관 서류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세관신고인에게 그 거절 사유를 통보해야 함

- 세관신고인이 법에서 정한 통관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 세관 공무원이 물품과 운송수단의 실물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음
 - 서류심사는 세관 기관이 세관 서류를 모두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함
 - 물품의 실물 검사는 세관신고인이 세관 기관에 물품을 모두 제시하는 시점부터 늦어도 8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함. 법률 규정에 따른 품질, 보건위생,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안전 분야 관련 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의 실물검사 완료 기한은 해당 전문분야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계산함
 - 물품의 수량이 많거나 종류가 다양한 경우 또는 검사업무가 복잡한 경우 해당 세관 절차를 진행하는 세관의 세관장은 물품의 실물검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음. 단, 기간의 연장은 최대 2일을 넘지 않아야 함
 - 세관 기관은 수출입물품의 상·하역, 승객의 출입국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휴일, 휴일, 근무 외 시간에도 세관 절차를 진행함
- 채널별 필요 심사절차
 - 현재 수입 신고는 전산과 서류 신고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해야 함. 수입 신고 후 세관 검사는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 Red Channel(고위험) 3가지 중 한 가지로 구분돼 진행됨
 - 수입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 고정 자산 성격의 기계 장치류이거나 세관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됨. 단,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함
 - 고위험 물품(Red Channel)에 대해 세관은 서류 검사와 더불어 실제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는 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누어짐. 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1) 전수 검사 대상
 - 2) 무작위 10%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 3) 무작위 5%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채널별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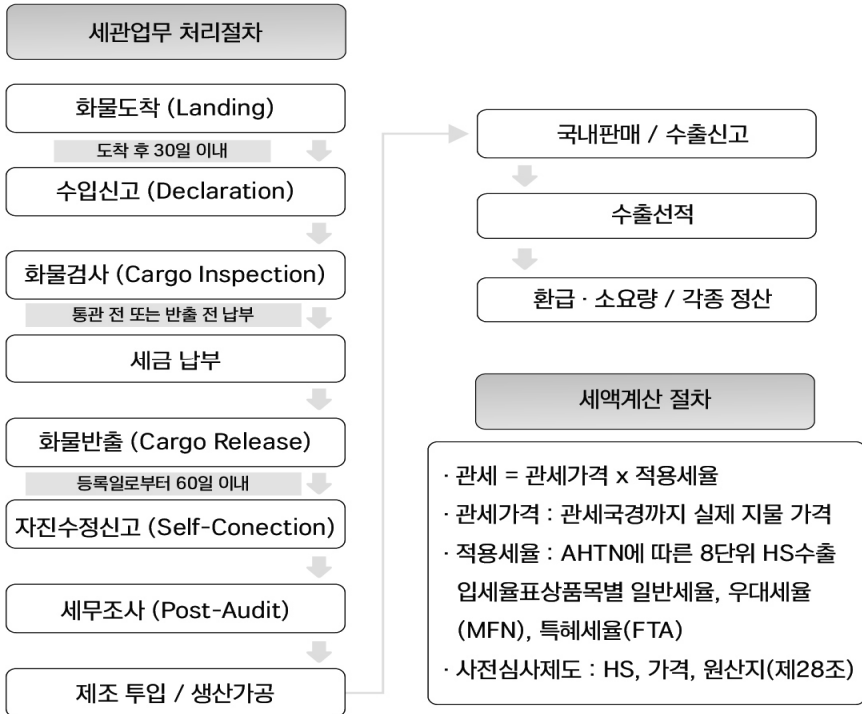
Channel 분류		필요 심사 절차
Green Channel		· 5전산 신고만으로 신고 수리 가능 ·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Yellow Channel	E-Yellow Channel	· 전자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Paper-Yellow Channel	·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Red Channel		· 종이 서류 제출 및 세관의 물품 검사 · 물품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전수 검사 대상 ② 무작위로 수입 물품 수량의 10%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로 검사 확대) ③ 무작위로 수입 물품 수량의 5% 검사(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로 검사 확대)

○ 물품의 통관

- 물품은 통관절차가 완료된 후 통관됨
- 통관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세관신고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납(완납)하지 않은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미납한 세금에 대하여 보증을 하면 물품 통관이 가능함. 단 통관일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조세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지연 가산금을 부과하며 최대 보증기한은 통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임
- 화주가 물품의 수출입 허가를 받았으나 세관으로부터 벌금 형태의 행정 위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화주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납부 보증을 통해 물품을 통관시킬 수 있음
- 물품의 수출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검사, 분석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은 법률 규정에 따른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분석, 감정 및 검사 면제 통보 등의 결과를 통하여 물품의 수출입여부를 결정한 후 물품의 통관을 진행함
- 긴급 요청 서비스 물품, 안보·국방 서비스에 전용하는 물품, 특혜 또는 면제권이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의 수하물, 외교·영사 행낭은 관세법 54/2014/QH13의 제50조, 제57조 규정에 따라 통관됨

다. 세관절차

○ 세관절차 프로세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홍콩, 대만, 베트남), 2017

○ 국가 행정기관의 처리 절차

- 1단계 : 서류접수, 서류심사(실물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화물의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통관할 수 있음)
 - 서류접수
 - 세무 코드가 입력된 세관신고서의 조건 심사(품목별 정책, 위반, 강제 사항)
 - 신고인의 정보 입력과 신고 시 자동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진행 상황을 안내
 - 신고서 등록(접수번호 작성)
 - 세관의 검사 방식, 검사 수준 및 양식의 통보
 - 서류심사

- 화물의 실물 검사와 서류의 심사 결과 결정
- 부서장 승인 후 시스템에 관련 검사 정보의 입력 및 결과 처리
- 세관 절차 완료 후 실물검사가 면제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3단계로 이동하고 검사가 필요한 화물의 경우는 2단계로 이동
- 2단계 : 실물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화물의 실물검사 및 통관
 - 화물의 실물검사 이전에 신고인이 보완 신고 후 심사 요청 시 재심사
 - 실물검사 결과의 기록 및 통보
 - 검사 결과 처리
 - 세관 절차의 완료 인증
- 3단계 : 세관 비용 및 세금의 납부, 세관 절차의 완료 인증 날인을 하고 세관 신고서를 신고인에게 반환
- 4단계 : 세관 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서류 심사

○ 세관 진행 방법

-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 업무를 진행하고 세관 서류, 물품 실물을 세관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 공무원은 세관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통관을 진행함

○ 세관구비서류

- 수입 물품 신고서
- 상업송장 촬영본 1부(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화주가 베트남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매도인이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세관은 베트남에 있는 매도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송장을 받음
 - 세관신고인이 우대기업이거나 외국 상인과의 가공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또는 세관신고서상 관세가치란을 통해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신고인의 경우에는 상업송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 물품의 송장이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 신고인이 관세평가 확정에 관한 재정부의 안내에 따라 관세평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함
- 해상, 항공, 철도, 기타 법률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운송된 물품의 경우 해당 운송을 증명하는 화물 운송장 또는 기타 운송 증서(단, 육로로 국경 관문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 베트남 국내 또는 세관 구역에서 매매하는 물품, 수하물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입국자의 수입 물품은 제외함)

- 물품 수입허가서는 수입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제출하며 세관에 따라 1회 수입 시 한 부의 원본을 제출하거나 한 부의 촬영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면제 통보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원본 한 부를 제출해야 함
-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상 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세가치 신고서를 전자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세관 기관을 통해 두 부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한 부를 제출하거나 전자데이터증명서로 제출하게 되며,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특별 우대세율의 적용에 관한 합의를 한 국가 또는 집단의 원산지 물품(수입자가 우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한다)
 - 환경 위생 또는 공동체의 건강, 사회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통제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베트남 또는 국제단체에서 통보하는 물품
 - 덤핑방지관세, 보조관세, 차별방지관세, 보호관세, 할당관세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베트남에서 통보하는 물품
 - 수입 물품의 경우 베트남 법률 또는 베트남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조약에서 규정하는 수입관리 제도를 준수해야 함

〈물품, 운송수단 관련 세관 절차 비용〉

번호	등록 내용	비용 (VND)
1	세관신고서 등록비	20,000동
2	세관 검사, 감독 또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요청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절차의 임시 중단 비	200,000동
3	물품의 국경 통과비	200,000동
4	육로 국경 통과 수단에 대한 비용(차량, 트레일러, 트랙터 등)	200,000동
5	수로 국경 통과 수단에 대한 비용(선박 등)	500,000동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홍콩, 대만, 베트남), 2017

○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액, 기타 수수료의 징수

- 세관신고인은 기한 내에 충실히 신고하고, 세액을 산정, 납부하며 본인의 신고, 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짐

- 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에 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신고인은 이 사실을 통관절차를 진행한 세관 기관에 통보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정해야 함
- 신고인은 수출입세법 107/2016/QH13와 물품, 국경운송 비용의 납부에 관한 시행규칙 274/2016/TT-BTC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세액의 신고, 산정, 납부와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신고인은 세액과 수수료 관련 세관 기관의 결정을 이행해야 함

○ 과세 시점, 납부기한

-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시점, 납부기한은 세금관리법 제78/2006/QH11호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름
- 수출, 수입 물품의 과세 시점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시점으로 함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수출, 수입 물품은 관세법 제54/2014/QH13호 제37조 규정에 따라 통관 또는 물품의 출고 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단, 관세법 규정에 따른 우대제도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통관 또는 물품이 출고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며, 그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관리법 제78/2006/QH11호에 따라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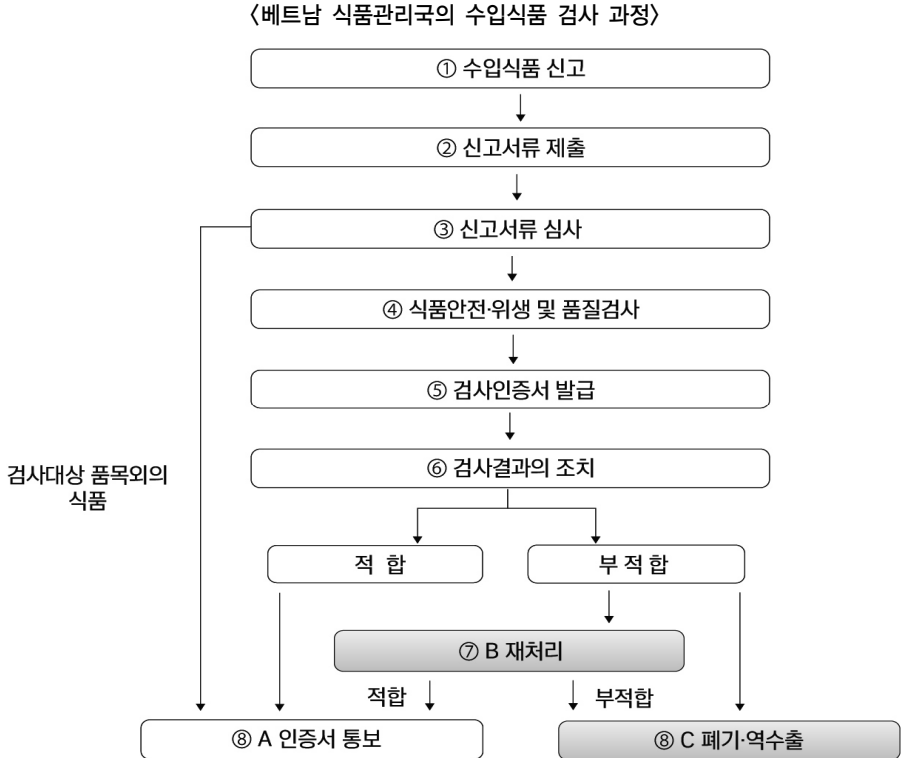
○ 과세가격

- 과세가격은 수출, 수입 물품의 세액 산정과 통계에 사용됨
- 수출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출입 세법 제107/2016/QH13호의 규정에 따라 확정됨

○ 수출, 수입 물품 품목 분류 및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

- 수출, 수입 물품 품목 분류는 관세법의 물품 분류에 관한 규정을 따름
-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의 확정은 현행 세율표에 근거함
 - 세관신고인이 품목 분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 기관에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분석, 분류, 세율 확정을 위해 참고한 수출, 수입 물품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물품의 견본을 추출할 수 있음. 세관신고인이 세관 기관의 분석, 분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민원의 제기 및 해결은 제소법 02/2011/QH13 규정에 따름
- 정부, 재정부 장관은 수출, 수입 물품 품목 분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라. 수입식품 검사 절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홍콩, 대만, 베트남), 2017

○ 수입식품 검사 개요

-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 검사기관이란 베트남 보건부가 지정한 식품 상품에 경험이 있고 검사업무의 수행 기술 능력 및 조건을 갖춘 기관, 업체를 말함
- 검사 방식은 통상적으로 감각기관, 라벨 기재 사항, 포장상태, 특별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며, 서류 및 대표 견본의 확인 및 추출을 통해 검사가 진행됨

○ 수입식품 검사 절차

- 수입식품의 통관 시에는 사전에 등록된 식품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물품 검역 시 확인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통관이 결정됨. 세부적인 수입식품 검사 절차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됨

- 수입식품 신고
 - 베트남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수입 물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수 검사가 원칙임
- 신청 서류
 - 수입식품 검사신청서⁸⁾
 - 식품 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⁹⁾
 - 간소화 검사 방식의 적용을 허가하는 보건부 식품안전국의 통보(있는 경우에 한함)
 - 물품의 품질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상인이 해당 권리를 식품을 수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위임하는 서류(있는 경우에 한함)
 - 포장명세서 사본
 - 화주의 확인 및 증명에 필요한 선하증권, 상업송장 사본
- 신고 서류 심사
 -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였거나 도착하기 전에 화주는 검사기관 또는 국가의 전자 통신망을 통해 수입식품검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검사기관은 수입식품 검사 신청서의 심사를 진행해야 함
-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
 - 간소화 검사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이내에 수입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식품 확인결과 통보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음
 - 통상적인 검사방식, 상세 검사방식의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이내에 검사의 수행을 위한 견본을 추출해야 함. 수입식품검사 신청서를 신청하는 시점에 해당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세관 공무원은 그 물품이 도착했음을 통보하는 화주의 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영업일 이내로 견본을 추출해야 함
 - 검사기관은 통상적인 검사방식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6영업일 이내, 상세 검사방식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8영업일 이내에 수입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식품 확인결과 통보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으며,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또는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상의 내용과 물품의 라벨 기재 사항, 식품안전, 품질에 관한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검사할 책임이 있음

8) <부록 1> 참조

9) <부록2, 2-1, 2-2> 참조

- 검사 품목이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에 관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식품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재해야 함. 또한, 그 결과를 화주에게 통보하고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관련 서류를 전달해야 함
-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화주는 검사기관에 검사 결과의 재확인, 물품의 처분 방법 또는 재검사 진행을 요청할 수 있음
- 화주가 물품의 처분 방법에 관한 서류를 검사기관에서 받은 시점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관한 처분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공문을 발급해야 함
- 검사 인증서 발급
 - 국가 품질관리 대상 수입식품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제시하는 식품안전·위생 및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 인증을 받아야 함
- 검사 결과의 조치
 - 위생·안전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한 수입식품의 경우, 인증서가 세관 기관에 통보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식품은 베트남 식품관리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처리, 폐기 또는 반송됨
 - 베트남 식품관리국에서 재처리 승인을 받아 재처리한 식품은 재검사 후 검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경우 화주는 검사 기관에 해당 처분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낼 책임이 있음
- 식품의 위생·안전 업무 관련 비용
 - 식품안전 분야의 유통, 수입, 확인, 공포 관련 허가서 발급 심사비는 다음과 같음

〈식품안전 분야의 유통, 수입, 확인, 공포 관련 허가서 발급 심사비〉

번호	내용	비용 (VND)
1	미세 영양소 강화식품, 기능성식품에 대한 규정 부합 공포 및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서류 심사	
	최초 공포	상품별 회당 1,500,000동
	재공포	상품별 회당 1,000,000동

번호	내용	비용 (VND)
2	식품첨가물, 식품가공 보조 물질, 포장가공을 마친 식품, 용구, 포장자재, 식품 함유물의 규정 부합 공포 및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서류 심사, 담배의 규정 부합 공포(1번에 속하는 식품을 제외)	
	최초 공포	상품별 회당 500,000동
	재공포	상품별 회당 300,000동
3	생산시설, 슈퍼마켓, 4성급 이상의 호텔 내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공포 서류 심사	상품별 회당 150,000동
4	수입식품 품목 확인(분석검사 비용 불포함)	품목별 1,500,000동+ (품목수×100,000동), 최대 품목별 10,000,000동
5	식품의 분석검사 유통 신청서의 심사	검사별 회당 3,000,000동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 (홍콩, 대만, 베트남), 2017

○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 검사 면제 대상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시행령(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 공포일 2018/02/02, 발효일 2018/02/02,)에 의거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검사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 취득 완료 물품
 - 베트남 입국자에 의해 반입된 물품, 입국자가 여행 전후에 발송한 일상 생활 또는 여행 용도의 물품 또는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선물용 물품
 -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 개인용으로 반입된 물품
 -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물품
 - 테스트 또는 연구 샘플로서 개인 또는 단체가 인증한 해당 시험·연구 목적에 적합한 수량의 물품
 -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물품
 - 수출품 생산·가공을 위해 수입된 상품 및 생산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 및 생산 원료
 -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 수입된 상품
 - 베트남 정부 및 총리 지시에 따라 긴급한 필요를 위해 수입된 물품

4. 제출서류

가.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 수입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AWB)¹⁰⁾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¹¹⁾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화물보관해제주문서(Cargo Release Order)
 - 검수보고서(Inspection Report)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¹²⁾
 -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Terminal Handling receipts)
- 상황별 필요 제출서류
 - 한-아세안 FTA 혹은 한-베트남 FTA 협정세를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C/O)¹³⁾
 - 수입허가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
 - 수입 쿼터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연간 쿼터 증명서(Annual Import License)
 - 수입 품목에 따라 사전에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허가 등을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허가서,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전문검사 면제 통보서, 각종 증명서 등

5. 관세제도

가. 법률체계

- 수출입 세법 주요내용¹⁴⁾

조	주제	내용
제2조	과세대상	· 관세국경 통과 수출·수입 물품 · 국경 내에서 보세구역과 국내시장 간 이동물품

10) <부록3> 참조

11) <부록4> 참조

12) <부록5> 참조

13) <부록6> 참조

14) 의회, 법, No. 107/2016/QH13, 공표일 2016/04/06, 발효일 2016/09/01

조	주제	내용
제2조	비과세대상	- 국경통과 외국물품 - 정부물품 - 인도적 무상 원조물품 - 외국 ↔ 보세구역 이동 물품 - 보세구역 ↔ 보세구역 이동물품 (세금 없다 해도, 세관신고는 필요)
제3조	납세대상	과세대상에 속하는 수출, 수입 물품을 수출입하는 법인 및 개인
제5조	세액산정	- 종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종량세 = 수출입수량 × 단위당 규정 세액
제9조	관세가격 및 과세환율	국가은행 고시환율을 적용
제8조	과세시점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제9조	납부기한	- 물품을 통관 또는 반출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함(우대기업은 최대 40일 이내) - 금융기관 최대 납세보증기한은 30일임 - 납세의무자가 세금 및 지연가산금 미납 시 보증기관이 대납함
제10조	세율	-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은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을 포함함 - 우대세율은 무역관계에서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의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됨 -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의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됨 - 일반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의 것으로 인정되는 수입 물품에 적용됨 일반세율은 정부 규정에 따라 각 품목별 우대세율의 1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됨
제11조	관세율표	- 재무부가 국회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년 말 차년도 세율표를 공표 - 베트남 관세율 표는 2012년부터 8단위 분류체계 사용(한국은 10단위)
16조	면세대상	- 박람회·전시회 참가 물품 - 요건충족 이사화물 - 투자우대 또는 ODA 투자사업 고정자산 형성 물품 - 위탁가공 수출입물품 - 면세기준 이하 휴대품 - 수출 물품 임가공 위해 수입하는 원료, 물자, 부분품 - 수출 임가공 생산물 - 임가공 생산물에 부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완성 생산물 - 수출 물품 생산 위해 수입하는 원료, 물자, 부분품 등
18조	감세조치	관세기관의 감사과정에서 수출입 물품이 훼손되거나 일실된 경우 감세조치가 가능함
19조	관세 환급	- 수입세 납부 보세구역 물품 재수출 경우 - 수입세 납부 수입원자재를 사용하여 수출한 경우 - 투자사업 허가 받은 법인, 기업이 건설, 조립,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관세납부 물품

- 원산지 규정 시행령(정부, 시행령, No. 19/2006/ND-CP, 공포일 2006/02/20, 발효일 2006/03/07) 관세관련 주요내용

조	주제	내용
제4조	국제조약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	베트남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 그 조약과 함께 상세 규정된 관련 법규에 따라 특정 수출,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특혜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물품은 세금 우대 및 비관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5조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기타 일반적 특혜에 따른 특혜원산지 규정	수출 물품의 원산지 확인 시 일반특혜관세제도와 기타 일반적 특혜는 그 특혜를 받는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에 따름
제6조	원산지가 있는 물품의 정의	- 다음의 경우는 원산지가 있는 물품으로 봄 ① 완전한 원산지 ②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제7조	완전한 원산지가 있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완전한 원산지가 있는 물품이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관련 국가 및 지역을 그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함 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수확된 농작물이나 농작물로부터 나온 상품 ②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살아있는 동물 ③ ②항에 해당하는 동물로부터 나온 상품 ④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수렵, 밭 설치, 어획, 채집 과정을 통하여 얻은 상품 ⑤ 해당 국가나 지역의 토지, 수역, 해저에서 추출된 ①항부터 ④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광산과 자연생성 물질 ⑥ 국가 및 지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에서 얻은 상품의 경우 해당 국가, 지역은 국제법에 따라 그 수역, 해저에 대한 개척 권한이 있음 ⑦ 영해에서 어선을 통해 어획된 상품과 기타 해산물의 경우 해당 영해의 관할 국가에 등록되고 해당 국가의 국기 사용이 허가된다. ⑧ ⑦항에 해당하는 상품 중 어선 위에서 즉시 가공 또는 생산된 상품의 경우 해당 국가, 지역에 등록되고 해당 국가의 국기 사용이 허가됨 ⑨ 본래의 기능으로 사용될 수 없고 수리 또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폐기 또는 재생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원료, 자재로 사용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있는 물품 ⑩ ①항부터 ⑧항에 해당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상품으로부터 생산 되거나 존재하는 물품
8조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가 있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 완전하지 않은 원산지 물품의 확인과 관련하여 한 국가, 지역에서 최종적인 가공단계를 수행하며 물품의 기본적 성질이 변경되는 경우 그 물품은 성질이 변경된 국가, 지역으로 그 원산지를 정함 - 물품코드변경 기준은 물품의 기본적 성질 변경에 따라 확정함 - 가치의 백분율 비율 지표와 물품의 제조 및 가공단계 지표가 물품의 기본적 성질의 변화에 확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지표는 보충적 지표로 사용되거나 원산지 변경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이 지표에 관한 자료는 산업무역부에서 발행함

나. 관세제도

○ 관세의 종류

- 일반관세율(Ordinary Import Tax Rate)
 - 특혜관세율 및 특별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임.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됨
 - 특혜관세의 150%에 해당하며, 특혜관세율의 1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음
- 특혜관세율(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특혜(MFN, Most Favoured Nation)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며 일본, 미국, EU 등 163개국이 적용대상임
 - 개념상 특별 특혜관세율 적용국가도 포함됨
- 특별 특혜관세율(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
 - 베트남과 FTA 등의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물품에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임
 - 아세안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실효 특혜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협정관세,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협정관세가 이에 해당함
 - 한국은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중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원산지 증명서 필요)

○ 관세 부과 대상 및 세율

- 세금 부과 대상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이며 세율은 품질, 성질, 원산지에 따라 결정됨
 - 수출품은 FOB 가격, 수입품은 CIF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며 과세가격은 베트남 화폐를 기준으로 하며 종가세임
 - 상업 송장이 없는 경우와 정부 또는 관세총국이 정한 최저가격표 금액의 7할을 밑도는 경우, 수입 관세는 최저가격표 금액에 기인하여 과세함
- 일정 품목에 대해 1~45%의 관세를 부과
 - 상품판매 결제 형태(현금 또는 물물교환 등)와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됨
 - 농산물 수입 관세는 30~50% 정도이며 주류, 담배 등은 100~120%로 높은 편임
- 수입 관세 인하를 위한 제품의 저가신고(UNDER VALUE)
 - 저가신고 적발 시 세관에 비치된 자체 세율 기준으로 과세함

- 자체 세율표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을 적용함
- 시장가격조사 및 가격산정까지 소요기간 예측 불가로 큰 피해가 발생함
- 실시간 관세율 알아보는 방법
 - 베트남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www.customs.gov.vn)에서 조회 가능
 - 한국의 FTA 포털인 FTA무역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와 FTA 콜센터 1380을 통해 문의할 수 있음

○ 면세(관세 면제)

- 수출입 세법 제16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됨
 -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우대 및 면제권이 있는 외국 개인, 단체의 수출입물품, 입출국자의 면세수하물 기준 내의 물품,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출 상품 가공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자재·부품, 상품 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완전 수입 상품, 수출 가공 상품
 - 수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 자재, 부품
 - 견본, 견본을 대체하는 사진·영상·모형, 소량의 광고 인쇄물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
 - 관할 국가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입이 필요한 식물 보호 약품 및 비료, 농작물류, 가축류
 - 환경보호를 위해 수출입하는 물품
 -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 상품의 수입, 박람회와 전시회를 위한 상품 반입
 - 가공수출을 위한 천연자원 및 기타 원자재의 수입
 - 수출 가공구에서 수출입하는 물자, 단 수출 가공구를 통해 국내에서 반입한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 제외
 - 인도적 원조, 교육, 연구기관의 연구 및 과학탐구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 정부 지정한 기타 관세 면세대상

○ 세액 환급

- 수출입 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의 환급을 받음
 - 납세자가 수입세, 수출세를 납부했으나 수입 물품, 수출 물품을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한 수입세, 수출세에 해당하는 물품 수량보다 더 적은 물품을 수입, 수출한 경우
 - 납세자가 수출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출 물품이 재수입되고 수입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수입세를 납부하였으나 수입 물품이 재수출되고 수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가 생산, 거래를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물품이 수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되었고 수출된 경우
- 납세자가 임시수입 후 재수출 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의 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외로 재수출되었거나 보세 구역에 있는 경우. 단, 투자프로젝트, 건설시공, 가설공사, 생산서비스는 제외
- 환급대상 세금은 다음과 같음
 -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
- 환급절차
 -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함
 -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심사 기관은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함
 - 관세 환급 시 구비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소요량 정산서, 대금결제 확인서류 등이 요구됨
 - 환급 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로 관세는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함
- 국제조약의 적용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수출입 세법(107/2016/QH13)에 규정된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6. 통관 관련 기타 참고사항

가. 통관 대행

-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제도가 있으나 주로 물류 업체 등을 통해 통관하거나 업체에 자체 통관 전담 직원을 두어 통관을 진행함

나. 기타 인증정보

○ HACCP

〈베트남 HACCP인증 발급절차 및 모니터링 활동〉

	항목	내용
1	HACCP 인증 신청서 제출	· 인증 원칙, 조건, 인증 절차를 신청업체에게 제공함
2	HACCP 인증서 등록	· 상기 정보를 검토한 신청업체는 인증등록을 베트남 인증센터(QUACERT)에 제출함
3	평가 준비 및 평가	· 베트남 인증센터(QUACERT)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신청업체에 방문 · HACCP 관리계획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진행 / HACCP 관리계획의 실행성을 검증
4	HACCP 인증 발급	· 베트남 인증센터(QUACERT)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 부적합 통보 및 인증서 발급 · 모니터링 활동은 1년에 1회 수행되며, 지속적인 HACCP규율 준수여부에 대해 재평가 진행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 베트남 냉동오리, 2017

○ ISO 22000

○ Viet GAP(Vietnamese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베트남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제도)

- Viet GAP의 정의

- Viet GAP은 2008년,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Viet GAP을 주요 규격으로 규정한 시행령 379/QD-BNN-KHCN을 발표하며 처음 베트남에 도입됨. Viet GAP의 목표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확 및 저장하는 동안 손실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임
- Viet GAP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기업과 개인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 수확 및 사전가공 농산물과 관련된 기술적 기준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규격임
- Viet GAP 인증은 ASEAN GAP과 Global GAP과 FreshCare 같은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제조관리기준을 바탕으로 탄생함

- Viet GAP 인증을 취득한 생산자 증가 중

- Viet GAP 인증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임. 그렇지만 Viet GAP인증을 취득한 생산자가 늘어나고 있음. 현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해당 인증 마크를 취득한 생산자와 계약하는 것을 선호함

〈Viet GAP 주요 정보〉

항목	내용	
인증명	Viet GAP	
발행기관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성격	선택 인증	
유효기간	1년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조사 : 베트남 팜이버섯, 2017

다. 수출계약 시 계약 전 절차

○ FTA 협정별 유리 비교

- 베트남과 한국은 복합FTA가 체결된 국가임.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로 두 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베트남과의 교역 시 두 가지를(국제법)이 존재하게 됨. 자사 제품이 어떤 FTA 협정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음

〈수출계약 시 계약 전 절차〉

	조건 파악 절차	내용	
1	수출 제품 HS Code 확인	· HSK(한국의 HS CODE 확인) · 베트남 HS CODE 확인	
2	각 FTA 협정별 유리, 불리 비교	· 관세율 비교 · 진입비용 비교 ·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3	유리한 FTA 선택 및 양허 조건 파악	· 2)항의 분석에 따라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 가운데 수출 제품에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1)항에서 분류된 상품에 대한 양허 조건 파악	
4	선택 FTA 시장 진입 조건파악	· 식품안전, 위생, 품질기준 신고 · 주요성분 및 품질검사 · 자유판매인증 및 보건인증	· 유통에 대한 허가 ·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인정 · GMP 또는 HACCP 인증
5	FTA 뉴노멀 확인	· CITES · 나고야 의정서	· UPOV · GMO
6	바이어 신용조사	· 무역 사기 방지 조치	· 신용조사 의뢰기관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로 다시 보는 베트남, 2015

- 수출 제품 HS CODE 확인
 - 한국 HS CODE 분류 확인
 -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¹⁵⁾ 직접 확인 또는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HSK 확인 가능
 - 베트남 HS CODE 분류 확인
 - HSK 번호를 찾은 다음 베트남 관세청¹⁶⁾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각 FTA 협정별 유불리 비교
 - 관세율 비교
 - 한-아세안 FTA에서의 관세와 한-베트남 FTA에서의 관세율을 검색 및 비교하면 어느 협정의 관세가 더 낮은지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음
- FTA 양허 조건 파악
 - 상품에 대한 FTA 양허 조건 확인
 - 관세율 비교 및 진입비용 비교가 완료되면 수출 물품에 대한 양허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¹⁷⁾
- 선택 FTA 시장 진입 조건파악
 - 상품 수출에서 진입 조건 파악이 매우 중요함. 특히 농식품의 경우 허가, 인증, 검사, 라벨 등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출 전에 파악하여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할 수 있음
- FTA 뉴노멀 확인
 - 베트남 수출 시 동식물 농식품의 검역 및 통관에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국제 규범으로서 실제 수출현장에 적용되는 일도 있고, 적용이 생략되는 일도 있으나,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시 국제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수출 시 확인해야 할 사항임
 - 뉴노멀의 정의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뜻하는 말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기존의 규범과 달라지는 새로운 국제법을 일컫는다. 농식품 분야의 경우, 생물/식물/동물/식품/위생/유전자 등에 관한 국제법이 해당함

15)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2> 접속하여 협정문 양허표 베트남 참조

16) 베트남 관세청(<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Search.aspx?language=en-US>)

17) <http://www.fta.go.kr/main> / 한-ASEAN FTA 협정문 베트남 양허표 참조

- CITES
 -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워싱턴 조약으로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임
 - 대략 동물 5,600종, 식물 30,000종이 보호를 받고 있음
- GMO
 -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 중 정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여 입증된 경우에게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 함
- 나고야 의정서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로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됨
 -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바이어 신용조사
 - 무역거래는 원거리 국가에 있는 바이어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수출 계약을 하기 전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는 것이 권장됨
 - 신용조사 의뢰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전 세계 70여 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라. 전반적인 통관 애로사항 및 유의사항

- 통관에 긴 시간이 걸림.
 -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함, 하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에 비교해 낙후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정서로 인해 통관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음

-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 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 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긴급 물품 통관의 어려움, 부정부패 만연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임.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됨
- 다수 서류 작성으로 통관에 3~4일 소요됨
-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 및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강한 불만을 제기함. 특히 상하기 쉬운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투자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 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임
-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음. 통관 활동은 세관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되는데,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임.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름
-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남
 -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여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
 - 협력시스템 부재 :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 예)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리베이트 요구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아웃소싱 시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FTA 관세혜택, 상공회의소 증명서 발급 시만 적용 가능
 - 한-아세안 FTA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과 상공회의소에서 모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FTA 체결 국가들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본국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권고함
- 세관별로 상이한 베트남 통관 기준
 - 베트남은 세관별로 통관 기준이 상이함. 따라서 시비의 소지를 차단하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통관 업무 절차를 숙지하거나 베트남 통관대행 업체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 통관 애로사항 문의처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 +84-24-2472-2197
 - 주베트남한국대사관(관세관) : +84-24-3831-5110~6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하노이지사 : +84-24-6282-2987
 - 베트남 관세청 : +84-24-3944-0833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관리기관

- 베트남의 수입 식품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주요 식품)
 -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표준계량품질 관리국(수입 식품의 기준 규격)
 -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다자 무역 정책국(수출입 관련 업무)
- 베트남 자국 내에서 제조된 식품의 불량은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수입된 저품질 식품과 식품정보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1999년 베트남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 MOH) 산하에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VFA)을 설립하였으며 식품청은 베트남 내에 유통되는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관리기관 연락처

- 베트남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Ministry of Health)
 - 주소 : 138A, Giang Vo Street, Ba Dinh, Hanoi
 - 전화번호 : +84-24-38464489, +84-24-38463702
 - 팩스 : +84-24-38463739
 - 이메일 : banbientap@vfa.gov.vn
 - 웹사이트 : <http://vfa.gov.vn>
-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주소 : No. 8,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 전화번호 : +84-24-37911641, +84-24-37911606
 - 팩스 : +84-24-37911595
 - 이메일 : pth@tcvn.gov.vn
 - 웹사이트 : <http://www.tcvn.gov.vn/>
- 베트남 다자무역정책국(Department of Multilateral Trade Poli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주소 : No. 54, Hai Ba Trung Street, Hoan Kiem, Hanoi
- 전화번호 : +84-24-2220-5412
- 팩스 : +84-24-2220-2525
- 이메일 : VCSTMDB@moit.gov.vn

나. 법률체계

- 식물검역대상 목록, 수입 전 위험성 분석을 위한 식물검역대상 목록에 관한 시행규칙(농업농촌개발부, 시행규칙, No. 30/2014/TT-BNNPTNT, 공표일 2014/09/05, 발효일 2015/01/01)

조	주제	내용
제1조	검역대상 신선농산물	• 나무와 나무의 살아있는 부분 • 나무 상품 • 버섯류 • 누에고치, 연지벌레 • 과학연구와 생물학의 감정, 교육, 방지 작업에 제공되는 곤충, 거미, 버섯, 병균, 선충,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이드 및 잡초 • 식물검역대상의 보관, 운송수단 • 식물 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해 식물검역대상에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물질
제2조	수입하기 전에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위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입신선식물	•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되는 나무 종자 • 신선 과일 및 구근(球根) • 잔디와 잔디 종자류 • 식물 보호 분야에서 사용 시 유익한 생물 • 베트남 식물검역대상으로 적발된 수입 식물 • 식물 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해 식물검역대상에 동반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 식물 검역을 받는 물질
제3조	위험성 분석을 위한 검역의 면제 대상	• 과학연구에 제공되는 농작물 종류 • 과학연구에 제공되는 유익한 생물 • 식물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한 기타의 경우 • 위의 세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규정에 따른 수입식물검역과 식물검역이행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에 진행하는 식물검역대상 물질의 위험성 분석과정에 관한 시행규칙(농업농촌개발부, 시행규칙, No. 36/2014/TT-BNNPTNT, 공표일 2014/10/31, 발효일 2015/01/01)

조	주제	내용
제1조	범위 및 적용 대상	· 베트남으로 수입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식물검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보호국은 진행된 위험성 분석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 여부를 평가 및 결정함
제5조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 단계	·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 단계는 위험성 분석과정의 착수, 위험성 분석 과정 수행 결과의 재검토, 위험성 내용 평가, 위험성 관리로 나뉨 ·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 ① 병충해 위험성 분석 수행에 착수 ② 해를 끼치는 생물이 유입,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식물검역대상을 확인하거나 식물검역대상에 속하는 위해생물을 확인하는 경우 파급로 차단을 위한 위험성 분석을 시작 ③ 위해생물종으로부터 위험성 분석을 시작
제6조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 수행 결과의 재검토	· 병충해 위험성 분석 수행 결과를 검토하고 만약 위험성 분석에 관한 충분한 사전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인용해야 함 ·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이미 수행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상품의 실상을 검토
제7~8조	위험성 내용 평가	· 베트남으로 수입된 식물검역대상에서 발견된 위해생물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입된 상품에서 위해생물이 발견된 경우 관련 수치의 총합계를 산정해야 함 · 지리적 분포, 생물학적 특징, 위해 방식, 파급로, 적용되고 있는 위해생물의 관리방안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위해생물의 등급을 나눔 · 수출국에서의 분포 여부, 위험성 분석을 통한 물질 추적 가능 여부, 식물검역대상이 될 가능성 여부의 지표를 통해 식물검역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생물을 확정함 · 숙주와 기후 관련 위해생물 간의 관계, 숙주 영향력, 발산 가능성, 경제적 파장, 환경적 파장의 요소를 기준으로 유입효과를 평가함 · 수입하여 위험성 분석을 하는 매년의 물질량, 처리 후 위해생물의 생존 가능성, 운송과정 중 위해생물의 생존 가능성, 국경 관문에서 위해생물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 위해생물의 생산에 적합한 숙주 등의 기준으로 유입 가능성을 평가함 · 위해수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위해생물에 대한 식물검역방안을 요구. 위해수준은 낮은 위기, 중간 위기, 높은 위기의 3단계로 나뉘며, 낮은 위기의 경우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중간 위기의 경우 구체적인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위기의 경우 구체적인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해야 함

조	주제	내용
제9조	병충해 위험성 관리	· 수출국이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에 대한 구체적 식물 검역방안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베트남으로 수입 시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의 수출에 관하여 수출국과 협력함 · 병충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질의 수입금지,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의 요구, 수출국에서의 검사, 수출국에의 식물검역처리방안 요구,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이 위해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도록 요구, 국경 관문에서의 검사 및 처리, 수입 후 식물검역 등이 있음 · 병충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작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경제, 환경, 사회, 실현 가능성, 적응종인 규정과의 부합 여부, 신규 방안의 적용에 필요한 시간 등의 지표에 의해 이뤄짐 ·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 관련 수입식물 검역을 위해 구체적 식물검역대상에 부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함 ·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위험성 분석보고 초안을 작성함 · 위험성 분석보고를 완료하고 수입식물검역을 요구함

- 수산물 및 수산제품 검역 절차 시행규칙(농업농촌개발부, 시행규칙, 06/2010/TT-BNNPTNT, 공표발효일 2010/02/02)

조	주제	내용
16조	수입 수산물 검역 등록	· 수산물 및 수산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베트남 수의국(Dept. of Animal Health)에 수입검역 등록을 해야 함 · 수입검역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할 수 있음 · 베트남 수의국은 등록 서류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유효한 수산물 및 수산제품 검역기관을 소개해야 함 · 검역기관은 신청 서류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검역장소와 시간을 통보해야 함
제16조	수입검역 등록 제출 서류	· 검역 등록 신청서 · 수산제품을 생산한 시설의 HACCP인증서(혹은 그와 동등한 것) · 공증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처음 등록할 때만) · 기타 관련된 문서(요청에 따라)
제17조	검역기관의 검역절차	· 수입 검역 서류 확인 · 수입 상품의 실제 상태 확인. 수입 상품의 수량, 무게, 크기 포장 및 라벨링이 실제 서류와 일치한지 확인 · 위생상태 검사

- 위생 및 안전성 감사가 의무화된 HS코드별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보건부, 결정문, 818/QD-BYT, 공표발효일 2007/03/05)
- 다음 13개 품목은 수입검역이 필요함

- 고기와 어류의 조제품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커피, 차, 후추
- 야채, 과일로 만든 조제품
- 조미료
- 음료, 알코올 음료, 식초
- 식품포장재
- 기능성식품, 건강보호상품
- 식품 첨가물
- 식물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의 행정위반처분(정부, 시행령, No. 31/2016/ND-CP, 공포일 2016/05/06, 발효일 2016/06/25)

조	주제	내용
제1조	적용 범위	• 식물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의 행정위반처분 시행령은 위반 행위, 처벌형식 및 수준,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극복 방안, 식물 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문서의 작성과 처분 심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조	적용 대상	• 베트남 영토에서 식물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관련 행정위반 행위를 한 개인, 단체는 행정 위반 처분 대상에 해당함
제3조	행정위반처분의 시효	• 식물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관련 행정위반처분의 시효는 1년으로 함. 단, 농작물류 관련 지식재산권, 농작물 종자의 생산·수출·수입·사업, 식물보호약품, 식물, 식물상품의 경우에는 행정위반처분의 시효를 2년으로 함
제4조	처분의 형태	• 식물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 관련 행정위반행위를 한 개인, 단체는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음
제2장	과태료 수준	• 식물보호 및 검역, 농작물 종자 분야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개인은 최대 5천만 동, 단체는 최대 1억 동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법률 규정에 따른 식물보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식물보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 동에서 50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됨 •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의 수입, 수출, 국경통과 전에 식물검역신고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1백만 동에서 2백만 동의 과태료가 부과됨

- 식품안전에 관한 행정위반처벌규정(정부, 시행령, No. 115/2018/ND-CP, 공표일 2018/09/04, 발효일 2018/10/20)

- 식품안전 규정 내용

- 식품안전 규정의 적용 범위는 식품 이외에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조리도구, 포장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까지 그 대상을 포함함
- 규정은 단계별 징수를 내용으로 삼고 있음
- 벌금의 항목당 2개 이상의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적용됨

- 19조. 수입식품 식품안전보장조건에 대한 규정위반

벌금 (VND)	내용
30,000,000~ 40,000,000VND	·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용구, 포장재료,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에 대한 국가검사 미시행
40,000,000~ 60,000,000VND	① 수입식품등록증(자가등록증 포함), 수입식품등록 접수증, 수입요구조건달성 식품 인증결과 통보서, 식품안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조작 또는 말소 ② 검사를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함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제품을 일반검사를 받기 위해 수입품목과 출하량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서류를 사용 ③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관 전 수입요구조건달성 식품인증결과 통보서가 필요한 식품(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조리기구, 포장재료,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용기 포함)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시장에 유통
60,000,000~ 80,000,000VND	· 건강보호식품이 식품등록증에 표기된 효과에 품질이 미치지 못함
80,000,000~ 100,000,000VND	· 수출용 식품으로 식품안전검사 비대상 제품이 국내로 재수입되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검사 없이 시장에 유통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 9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식품안전 처벌규정 강화), 2018

- 20조. 수입식품 자가등록증 규정 위반

벌금 (VND)	내용
30,000,000~ 40,000,000VND	① 자가등록증에 따른 수입식품이 1개 이상의 식품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상품등록증 없이 라벨링이 된 경우 ② 자가등록증의 식품안전내용이 기준 또는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0,000,000~ 50,000,000VND	① 자가등록증이 필요한 수입식품이 자가등록증이 없는 경우 ② 정부기관을 통한 수입식품 등록이 필요한 제품이 자가등록증으로 수입식품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 9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식품안전 처벌규정 강화), 2018

- 21조 수입식품등록증

별금 (VND)	내용
30,000,000~ 40,000,000VND	① 등록증에 따른 수입식품이 1개 이상의 식품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상품 등록증 없이 라벨링이 된 경우 ② 수입식품이 등록증에 명시된 품질에 미치지 못하거나 등록접수증 없이 라벨링을 하였으나 모조품은 아닌 경우
40,000,000~ 50,000,000VND	· 상품등록을 해야 하는 수입식품이 이를 하지 않거나, 수입식품등록을 해야 하는 식품이 식품등록 접수증이 없는 경우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 9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식품안전 처벌규정 강화), 2018

- 22조. 수입식품 식품안전보장에 관한 기타 규정 위반

별금 (VND)	내용
40,000,000~ 50,000,000VND	① 수입식품의 식중독으로 1~4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금지된 화학물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의 사용 또는 사용가능목록 외의 물질을 사용한 경우로, 해당 상품의 가치가 10,000,000VND 이하 또는 이로 인한 부담이윤이 5,000,000VND 이하인 경우 ③ 사용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화학물질, 식품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의 사용 또는 베트남에서 유통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경우로 해당 상품의 가치가 50,000,000VND 이하 또는 이로 인한 부담이윤이 20,000,000VND 이하인 경우
50,000,000~ 70,000,000VND	·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가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식품에 사용불가한 약품이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80,000,000~ 100,000,000VND	① 수입식품이 식품안전 관련 기술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5명 이상의 식중독을 야기하였으나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경우 ② 사용이 금지된 식품화학첨가제 또는 식품가공보조제 사용 또는 사용허가된 목록 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10,000,000VND 이상이거나 부담이윤이 5,000,000VND 이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경우 ③ 사용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식품화학첨가제 또는 식품가공보조제 사용 또는 베트남에서 유통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경우로, 상품 가치가 50,000,000VND 이상이거나 부담이윤이 20,000,000VND 이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경우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 9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식품안전 처벌규정 강화), 2018

- 24조. 수입식품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검사와 식품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벌금 (VND)	내용
15,000,000~ 20,000,000VND	① 국가지정검사기관에 허위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②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00,000~ 30,000,000VND	① 식품검사가 검사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② 수입식품 관련 국가검사기관이 검사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00,000~ 40,000,000VND	식품검사에 사용되는 식품샘플을 위조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경우
40,000,000~ 60,000,000VND	① 식품검사 분석결과 인증서, 수입조건달성 식품인증결과 통보서, 또는 식품검사 또는 국가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조작 또는 말소 ② 식품안전 분석실험 또는 국가검사를 고의적으로 부정하게 한 경우 ③ 식품안전에 대한 분석실험결과 또는 국가검사결과를 허위로 제출 ④ 분석실험 또는 국가검사를 실행하지 않고 결과분석인증서 및 국가검사결과 분석 실험결과표를 발급하였으나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는 경우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년 9월 베트남 수입제도 모니터링 (식품안전 처벌규정 강화), 2018

- 수출입 절차 간소화(총리, 결정문, No. 2026/QD-TTg, 공표발효일 2015/11/17)
- 수출입 검사 절차는, 2015년 11월 17일부 2026/QD-TTg에 따라 전산화 및 간소화됐음. 해당 법령은 ‘수출입물품 검사의 효율 증대’를 위한 것으로, 통관 시간 및 비용의 절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출입신고 증빙서류로 수출입 검사 결과가 제출돼야 하는 경우 팩스 또는 사진파일 인정(재무부 및 과학기술부, 시행령, No. 110/2016/TTLT-BTC-BKHCN, 공표일 2016/06/30, 발효일 2016/09/01)
 - 유통 이외 목적으로 수입한 설비에 대한 라벨링 의무 및 에너지효율 검사 기한 폐지
 - 가공식품 수출 시 식품안전검사 면제
 - 수출입 검사 대상 일부 품목 HS코드별 공표

다. 관련제도

- 수입 농수산물식품 검역은 무작위로 진행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입업체가 부담함

〈식품첨가물 기준치〉

유형	성분	기준
식품첨가물	아스파탐(Aspartame)	600.0mg/kg
	벤조산(Benzoic acid)	0.01mg/kg
	인산골(bone phosphate)	300.0mg/kg
	칼슘 벤조에이트(Calcium Benzoate)	1,000.0mg/kg
	디멘틸 디카보네이트(Dimethyl Dicarbonate)	250.0mg/kg
	네오탐(Neotame)	50.0mg/kg
	오르토인산(Orthophosphoric Acid)	300.0mg/kg
	칼륨 벤조에이트(Potassium Benzoate)	1,000.0mg/kg
	사카린 K(Saccharin k)	200mg/kg
	나트륨 벤조에이트(Sodium Benzoate)	1,000.0mg/kg
	소르빈산(Sorbic acid)	500mg/kg
	수크랄로스(Sucralose)	300mg/kg
	수크로 글리세리드(Sucroglycerides)	1000mg/kg
	리보플라빈(Riboflavin)	1,000mg/kg
	선셋 옐로우 FCF(Sunset yellow FCF)	300mg/kg
	카민(Carmine)	500mg/kg
	에리트로신(Erythrosin)	30mg/kg
	알루라 레드 AC(Allura red AC)	25mg/kg
	패스트 그린 FCF(Fast green FCF)	100mg/kg
	카로티노이드(Carotenoid)	100mg/kg
	카로틴(Carotene)	5,000mg/kg
	아질산염(Nitrite)	80mg/kg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500mg/kg
	아스코르브 나트륨(Natri ascorbate)	500mg/kg
	갈산프로필(Propyl gallate)	200mg/kg

유형	성분	기준
	에리스로브산(Acid erythorbic)	500mg/kg
	에리스로빈 나트륨(Natri erythorbate)	500mg/kg
	삼차부틸하이드로퀴논(Tert-butylhydroquinon)	100mg/kg
	부틸히드록시아니솔(Butyl hydroxy anisol)	200mg/kg
	부틸히드록시톨루엔(Butyl hydroxy toluen)	100mg/kg
	인산염(Phosphate)	2,200mg/kg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5,000mg/kg
	수크로글리제리드(Sucroglyxerid)	5,000mg/kg
	글루코노델타락톤(Glucono delta-Lactone)	3,000mg/kg
	사카린(Saccharin)	500mg/kg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coside)	100mg/kg
병원성균	아플라톡신(Aflatoxin)	5.0g/kg
	리스테리아균(Listeria)	2.5mg/kg
	대장균(E.coli)	기준없음
중금속	아연(Zinc, Zn)	40.0mg/kg
	구리(Cu)	30.0mg/kg
방사능 물질	세슘 137(Cesium 137)	1,000.0Bq/kg
	스트론튬 90(90Sr)	100.0Bq/kg
	Co-60 감마선(Cobalt 60)	1,000.0Bq/kg

* 출처 : 식품첨가물 관리안내 종합본(보건부, 시행령, No. 02/VBHN-BYT, 공표발효일 2015/06/15)

2. 품목별 검역절차

가. 농산물

- 수출 전 검역 대상 검역 절차(병충해 위험성 분석)
 -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전 위험성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식물검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 분석과정을 거쳐야 하며 식물보호국은 진행된 위험성 분석과정을 확인하고 위험성 여부를 평가 및 결정함

- 수입 전 식물검역검사 대상(병충해 위험성 분석)
 - 나무 및 재배에 사용되는 나무 종자
 - 신선 과일 및 구근(球根)
 - 잔디 및 잔디 종자류
 - 식물 보호 분야에서 사용 시 유익한 생물
 - 베트남 식물검역대상으로 적발된 수입 식물
 - 식물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해 식물검역대상에 동반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 식물 검역을 받는 물질
-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의 착수
 - 병충해 위험성 분석 수행에 착수함
 - 해를 끼치는 생물이 유입,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식물검역대상을 확인하거나 식물검역대상에 속하는 위해 생물을 확인하는 경우 파급로 차단을 위한 위험성 분석을 시작함.
 - 위해 생물 종으로부터 위험성 분석을 시작함
- 병충해 위험성 분석과정 수행 결과의 재검토
 - 병충해 위험성 분석 수행 결과를 검토하고 만약 위험성 분석에 관한 충분한 사전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인용함
 -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이미 수행한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상품의 실상을 검토함
- 위험성 내용 평가
 - 베트남으로 수입된 식물검역대상에서 발견된 위해 생물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입된 상품에서 위해 생물이 발견된 경우 관련 수치의 총합계를 산정함
 - 지리적 분포, 생물학적 특징, 위해 방식, 파급로, 적용되고 있는 위해 생물의 관리방안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기준으로 위해 생물의 등급을 나눔
 - 수출국에서의 분포 여부, 위험성 분석을 통한 물질 추적 가능 여부, 식물 검역대상이 될 가능성 여부의 지표를 통해 식물검역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위해 생물을 확정함
 - 숙주와 기후 관련 위해 생물 간의 관계, 숙주 영향력, 발산 가능성, 경제적 파장, 환경적 파장의 요소를 기준으로 유입효과를 평가함
 - 수입하여 위험성 분석을 하는 매년의 물질량, 처리 후 위해 생물의 생존 가능성, 운송과정 중의 위해 생물의 생존 가능성, 국경 관문에서 위해 생물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 위해 생물의 생산에 적합한 숙주 등의 기준으로 유입 가능성을 평가함

- 위해 수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위해 생물에 대한 식물검역방안을 요구함
 위해 수준은 낮은 위기, 중간 위기, 높은 위기의 3단계로 나뉘며, 낮은 위기의 경우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고 중간 위기의 경우 구체적인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높은 위기의 경우 구체적이고 빈틈 없는 식물검역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병충해 위험성 관리
 - 수출국이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식물검역 방안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베트남으로 수입 시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의 수출에 관하여 수출국과 협력함
 - 병충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질의 수입금지, 수입식물 검역 허가서의 요구, 수출국에서의 검사, 수출국에의 식물검역처리방안 요구,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이 위해 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되도록 요구, 국경 관문에서의 검사 및 처리, 수입 후 식물검역 등이 있음
 - 병충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작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경제, 환경, 사회, 실현 가능성, 적용 중인 규정과의 부합 여부, 신규 방안의 적용에 필요한 시간 등의 지표에 의해 이루어짐
 - 병충해 위험성 분석을 해야 하는 물질 관련 수입식물 검역을 위해 구체적인 식물검역대상에 부합하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함
 -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아 위험성 분석보고 초안을 작성함
 - 위험성 분석보고를 완료하고 수입식물검역을 요구함
- 통관 시 검역 절차
 - 식물검역검사 대상
 - 나무와 나무의 살아있는 부분
 - 나무 상품
 - 버섯류
 - 누에고치, 연지벌레
 - 과학연구와 생물학의 감정, 교육, 방지 작업에 제공되는 곤충, 거미, 버섯, 병균, 선충,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로이드 및 잡초
 - 식물검역대상의 보관, 운송수단
 - 식물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해 식물검역대상에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물질

- 식물검역검사 면제 대상
 - 과학연구에 제공되는 농작물 종류
 - 과학연구에 제공되는 유익한 생물
 - 식물보호국의 확인과 농업농촌개발부의 결정에 의한 기타의 경우
 - 위의 세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규정에 따른 수입식물검역과 식물검역이행 허가증이 있어야 함
- 식물검역기관에 서류 제출
 - 검역 대상 물질의 수출입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식물검역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 식물검역신청서¹⁸⁾
 - 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 국경 통과 및 내륙운송 식물에 대한 검역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식물 검역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
- 검역 및 검역 증명서 발급
 - 식물검역기관은 서류를 접수하고 그 서류의 적합성을 검사함
 - 서류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서류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함
 - 서류의 접수결과를 토대로 식물검역기관은 장소를 정하고 물질을 검사할 공무원을 배치함
 - 식물검역기관은 전염되지 않은 식물검역대상, 베트남 필수 조사대상, 또는 위해식물의 검역을 시작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수입, 국경 통과 및 내륙운송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함
 - 전문기술 관련 요청이 있거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발급이 2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물검역기관은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사유를 통보하거나 문서로 회신해야 함

나. 축산물

- 축산물 통관절차
 - 수출 전 베트남 수의국에 검역수속을 등록

18) 〈부록8〉 참조

- 축산물을 수입할 때, 수입업체는 베트남 수의국(Dept. of Animal Health)에 검역수속을 등록해야 함
- 베트남 정부는 수출업체가 속한 상대국가에수 수입 가능 품목인지를 확인
- 수출업체가 베트남 농·임·수산물질관리국(NAFIQAD, National Agro-Forestry-Fisheries Quality Assurance Department)에서 발표한 수출 가능 업체목록에 포함되는지를 조회함
- 수의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의 권고와 세계 유행병 상황을 검토해야 함
- 전염병에서 안전할 경우, 수출국과 베트남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수출공장은 농·임·수산물질관리국의 공인을 받고, 수의국은 수출업체에 검역수속을 안내함
- 물품이 베트남 국경에 도착
 - 물품이 국경에 도착 시 수출회사는 국경 수의센터에 검역신청을 해야 함
 - 국경 수의센터는 서류를 확인함(수의국 검역수속 안내, 수출국의 수의기관 검역인증서 등)
 - 서류충족 시 검역직원이 항구로 나와 물품 상태를 확인함
- 확인사항
 - 상품의 사용기한, 상품포장지에 표기된 공장코드와 수출국 수의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인증서에 표기된 코드의 일치여부, 수의국의 안내서 코드, 농·임·수산물질관리국에서 공포한 코드인지 등을 확인
 - 확인사항이 맞으면 수속을 계속하나, 다르면 해결보고서를 작성
- 검역인증서 발급
 - 각 수치의 대조확인이 끝나면, 관문수의기관은 검사물품을 입수함
 - 각 검역기준 달성 시 검역인증서를 발급함
 - 검역증명서는 통관을 위한 것임
- 기타 참고사항
 - 이때 물건은 창고로 이송할 수 있음
 - 각 도에 설치된 창고를 통해 들어간 물건에 대해 관문 수의기관은 해당 도의 수의지국에 통보함
 - 물품은 이후 지방 수의지국의 책임 아래의 조사대상이 됨

다. 수산물

- 수산물 및 수산제품 검역 절차
 - 수출 전 베트남 수의국에 검역수속을 등록
 - 수산물 및 수산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체는 베트남 수의국(Dept. of Animal Health)에 검역수속을 등록해야 함
 - 베트남 수의국은 등록 서류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유효한 수산물 및 수산제품 검역기관을 소개하고 안내해야 함
 - 검역 절차
 - 검역기관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검역장소와 시간을 통보해야 함
 - 검역기관은 서류와 물품을 확인하고 검역함
 - 수의국에 검역 수속을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검역 등록 신청서
 - 수산제품을 생산한 시설의 HACCP인증서(혹은 그와 동등한 것)
 - 공증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처음 등록 시만)
 - 기타 관련된 문서(요청 시만)

라. 가공식품

- 수출 전 안전인증제도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수입 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통달 28/2013/TT-BCT’에 따라 식품안전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20일부터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안전 식품인증 취득이 의무화됨
 - 대상품목 : 알코올, 맥주, 청량음료수, 유제품, 식물성 기름, 밀가루제품, 전분 제품, 과자, 빵, 잼 및 이 제품들의 포장재를 포함한 수입제품 및 화물
 - 이들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함
 - 수입식품 검사신청서
 - 보건부 또는 보건부 위탁기관이 발행한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적합의 수리서(受理書) 또는 규정적합 인정서의 공증 첨부 사본
 - 화물수입계약서 및 포장명세서의 공증첨부 사본
 - 수입자에 의한 증명이 첨부된 선하증권(B/L) 및 인보이스 사본
 - 베트남 식품안전인증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서류 작성 및 베트남 식품의약국 제출

- 식품 품질 검역
- 위생 안전 검역
- 품질 증명서 및 서류검사서 제출
- 인증취득
- 통관 시 가공식품 검역 절차
 - 검역 대상
 - 고기 및 어류의 조제품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커피, 차, 후추
 - 야채, 과일로 만든 조제품
 - 조미료
 - 음료, 알코올 음료, 식초
 - 식품포장재
 - 기능성식품, 건강보호상품
 - 식품 첨가물
 - 검역절차
 - 검사기관(보건부 또는 공공의료위생원)에 서류를 제출(상품도착 5일 전까지)
 - 검사기관은 서류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검사일정을 통지
 - 검사를 실시(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
 - 샘플을 분석하고, 기초기준과 베트남기준(TCVN)을 비교 후, 결과를 통지
 - 필요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3. 제출서류

가. 검역등록 시 제출서류

- 농산물 구비서류
 - 식물검역신청서¹⁹⁾
 - 수출국 관할 식물검역기관에 의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 국경 통과 및 내륙운송 식물에 대한 검역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식물 검역 허가증 원본 또는 사본
 - 검역검사등록서
- 축산물 구비서류
 - 검역 등록 신청서
 - 축산제품을 생산한 시설의 HACCP인증서(혹은 그와 동등한 것)
 - 공증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처음 등록 시만)
 - 기타 관련된 문서(요청 시만)
- 수산물
 - 검역 등록 신청서
 - 수산제품을 생산한 시설의 HACCP인증서(혹은 그와 동등한 것)
 - 공증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처음 등록 시만)
 - 기타 관련된 문서(요청 시만)
- 가공식품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19) 〈부록8〉 참조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법률체계

- 표시 의무화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규에 따라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단, 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 식품 및 가공 식품은 예외)
 -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정부, 시행령, No. 43/2017/ND-CP)
 -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의 일부 조문의 이행에 관한 통지(과학기술부, 시행규칙, No. 9/2007/TT-BKHCN,)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시행령(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
-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정부, 시행령, No. 43/2017/ND-CP, 공포일 2017/04/14, 발효일 2017/06/01)

조	주제	내용
제1조	적용 범위	·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수입 상품의 라벨에 대하여 관리하고, 라벨의 내용 및 작성법에 대하여 규정함 · 다음의 물품은 이 시행령의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① 부동산 ②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 상품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 국경통과 물품, 재수출 물품, 환적 물품 ③ 출입국자의 수하물, 유동자산 ④ 경매로 판매하기 위해 몰수된 물품 ⑤ 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신선식품, 날식품, 가공식품 ⑥ 포장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연료, 원료(농산, 수산, 광산), 건축자재(벽돌, 기와, 석회, 모래, 돌, 자갈, 시멘트, 황토, 모르타르, 콘크리트 혼합물), 폐기물(생산, 사업 중 발생하는 것) ⑦ 포장하지 않고 콘테이너, 레미콘에 담긴 유류, 액화가스(LPG, CNG, LNG), 시멘트 ⑧ 중고품 ⑨ 베트남에서 소비되지 않는 수출품 ⑩ 안보, 국방 영역에 해당하는 물품, 방사성 물질, 재난, 질병 극복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물품, 철도, 수로, 항로의 교통수단
제2조	적용대상	·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 상품을 수입하는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됨

조	주제	내용
제4조	라벨링 위치	· 상품의 라벨은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부착해야 하고, 라벨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상품의 일부가 분리되지 않아야 함 · 외부 포장을 열 수 없거나 열어서는 안되는 경우에는 외부 포장면 위에 라벨이 위치해야 하며 그 라벨에는 필수 내용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4조	라벨링 크기	· 상품의 라벨 기재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는 라벨의 크기, 라벨에 표현되는 글자와 숫자의 크기를 자체적으로 확인 및 기재해야 하며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① 상품의 라벨링 필수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② 글자와 숫자의 크기가 도량형 단위로 측정되어 표현되는 경우 도량형법(04/2011/QH13) 규정에 따라야 함 ③ 상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포장된 식품의 가공 보조 물질인 경우 라벨에 기재되는 필수 내용의 글자 높이는 1.2mm보다 낮아서는 안 됨. 라벨을 기재하는 상품의 면이 80cm²(봉합 부분을 제외한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도 글자 높이는 0.9mm보다 작아서는 안 됨
제6조	라벨링 색상	· 상품의 라벨에 기재된 문자, 숫자, 그림, 사진, 부호, 기호의 색은 뚜렷해야 한다. 규정에 따른 필수 내용인 문자, 숫자의 색은 상품의 라벨 배경색상과 대조되는 색이어야 함
제7조	라벨링 표기언어	· 상품 라벨의 필수 내용은 베트남어로 기재해야 함.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① 인체에 사용되는 약품의 베트남명이 없는 경우 그 약품의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② 화학 공식, 화합물질의 구조식, 약품, 약재, 약품 성분이 포함된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③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 없거나 베트남어로 번역 후 의미 전달이 불가능한 상품의 성분, 성분별 중량의 국제적 명칭 또는 과학명 ④ 상품의 생산에 관련된 외국 기업의 명칭과 주소 · 베트남 국내에서 생산 및 유통하는 상품의 경우 라벨의 필수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라벨에 외국어로 표시가 가능함. 단, 외국어로 표시하는 내용은 베트남어로 표시할 때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글자의 크기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내용의 글자 크기보다 더 커서는 안 됨 ·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 중 라벨에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아직 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도록 별도의 라벨을 추가해야 함. 또한, 본래의 라벨 또한 그대로 유지해야 함. 베트남어로 표시하는 내용은 본래의 라벨링에 상응하는 내용이어야 함
제9조	상품의 라벨 기재 책임	· 상품의 라벨 및 부가 라벨의 내용은 진실성, 명확성,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①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단체가 해당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을 짐. 상품의 라벨 기재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가 다른 개인, 단체에게 라벨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요청을 한 개인, 단체에게 여전히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 ② 수출품이 수출되지 않거나 수출 후 반품되어 베트남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그 상품을 유통하는 개인, 단체에게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 ③ 수입품에 부착된 라벨이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제품을 수입하는 개인, 단체에게 상품의 라벨 기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보조 라벨(Supplementary label)
 - 베트남으로 수입된 상품 중 라벨에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아직 표시되지 않거나 충분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필수 내용이 나타나도록 별도의 라벨을 추가해야 하며, 본래의 라벨 또한 그대로 유지해야 함. 베트남어로 표시하는 내용은 본래의 라벨링에 상응하는 내용이어야 함
-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처리(정부, 시행령, No. 119/2017/ND-CP, 공표일 2017/11/01, 발효일 2017/12/15)
 - 상품 라벨링에 대한 행정 위반 처분권
 - 인민 경찰 기관, 항구에 설치되는 세관사무소, 시장관리 및 상품의 품질 관리 전문 검찰관 및 기타 기관은 부여된 직능, 책임, 권한 범위 내에서 상품의 라벨에 대한 위반 행위 탐지 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권한이 있음
 - 생산, 유통 및 수출입하는 개인, 단체에 대한 위반 처리
 - 상품의 라벨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개인, 단체는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상품의 표준, 도량 및 품질 영역의 행정 위반 처분에 관한 시행령 (119/2017/ND-CP)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규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함
 - 국가 관리기관 소속인 개인과 단체에 대한 위반 처리
 -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여 상품의 라벨에 관련한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행정 위반 처분이나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함
- 라벨 표기 면제(시행령, No. 15/2018/ND-CP, 공표일 2018/02/02, 발효일 2018/02/02)
 - 2018년 2월 2일에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시행령(15/2018/ND-CP)이 새로 개정되면서 라벨 관련 신규 면제 사항이 추가됨. 신규 면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상품 표기(라벨링) 관련 신규 면제 내용〉

내용	대상
보조 라벨 부착 면제	· 다음 상품에 대해서는 보조 라벨 부착이 면제됨 · 개인 소비, 선물 용도로 베트남 입국자가 반입한,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상품 ·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에 의한 수입품 ·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 창고행 상품 · 테스트 및 연구용 샘플 ·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상품 · 수출품 생산·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
일부 표기 사항 표기 면제	· 최대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소형 포장물로서, 외부 포장지에 구성 성분, 사용 기한, 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표기돼 있을 시 해당 사항 표기가 면제됨 · 단, 향신료와 식품은 제외
생산일 표기 면제	·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생산일 표기가 면제됨

주 : 보조 라벨(Supplementary label)은 외국어로 표기된 기존 라벨 상의 내용 중 필수 사항을 현지어로 번역함은 물론 베트남 현행 법규에 따른 필수 표기사항을 보완한 라벨을 의미

* 출처 : KOTRA 하노이 무역관, 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장벽 대거 완화, 2018

2.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 베트남 라벨링 기본표시사항

구 분	필수 / 선택	샘 플 사 진
1) 상품명	필수	
2)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필수	
3) 상품의 원산지	필수	
4) 중량	일부 유형 필수	
5) 제조일자	일부 유형 필수	
6) 유통기한	일부 유형 필수	
7)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있는 경우에만)	일부 유형 필수	
8)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및 영양가치	일부 유형 필수	
9) 사용 및 보관 안내	일부 유형 필수	

○ 상품의 유형에 따른 라벨링 필수표시사항

유형	라벨링 필수 표시 사항
곡물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있는 경우에 한함)
식품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사용 및 보관 안내
음료수 (술 제외)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사용 및 보관 안내
술	· 중량 · 에탄올 함량 · 유통기한(있는 경우에 한함) · 보관 안내(와인의 경우) · 주의사항(있는 경우에 한함) · 생산로트 인식코드(있는 경우에 한함)
담배	· 중량 · 제조일자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유통기한 · 일련번호, 바코드
식품 첨가물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별 중량 · 사용 및 보관 안내 · “식품첨가물(Phụ gia thực phẩm)” 문구 기재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있는 경우에 한함)

유형	라벨링 필수 표시 사항
사료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별 중량 · 사용 및 보관 안내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있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조식품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성분별 중량 및 영양 가치 · 사용 및 보관 안내 · 위험에 관한 권고 사항 표시 · “건강보조식품(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문구 기재 · “이 식품은 약이 아니며, 치료약을 대체하는 효능이 없습니다. (Thực phẩm này không phải là thuốc, không có tác dụng thay thế thuốc chữa bệnh.)” 문구 기재
방사선 조사식품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방사선 조사 식품(Thực phẩm đã qua chiếu xạ)” 문구 기재
유전자 변형 식품	· 중량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성분 또는 성분별 중량 · 운송, 저장, 보관, 사용 시 건강, 재산, 환경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사항 · 유전자 변형 원료 성분명 옆에 “유전자 변형 식품(Thực phẩm biến đổi gen)” 또는 “전자 변형(biến đổi gen)” 문구를 함량과 함께 기재
미세영양소	· 중량 · 제조일자 · 성분 · 사용 및 보관 안내 · “식품에 사용(Dùng cho thực phẩm)” 문구 기재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홍콩, 대만, 베트남), 2017

나. 표기방식

○ 베트남 라벨링 상세 표시사항

- 표기언어 및 글자 크기

- 베트남어를 사용해야 함.(외국어를 병기할 경우, 베트남어로 기재되는 문자 크기보다 작아야 함)

- 상품명 및 설명

- 상품명은 제품의 일반 명칭으로 실제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함
- 상품의 라벨에 표기되는 상품명은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 상품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며 다른 문자보다 3배 이상 크게 표시하여야 함
- 상품명은 상품 생산 주체의 기관 혹은 개인이 직접 지은 이름이어야 함. 해당 상품의 본질, 효능, 성분에 관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명은 사용할 수 없음
- 성분명이 상품명으로 사용되거나 상품명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그 성분의 중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단, 색상, 향,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 첨가물을 상품명에 포함되는 경우 그 첨가물의 중량은 표기하지 않아도 됨

- 상품에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 상품의 라벨에 기재되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는 약자로 쓸 수 없음
-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생산시설의 주소를 기재해야 함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그 상품을 수입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
- 외국 상인이 베트남으로 수입한 상품을 직영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개인, 단체의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을 생산한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그 상품을 판매 대리하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
- 특정 개인, 단체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업 허가를 받은 상품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함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명칭과 주소도 기재해야 함
- 개인(단체)가 조립, 포장, 봉인하는 경우 그 개인(단체)의 허락을 받고, 명칭과 주소 및 기타 내용을 라벨에 기재해야 함

- 상품의 중량

- 측정단위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베트남 도량형법에 따라 그 중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상표에 기재될 수 있는 제품 도량형의 경우 다음과 같음

구분	제품 도량형
질량	킬로그램(kg), 그램(g), 밀리그램 (mg), 마이크로그램(μ g)
부피	리터(L), 밀리리터(ml), 마이크로리터(μ l)
용적(고체)	세제곱미터(m^3), 세제곱데시미터(dm^3), 세제곱 센티미터(cm^3), 세제곱 밀리미터(mm^3)
면적	제곱미터(m^2), 제곱데시미터(dm^2), 제곱센티미터(cm^2), 제곱밀리미터(mm^2)
길이	미터(m), 데시미터(dm), 센티미터(cm), 밀리미터(mm)

- 수량으로 중량을 측정하는 상품은 그 수량을 자연수로 표기하여야 함
 - 다수의 상품 단위가 함께 단일 포장된 상품의 경우 개별 상품 단위의 중량과 단일 포장된 상품의 총중량을 표기하여야 함
 - 상품명과 함께 자연 원료 추출물, 물질명을 기재하는 경우 그 추출물, 물질의 성분별 중량을 기재하거나 해당 추출물, 물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의 질량을 기재하여야 함
 - 고체 성분은 순중량, 액체 제품은 순중량이 아닌 면적을 기재하여야 함
 - 상품의 중량을 기재하는 방법은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의 부록 II에 규정되어 있음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제조일자, 유통기한 표기방식
 - 1)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은 양력을 기준으로 하며 일, 월, 년의 순서로 기재해야 함. 다른 순서로 기재 시 베트남어로 주석을 덧붙여야 함(예시 : 2017년 11월 17일 - năm 2017 tháng 11 ngày 17)
 - 2) 일, 월,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표시하고 년을 표시하는 숫자는 네 자릿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일, 월, 년을 나타내는 숫자는 같은 줄에 표기하여야 함
 - 3) 제조일자를 제조월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양력을 기준으로 월, 년의 순서로 기재해야 함
 - 4) 제조일자를 제조년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 양력을 기준으로 년을 나타내는 숫자 네 자릿수를 표기하여야 함

- 5) 라벨에 “제조일자”, “유통기한”으로 기재하거나 “NSX”, “HSD” 또는 “HD”의 약자 형태로 기재할 수 있음
- 6) 상품의 분류에 따라 유통기한(Hạn sử dụng), 기한까지 유효(Sử dụng đến ngày) 혹은 기한 전까지 사용(Sử dụng tốt nhất trước ngày)과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함
 -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의 부록I 규정에 따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상품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의 시점으로 기재해야 하며 제조일자는 유통기한보다 일정 기간 이전의 시점으로 기재해야 함
 - 분배, 분할 포장, 혼입, 재포장하는 경우 그 분배, 분할 포장, 혼입, 재포장한 날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은 라벨에 원래 표시된 제조일자로부터 계산해야함.
 - 제조일자, 유통기한의 표기법은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부록 III의 항목 1에 규정되어 있음
 - 상품의 기타 기간에 관한 표기법은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부록 III의 항목 2에 규정되어 있음
- 상품의 원산지
 - 상품을 제조, 수입하는 개인, 단체는 자체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 원산지에 관한 법률 또는 베트남이 참여 또는 체결한 협정을 정확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에서 생산(sản xuất tại)” 또는 “~에서 제조(chế tạo tại)”, “생산국(nước sản xuất)”, “원산지(xuất xứ)” 또는 그 상품의 생산자명이 포함된 “~에 의한 생산(sản xuất bởi)”의 형식으로 기재해야 함
 - 상품의 생산 국가명 또는 지역명은 약자의 형태로 기재할 수 없음
- 성분, 성분별 중량 기재
 - 성분 기재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포함한 원료명과 변경된 원료 형태를 포함한 성분의 존재를 기재하는 것을 의미함
 - 성분별 중량 기재란, 성분별 중량과 함께 성분을 기재하는 것을 말함. 상품의 특성, 상태에도 불구하고 성분별 중량은 상품의 한 측정 단위인 성분의 질량 형식으로 표기하거나 질량/질량, 질량/체적, 체적/체적, 질량 백분율, 체적 백분율 비율 중 하나의 형식으로 기재해야 함

-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상품의 라벨에 성분명을 기재하는 경우 그 성분의 중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단, 색상, 향,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된 첨가물이 상품명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함
- 일부 상품류의 성분, 성분별 중량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 식품의 경우 질량이 큰 성분부터 작은 성분의 순서로 기재함
 - 2) 성분이 첨가물인 경우 첨가물 분류명, 첨가물의 이름 또는 국제번호제도 (INS) 코드 (있는 경우에 한함)를 기재해야 함. 첨가물이 향료, 감미료, 착색제인 경우 그 향료, 감미료, 착색제 분류명을 기재하고 물질명을 기재 하며(있는 경우에 한함) 그 물질명이 자연 물질인지 자연 유사물질인지 또는 합성 물질인지 인공 물질인지 여부도 추가 기재하여야 함
 - 3) 이 상품의 성분, 성분별 중량 기재 기준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는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 부록 IV에 규정되어 있음
- 라벨에 표시하는 기타 내용
 - 상품의 라벨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는 라벨에 일련번호, 바코드, 규격 표기, 기타 추가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품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라벨에 기재된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그 내용을 위조해서는 안 됨
 - 상품의 라벨은 주권 분쟁에 관련된 사진, 내용과 베트남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관계, 미풍양속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민감함 내용을 표현할 수 없음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간단히 포장한 상품, 식품첨가물, 화학 물질인 날개 판매 상품, 포장에 없는 상품의 경우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단체는 다음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함
 - 1) 상품명
 - 2) 유통기한
 - 3) 안전 경고
 - 4) 상품을 책임지는 개인, 단체의 명칭과 주소
 - 5) 사용 안내

다. 유의사항

- 기술적 변수와 허용 오차(있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 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할 책임이 있음

- 라벨에 표기하는 주의사항은 국제 규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글자, 사진, 기호의 형태로 기재할 수 있음
- 식품의 영양 가치를 기재하는 경우 개인, 단체는 그 식품의 영양 가치를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게 라벨에 표시 할 책임이 있음
- 사용량이 정해져 있고 지정목록에 포함된 방부제를 사용하는 특별한 종류에 해당하는 상품의 성분 또는 복합 성분 내 물질이 사람, 동물 및 환경에 자극 또는 해를 끼치는 경우 해당 성분에 포함된 물질명을 기재해야 함
- 방사선에 노출되었거나 유전자 변형기술이 적용된 상품 또는 상품의 성분은 법률의 규정과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 조약에 따라 기재해야 함
- 상품의 기술적 변수, 주의사항이 위의 기준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는 상품 라벨링에 관한 시행령(43/2017/ND-CP) 부록 V에 규정되어 있음

3. 라벨링 샘플

가. 라벨링 샘플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라 벨 링 사 진
품 명	베트남어로 제품명 표기	
성 분	함유량이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기재	
제조업체	제조업체의 이름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 기재	
수입 유통업체	수입 유통업체의 이름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기본 정보 기재	
중량	순중량	
유통기한	일, 월, 년 순으로 기재	

제 5 장

부록

부록1. 수입식품검사신청서

수입식품검사신청서(원문)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52/2015/TT-BYT ngày 21 tháng 12 năm 2015 của Bộ trưởng Bộ Y tế)

Tên Chủ hàng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GIẤY ĐĂNG KÝ KIỂM TRA THỰC PHẨM NHẬP KHẨU

Số/20..../ĐKNK

1.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chủ hàng;
2.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thương nhân chịu trách nhiệm về chất lượng hàng hóa;
3. Tê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ủa thương nhân xuất khẩu;
4. Số vận đơn (Bill of lading);
5. Danh sách hàng hóa (Packing list).
6. Số hóa đơn (Invoice);
7. Thời gian nhập khẩu dự kiến;
8. Cửa khẩu đi;
9. Cửa khẩu đến;
10. Thời gian kiểm tra;
11. Địa điểm kiểm tra;
12. Dự kiến tên cơ quan kiểm tra;
13. Thông tin chi tiết lô hàng

TT	Tên mặt hàng	Nhóm sản phẩm (Theo hồ sơ công bố)	Ký hiệu mã mặt hàng (nếu có)	Tên và địa chỉ nhà sản xuất	Số công bố	Số lượng	Khối lượng*	Giá trị	Phương thức kiểm tra	Số văn bản xác nhận phương thức kiểm tra**
(1)	(2)	(3)	(4)	(5)	(6)	(7)	(8)	(9)	(10)	(11)
Tổng (7,8,9)										

* Khối lượng khai báo là khối lượng tịnh

** Số văn bản xác nhận phương thức kiểm tra là số thông báo của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cho phép mặt hàng được kiểm tra theo phương thức giám sát hoặc số thông báo kết quả xác nhận thực phẩm không đạt yêu cầu nhập khẩu tại lần kiểm tra trước. Riêng trường hợp quy định tại điểm b Khoản 3 Điều 6 thì do cơ quan kiểm tra xác nhận và thông báo lại cho chủ hàng trước khi lấy mẫu kiểm tra.

Chủ hàng
(Ký tên đóng dấu)

Cơ quan kiểm tra nhà nước
(Ký tên đóng dấu)

Ngày tháng ... năm ...

Ngày tháng ... năm ...

수입식품검사신청서(국문)

(의약부 2015년 12월 21일 지침 52-2015-TT-BYT에 따라 공포함)

화주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수입식품검사신청서

NO...../20...../TBNK

1. 화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2. 물품의 품질을 책임지는 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3. 수출상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4. 선하증권 번호(Bill of lading) :
5.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6. 송장번호(Invoice) :
7. 예상 수입시간 :
8. 출발관문 :
9. 도착관문 :
10. 검사시간 :
11. 검사지점 :
12. 예상 검사기관명 :
13. 품목의 상세정보 :

번호	품목명	상품 그룹	품목 코드 기호	생산 자명, 주소	공포 번호	수량	부피	가치	검사 방식	검사 방식 확인 문서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계 (7,8,9)										

* 신고 시 무게는 순수 질량으로 신고할 것

** 검사방식이 확인된 문서번호'란 식품안전국이 실시한 검사에 따라 상품이 허가되었다는 통보 번호 혹은 이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수입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식품에 대한 확인 결과에 대한 통보 번호입니다. 6절 3항 b번에 규정된 각 경우에는 검사 샘플을 받기 전 검사 기관이 확인 및 상품 소유자에게 재통보합니다.

화주
(서명날인)

....년월일

국가검사기관
(서명날인)

....년월일

* 출처 : 베트남 보건부

부록2.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관한 통보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관한 통보(원문)

BỘ Y TẾ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Số: *MM* /TB-ATTP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Hà Nội, ngày *11* tháng *5* năm 2014

THÔNG BÁO **Về việc ban hành các mẫu giấy chứng nhận sản phẩm thực phẩm**

Để thực hiện tốt công tác quản lý sản phẩm thực phẩm,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thông báo về việc thay đổi một số mẫu giấy chứng nhận sản phẩm thực phẩm, cụ thể như sau:

1. Thay đổi các mẫu giấy chứng nhận sản phẩm thực phẩm dưới đây (có mẫu giấy kèm theo):

- Giấy tiếp nhận bản công bố hợp quy.
- Giấy xác nhận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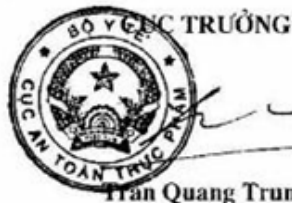
2. Các mẫu giấy được nêu tại điểm 1 của Thông báo này bắt đầu được thực hiện từ ngày 09/6/2014.

3. Các loại giấy được nêu tại điểm 1 của Thông báo này đã được cấp trước ngày 09/6/2014 vẫn có giá trị đến hết thời hạn hiệu lực của giấy.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thông báo để các cơ quan liên quan,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và người tiêu dùng được biết./

Nơi nhận:

- Thứ trưởng Nguyễn Thanh Long (để b/c);
- Tổ chức, cá nhâ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để biết);
- Tổng Cục Hải quan; Cục Quản lý chất lượng nông lâm thủy sản - Bộ NN&PTNT; Vụ Khoa học công nghệ - Bộ CT; Tổng Cục tiêu chuẩn đo lường chất lượng - Bộ KHCN (để biết);
- Các cơ quan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TTP nhập khẩu (để biết);
- Website Cục;
- Lưu: VT, SP.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관한 통보(국문)

보건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식품안전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 1114/TB-ATTP

하노이, 2014년 5월 11일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에 관한 통보

식품 상품의 수월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품안전국은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다음의 식품 상품 인증서 양식 변경(첨부파일 참조)

-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2. 이 통보서 제1항에 제시한 인증서 양식은 2014년 6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2014년 6월 9일 이전에 발급한 이 통보서 제1항에 제시한 인증서 양식은 해당 인증서의 효력 기한 까지 유효하다.

식품안전국은 관련 기관, 식품을 생산, 취급하는 개인 및 단체, 소비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한다.

수신처 :

- Nguyen Thanh Long 차관
- 식품을 생산, 취급하는 개인 및 단체
- 관세총국, 농림수산물질관리국,
기술과학부, 품질도량표준국
- 수입식품안전 관련 국가검사기관

국장

Tran Quang Trung

* 출처 : 베트남 보건부

부록2-1.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원문)

BỘ Y TẾ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Số: / AITP-TNCB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Hà Nội, ngày tháng năm 20....

GIẤY TIẾP NHẬN CÔNG BỐ HỢP QUY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xác nhận đã nhận Bản công bố hợp quy của:

Tên tổ chức, cá nhâ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ho sản phẩm:

Do sản xuất phù hợp quy chuẩn kỹ thuật QCVN.....BYT

Bản thông báo này chỉ ghi nhận sự cam kết của doanh nghiệp, không có giá trị chứng nhận cho sản phẩm phù hợp với quy chuẩn kỹ thuật tương ứng.

Doanh nghiệp phải hoàn toàn chịu trách nhiệm về tính phù hợp của sản phẩm đã công bố.

Định kỳnăm tổ chức, cá nhân phải thực hiện lại việc đăng ký bản công bố hợp quy.

Nơi nhận:
- Tổ chức, cá nhân;
- Lưu:SP.

CỤC TRƯỞNG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국문)

보건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식품안전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 / /ATTP-TNCB

하노이, 20 년 월 일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식품안전국은 다음 대상의 규정 부합 공포 서류의 수취를 확인한다.

개인, 단체명 :

주소 :

연락처 : 팩스 :

이메일 :

대상 상품 :

..... 상품은 베트남 보건부의 번호 기술 규정에 부합하여 생산되었다.

이 인증서는 단지 상기 업체의 서약만을 인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임을 인증하는 가치는 없다.

상기 업체는 공포한 상품의 부합성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년마다 개인 및 단체는 규정 부합 공포를 신청해야 한다.

수신처 :

국장

- 개인 및 단체

- 내부 저장

* 출처 : 베트남 보건부

부록2-2.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원문)

BOY TẾ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Số: /ATTP-XCBN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Hà Nội, ngày tháng năm 20....
---	--

**XÁC NHẬN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xác nhận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của:

Tên tổ chức, cá nhân:

Địa chỉ:

Điện thoại: Fax:

Email:

Cho sản phẩm:

Đo sản xuất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Tổ chức, cá nhân có trách nhiệm thực hiện chế độ kiểm tra và kiểm nghiệm định kỳ theo quy định hiện hành và phải hoàn toàn chịu trách nhiệm về tính phù hợp của sản phẩm đã công bố.

Định kỳnăm tổ chức, cá nhân phải thực hiện lại việc đăng ký bản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Nơi nhận:

- Tổ chức, cá nhân;
- Lưu:SP.

CỤC TRƯỞNG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국문)

보건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식품안전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 / /ATTP-XCBN

하노이, 20 년 월 일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 인증서

식품안전국은 다음 대상의 식품안전 규정 부합 공포를 확인한다.

개인, 단체명 :

주소 :

연락처 : 팩스 :

이메일 :

대상 상품 :

..... 상품은 식품안전 규정에 부합하여 생산되었다.

개인 및 단체는 현행 규정에 따라 상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분석 실험검사를 하며 공포한 상품의 부합성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정기적으로 년마다 개인 및 단체는 식품안전규정 부합 공포를 신청해야 한다.

수신처 :

국장

- 개인 및 단체

- 내부 저장

* 출처 : 베트남 보건부

부록3.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선하증권(원문)

① Shipper/Exporter ABC TRADING CO. LTD. 1, PIL-DONG, JUNG-KU, SEOUL, KOREA		⑪ B/L No. ; But 1004			
② Consignee TO ORDER OF XYZ BANK					
③ Notify Party ABC IMPORT CORP. P.O.BOX 1, BOSTON, USA					
Pre-Carrage by	⑥ Place of Receipt BUSAN, KOREA				
④ Ocean Vessel WONIS JIN	⑦ Voyage No. 1234E	⑫ Flag			
⑤ Port of Loading BUSAN, KOREA		⑧ Port of Discharge BOSTON, USA	⑨ Place of Delivery BOSTON, USA	⑩ Final Destination(For the Merchant Ref.) BOSTON, USA	
⑬ Container No. ISCU1104	⑭ Seal No. Marks & No	⑮ No. & Kinds of Containers or Packages 1 CNTR	⑯ Description of Goods LIGHT BULBS (64,000 PCS)	⑰ Gross Weight 4,631 KGS	⑱ Measurement 58,000 CBM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s)					
⑲ Freight and Charges	⑲ Revenue tons	⑳ Rate	㉑ Per	㉒ Prepaid	㉓ Collect
㉔ Freight prepaid at	㉕ Freight payable at		㉖ Place and Date of Issue May 21, 2007, Seoul Signature		
Total prepaid in	㉗ No. of original B/L				
㉘ Laden on board vessel Date May 21, 2000			㉙ Signature ABC Shipping Co. Ltd. as agent for a carrier, zzz Liner Ltd.		

선하증권(국문)

① 송하인/수출업자 ABC TRADING CO. LTD. 1. 필동, 중구, 서울시, 한국		⑪ B/L No. ; But 1004				
② 수화인 TO ORDER OF XYZ BANK						
③ 통지인 ABC IMPORT CORP. P.O.BOX 1, BOSTON, USA						
공장-부두까지의 운송수단	⑥ 반입장소 부산, 한국					
④ 선명 WONIS JIN	⑦ 항차 1234E	⑫ 선박의 국적				
⑤ 선적항 부산, 한국		⑧ 양륙항 보스턴, 미국		⑨ 배달장소 보스턴, 미국		⑩ 최종목적지(For the Merchant Ref.) 보스턴, 미국
⑬ 컨테이너 번호 ISCU1104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s)	⑭ 봉인 번호 화인 & 번호	⑮ 컨테이너 혹은 기타 포장물의 종류 및 개수 1 CNTR	⑯ 품명 LIGHT BULBS (64,000 PCS)	⑰ 총 중량 4,631 KGS	부피 58,000 CBM	
⑱ 운임	⑲ 운임톤	⑳ 운임단가	㉑ 용적단위	㉒ 선불	㉓ 후불	
㉔ 운임 선불조건	㉕ 운임 착불	㉖ 발행 장소 및 날짜 5월 21일, 2007년, 서울 서명 ㉗ ABC Shipping Co. Ltd. 운송업자의 대리인으로써, zzz Liner Ltd.				
총 운임 합계	㉘ B/L 원본 발행 매수					
㉙ 선적 날짜 날짜 5월 21일, 2000년 서명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uTrade/mode_new/n_kobz_mode_t_ver.jsp?gb=MODE&k_id=1&i_class_cd=02&class_cd=02&back=true&seq_no=950&page=1&gb=MODE&i_class_cd=02&i_class_cd2=0000&searchKey=&searchField=mode_nm&searchField3=&dept=1)

부록4.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샘플(원문)

COMMERCIAL INVOICE				
Vendor/Exporter:	Invoice Number:		Date of shipment:	
	Letter of Credit Number:		AWB/BL Number:	
	Currency:		Country of Origin	
	Conditions of Sale / Terms of Sale:			
Consignee:		Importer:		
Transportation -- Via: -- From:	Total Number of Packages -- Total Net Weight: -- Total Gross Weight:		Total Invoice	
Product Description	Qty	Weight	Unit Price	Total Value
These commodities, technologies, or softwares wer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Diversion contrary to United States law prohibited. We certify that this commercial invoice is true and correct.				
Name	Signature		Date	

상업송장 샘플(국문)

상업송장				
판매사/수출업자	송장 번호:		선적일:	
	신용장 번호:		AWB/BL 번호:	
	통화:		원산국:	
	매매조건:			
수탁인		수입사		
수송 -- 경유: -- 출발:	총 포장 수량 -- 총 순중량: -- 총 중량:		총 액	
제품 설명	수량	중량	단가	총 가격
본 상품, 기술 혹은 소프트웨어는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부터 수출되었습니다. 미국법에 반하는 변화는 금지됩니다. 저희는 본 상업 송장이 진실되며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명	서명		일자	

* 출처 : Free Word Templates(<https://freewordtemplates.net/invoice/commercial-invoice.html>)

부록5.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위생증명서(원문)

[별지제2호 서식]



212, Mokdongjuangang-ro, Yangcheon-gu, Seoul, Korea, Tel: +82-2-2640-1307,

Fax: +82-2-2640-1360

Serial No : MFDS FID -

Page No :

HEALTH CERTIFICATE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MFDS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manufactured, distributed and fit for human consumption with compliance and supervision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Division
Seoul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위생증명서(국문)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전화번호: +82-2-2640-1307, 팩스: +82-2-2640-1360
시리얼 번호 : MFDS FID -
페이지 번호 :

위생 증명서

관계자 제위 :

MM/DD/YY

MFDS는 다음 제품이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였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감독 하에 제조되었고, 배포 되었으며,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생산지명 및 주소 :

목적 국가 :

위탁자 성명 및 주소 :

수탁인 성명 및 주소 :

비고 :

행정지원과장

서울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

대한민국

-배상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18880#AJAX>)

부록6.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원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Original(Duplicate/Triplicate) (Additional Page)					
Reference No.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K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산지증명서(국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원본 (부분) (추가 페이지)					
참조 번호.					
5. 품목 번호	6. 송장상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 설명 (적절한 곳에 수량을 표시하고 수입국의 HS코드를 포함하세요.)	8. 원산지 (기재요령 참고)	9. 총 무게 혹은 다른 수량 및 가격 (RVC 기준이 적용될 때는 FOB만 사용)	10. 송장의 수 및 날짜
11. 수출자 신고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위의 세부사항과 진술이 사실이고, 모든 제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 으며,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본 물품에 대한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했음을 신고합니다. (수입국) 장소 및 날짜, 권한 있는 서명자의 서명			12. 증명 진행된 통관절차에 기반하여, 수출자 신고가 사실임을 이 문서로써 증명합니다. 장소 및 날짜, 증명 담당자의 서명과 날인		
13. 비고 					

* 출처 : 관세청(http://www.customs.go.kr/download/ftaportal_kor/_down/FTA_13_VE_A.pdf)

부록7.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증명서(원문)

[별지 제3호 서식]



212, Mokdongjuangang-ro, Yangcheon-gu, Seoul, Korea, Tel: +82-2-2640-1307,

Fax: +82-2-2640-1360

Serial No : MFDS FID -

Page No :

CERTIFICATE OF FREE SALES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MFDS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FoodSanit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Division
Seoul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자유판매증명서(국문)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전화번호: +82-2-2640-1307, 팩스: +82-2-2640-1360
시리얼 번호 : MFDS FID -
페이지 번호 :

자유판매증명서

관계자 제위 :

MM/DD/YY

MFDS는 다음 제품이 한국의 식품위생법의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생산지명 및 주소 :

목적 국가 :

위탁자 성명 및 주소 :

수탁인 성명 및 주소 :

비고 :

행정지원과장
서울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
대한민국
-배상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18880#AJAX>)

부록8. 식물검역신청서

식물검역신청서(원문)

 **Mẫu Giấy đăng ký kiểm dịch thực vật**
(Bản in kèm theo Thông tư số 33 /2014 /TT-BNNPTNT ngày 30 tháng 10 năm 2014 của Bộ trưởng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ngày.....tháng.....năm.....

GIẤY ĐĂNG KÝ KIỂM DỊCH THỰC VẬT (*)

Kính gửi:(**).....

Tên tổ chức, cá nhân đăng ký:

Địa chỉ:

Điện thoại:Fax/E-mail:

Số Giấy CMND: Ngày cấp: Nơi cấp:

Để nghị quý cơ quan kiểm dịch lô hàng nhập khẩu sau (***):

1. Tên hàng: Tên khoa học:
Cơ sở sản xuất:
Mã số (nếu có):
Địa chỉ:
2. Số lượng và loại bao bì:
3. Khối lượng tịnh: Khối lượng cả bì:
4. Số hợp đồng hoặc số chứng từ thanh toán (L/C, TTr...):
5. Tổ chức, cá nhân xuất khẩu:
Địa chỉ:
6. Nước xuất khẩu:
7. Cửa khẩu xuất:
8. Tổ chức, cá nhân nhập khẩu:
Địa chỉ:
9. Cửa khẩu nhập:
10. Phương tiện vận chuyển:
11. Mục đích sử dụng:
12. Giấy phép kiểm dịch nhập khẩu (nếu có):
13. Địa điểm kiểm dịch:
14. Thời gian kiểm dịch:
15. Số bản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cần cấp:
16. Nơi hàng đến:

Chúng tôi xin cam kết: Bảo quản nguyên trạng hàng hoá nhập khẩu, đưa về đúng địa điểm, đúng thời gian được đăng ký và chỉ đưa hàng hoá ra lưu thông sau khi được quý Cơ quan cấp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

Tổ chức cá nhân đăng ký

(Ký, đóng dấu, ghi rõ họ tên)



Xác nhận của Cơ quan Kiểm dịch

Đồng ý đưa hàng hoá về địa điểm:.....
để làm thủ tục kiểm dịch vào hồigiờ ngày tháng.....năm.....
Lô hàng chỉ được thông quan sau khi có Giấy chứng nhận kiểm dịch

Vào số số....., ngày.....thángnăm
.....(*).....

(Ký, đóng dấu, ghi rõ họ tên)

Xác nhận của Cơ quan Hải quan

(trong trường hợp lô hàng không được nhập khẩu)

Lô hàng không được nhập khẩu vào Việt Nam vì lý do:.....
.....

....., ngàytháng ... năm

Chi cục Hải quan cửa khẩu.....

(Ký, đóng dấu, ghi rõ họ tên)

(*) Đăng ký theo Mẫu này được thể hiện trên 2 mặt của tờ giấy khổ A4;

(**) Tên cơ quan Kiểm dịch;

(***) Phải có đầy đủ các tiêu chí theo đúng thứ tự và khai các tiêu chí thích hợp đối với lô hàng;

(****) Cam kết này chỉ ghi khi đăng ký kiểm dịch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Lưu ý: Cá nhân đăng ký không có con dấu phải ghi rõ số Giấy chứng minh nhân dân, ngày tháng và nơi cấp.

g

식물검역신청서(국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년 월 일

식물검역신청서

수신자 :(**).....

신청하는 개인, 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FAX/E-mail :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

다음 수입품목의 검역을 요청합니다.(***):

품목명 : 과학명 :.....

생산장소 :.....

일련번호(있는 경우에 한함) :.....

주소 :.....

수량 및 포장방식.....

용량 : 포장용량:.....

계약번호 또는 대금지급증서 :.....

수출하는 개인, 단체 :.....

주소 :.....

수출국 :.....

수출관문 :.....

수입하는 개인, 단체 :.....

주소 :.....

수입관문 :.....

운송수단 :.....

사용목적 :.....

수입검역허가서(있는 경우에 한함) :.....

검역지점 :.....

검역시간 :.....

긴급검역인증서 정보 :.....

물품도착지 :.....

수입 물품을 원상태로 보관하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신청대로 이송하며 검역인증서의 발급 후 유통함을 약속한다(****)

신청하는 개인, 단체의 서명

검역기관의 확인

년 월 일에 검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점에 물품제시를 동의한다.

검역인증서의 발급 후 품목이 통관된다.

등록번호.....,년월일

.....(*).....

(서명)

세관의 확인

(품목이 수입될 수 없는 경우)

해당 품목은 다음의 이유로 베트남에 수입될 수 없다:.....

.....

.....년월일

관문의 세관지국.....

(서명)

(*) A4용지 양면으로 인쇄된 본 샘플에 따라 등록

(**) 검역 기관명

(***) 선적과 관련하여 정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본 서류는 수입 상품에 관한 검역 등록 시에만 기입함

주의 : 등록자의 인감이 없는 경우 신분증 번호와 발급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 출처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품보호국

부록9.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원문)

PHỤ LỤC X

BẢN KHAI BÁO XUẤT XỨ CỦA NHÀ SẢN XUẤT/NHÀ CUNG CẤP NGUYÊN LIỆU TRONG NƯỚC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05/2018/TT-BCT ngày 03 tháng 4 năm 2018 quy định về xuất xứ hàng hóa)

Tên nhà sản xuất: Công ty

Mã số Doanh nghiệp:

Số lượng:

Trị giá (FOB):.....USD

Hóa đơn giá trị gia tăng:

(Tên nhà sản xuất/nhà cung cấp nguyên liệu trong nước) xác nhận rằng nguyên liệu/hàng hóa (1) (Mô tả hàng hóa, mã HS 6 số) khai tại văn bản này được sản xuất tại nhà máy của Công ty chúng tôi tại (2)..... Việt Nam có xuất xứ Việt Nam và đáp ứng tiêu chí xuất xứ (3)..... theo quy định tại Chương Quy tắc xuất xứ hàng hóa trong (4)

Công ty cam kết thông tin khai báo trên là đúng và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hông tin đã khai.

....., ngày ... tháng ... năm 20...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thương nhân
(Ký, đóng dấu, ghi rõ họ, tên)

Ghi chú.

- Mẫu Bản khai báo này áp dụng đối với nguyên liệu/hàng hóa có xuất xứ được sản xuất tại Việt Nam và sử dụng làm nguyên liệu đầu vào cho công đoạn tiếp theo để sản xuất ra một hàng hóa xuất khẩu khác của thương nhân đề nghị cấp C/O (trừ thương nhân đề nghị cấp C/O mẫu D).

(1) Trường hợp có nhiều nguyên liệu/hàng hóa cần khai báo xuất xứ, thương nhân có thể liệt kê thành một danh mục đính kèm văn bản xác nhận này (đóng dấu giáp lai của thương nhân)

(2) Ghi địa chỉ nhà máy hoặc xưởng sản xuất của Công ty tại Việt Nam

(3) Ghi tiêu chí xuất xứ cụ thể (ví dụ: CC/RVC...%)

(4) Ghi tên FTA/Thông tư... (ví dụ: VKFTA/Phụ lục I Thông tư...)

원산지확인서(영문)

Appendix X
ORIGIN DECLARATION OF DOMESTIC MANUFACTURERS AND DOMESTIC
MATERIAL SUPPLIER

(issued together with Circular no.05/2018/TT-BTC dated 03 April 2018 on Elaboration on Goods Origin)

Manufacturer Name: Company:
Business code:
Quantity:
FOB value:
VAT invoice No.:

(Name of the domestic company / manufacturer of raw material) confirms that the material / product (1)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the HS code of 6 numbers) stated in this document is produced at our company's factory at (2)in Vietnam originating from Vietnam and can meet the criterion of origin (3)as prescribed in the Chapter of Rules of Origin in (4)

The company guarantees that the above mentioned information is correct and takes all responsibility for the declared information

... day ... month ... year 20 ...
Legal representative of the trader
(Signature, seal, full name)

Note:

- This form is applicable to originating materials / goods made in Vietnam and used as inputs for the next stage to produce another export goods of the trader. (except for form D)
- (1) In case there are many materials / products to be declared, the enterprise can make list and attach to this document.
- (2) Address of manufacture or factory of Vietnamese company
- (3) Specify origin criteria (EX: CC/RVC...%)
- (4) Specify name of FTA / Decree ... (Ex: VKFTA/Annex I circular ...)

원산지확인서(국문)

부록 X 국산품 및 국산품 공급자의 원산지 표시

(2018년 4월 3일 발행된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단 번호 05/2018/TT-BTC와 발행)

제조업체명 : 회사 :

사업 코드 :

수량 :

FOB 값 :

VAT 송장 번호 :

(국내 기업명 / 원재료 제조업체) 재료 / 제품을 확정합니다. (1) 본 문서에 명시된 (상품의 설명, 6개 숫자의 HS 코드는) (2) 베트남의 에 있는 저희 회사 공장에서 만들어졌으며 베트남이 원산지이고 (3)에 있는 원산지 규칙 챕터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인 (4)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본사는 위에 명시된 정보가 사실이며 명시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보증합니다.

... 일 ... 월 ... 년 20 ..

거래의 법정 대리인

(서명, 직인, 성명)

주석 :

- 본 양식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원재료 / 제품에 적용되며 거래자의 추후 수출품 생산을 위한 다음 단계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식 D 제외)

(1) 신고할 원재료 / 제품이 많은 경우, 기업은 리스트를 만들어 본 문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제조업체의 혹은 베트남 기업의 공장 주소

(3) 원산지 기준을 명시하십시오 (EX:CC/RVC,...%)

(4) FTA / 법령명을 명시하십시오 ...(Ex: VKFTA/Annex I circular ...)

* 출처 :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6383&pageViewType=&column=title&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84&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searchIndusTryCat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Ⅱ

싱가포르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수입제도 특이사항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29
	제2장 통관제도	130
	1. 관리 · 법률체계	130
	2. 제출서류	132
	3. 관세제도	132
	제3장 검역제도	133
	1. 관리 · 법률체계	133
	제4장 라벨링 제도	137
	1. 관리 · 법률체계	137
	2. 표시사항	137
	제5장 수입제도 특이사항	143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 출처 :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sg)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통관절차	유의사항
수출 전 절차	- 싱가포르의 농식품수의청(AVA)에 수입업자 등록
수입 신고	- 수입 신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되고 TradeNet으로 EDI System을 통해 제출
관세 및 세금 납부	- 관세는 관세납부 대상에 한하여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함 - Inter Bank GIRO를 통해서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
신고 통보	-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농식품수의청(AVA)에 수입 신고 내용 통보
검사 여부 결정	- 농식품 수의청의 수입식품 검사 여부 결정(면제, 표본 및 전체에 대한 검사 진행)
물품 반출	- 컨테이너 화물은 무서류 신고 및 신고수리 되어 반출됨 - 검사 대상이 된 수입 물품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됨

제 2 장 통관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수입업자 등록(수출 전 절차)

- 싱가포르 농식품수익청(AVA)을 통해 수입업자 등록증 및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업체의 수입허가를 위해서는 Trade Net System(www.tradechange.gov.sg)에 수입업자 등록을 해야 함
 - 농식품수익청(이하 AVA)에 수입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 등록청(www.acra.gov.sg)에 회계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은행간 GIRO망을 통해 AVA에 관련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함

☐ 수입신고

- 싱가포르의 수입신고는 전자통관시스템인 Trade Net Syste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컨테이너 화물과 비컨테이너 화물로 나뉘어 신고가 진행됨

☐ 관세 및 세금납부

- 싱가포르는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에 따라 주류, 담배, 차량, 석유 4개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됨
 - 하지만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라는 내국세를 납부해야 하며, Inter Bank GIRO를 통해 납부해야 함

☐ 신고 통보 및 검사 여부 결정

- 관세 및 상품서비스세를 납부하게 되면 싱가포르 관세청은 AVA에 수입신고를 통보함. 이후 농식품검역청은 해당 제품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함

☐ 검사 및 통관

- 수입업자 등록 및 수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판매허가를 받거나 검사가 필요한 제품에 한해서는 집중검사를 시행함. AVA에서 검역 및 성분 분석을 통하여 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됨

□ 수입허가

-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AVA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수입허가를 위해서는 TradeXchange System(TradeNet)을 통하여 신청을 하여야 함

〈수입허가를 위한 주요 절차〉

■ STEP 01.

- 준비사항 : 허가증(licence) /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및 제품의 HS codes
- 허가를 위한 AVA 제품 코드 아래와 같이 분류
 - Fish and fish products
 - Fresh fruits and vegetables
 - Meat and meat products
 - 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appliances

■ STEP 02.

- TradeXchange System 통해서 수입허가를 신청하면 고유참조번호가 부여됨

■ STEP 03.

- 요구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TradeXchange System를 통해서 추가서류를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 예시) 특별 관리 품목의 경우 실험보고서 또는 보건증명서 등이 추가서류로 요구됨

■ STEP 04.

- 싱가포르 세관 및 AVA의 승인 후에는 AVA 수입 허가 역할을 하는 화물 통관 허가(Cargo Clearance Permit ; CCP)를 발행

■ STEP 05.

- CCP를 출력하고 제품 검문소 통관 시, 검사 등에 필요할 경우 사본 사용

*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수익청(www.ava.gov.sg)

□ 통관 시 유의사항

- 싱가포르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싱가포르는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위생과 안전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 현재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싱가포르 AVA에서 발표한 ‘Sales of Food Act’와 ‘Food Regulation’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싱가포르의 AVA는 모든 수입식품의 검역을 담당함. AVA의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검사를 통해 검역을 실시하게 되며 해당 검역에서 불합격 수입금지 처분이 내려짐

2. 제출서류

〈싱가포르 수입식품 통관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Bill of Lading/Airway Bill)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운임명세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화물통관허가서(CCP) - 수출검역증명서
--	--

* 출처 :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sg)

3. 관세제도

- 싱가포르와 한국은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한-싱가포르 FTA 총 2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느 협정문을 따를 때 유리한지 확인 필요
 - 한국과 아세안 국가는 최혜국세율의 예외로써 FTA 양허세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한-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라 한국산 주류, 담배를 제외하고 모든 식품에 0% 관세가 부과됨
- 제품 관세율 확인 방법
 -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또는 한국무역협회 ‘TradeNAVI(www.tradenavi.or.kr)’의 ‘FTA/관세’ 메뉴를 활용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음
 - 싱가포르 관세청의 관세율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분류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TradeNAVI	www.tradenavi.or.kr
	싱가포르 관세청	www.customs.go.sg

- 싱가포르에서는 수입관련 내국세로 7%의 GST(상품 및 서비스세, Goods & Service Tax)가 존재하며 GST는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모든 수입 물품에 적용됨.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과 용역이 GST 과세대상이므로 식품도 GST 과세 7%가 부과됨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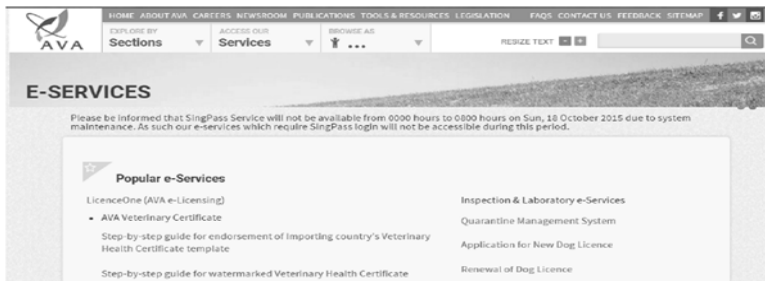
〈싱가포르 검역 관리체계〉

담당처	·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
신청방법	· 싱가포르 경제진흥청 내 온라인 비즈니스 면허 서비스(OBLS)를 통해 전산 접수 가능 · 승인 처리까지 약 3일 소요
신청비용	· 없음
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Codex의 국제 표준
검역	· 검역 불합격 시 해당 제품은 수입 금지되며 농식품 수의청(AVA)의 감독 하에 폐기되는 것이 원칙
주의사항	·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 숙지 필수 · 사전 검사 필요 품목에 대해서는 미리 서류작업을 진행해야 함 · 소량(5kg 이상, 100싱가포르 달러 초과)이라도 상업적 수입으로 분류되어 수입허가가 필요함

※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www.ava.gov.sg)

□ 검역 신청방법

-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AVA는 법적으로 무작위 샘플링을 하여 검사할 권한을 가짐
- 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하며, (온라인 검역신청 이전, AVA에 자사계정 등록 필요)
- 계정은 AVA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외국기업도 등록 가능



□ 검역 준비서류

- Cargo Clearance Permit(CCP)
- 관련 서류(상업송장, 위생증명서)
- 검역 대상 제품
 - * 냉동 육류의 경우는 1박스를 사전에 표면 해동하여 준비
- (일부 품목) 식물검역증
 - 포트에 재식된 식물, 식물번식물질, 재식용 식물, 종자류, 버섯균사 및 장식용의 잎 및 가지 등의 품목은 식물검역증을 요구할 수 있음
 - 식물검역증은 화물이 송부되기 전 14일 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검역 대상 제품

- 검역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발급되는 CCP(Cargo Clearance Permit)에 검역 필요 여부가 기재되어 있음
 - 통상적으로 검역이 필요한 제품은 AVA 승인코드와 조건부 승인에 대한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 AVA approval CODE(A03, A04, A21) Conditional approval message
 - 수입자는 CCP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AVA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준비, 실행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검역효과 및 주의사항

-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싱가포르 내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됨
 - 수입자는 해당 수화물을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만약 해당 수화물에 방사능이 방출된다면 국내 폐기는 불가능하며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해야 함
 - 경우에 따라 해당 수화물을 싱가포르로 수출한 수출자는 향후 싱가포르 수출이 금지될 수 있으며 수입자 또한 향후 해당 수출자로부터 제품 수입이 금지될 수 있음
- 특수한 경우 AVA는 전체 수화물을 통관중지(Hold and Test) 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우 테스트 결과가 싱가포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매 및 유통이 중지됨

□ 검역 일반 동향

- 싱가포르는 식품, 식물의 위생에 대해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지만, 아시아 지역 물류 운송의 허브에 걸맞은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이나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식품 수출이 가능

- 싱가포르의 검역과 관련된 무역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특히 FTA 체결 국가들에게는 검역을 완화하고 있으며,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추세

나. 법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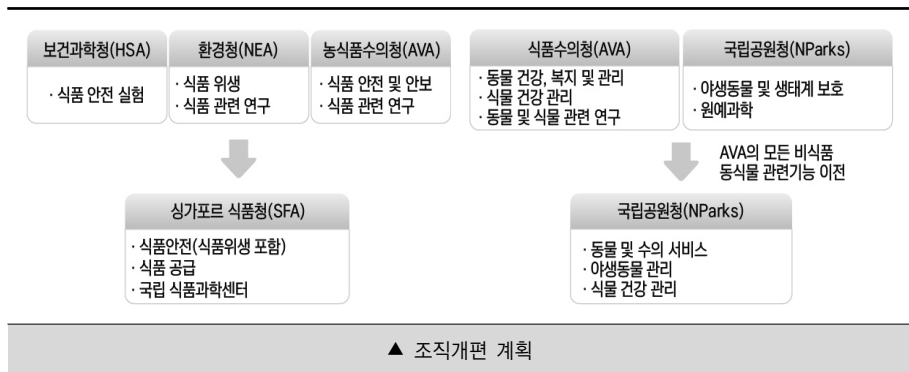
☐ 싱가포르 기관별 기능(2019년 4월 1일 이전)

- 기관별 식품관련 기능

기관명	식품관련 기능
농식품수익청(AVA)	- 국가개발부(MND) 산하 기관 - 싱가포르 내 유통되는 육류, 어패류, 신선과일 및 채소, 신선·가공 달걀, 가공식품, 식기 등 관리 - 건강보조식품(food-health products) 일부 담당
보건과학청(HSA)	- 보건부(MOH) 산하 기관 - AVA에서 담당하는 품목 외 건강보조식품 관리
환경청(NEA)	- 환경수자원부(MEWR) 산하 기관 - 싱가포르 내 레스토랑, 카페, 스낵바, 슈퍼마켓, 푸드트럭, 케이터링 등 F&B 업체들의 영업 허가 라이선싱, 식품 위생 교육 및 관리 등 담당

☐ 싱가포르 식품청(SFA) 신설(2019년 4월 1일 이후)

- 조직개편 및 싱가포르 식품청(SFA) 신설
 - 2019년 4월 1일부로 환경수자원부 산하 기관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 신설 및 기능 이전



- 농식품수의청(AVA), 보건과학청(HSA), 환경청(NEA)의 식품 관련 업무를 신설되는 싱가포르 식품청(SFA)으로 이전
 - * 농식품수의청(AVA)에서 600명, 환경청(NEA)에서 220명, 보건과학청(HSA)에서 30명이 이동하여 싱가포르 식품청(SFA)은 총 850명으로 구성
- 농식품수의청(AVA)의 동물복지와 같은 동물 관련 기능은 국가개발부 산하 국립공원청(NParks)으로 이전
 - * 농식품수의청(AVA)에서 약 300명은 국립공원청(NParks)으로 이동
- 싱가포르 식품청(SFA) 기능
 - 현재는 농식품수의청(AVA), 보건과학청(HSA), 환경청(NEA) 등 3개 기관에서 모두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2019년 4월부터 신설되는 싱가포르 식품청(SFA)에서 단독으로 식품 안전 조사(investigation), 집행(enforcement), 확인(assurance) 등을 통합 관리함
 - 향후 식품청장을 맡게 될 Lim Kok Thai 현 농식품수의청장은 식품청(SFA)에서 식품 매개 질병 관리 및 그에 따른 제품 추적 및 리콜 조치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밝힘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싱가포르 식품 관련법(Singapore Food Regulations)에 따라 라벨링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라벨은 관련법에 따라 제품명, 성분, 중량 및 포장지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해야 함
- 싱가포르의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서류심사로 수입허가를 받은 후 납품 이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라벨링을 스티커 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음
 - * 일반적으로 수입 가공식품들은 영어로 된 스티커가 부착되거나 인쇄되어 있음

2.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

〈싱가포르 라벨링 세부표시사항〉

항목		설명
1	표기언어 및 글자크기	표기 언어는 영어로 하되, 글자의 최소 높이는 1.5mm여야 함
2	제품명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제품명을 표기해야 함
3	구성성분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 및 첨가제를 내림차순으로 명시해야 함
4	알레르기 유발 성분	알레르기 및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하여 표기해야 함 (글루텐, 땅콩 등)
5	순중량	음료를 제외한 모든 식품은 순중량이 표기되어야 함
6	수입업자 업체명 · 주소	싱가포르산일 경우에 제조업체를, 수입산일 경우에 수입업체의 업체명과 주소를 표기해야 함
7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를 국가명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도시, 지방의 이름은 불가함
8	유통기한	Use by, Sell by, Expiry by 등으로 표시하며, 유통기한의 글자 크기는 높이가 3mm 이상이 되어야 함
9	저장방법	제품 개봉 전 저장방법을 표기함 온도 등 필수정보 기재

※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수익청(www.ava.gov.sg)

□ 식품의 명칭과 설명

- 식료품의 실체를 나타내기 충분한 용어, 즉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common name) 혹은 설명이 사용되어야 함

□ 식품의 구성성분 표기방법(내림차순)

- 식품 성분과 첨가품의 목록에 사용된 무게 또는 비율을 내림차순으로 기재해야 함
 - 국제번호시스템(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번호나 식품 첨가물 코드번호(E-number)는 라벨링 표기에 사용될 수 있음
 - 물(Water)은 표기 대상이 아니지만 식품착색제, 타르트라진(황색 식용색소의 한 종류) 또는 식용색소(Colour)는 의무 표기 대상임
 - 1개 이상의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 성분의 경우 내림차순으로 명시

□ 영양성분표(Nutrition Label)

- 영양성분표는 약자로 NIP 또는 Nutrition Label이라고 불리며, 식품에 사용된 영양과 건강관련 정보를 담고 있음
- 영양성분표 구성 및 단위

구분	단위
i) 에너지(열량)	kcal 또는 Kj
ii)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gram
iii) 기타 영양성분과 건강 관련 성분	gram

□ 알레르기 및 과민성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표기방법

- 알레르기 및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과 성분은 반드시 라벨에 표기를 해야 함
 - 아래에 나열된 식품과 성분의 경우 ingredient/additive 또는 component of a compound ingredient 항목으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i) 글루텐이 포함된 시리얼	밀, 호밀, 보리, 귀리, 변형종자와 이를 재료로 제조된 제품
ii) 갑각류와 갑각류 제품	가재, 새우, 바닷가재, 게 등
iii) 달걀과 달걀제조 식품	산란용 닭, 오리, 칠면조, 메추라기, 거위, 갈매기, 뿔닭으로부터 나온 알과 이를 재료로 제조된 식품
iv) 생선과 어류 가공식품	굴, 조개, 가리비와 같은 어패류와 이를 재료로 제조된 식품

v) 땅콩, 대두 및 관련 제조 식품	땅콩(peanuts)은 반드시 'groundnuts'와 같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명시되어야 함. 대두의 경우 'soya' 또는 'soy' 로 표기
vi) 우유와 유제품(유당 포함)	젖소, 물소, 염소에서 나온 우유와 이를 재료로 제조된 식품
vii) 나무에서 열리는 견과류(tree nut)와 견과 제품	아몬드, 해즐넛, 호두, 캐슈넛, 피칸,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와 이를 재료로 제조된 식품
viii) 10mg/kg 이상의 아황산 농축물	아황산 농축물이 직접적으로 첨가되거나 총 농도 10mg/kg이상의 성분이 포함된 제품

□ 제조업체 · 수입업체 정보

- 수입식품은 수입업체, 유통업체 혹은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함

□ 원산지

- 식품의 원산지 국가명이 수입된 식품의 라벨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도시 이름만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유통기한 표시

- 유통기한은 식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식품은 반드시 유통기한 이전에 섭취되어야 함
 - 보관 상태에 따라 유통기한이 크게 달라지는 품목들은 적절한 보관 방법과 유통기한을 함께 라벨에 표기해야 함('냉장상태로 보관 요망', '냉동 보관' 등)
 - 다만 식품의 섭취 안전성 여부가 유통기한으로만 판별되는 것은 아니고 유통 과정 중 어떻게 보관되고 취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통기한 표기 대상제품
 - 특히 아래와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요구됨
 - * 대상제품 : 유제품, 주스, 냉장식품, 영유아용 식품, 식용유, 밀가루 등
- 유통기한 표기방법(예시)
 - 날짜 표시는 영구히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에 양각으로 새겨져야 하고 최소 3mm로 인쇄되어야 함
 - USE BY(dd/mm/yy)
 - SELL BY(dd/mm/yy)
 - EXPIRY DATE(dd/mm/yy)
 - BEST BEFORE(dd/mm/yy)

나. 기타 라벨링 규정 및 유의사항

□ 기타 표기사항

구분	유의사항	
무가당 식품	◆ 식품이 100g 또는 100ml 당 0.5g 이하의 당을 포함하고 있을 때 ‘무가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	
저칼로리 식품	◆ 아래의 칼로리 함유량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저칼로리 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음 〈저칼로리 표기 기준〉	
	식품 유형	칼로리 함유량
	음료(즉시 소비 가능한 형태의 캔 등)	8kcal/100ml
	잼 또는 유사류	100kcal/100g
	기타식품	50kcal/100g
건강기능성 표시	정의	◆ 건강정보표시는 해당 식품의 소비 시 건강에 주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임 사례) 1) 풍부한 섬유질이 소화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음 2) 이동된 성분이 장내 박테리아 활동을 활성화 시켜 소화에 도움이 됨 3) 고 섬유질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는 통밀, 과일 성분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됨
	표기 기준	◆ 표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증거를 기준으로 해야 함 ◆ 대중이 표기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섭취 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끔 표기되어야 함 ◆ 표기된 영양소의 양이 지정된 가이드라인 규정을 지켜야 함 ◆ 소비자에게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 단어, 브랜드, 사진 또는 특성, 안정성, 양, 내구력, 순도, 구성, 무게, 원산지, 수명, 효과, 음식이나 재료의 비율을 라벨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또한 의학적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표기 또한 제한됨 ◆ 질병을 예방한다는 수준까지는 허용되나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해지거나 치료가 된다는 류의 표기는 금지

□ 유의사항

- 성분강조 마케팅 시 정확한 수치 표기의무
 - 제품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의 정확한 함유량을 표기해야 함(해당 성분을 마케팅에 활용할 경우에 한함)
 - 단백질, 저지방 등의 정확한 함유량을 표기해야 함(해당 성분을 마케팅에 활용할 경우에 한함)

○ 라벨링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

- 식품에 치료나 질병 예방 기능이 있다는 내용
-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질병의 치료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 의료적 조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
- 식품 섭취 후에 건강, 신체적 상태나 능력이 향상된다는 내용

□ 기타사항

- 가공식품의 경우 레시피, 조리방법 등 섭취와 관련된 설명 또한 식품 라벨에 포함될 수 있으며, 최소 1.5mm의 글자로 표기되어야 함
- 애완동물 사료의 경우 절대로 사람이 소비하기에 맞거나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어떤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됨

□ 라벨링 샘플



영양소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
1회 제공량당 또는 100g/100ml당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등의 함량
영양성분표나 건강성분표에서 언급된
기타 모든 영양소의 함량

NUTRITION INFORMATION		
Serving size: 30g (about 1 packet)		
	Per serving	Per 100g
Energy	472 kcal*	158 kcal*
Protein	8.2 g	2.8 g
Total fat	16.2 g	5.4 g
Saturated fat	3.8 g	1.3 g
Trans fat	0 g	0 g
Cholesterol	0 mg	0 mg
Carbohydrate	48.2 g	16.1 g
Dietary fiber	3.5 g	1.2 g
Sodium	12 mg	4.0 mg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상세정보

국내 생산된 제품인 경우 국내 제조업체, 포장업체, 판매업체의 상호와 주소
수입제품인 경우 국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기관의 상호와 주소

부피 또는 중량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식품의 실제 양을 명시함

유통기한 표시

식품의 정상적인 품질과 특성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날짜 표시

CREAMY BISCUIT

NET WEIGHT: 360g

Ingredients: Wheat Flour, Wholemeal Flour, Malt Extract, Non-Hydrogenated Vegetable Oil, Sugar, Salt, Vitamins & Minerals, Yeast, Spices Fl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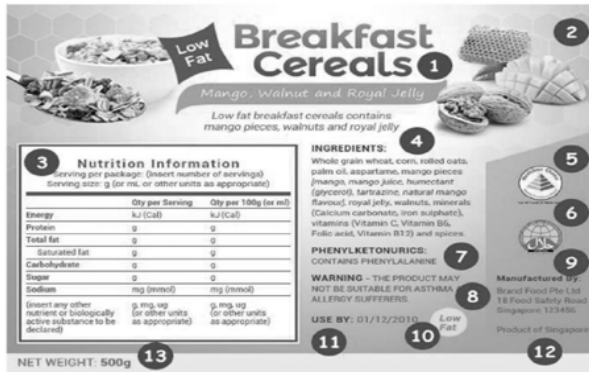
Allergen Information: Contains Wheat. Manufactured on equipment that also processes chocolate containing nuts.

Manufactured By:
ABC COMPANY PTE LTD
(Reg. 1234567890123)
International Road Singapore 123456

ABC Call Centre
180 123 1233

Store in cold dry place
Expiry Date: 31 May 2013

*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



- | | |
|---|-------------------------------|
| ① 제품명 | ②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③ 영양성분표 | ④ 성분표시 |
| ⑤ 식품안전인증 | ⑥ 할랄 인증 |
| ⑦ 알레르기 반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특수
성분의 경우 Contain 강조 | ⑧ 기타 Warning으로 예상되는 위험사항 추가서술 |
| ⑨ 제조사, 유통사 표시 | ⑩ 영양강조 표시 |
| ⑪ 유통기한 | ⑫ 원산지 |

제 5 장 수입제도 특이사항

□ 육류 및 계란 생산업체 사전 인증제도

- 싱가포르에 육류 또는 계란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생산업체에서 싱가포르의 농식품 수의청(AVA)에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 AVA에서는 1차 서류검사, 2차 현지실사를 거친 생산업체에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된 육류 및 계란 생산업체 목록은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VA) 웹사이트에 게재함
 - 싱가포르의 수입업자는 AVA의 인증된 생산업체로부터만 육류 및 계란을 수입할 수 있음
- 싱가포르 AVA는 salmonella enteritidis 및 E-coli E,0157에 대하여 완전 금지(zero- tolerance)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 및 유럽의 생산업체들도 수시로 수입금지대상이 되기도 함

□ 싱가포르 할랄 인증

	
▲ MUIS 할랄 인증 로고	▲ MUIS 할랄 인증서

- 싱가포르 할랄 인증 기관 : MUIS(Majelis Ulama Islam Singapura)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는 싱가포르 할랄 인증 기관인 MUIS의 인정을 받은 할랄 인증 기관으로 KMF 할랄 인증을 부착하고 싱가포르 수출 가능

□ 건강보조식품 분류

-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의 분류는 일일 섭취량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AS)의 관리 하에서 Medicines Act, The Poisons Act, The Sale of Drugs Act, The Medicines(Advertisement and Sale) Act 그리고 Misuse of Drug Regulations의 규제를 받음
- 한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건강식품 중 홍삼농축액 등 하루 복용량이 정해진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일정 복용량 없이 수시로 음용 가능한 흑마늘 진액, 양파즙, 호박즙 등은 일반식품 및 천연식품 보충제에 해당됨

□ 알코올 음료 분류

- 싱가포르 세관은 알코올 음료 세관 신고 시, 부정확한 신고의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고 아래와 일반적인 알코올 음료의 분류를 도표로 작성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
- 알코올 음료란 알코올 도수(Alcoholic strength By Volume, ABV)가 0.5%를 초과하는 음료를 의미하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과세 대상이며, 알코올 도수가 0.5% 이하인 음료는 과세 대상이 아님
- 수입업자 및 관세 신고 에이전트는 TradeNet 신고서에 모든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음을 고지함. 싱가포르 관세법에 따라 부정확한 신고를 할 경우 최대 S\$10,000(한화 약 810만원) 벌금형 또는 관세 및 GST 지급액 중 더 높은 금액 및 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제품 및 제품설명		분류/HS codes(STCCED 2018)	
맥주	보통 홉으로 맛을 낸 엿기름에서 발효시켜 얻음. 허브나 과일과 같은 다른 향이 첨가될 수 있음	2203.00.11	Stout 또는 Porter, ABV 5.8%를 초과하지 않음
		2203.00.19	Stout 또는 Porter, ABV 5.8% 이상
		2203.00.91	기타 맥주 (ale 포함), ABV 5.8%를 초과하지 않음
		2203.00.99	기타 맥주 (ale 포함), ABV 5.8% 이상
Cider & Perry	과일에서 발효시켜 얻음. Cider는 사과에서 Perry는 배에서 얻음	2206.00.10	
위스키	시리얼 곡물 발효액을 증류하여 얻음	2208.30.00	
럼(Rum)	사탕수수 발효 제품을 증류하여 얻음	2208.40.00	
Samsu	쌀이나 수수와 같은 곡물을 증류하여 얻음. 약용된 Samsu는 허브, 도마뱀, 곤충, 뱀 등의 첨가물을 함유한 Samsu를 말함	2208.90.10	약용 Samsu, ABV 40%를 초과하지 않음
		2208.90.20	약용 Samsu, ABV 40% 이상
		2208.90.30	기타 다른 Samsu, ABV 40%를 초과하지 않음
		2208.90.40	기타 다른 Samsu, ABV 40% 이상
테킬라 (Tequila)	아가베 식물 발효 주스는 증류하여 얻음	2208.90.99	

* 출처 : 2018년 9월 12일, Singapore Customs (www.customs.gov.sg)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Ⅱ

인도네시아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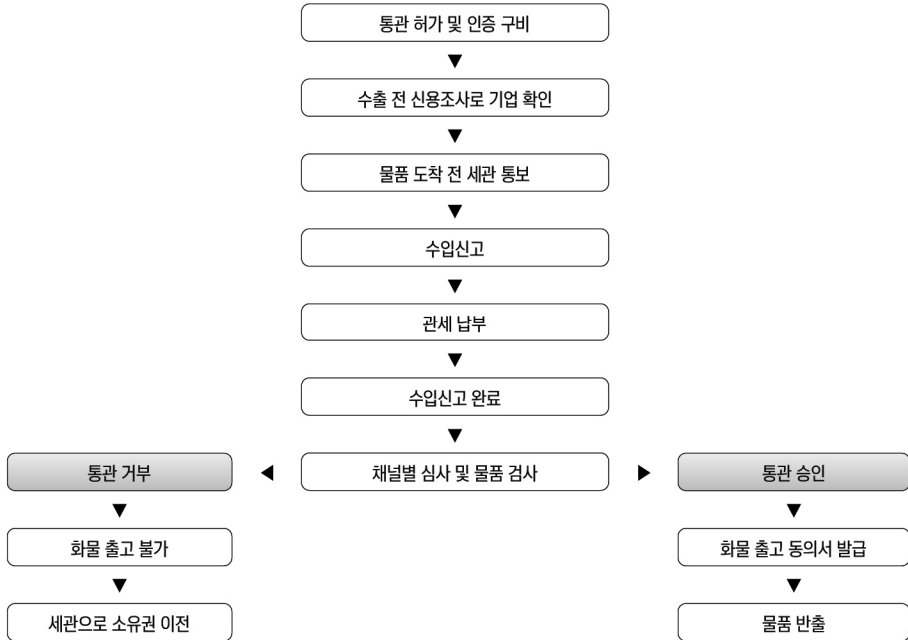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수입제도 특이사항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49
	제2장 통관제도	150
	1. 관리 · 법률체계	150
	2. 통관절차	155
	3. 관세제도	164
	제3장 검역제도	169
	1. 관리 · 법률체계	169
	2. 품목별 검역절차	170
	제4장 라벨링 제도	173
	1. 관리 · 법률체계	173
	2. 표시사항	173
	제5장 수입제도 특이사항	178
	1. ML(수입식품등록) 제도	178
	2.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180
	3.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SNI)	183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통관절차	유의사항
물품 도착 및 수입신고 전 준비	- 수입자의 경우 사전에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한 허가 및 인증 구비 필요 - 물품 도착 24시간 내 세관 통보
관세 납부 및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 작성 후 세관에 관세 및 조세 납부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수입신고서 세관 전송 - 관세액 산정 기준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
물품 검사 및 통관심사	- 수입신고 완료 화물은 위험도에 따라 4가지 채널로 분류 및 통관심사 진행 - 수입자의 신용과 통관을 진행하는 물품에 따라 채널 분류
심사 완료 및 물품 반출	- 물품에 이상이 없을 시 통관 승인 완료, 화물출고동의서 발급 - 최대 2개월의 통관 기간 동안 세관 내 임시 창고 등에 물품 보관 - 화물출고동의서를 창고에 제출 후 물품 반출이 가능

제 2 장 통관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련 법률

☐ 인도네시아 식품법 “1996년 7호”

- 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법 “1996년 7호¹⁾”로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식품관련 핵심 법안임
- 식품법(Food Act)의 식품 정의
 - 식품은 생물학적 또는 물을 원천으로 하는 모든 가공 및 미가공 제품으로 인간이 섭취 또는 복용하도록 된 제품임 이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조리,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초 식품재료 외에 식품 첨가물도 포함됨
- 식품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식품과 관련된 안전, 품질, 영양 등과 같은 기술적 기준, 그리고 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을 생산, 보관, 운송 그리고 유통하는 업자의 책임 및 그 결정 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적 제재조치
 - 식품의 다양성 및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역할
 - 내인도네시아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 인도네시아 식품수입 규정은 식품법의 제5장에서 다루며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법 및 그 시행규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함

나. 수입절차 및 수입 필수요건

☐ 수입절차

-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 무역면허)를 먼저 등록하여야 함. 모든 수입업자들은 Nomor Induk Kependudukan(NIK : 관세청등록번호) 및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 : 수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1)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ntang Pangan

○ 다음은 수입절차 및 필요서류 요약임

파트너십 형성	수입업자 등록	수출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관계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공
	SIUP	
	NIK	
	API	
수입허가 신청	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당하는 정부 부서로부터 개별적인 제품 수입허가를 신청	수입식품등록번호(ML)
	원예농산물 수입허가, 축산물 수입허가, 수산물 수입허가	
제품의 운송	통관	
	식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	
	제품의 인도	

☐ Surat Izin Usaha Perdagangan(SIUP : 무역면허)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을 발급받아야 함
- SIUP에는 회사의 활동범위,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SIUP 발급부서인 무역부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letter of good conduct(적정시민 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음

Surat Izin Usaha Perdagangan(SIUP)의 신청	
요구 서류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정관)(사본) 2. 업체 주소 및 위치에 대한 확인서 3. 업체 대표자 혹은 이사의 신분증(사본) 4. 공증된 문서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5~9 근무일

☐ Nomor Induk Kependudukan(NIK : 관세청 등록번호)

- NIK는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등록번호
- “관세청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청(DGCE)으로부터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nduk Kependudukan, NIK)를 발급받아야 함²⁾

2)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No. 63/PMK/4/2011

- NIK 신청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서비스 이용자정보, 임원 및 담당자의 신원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약 14일 소요
- NIK는 관세청이 취소결정을 내리기까지 유효함.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NIK를 취소할 수 있음
 - 수입업자가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동안 관세청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업자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입업자가 관세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 수입업자의 사업면허가 만료가 된 경우
- 취소된 NIK는 취소결정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복할 수 있음. 다음의 경우 NIK를 회복 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활동의 사실을 증명할 경우
 - 서비스 이용자가 관세청 등록 자료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동 변경내용이 관세청에 의해 이미 승인이 된 경우
 - 서비스 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형사위반 사안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이미 연장된 경우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 : 수입업자 등록번호)

- NIK와 더불어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규정에는 API가 있는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측 제품, 연구개발 목적의 제품, 자가 섭취의 제품, 일시적인 기간 동안 특정 제품 또는 빈도가 적은 수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API 없이도 수입이 가능함
 - 장기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API의 취득이 필수적임
- API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발급하며, 수입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유효함. 유효기간은 5년
- API는 API-U, API-P 두 가지가 있으며 수입업자는 하나의 API만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API-U는 무역 혹은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
 - API-P는 원재료, 부재료 혹은 가공공정을 위해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API)의 신청	
요구 서류	1.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설립취지서)(사본) 2. 소재 지역 관할청에서 발급한 기업본사 소재지증명서(사본) 3. 투자 등록서(사본) 4. 투자 Approval in Principle(기본승인서)(사본) 5. BKPM에서 발급한 사업면허(사본) 6. 납세자 번호(NPWP)(사본) 7. 사업자 등록증(TDP)(사본) 8. 이사회 임원의 신분증 혹은 여권(사본) 9. IMTA(사본) 10. 이사회 전원의 붉은색 바탕의 3x4 사진 2매
신청 처리	5 근무일
유효 기간	5년

- API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무역협력국에 3개월마다 수입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 수입업자의 API는 취소 될 수 있음
 - API가 2회에 걸쳐 효력정지를 당했을 경우
 - API가 효력정지를 당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API 신청서에 허위 정보 또는 자료를 기재하였을 경우
 - 수입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관련 규정 및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입 및 수입관련 서류를 악용한 경우
 - API의 악용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NPIK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 특수 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NPIK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 품목은 항구에서 역류 조치됨
- 특수품목에는 옥수수, 쌀, 대두, 설탕, 섬유 및 관련 제품, 신발, 전자 및 완구가 포함되며, 동 조치는 해당 제품의 대규모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 NPIK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들은 무역부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NPIK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API-U를 취득한 업체 - API-U - 최근 5년간 사이의 2개년 연속 수입활동 수행에 관한 보고서,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입활동 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차기 1년간 해외 교역 파트너와의 구매계약서 2. API-P를 취득한 업체 - API-P - 산업활동 허가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10 근무일
유효 기간	5년

- NPIK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매월 15일에 국제무역협력국에 수입활동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다음의 경우에 NPIK는 취소될 수 있음
 - NPIK의 내용에 변경, 추가, 대체를 하는 행위
 - NPIK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불가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다. 통관서류

-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양식(PIB)을 준비해야 함. 세관신고 양식의 유형은 수입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입 신고 양식	
물품 수입 신고서(PIB 양식)	BC 2,0
특정 물품 수입 신고서(PIBK 양식)	BC 2,1
승객 혹은 운송수단 승무원의 물품 수입 신고서	BC 2,2
보세구역 보관 예정 물품 수입신고서	BC 2,3
관세지역(DPIL)을 출발하여 보세구역으로 이전되는 물품의 이전 신고서	BC 4,0
수출 용도로 수입시설에 도착되는 수입 물품에 관한 정산 신고서	BC 2,4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 신고서	BC 2,5
보세구역 보증부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서	BC 2,6,1
보세구역 보증부 인도된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재진입 신고서	BC 2,6,2
보세구역간 물품 이전을 위한 신고서	BC 2,7

- 다음의 증빙서류는 관세청 신고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세지역 진입 시에도 구비해야 함
 - 선하증권(B/L)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AWB)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보험증권
 - 원산지 증명서(C/O)
 -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양식 사본
 - 관세 및 제세 납부 증명(영수증)
 - 특정물품에 대한 관련 증명서
 - 통제되는 물품에 대한 유효한 관련 허가서
-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음
 - 매매 계약서
 - 구매서
 - 송금전표
 - 제품 카탈로그
- 서류 정정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2일 전에 모든 수입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권장됨

2. 통관절차

가. 일반 통관 절차

☐ 관세청의 역할

-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DGCE : 관세청)은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강제, 그리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짐
- 해외의 출발지로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도착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수입관세의 대상이 됨.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서류 및 실물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관세청 확인이 이루어짐

□ 관세청 통관절차

도착 전	관세항구 도착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	화물 검사	인도	인수
도착 24시간 이전에 관세청에 통보	관세신고서 제출	관세청 지정지역에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물품의 서류 및 실물 검사	관세청지역으로 물품인도	관세청으로부터 물품인수

○ 도착 전

-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 운송사는 관세청에 운송수단의 도착 예정을 통보해야 함. 동 통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운송사의 상호
- 항공편, 선박편 등 운송수단의 식별번호
- 운송수단의 명칭
- 출발항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진입 직전의 최종 기착지
- 목적항
- 운송수단의 도착 예정일
- 하역 예정의 포장 개수, 컨테이너 수 또는 벌크 물품의 물량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관세 항구 도착

-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세관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선박 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항공기 도착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육로운송의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함(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세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
- 운송수단의 연료/식량 공급계획
- 운송수단의 적재계획
- 총기류의 목록
- 마약류를 포함하는 치료용 의약품의 목록

○ 수입 물품의 하역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 있음.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물량의 수기 또는 전자목록을 관세청에게 제출

○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PIB)를 준비. 수입신고서 제출 시 관세청이용자요금(Penerimaan Negara Bukan Pajak)을 내는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의 접속이용료로 수출입 활동 자동화를 위한 IT 업무의 전송 및 유지를 위한 비용임
- 수입업자는 PIB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수입관세를 정산하여야 함. 다음은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제세임

- 수입관세 :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0% ~ 170%의 요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VAT) : 요율은 0% ~ 10%
- 사치품 판매세(STLG) : 제품의 유형에 따라 10%, 20%, 35%, 40% 혹은 50% 등이 적용
- 소득세(PPH) : 등록된 수입업자는 2.5%, 미등록된 수입업자는 7.5%

- 위에 열거된 수입관세 및 제세는 PIB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된 외환은행을 통해서 혹은 관세청 서비스사무소를 통해서 납부
- EDI 시스템이 전면시행 되고 있는 Tanjung Priok 항구 및 Soekarno-Hatta 공항에서는 전자결제를 이용하여 수입관세 및 제세를 납부함

○ 화물 검사

- 수입업자가 PIB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 명세,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문서를 검토함.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수입 물품의 인도

- 관세청이 승인하면 수입된 물품이 인도 됨. 수입 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 순서 분류에 따름
- 공식 규정에는 MITA 일반(5 근무일)이외에는, 수입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은 영업일 기준 3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보다 빠름. 실제로 녹색통로의 경우 화물을 인도받기까지 일반적으로 30분이 걸림

1. 적색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M)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됨
2. 황색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 되고, 문서 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SPJK)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됨
3. 녹색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 되고, 문서 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SPPB)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됨
4. MITA 일반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일반 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됨
5. MITA 우선 통로 : 수입 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우선 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됨

○ 물품의 인수

-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 장소)에 보관될 수 있음.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 경우, 임시보관의 최장기간은 1개월이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청이 제거, 폐기, 재수출 혹은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나. 제품별 수입 및 통관 시 유의사항

□ 가공식품

-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 - 특정제품의 수입 관련”에 따라 무역부는 2010년 가을에 188개 식품 및 음료 항목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10자리 HS 코드의 505개 항목에 대한 수입제품의 요구조건을 강화함.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식품 및 음료 제품, 완성된 의류, 신발류, 전자류, 완구류, 전통의약품, 화장품 등이 포함됨
- 동 규정에 따라 가공식품의 수입은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ITPT)를 취득한 수입업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ITPT : 특정제품 수입업자) 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업자 등록번호(API)(사본) 2. 기업 등록번호(TDP)(사본) 3. 납세자 등록번호(NPWP)(사본) 4. NPIK에 특수제품의 수입허가가 표시된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NPIK)(사본) 5. 관세청 등록번호(NIK)(사본) 6. 물량, 제품의 종류, 관세분류/HS 10자리 번호, 도착항 등이 포함된 1년간의 수입계획
신청 처리 소요기간	7 근무일

- ITPT 수입업자들은 매 3개월마다 익월의 15일까지 <http://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수입제품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ITPT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업자 부담으로 선적항에서 제품을 확인 또는 기술 조사하는 것이 요구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TPT가 철회 됨
 - 수입업자가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수입업자가 특수제품을 연속된 6개월 동안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
 - 관세청에서 수입업자가 관세 사안에 대해 위반을 하였다고 보고할 경우
- 수입업자는 ITPT가 철회된 6개월 이후에 새로운 ITPT를 위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BPOM)은 수입 가공식품에 최소유통기간이라는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부과함

제품 유통기한	잔존 유통기한(최소유통기한) 조건
2년 이상	1.5년 이상
1년 이상	8개월 이상
6개월 이상	4개월 이상
3개월 이상	2개월 이상

□ 신선농산물

- 인도네시아 원예농산물 수입허가제도
 - 인도네시아 농업부는 “농업부 규정 제55호/Permentan/KR.040/11/2016”에 의거 100여 종의 신선농산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농업부에 의해 지정된 원예농산물은 농업부의 원예농산물 수입추천서(RIPH : Rekomendasi Impor Produk Hortikultura)를 받은 수입업체들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함
 - 해당 원예농산물의 경우 농업부에서 1년간 수입이 가능한 일정을 발표하며 각 품목별 수입이 가능한 시기에 무역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가능
- 2018년 인도네시아 원예농산물 수입허가 일정
 - 농업부 규정 “제38호/Permentan/Hr.060/11/2017(2017년 11월 발표)”에 의거 반기별로 발표되던 수입허가 일정이 연간 일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종료 시까지 업체별 최대 2회에 한해 수시로 원예농산물 수입추천서(RIPH) 신청이 가능함

- 기존에는 신선농산물 30개 품목(채소류 9개 품목, 과실류 21개 품목), 가공식품 24개 품목이 원예농산물 수입추천서가 필요한 품목에 해당되었으나 위 개정 법안에 의거 가공식품 전체와 냉동 감자, 갈거나 채 썰거나 말린 마늘 2개 품목이 제외된 28개 품목으로 축소됨
- 개정 법안에 의하면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원예 가공식품 리스트가 삭제되어 가공 식품 전체에 대해 원예농산물 수입추천서가 필요 없어졌음(고추장, 주스 포함)

V 허용

X 제한

원예농산물 수입허가 일정

	HS 코드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	-----	-----	-----

채 소 류

1	0701.90.10	가공용 감자, 신선 : API-P	V	V	V	V	V	V	V	V	V	V	V	V
	0701.90.10	가공용 감자, 신선 : API-U	X	X	X	X	X	X	X	X	X	X	X	X
2	0701.90.90	소비용 감자, 신선 또는 냉장 : API-U/P	X	X	X	X	X	X	X	X	X	X	X	X
3	0703.10.19	양파(Bawang Bombay)	V	V	V	V	V	V	V	V	V	V	V	V
4	0703.10.29	붉은 양파(Bawang Merah)	X	X	X	X	X	X	X	X	X	X	X	X
5	0703.20.90	마늘(Bawang Putih)	V	V	V	V	V	V	V	V	V	V	V	V
6	0706.10.10	당근, 신선 또는 냉장	X	X	X	X	X	X	X	X	X	X	X	X
7	0709.60.10	고추	X	X	X	X	X	X	X	X	X	X	X	X

과 실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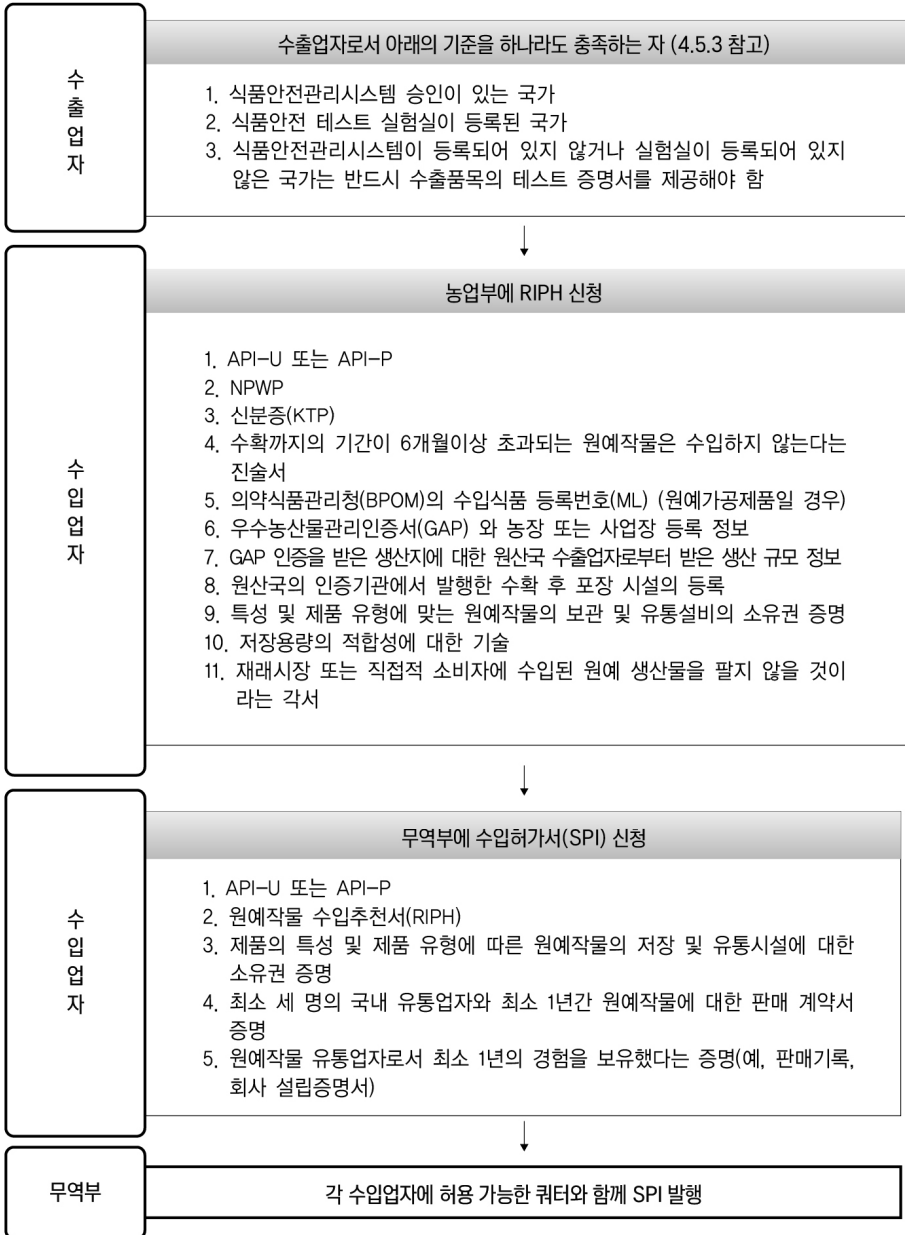
1	0803.10.00	바나나												
2	0803.90.10		X	X	X	X	X	X	X	X	X	X	X	X
3	0803.90.90													
4	0804.30.00	파인애플, 신선 또는 건조	X	X	X	X	X	X	X	X	X	X	X	X

원예농산물 수입허가 일정

	HS 코드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채 소 류														
5	0804.50.20	망고, 신선 또는 건조	X	X	X	X	V	V	V	X	X	X	X	X
6	0804.50.30	망고스틴, 신선 또는 건조	X	X	X	X	X	X	X	X	X	X	X	X
7	0805.10.10	오렌지, 신선	V	V	V	V	X	X	X	X	V	V	X	X
8	0805.21.00	감귤, 신선 또는 건조 (밀감 및 온주마 귤 포함)	V	V	V	V	X	X	X	X	V	V	X	V
9	0805.22.00	클레멘타인, 신선 또는 건조	V	V	V	V	X	X	X	X	V	V	X	V
10	0805.29.00	월킹 및 유사 시트러스 교배종 - 기타	V	V	V	V	X	X	X	X	V	V	X	V
11	0805.40.00	그레이프프루트, 포멜로 포함, 신선 또는 건조	V	V	V	V	X	X	X	X	V	V	X	X
12	0805.50.10	레몬 (시트러스 레몬, Citrus limonum), 신선 또는 건조	V	V	V	V	X	X	X	X	V	V	X	X
13	0805.50.20	라임 (Citrus aurantifolia, Citrus latifolia), 신선 또는 건조	X	X	X	X	X	X	X	X	X	X	X	X
14	0805.90.00	감귤류, 신선 또는 건조 - 기타	V	V	V	V	X	X	X	X	V	V	X	V
15	0806.10.00	포도, 신선	V	V	V	V	V	V	V	V	V	V	V	V
16	0807.19.00	멜론 (수박 포함) 및 파파야(papayas), 신선 - 기타	X	X	X	X	X	X	X	X	X	X	X	X
17	0807.20.00	파파야 (papayas), 신선	X	X	X	X	X	X	X	X	X	X	X	X
18	0808.10.00	사과, 신선	V	V	V	V	V	V	V	X	X	X	V	V
19	0810.60.00	두리안, 신선	X	X	X	X	X	X	V	X	X	X	X	X
20	0810.90.10	롱간(랭갱), 마타쿠칭, 신선	V	V	V	V	V	V	X	X	V	V	V	V
21	0810.90.92	용과, 신선	X	X	X	X	X	X	X	X	X	X	X	X

* API-U : 일반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P : 제조용 수입업자 등록번호

○ 수입허가를 위한 신청절차



- 농업부 규정 No.42/Perma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을 위한 식물검역 행위 관련”에 의거,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다음 4개의 진입항구로만 수입될 수 있음
 - Surabaya, Tanjung Perak(해항)
 - Medan, Belawan(해항)
 - Jakarta, Soekarno-Hatta(공항)
 - Makassar, Soekarno-Hatta(해항)
- * '14년 1월부터 충청남도산 배는 자카르타 판중쁘리옥(Tanjung Priok)항구를 통해 수입이 가능함(관련법규 : No.13/kpts/OT.140/L/01/2014)

□ 수산물

- 수산물 관할부서는 해양수산부(DKP)이며, 수산 양식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 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이 관할함
- 인도네시아에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API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함. 수산물 제품의 수입허가(Suratalzin Pemasukan Hasil Perikanan)도 의무사항임

수산물 수입허가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의 사유 및 목적 2. 학명 및 교역명 3. 유형(10자리 HS 번호) 4. 전체 금액 혹은 물량, 그리고 규격 5. 원산지 국가 6. 운송 수단 7. 도착 항구 8. 수입 일정 9. 수산물 원산지 10. 지역 정부기관의 추천서 11. API-P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HACCP 적용 증명서 ; API-U 수입업자의 경우 SKP(사본)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유효 기간	6개월

- 수산물 수입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가 됨
 - 학명 및 교역명
 - 유형(10자리 HS 번호)
 - 수량 혹은 용량

- 운송 수단
- 원산지 국가
- 입국 항구
- 수입 일정
- 수입 사유 및 목적
- 수입업자는 수산제품의 도착에 대하여 관세청에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활어 수산제품은 도착 최소 2일 전, 선어 수산물은 도착 1일 전에 통보하여야 함
- 검역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관세청에 제출
 - 원산지 국가의 위생증명서
 -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수산 제품이 미생물 오염, 오염물질 잔류량, 기타 유해성 화학물질 등의 오염이 없으며, 냉동제품의 경우 제품의 순중량이 95% 이상이며, 수산 제품이 관련 규정 및 법규에서 정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증 받은 시험 성적서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설명서
 - Good Aquacultural Practice(GAP) 인증서
- 2010년 이후 무역부 규정 “No.52/M-DAG/PER/12/2010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특정 품종 새우의 수입금지 관련”에 따라, 특정 품종의 새우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
 - 냉동 small shrimp 및 common shrimp(HS번호 : 030613), 그리고 활어 small shrimp 및 common shrimp(HS번호 : 030623)
- 수산 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규정 “No.KEP.025/DJ-P2HP/20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산 제품들은 인도네시아에 반입될 수가 없음
 -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수산 제품
 - 계절의 영향을 고도로 받는 수산 제품
 - 인도네시아에 양식되지 않은 수산 제품
 - 인도네시아 어민 또는 농민에 의해 역외에서 생산되는 수산 제품

3. 관세제도

가. 수입관세 납부방법

- 수입세 책정을 위해 관세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10년 160호” 개정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2016년 34호”가 발효됨에 따른 공지

○ 수입관세 납부절차

① 수입업자/관세납부 대행업체(PPJK)가 신청

- 제출서류 : 인보이스, packing 목록, B/L, 수입허가서

② 수입품 통보서(PIB)

- PIB는 수입업자/관세납부 대행업체(PPJK)가 관세청이 제공한 모듈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출

③ 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

④ 관세청에 접수된 신청서는 하기와 같이 4종류로 분류되어 처리됨

구분	효과	대상	비중(%)	기간(일)
Red Line	제품 실물 확인 및 서류 심사	위험성이 높은 수입업자 (신규 수입업자, 규정위반이 많은 수입업자 등) 한시적 수입품, 재수입품	약 5.08%	± 4.76일
Yellow Line	서류 심사	중간 수입업자	약 15.84%	± 2.42일
Green Line	제품 통관 후, 서류 심사	위험성이 낮은 수입업자, 제조 수입업자 대상	약 50.81%	± 0.01일
대표협력사 (MITA)	-	위험성이 낮은 수입업자 관세청 대표 협력사(기확정)	약 28.27%	± 0.01일

※ 비중 : 총 수입품 중 차지하는 비중

나. 인도네시아 수출 시 FTA 특혜관세 수혜조건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 6월 1일부터 한-아세안 FTA협정이 발효·시행되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 받아야 함
- 2016년 상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한-아세안 FTA협정문 부속서 3의 제9조 (직접운송)에서 명시한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만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반 관세가 적용됨

□ 관련 법령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됨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

-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
-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 나. 원산지증명서
 -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 라. 그 밖에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피해발생 재발 방지방안

- 관세청에서는 '16.8.5. 관세청FTA포털(yesfta.customs.go.kr) 공지사항에 “인도네시아 수출시 직접운송 입증서류 구비 철저 안내” 사항을 공지
- 피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는 물품 선적 전 선사와 협의하여 직접 운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 필요
 - 선사가 한국에서 도착항인 인도네시아까지 운송과정 중 경유지 항구에서 물품환적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 않았다는 확인서
 - * 확인서 상에는 선화증권번호, 컨테이너번호, 경유지(국가, 지역)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선사에서 발급하는 선화증권의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할 수 있는 통과선하증권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선박항로는 선적 시 매 건 실제 항로를 명시해야 함

* 선하증권 상에 하기의 문구를 표시(예시)

THROUGH BILL OF LADING :

CARRYING VESSEL IS DIRECT VESSEL FROM BUSAN TO JAKARTA PORT CONTAINER WILL NOT INVOLVED LOADING & UNLOADING AT ANY TRANSIT PORTS.

ROUTE FOR CARRYING VESSEL IS AS FOLLOWS :

BUSAN-ULSAN-SHANGHAI-HOCHIMINH-LAEMCHABANG-JAKARTA

다. 수출입 선납 법인세(PPH 22) 인상

- 경상수지 개선 및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소비재에 대해 수입 선납 법인세를 인상
 - 수입 선납 법인세 10% 해당 품목 : 161개 품목에서 672개 품목으로 511개 품목 증가
 - 수입 선납 법인세 7.5% 해당 품목 : 408개 품목에서 1,077개 품목으로 669개 품목 증가
 - 수출 법인세 해당 품목 : 67개 품목에서 70개 품목으로 3개 품목 증가
-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선납 법인세(PPh 22)를 통관 시 납부하도록 되어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9월 6일에 57개 품목 원자재를 제외,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1,147개의 HS 코드 제품을 대상으로 이 PPh 22를 기존 2.5%에서 품목당 7.5%~10%로 상향 조정을 발표했으며 1주일 후인 9월 13일부터 적용
- 해당 HS 코드 대부분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PPh 인상 대상에 포함되고, 하위 코드별로 인상이 달라 중복되는 항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정보는 해당 법령 조회 필요
- 선납 법인세(PPh 22) 10% 제품군

HS CODE	제품 설명	HS CODE	제품 설명
33	향료, 화장품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34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73	철강제품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84	보일러 기계류
40	고무와 그 제품	85	전기기기 TV, VTR
43	모피, 모피제품	87	일반차량
57	양탄자	89	선박
61	의류(편물제)	90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64	신발류	91	시계 및 시계 부품
65	모자류	92	악기
68	석, 시멘트 석면제품	94	가구류 조명기구
69	도자 제품 식물	95	완구, 운동용품
70	유리 및 유리 제품		

○ 선납 법인세(PPh 22) 7.5% 제품군

HS CODE	제품 설명	HS CODE	제품 설명
9	커피, 향신료	57	양탄자
16	육, 어류 조제품	58	특수 직물
17	당류, 설탕 과자	59	침투 도포한 직물
18	코코아, 초콜렛	61	의류(편물제)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62	의류(편물 제 01외)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63	기타 섬유제품, 냅마
21	기타의 조제 식품류	65	모자류
22	음료, 주류, 식초	69	세라믹 제품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70	유리 및 유리제품
32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34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73	철강제품
35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36	화약류, 성냥	84	보일러 기계류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85	전기기기 TV, VTR
40	고무와 그 제품	87	일반차량
42	가죽제품	90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43	모피, 모피제품	91	시계 및 시계 부품
44	목재, 목탄	95	완구, 운동용품
46	조물 재료의 제품	96	잡품

* 출처 : 재무부 장관령 110/PMK,010/2018

제 3 장 검역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입, 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임.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음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임.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 등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선 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반입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항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

〈인도네시아의 검역절차〉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화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되어질 수 있음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됨
처리	검역대상의 제품은 다음의 경우에 처리가 됨 1.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되었다고 의심이 갈 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억류	인도네시아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억류됨.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 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은 거부됨 1. 검사 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3. 억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폐기	다음의 경우, 제품은 폐기가 됨 1.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3.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4. 운송수단에서 하역 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 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인도	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은 인도가 됨.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 발급이 됨

- 검역절차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제출 또는 작성되어야 함.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름. 일부의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함

1.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2. 식물검역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3. 화물하역 승인서
4. 훈증 증명서
5. 소독 증명서
6. 식물 검역 증명서
7.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8.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2. 품목별 검역절차

□ 신선농산물 검역절차

-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절차는 인도네시아 법안에 설명된 식물 및 종자의 검역 절차와 동일함. 인도네시아 법안 “No.14/2002 - 식물 검역”이 현재까지 가장 종합적인 지침서임.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Step 1

-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7일 이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입계획”이 제출되어야 함.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들은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에 통보하여야 함. 동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함

 1. 전체 금액
 2. 제품의 유형

3. 생산지역 및 상표
4. 운송수단
5. 목적지/경유지 항구
6. 포장재의 종류
7. 컨테이너 번호

Step 2

- 수입업자들은 진입 항구의 검역담당관에게 신선농산물의 도착을 보고하고, 실물을 인도. 검역담당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국내식물검역통과증명서(KT 2)를 발급

Step 3

-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확인
 1. 식물, 종자 진입 허가서
 2. 식물검역증명서
 3. 원산지증명서(C/O)
 4. 운송수단의 도착 계획
 6. 화물 목록
 7. 선하증권 (B/L)
 8. 항공화물운송장 (AWB)

Step 4

- 검역담당관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식물방해생명체(OPTK)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물의 상태에 대한 의료검사 및 위험요인 분석을 실시.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OPTK가 인도네시아 영내에 진입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Step 5

- 검역담당관은, 수입된 신선 과일 및 채소가 OPTK 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면, 표준 검역통관절차를 수행

Step 6

- 수입업자는 검역서비스 비용을 지불

Step 7

- 검역담당관은 미-감염/미-오염 증명서(KT 9)를 발급하여, 제품을 인도

□ 수산물의 검역절차

- 해양수산부는 산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산 제품의 검역제도를 관장함

- “수산물의 검역”인 “인도네시아 법안 No. 15 (2002)” 등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법안 및 규정에 따라, 수산제품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음

Step 1

- 도착 후, 수입업자는 선적된 화물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서류들을 진입항의 검역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Step 2

- 수입업자는 검역담당관에게 검역검사를 요청

Step 3

-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의 완벽성을 검토
 1. 수산제품의 수입허가
 2. 검역청장 명의로 발급된 수산물 검역내용의 지시서 (사본)
 3. 원산지의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수산 검역 분야의 건강 증명서 또는 수산품질 분야의 위생 증명서
 4. 원산지 국가의 적법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C/O)
 5. 수입되는 수산제품이, 수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미생물 오염, 잔류물질, 오염물질, 유해물질 등의 오염이 없고, 냉동상태에서 순중량이 최소 95%를 충족하고 있다는 원산지국가의 시험성적서
 6.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설명서
 7. 수산제품 양식에 관한 GAP 증명서

Step 4

- 서류가 구비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담당관은 서류보완지시와 함께 관세지역에서의 실물조사의 기일을 최대한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수입제품에 대한 서류 확인 및 실물조사가 완료된 이후, 진입항구로부터 운송을 인도한다는 승인서가 발급됨

Step 5

- 검역담당관은 검역행위를 검역시설에서는 3일간, 인가된 실험실에서의 품질실험은 10일간의 기간 동안 수행. 검역담당관은 수산제품 견본이 검역시설에 입고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시료채취를 하여 검역행위를 수행함.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호인증협약(MRA) 혹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한국 수출자에 대한 임상 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1%임

Step 6

- 검역담당관이 진입항구로부터의 화물인도증명서(KI-D15)를 발급하는 것으로 검역 절차는 종료됨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식품 라벨링은 규정 “No. 69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 2010년에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인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 (BPOM)은 관세청 회람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정을 발표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1999)에 따라, 아래의 최소한의 정보를 표기해야 함
 - 제품의 명칭
 - 미터법에 의한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등록번호 성분표 혹은 성분 목록
 - 제품의 유통기일
 - 생산일자 혹은 생산번호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됨
- 식품 라벨링의 구체적 내용 이외에, 소비자 보호법(1999)은 오해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일반 금지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동 금지조항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비윤리적 기업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관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포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식품에 “halal”을 표기하고자 하면 동 내용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함
 -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halal인증기관이 발급한 Halal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함

2. 표시사항

☐ 포장식품 라벨링 요구조건

- 제품의 유형에 따라 식품 라벨링 요구조건이 다름
- 라벨링 요구조건은 소매목적의 포장식품에만 해당되며 다량 구매 혹은 업소/기관용 식품제품은 방사선조사 및 식품첨가제의 규정만 적용 받음

-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은 제품의 영양소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 영양소 정보표시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름.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양에 기초한 전체 에너지양, 소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설탕,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총량
 - 건강혜택에 관한 주장은 제품의 성분 및 일일 섭취량에 근거해야 하며, 암시적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음
- 영양 및 건강 홍보 문구는 영양소 주장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

구분		세부내용
영양 내용		제품의 1회 섭취량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의 최소 5%를 포함할 경우
단백질 증강		제품의 칼로리량 중 20% 이상이 단백질이며, 1회 섭취량에 최소 10그램의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칼로리	낮은 칼로리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저 칼로리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40kcal 이하인 경우
	무 칼로리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5kcal 이하인 경우
지방	낮은 지방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3그램 이하이거나, 1회 섭취량이 50그램 이하일 때 총 50그램의 경우
	무 지방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0.5그램 이하일 경우
포화 지방	낮은 포화지방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포화지방이 1그램 이하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 지방의 칼로리가 15% 미만일 경우 또는 스낵 혹은 음식제품의 100그램당 포화지방이 1그램 이하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0% 미만의 경우
	적은 포화지방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무 포화지방	제품이 100그램/100ml 당 포화지방 함량이 0.5그램 이하일 경우
콜레스테롤	낮은 콜레스테롤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25% 이상 적고,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그램 이하일 경우
	저 콜레스테롤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0밀리그램 이하이고, 포화지방 함량이 2그램 이하이거나 또는 1회 섭취량이 50그램 이하일 때 총 50그램의 경우
	무 콜레스테롤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밀리그램 이하일 경우

- 건강 홍보 문구는 적법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기능성 주장만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표현’과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다음과 같음

허용되는 표현	허용되지 않는 표현
칼슘은 튼튼한 뼈 및 치아의 발달에 도움이 됨 단백질은 신체조직의 발달 및 회복에 도움이 됨 철은 적혈구 형성의 요인임 비타민 E는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줌	자연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은 건강 및 활력을 향상시켜줌 아동 및 유아용 DHA 함유 식품은 뇌세포 및 지능의 증가에 도움이 됨 간장은 IQ를 향상시킴

○ 제품별 라벨링 요구조건 예시

구분	라벨링 표기사항
돼지고기가 함유된 식품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돼지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의 표기
가당 연유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붉은 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i”(주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의 표기
알콜 음료	“MINUMAN BERALKOHOL,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21세 미만 및 임신부에 의한 사용 금지) 라는 문구 표기
방사선이 조사된 포장식품	“RADURA: PANGAN IRADIASI”(방사선조사 식품)의 문구, 방사선조사의 이유 및 해당 로고가 표시되어야 함. 또한, 추가적으로 방사선시설의 상호 및 주소, 방사선조사의 년월 및 방사선조사가 실시된 국가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야 함. 식품이 재-방사선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라벨링에는 “TIDAK BOLEH DIRADIASI ULANG”(재-방사선조사 불가)의 문구 표기
유전자 조작 식품	“PANGAN REKAYASA GENETIKA” (유전자조작식품)의 문구 표기

□ 라벨링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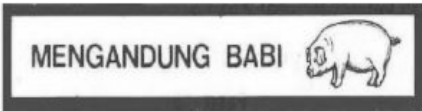
① 제품명 ② 구성성분 ③ 중량 ④ 수입식품등록번호 ⑤ 제조업체 정보 ⑥ 수입업체 정보	
---	--

Voedingswaarden • Valeur nutritionnelle • Nutrition Facts	100g	25g	% GDA* 25g
Energie • Valeur énergétique • Energy value	507 kcal	126.8 kcal	6.3%
Eiwitten • Protéines • Protein	6.6 g	1.7 g	3.3%
Koolhydraten • Glucides • Carbohydrates	65.7 g	16.4 g	6.1%
waarvan suikers • dont sucres • of which sugars	47.1 g	11.8 g	13.1%
Vetstoffen • Lipides • Fat	24.3 g	6.1 g	8.7%
waarvan verzadigde vetzuren • dont acides gras saturés • of which saturated fat	12.9 g	3.2 g	16.1%
Voedingsvezels • Fibres alimentaires • Dietary Fiber	0.6 g	0.2 g	0.6%
Natrium • Sodium • Sodium	0.2 g	0.1 g	2.1%

*GDA = Dagelijkse Voedingsrichtlijn voor een volwassene op basis van een gemiddelde behoefte van 2000 kcal. • *RPJ = Repères Nutritionnels Journaliers pour un adulte sur base d'un apport moyen de 2000 kcal. • *GDA = Guideline Daily Amount for an adult based on an average daily diet of 2000 kcal.

❑ 돼지고기 표시관련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이므로 식품 돼지고기 성분 함유 유무는 표기는 중요한 이슈 사항임
- 인도네시아 돼지고기 표시 관련 규정
 -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및 식품의 라벨/표시에 유통기한, 알코올 함유 및 특정원료 정보부착 관련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 규정(No.HK.03.1.23.06.10.5166)에 근거하여 특정원료를 함유한 의약품, 전통약품, 식품보조제, 식품은 특정원료 함유에 대한 정보 표시/라벨이 의무임
 - 돼지원료가 함유된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는 “돼지 함유”라는 표시를 흰 바탕 위 검은색 네모 칸 안에 검은색 글씨로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품은 빨간 글씨로 부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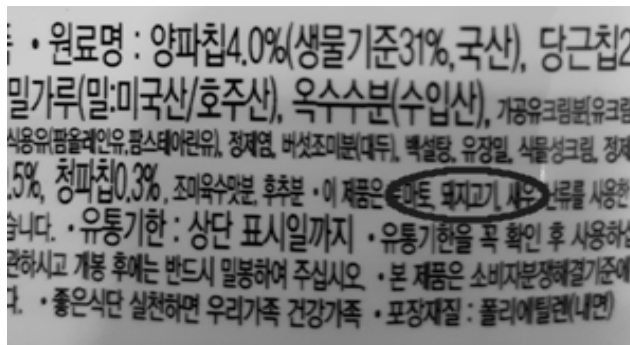
	
의약품, 전통약품, 건강보조제	식품

-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제품” 표기로 인한 문제 발생

- 수출용 포장재가 아닌 내수용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제품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규정에 따라 표시된 한글 문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6-149호)」에 따르면 돼지고기, 난류, 우유 등 21가지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한 경우 한국은 알레르기 유발 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였지만, 인도네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돼지고기가 종교적인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와는 별개의 사안임



▲ 돼지고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문구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에 등록된 한국 수입식품 중 다수에 위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소비자들에 의해 문제 제기 가능성 상존
- 향후 재등록 시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 규정에 의거 아래의 문구 또는 “돼지 함유”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식품 수출확대에 큰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음

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

▲ 해석 : 제조과정 중 돼지에서 나온 원료와 접촉되었음

제 5 장 수입제도 특이사항

1. ML(수입식품등록) 제도

☐ Product Registration(ML Number : 수입식품등록번호)

- 소비자보호법(1999)에 따라 모든 수입식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BPOM)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해야 함. 수입식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음
-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ML을 발급받아야 함.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음
 -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
 - BPOM 등록,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의 특수목적에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

Makanan Luar (제품등록) 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식품 견본 2. 해당할 경우, 라벨 (10매) 및 카탈로그 3. 재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재포장을 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제품 생산공장의 추천서 4. 라이선스 생산의 경우,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라이선스를 보유한 해외공장의 추천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생산공장의 추천서, 위생증명서 및 법규에 따른 방사능 무오염 증명서 6. 완성된 제품등록 서류 7. 다음과 같은 서류 - 양식 A : 식품에 대한 일반정보,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공장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양식 B : 제품의 성분 및 품질, 그리고 포장방법 - 양식 C : 내포장의 청결처리방법 및 불합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과정 - 양식 D :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 절차 - 양식 E :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견본의 내용
신청 처리 소요 기간	평균 3~6개월
유효 기간	제품은 매 5년마다 재등록

- BPOM에서 제품등록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Form M8을 발급함.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신청내용은 Form M9과 함께 반려됨
- 모든 제품은 BPOM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신청자 부담으로 시험검사를 거침

- 모든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BPOM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함
 - Form M1 : 제품등록신청이 승인이 된 경우
 - Form M2 : 제품등록신청이 조건부로 승인된 경우
 - Form M3 : 제품등록이 거부된 경우

□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등록 및 실험실 등록

- 수출국가의 식품안전 담당기관이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을 받아야 신선농산물 수출가능
 - ①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 ② 식품 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 수출국가가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에 대해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승인을 받았을 경우 (수출업체)는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에 제출하고 수출하면 됨
 - ①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신고서만 제출
 - ② 식품안전성 검사실험실을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신고서 / 분석증명서(COA)을 발급받아 제출
- 안전성검사 실험실이 등록된 국가로부터의 신선농산물 수출 절차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안전성검사 실험실로 등록됨

- 분석 신청(수출업체) 및 시료 수거(농관원 지원·사무소)
 - 농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검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
 - 안전성 담당자가 신청 시료를 수거하여 지원 분석실로 송부



- 분석결과 통보(농관원 지원)
 - (수출 적합) 지원 품질관리과에서 분석증명서 발급
 - (수출 부적합)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

↓(수출 적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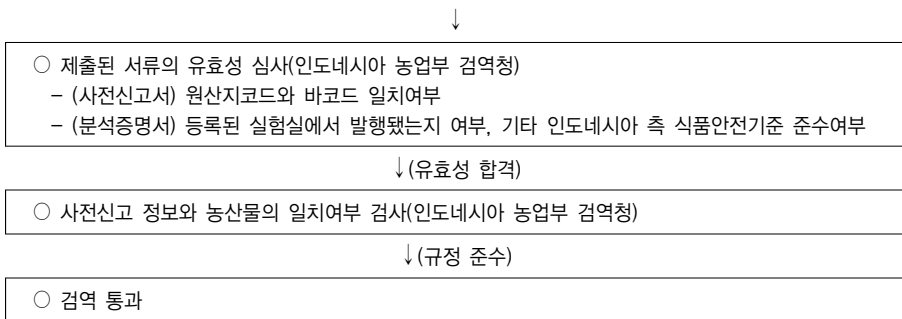
- 사전신고(수출업체)
 - 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IAQ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http://www.karantina.deptan.go.id/> 혹은 <https://notice.karantina.pertanian.go.id/>)
 - * 인도네시아 도착 전 경유를 하는 경우, 경유를 위한 사전신고서 함께 신청



- 사전신고서 발급(인도네시아 농업부 검역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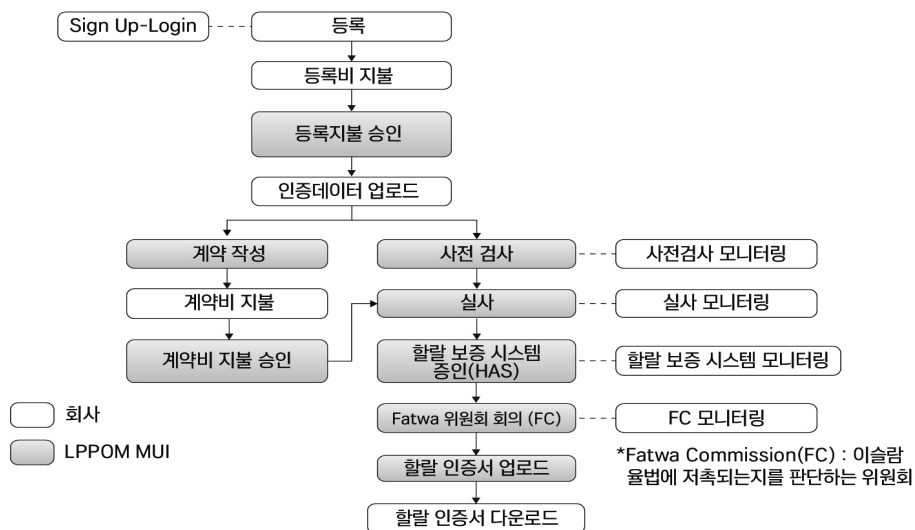
- 사전신고서(경유지 사전신고서 포함)와 분석증명서 제출하고 수출



2.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

□ 할랄(Halal) 인증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은 비정부기관인 MUI의 부속기관인 LPPOM MUI에서 발급
 - LPPOM MUI는 중앙기관과 33개의 지역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에 할랄 라벨 부착은 권고사항으로 할랄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이 가능한 상황임
- 다만, 축산물의 경우 축산법 2009년 18호 58-4에 의거 할랄 인증이 필요
- 할랄 인증 절차



- 할랄 인증 필요서류
 - 할랄보증시스템 자체 매뉴얼
 - 할랄인증 신청제품의 생산절차 플로우 차트
 - Pork Free 시설 증빙 문서
 - 제조공장을 제외한 생산시설 주소 목록 (예) 창고, 사전생산 준비시설
 - 제조공장 정보
 - 제품 및 원료 정보
 - 원재료 공급업체 정보
- 할랄 인증 비용 및 기간
 - 할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품목 및 회사별로 상이
 - * 할랄 인증 심사단 교통/숙박비도 할랄 인증 신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 할랄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또한 제품별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 3~6개월 소요됨(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약 3개월~1년 소요)
- 할랄 인정 범위
 -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완제품은 인도네시아 MUI 할랄 부착만 허용됨
 - 원재료의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MUI)에서 인정하는 해외 41개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 모두 인정됨
 - * 한국이슬람증앙회(KMF)는 MUI 인정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할랄 인증을 발행한 해당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인정
- MUI할랄 로고 및 인증서

 XXXXXXXXXXXXXX (할랄 인증번호)	
MUI 할랄 로고	MUI 할랄 인증서

☐ 할랄(Halal) 인증 여부 표기의 의무화

- 2019년 할랄 인증 의무화 예고
 -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하였음. 해당 법령에 주요 내용은 2019년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화 하고 기존에 민간기관(MUI)에서 실시해오던 할랄 인증 업무를 정부기관(BPJPB)으로 이관예정

- 법률에 적용되는 제품은 식음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어지는 물건으로 할랄 인증의 범위가 확대됨
- 2014년 발표 당시 이번 법안의 정식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 시행령은 2년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세부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BPJPH)
 - 할랄 인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BPJPH)은 2017년 10월 신설된 상태이지만 아직 그 기능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음

할랄인증청(BPJPH) 기능	
- 할랄제품 보장 정책 수립 - 할랄제품 보장 규정, 표준, 절차 확립 - 할랄 인증 발급 및 취소 - 할랄 인증 관련 공청회, 교육, 홍보	- 할랄감사기관(LPH) 인가 - 할랄감사관 등록 - 할랄감사관 양성 -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감독

-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절차
 - ① 할랄 인증 신청서 작성 후 할랄인증청(BPJPH)에 제출
 - ② 할랄인증청(BPJPH)은 할랄감사기관(LPH)에 검사요청
 - ③ 할랄감사기관(LPH) 소속 할랄감사는 검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④ 할랄감사기관(LPH)은 결과를 할랄인증청(BPJPH)에 전달
 - ⑤ 할랄인증청은 MUI(현 할랄인증기관)에 검사결과와 함께 윤리적 할랄성(FATWA) 여부 검토 요청
 - ⑥ MUI 검토 결과 문제없을 시 BPJPH에서 할랄 인증 발급

□ 선적 전 검사제도

- 선적 전 검사제도는 무역부 장관이 지정한 감독관이 선적항에서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제도임
- 검사기관이 물품의 명세와 HS 코드, 선적시기, 선적항, 목적항 등을 기록한 Surveyor Report(LS)를 발행하며, 수입업자는 통관 시 해당 LS를 제출해야 함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철강제품과 같은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인 SUCOFINDO에서 운영 중으로 SUCOFINDO는 행정 인증과 기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함.

○ 선적 전 검사 신청절차

- ① 수입업자가 www.app-vpti.com 웹사이트를 통해 인증요청서(Verification Request)를 작성하여 제출함
- ② 인증요청서를 오전 12시 이전에 제출할 경우, 해당 인증요청서를 기초로 하여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면, 인증주문서(Verification Order)가 신청당일에 발급됨. 인증요청서를 오전 12시 이후에 제출할 경우, 인증주문서는 오후 또는 익일에 발급됨
- ③ 인증주문서는 검사비용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KSO 사무소로 보내짐. 해외의 KSO 사무소는 정보 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를 수출업자/제품 판매자에게 보냄. 검사날짜가 확정되면 해외 KSO 사무소는 조사관을 수출업자가 알려준 장소로 보냄
- ④ 해당 국가에서의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해외 KSO 사무소는 Surveyor Report (LS) 발급을 위한 인증결과보고서를 발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최종 서류(수출업자의 Final/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Details, Lab Test, Certificate of Origin 등)를 받음. 최종 서류가 구비되지 않으면, Surveyor Report(LS)는 발급되지 않음
- ⑤ Surveyor Report(LS)는 최종 서류가 승인된 이후에 발급됨
- ⑥ Surveyor Report(LS) 발급 후, Surveyor Report(LS)는 우편을 통해 수입업자 주소로 보내지거나 자카르타 KSO 사무소에서 수입업자가 직접 찾아감

3.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SNI)

□ 인증 개요

- 인증명칭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NI(Standar Nasional Indonesia)
- 법적근거 : 대통령령 2000년 제 102호
- 분류
- SNI는 인증 의무가 있는 강제인증 품목과 인증의무가 없는 자발적 인증 품목으로 구분
- 품목의 SNI 리스트 포함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광물 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

○ SNI 인증 마크



□ 인증 절차 및 기준

○ 인증 절차

1) SNI 인증 신청

- LSPro(Product Certification Bodies)에 규격 인증 신청서를 인증 비용과 함께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는 영어로 작성 가능함. 단, 인허가 관련 서류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함

2) LSPro의 심사

- 서류 심사 후, LSPro는 신청회사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검사관(Sample test officer)과 공장 실사 담당관(factory auditor)을 지정
- 공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장 실사는 통상 3일이 소요되며 2~3명의 공장 실사 담당관과 1명의 샘플 테스트 검사관이 파견됨
- 신청 회사가 해외에 소재할 경우 실사 담당관의 교통비와 체류비용은 회사가 부담

3) Sample Test

- 검사관이 수집한 샘플은 SUCOFINDO 등과 같은 LSPro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 시험기관에 넘겨져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사
- 인도네시아의 SNI는 국제 표준규격 ISO 9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ISO 9000 인증을 보유했을 경우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4) SNI 인증서 발급

- 신청 품목이 SNI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LSPro는 신청사에 SNI 인증서를 발급. SNI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서가 발급한 후에도 시판되는 제품의 인증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

○ 인증기준 : 국제표준 ISO 9000과 유사하나 품목별로 상이

· SNI인증 필요서류

- ① 인증 신청서
- ② 제품 설명서
- ③ 타 기관에서 취득한 인증서(있는 경우)
- ④ 기타 인증기관 요구서류

□ 소요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통상 40일 소요.(시험기관 조사 소요시간 제외)

* 단, 시험기관 조사가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음

- 소요비용

- 신청 단계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 함
- 만약 2명의 검사관이 한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2박 3일 기준 순수 행정비용(항공료, 일당, 식대 등 제외)만 약 5,000만 루피아(약 500만 원)가 소요되며
실사 담당관의 교통비(항공료)와 체류비용 또한 신청 회사가 부담해야 함

□ 시행배경

- 당초 SNI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격을 마련해 생산자의 품질 혁신을 도모하고 유해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음
- 대통령령 2000년 제 102호 12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님

□ SNI 인증 의무 품목

No	품 목	SNI 번호	Regulation
1	탈염수	SNI 6241:2015	78/M-IND/PER/11/2016
2	광천수	SNI 3553:2015	78/M-IND/PER/11/2016
3	순수 광천수	SNI 6242:2015	78/M-IND/PER/11/2016
4	듀 광천수	SNI 7812-2013	78/M-IND/PER/11/2016
5	백설탕	SNI 3140,3:2010/Amd,1,2011	69/PERMENTAN/OT,140/6/2013
6	정제 설탕	SNI 3140,2-2011	83/M-IND/PER/11/2008
7	코코아 분말	SNI 3747:2009	60/M-IND/PER/6/2010
8	인스턴트 커피	SNI 2983:2014	87/M-IND/PER/10/2014

No	품 목	SNI 번호	Regulation
9	식용 야자유	SNI 7709:2012	87/M-IND/PER/12/2013
10	밀가루	SNI 3751:2009	35/M-IND/PER/3/2011 87/M-DAG/PER/10/2015
11	인공 감미료	SNI 01-6993-2004	HK.00.05.5.1.4547
12	병에 든 생수	SNI 01-3553-2006	49/M-IND/PER/3/2012
13	요오드 첨가 식염	SNI 01-3556-2000	29/M/SK/2/1995
14	냉동 연육	SNI 01- 2694.1 - 2006	KEPUTUS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NOMOR KEP.61/MEN/2009
15	냉동 도미 필레	SNI 01- 2696.1 - 2006	KEP.61/MEN/2009
16	냉동 새우	SNI 01- 2705.1 - 2006	KEP.61/MEN/2009
17	냉동 개구리 뒷다리	SNI 01-2706.1 - 2006	KEP.61/MEN/2009
18	냉동 참치	SNI 01-2710.1- 2006	KEP.61/MEN/2009
19	냉동 랍스타	SNI 01-2711 - 1992	KEP.61/MEN/2009
20	냉동 가다랑어	SNI 01-2733.1- 2006	KEP.61/MEN/2009
21	냉동 삭스핀	SNI 01-3229 - 1992	KEP.61/MEN/2009
22	냉동 가리비	SNI 01-3230 - 1992	KEP.61/MEN/2009
23	냉동 간새우	SNI 01-3457.1-2006	KEP.61/MEN/2009
24	냉동 삶은 간 새우	SNI 01-3458.1-2006	KEP.61/MEN/2009
25	냉동 조개 고기	SNI 01-3460-1994	KEP.61/MEN/2009
26	냉동 틸라피아 필레	SNI 01-4103.1-2006	KEP.61/MEN/2009
27	냉동 참치 허릿살	SNI 01-4104.1-2006	KEP.61/MEN/2009
28	냉동생선	SNI 01-4110.1-2006	KEP.61/MEN/2009
29	냉동 참치 스테이크	SNI 01-4485.1-2006	KEP.61/MEN/2009
30	냉동 메카 스테이크	SNI 01-4871.1-2006	KEP.61/MEN/2009
31	생선용 얼음	SNI 01-4872.1-2006	KEP.61/MEN/2009
32	냉동 생선 빵	SNI 01-6163-1999 87/M-DAG/PER/10/2015	KEP.61/MEN/2009
33	냉동 도미	SNI 01-7260.1-2006	KEP.61/MEN/2009
34	냉동 농어	SNI 01-7262.1-2006	KEP.61/MEN/2009
35	냉동 청새치 허릿살	SNI 01-7263.1-2006	KEP.61/MEN/2009
36	냉동 청새치 스테이크	SNI 01-7264.1-2006	KEP.61/MEN/2009
37	냉동 어묵	SNI 01-7266.1-2006	KEP.61/MEN/2009

No	품 목	SNI 번호	Regulation
38	건멸치	SNI 01-2708-1992	KEP.61/MEN/2009
39	어류 가미 크래커	SNI 01-2713-1999	KEP.61/MEN/2009
40	새우 크래커	SNI 01-2714-1992	KEP.61/MEN/2009
41	건조 젓갈	SNI 01-2721-1992	KEP.61/MEN/2009
42	건해삼	SNI 01-2732-1992	KEP.61/MEN/2009
43	건해조류	SNI 01-2690-1998	KEP.61/MEN/2009
44	횡감 참치	SNI 01-2693,1-2006	KEP.61/MEN/2009
45	생새우	SNI 01-2728,1-2006	KEP.61/MEN/2009
46	활어	SNI 01-2729,1-2006	KEP.61/MEN/2009
47	활 도미	SNI 01-7529,1-2006	KEP.61/MEN/2009
48	활 농어	SNI 01-7561,1-2006	KEP.61/MEN/2009
49	캔 처리된 게살	SNI 01-4225-1996	KEP.61/MEN/2009
50	게살(청색꽃게) 캔	SNI 01-6929,1-2002	KEP.61/MEN/2009
51	토마토 소스 정어리 캔	SNI 01-3548-1994	KEP.61/MEN/2009
52	새우 캔	SNI 01-3917-1995	KEP.61/MEN/2009
53	달팽이 캔	SNI 01-3918-1995	KEP.61/MEN/2009
54	조개 캔	SNI 01-3919-1995	KEP.61/MEN/2009
55	오징어 캔	SNI 01-7265,1-2006	KEP.61/MEN/2009
56	항공운송 활 장어	SNI 01-4853-2006	KEP.61/MEN/2009
57	항공운송 관상용 어류	SNI 01-4854-2006	KEP.61/MEN/2009
58	항공 운송 활어	SNI 01-4855-2006	KEP.61/MEN/2009
59	항공운송 꽃게	SNI 01-4856-2006	KEP.61/MEN/2009
60	항공운송 거북이	SNI 01-4857-2006	KEP.61/MEN/2009
61	항공 운송 활어	SNI 01-4858-2006	KEP.61/MEN/2009
62	항공운송 뱀	SNI 01-4859-2006	KEP.61/MEN/2009
63	참치 캔	SNI 8223:2016	KEP.58/MEN/2016
64	고등어 캔	SNI 8222:2016	KEP.58/MEN/2016
65	정어리 캔	SNI 8222:2016	KEP.58/MEN/2016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필리핀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부록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193
	제2장 통관제도	194
	1. 관리 · 법률체계	194
	2. 통관절차	207
	3. 제출서류	222
	4. 관세제도	223
	5. 통관 관련 기타 참고사항	226
	제3장 검역제도	232
	1. 관리 · 법률체계	232
	2. 품목별 검역절차	238
	3. 제출서류	240
	제4장 라벨링 제도	241
	1. 관리 · 법률체계	241
	2. 표시사항	242
	3. 라벨링 샘플	246
	제5장 부록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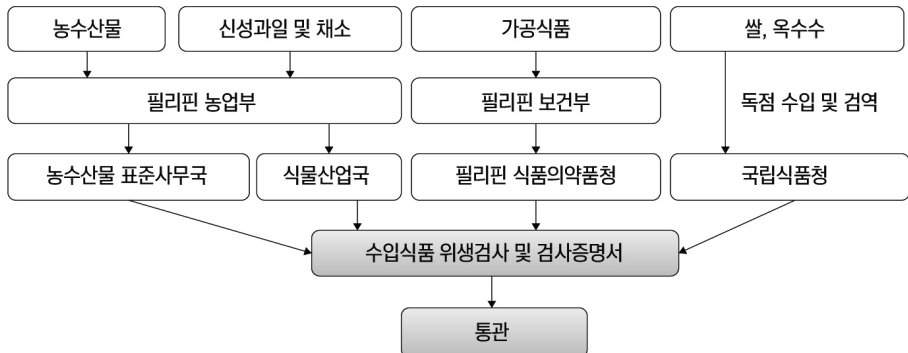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가. 필리핀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프로세스	주요 내용	비고
1	수출계약	· 거래선(바이어)발굴 · 계약진행	
2	서류준비	· 포장명세서 · 상업송장 · 세관 수출신고서 · 선하증권 · 수출 라이선스 · 이외 기타 필요 서류 등	· 라벨링 필수 기재사항 - 상품명 - 원재료명 및 함량 - 영양성분표 - 용량 - 생산자 및 유통업체 정보
3	선적/출항	· 수출통관 · 포워딩 업체 지정 · 운송	· 주요항만: 마닐라, 세부
4	수입 신고/검역	· 수입 신고는 단일통관 창구를 통해 신고, 검역은 품목별로 농수산물 표준사무국(BAFPS)과 필리핀 식품 의약품(FDA)에서 진행	· 필리핀 농수산물 표준사무국(BAFPS) : 신선식품 검역 및 모니터링을 수행함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 식품 검역과 위생 및 안전을 관리 감독함
5	세금납부	· 세금 또는 담보 제출 후 반출 가능	· 필리핀 관세국(BOC) : 세관 규정, 세율 조회, 항만 정보 등 안내
6	통관/국내 유통	· 세관 서류 제출 · 현지 바이어 화물 인수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필리핀 농수산물 수출입 프로세스 인포그래픽, 2017

나. 통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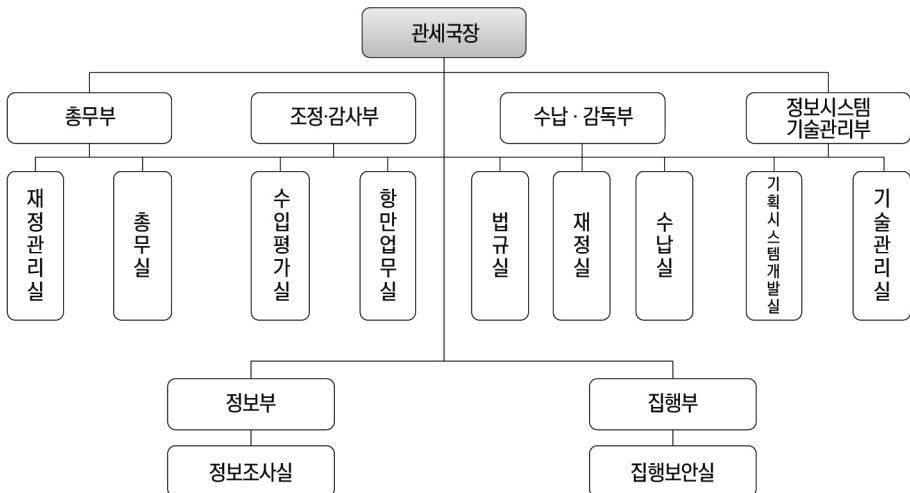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필리핀 농수산물 수출입 프로세스 인포그래픽, 2017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필리핀 관세국 (Bureau of Customs)
 - 필리핀 관세국은 한국의 관세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필리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에 속해 있음
 - 주요 업무
 -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제세의 징수를 비롯하여 각종 화물의 입출항 관리, 밀수행위의 방지, 수출 산업의 지원, 필리핀 관세법의 적용, 국제 무역상의 편의 등의 세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조직도
 - 필리핀 관세국은 관세국장을 중심으로 총무부, 조정·감사부, 수납·감독부, 정보·집행부, 정보시스템 및 기술관리부 등의 중앙 부처와 행정구역별 15개 지역 세관(Collecting Districts)으로 구성됨

〈필리핀 관세국 조직도〉



* 출처 : 한국조세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필리핀, 2015

- 부서별 업무

- 총무부(International Administration Group)는 관세국장을 대변하고 관세국 내부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재정관리실(Financial Management Office)과 총무실(Human Resources Management Division)을 둠
- 조정 및 감사부(Assessment and Operations Coordination)는 수입 상품의 가치에 대한 정부를 수집하고 발표하며, 평가 관리, 수출품의 최종처리, 창고업무/운영지원, 경매 및 처분 활동 등을 담당하며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1) 조정·감사부 산하에는 수입평가실(Import & Assessment Service)과 항만업무실(Port Operation Service)이 있음
 - 2) 수입평가실 산하에는 평가 및 분류과(Valuation & Classification Division), 분석감시과(Assessment Coordination & Monitoring Division), 보세조정과(Warehouse Coordination & Monitoring Division)가 소속됨
 - 3) 항만업무실 산하에는 경매 및 화물처분과(Auction & Cargo Disposal Monitoring Division), 수출조정과(Export Coordination Division), 항만업무 조정과(Port Operations Coordination Division)가 소속됨
- 수납 및 감독부(Revenue Collection Monitoring Group)는 세입회계, 통계 수집 및 분석, 담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산하에 법규실(Legal Service), 재정실(Financial Service), 수납실(Collection Service)을 둠
- 정보부(Intelligence Group)와 집행부(Enforcement Group)는 필리핀 세관과 경제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 감사와 경찰권 발동을 담당함
- 정부시스템 기술관리부(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Technology Group)는 관세국의 IT설비 및 업무를 관리함

- 필리핀 지역 세관(Collecting Districts)

- 필리핀에서는 세관이 ‘Collecting Districts’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사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세관장을 ‘District Collector’라고 지칭함
- 세관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리 감독, 국제 우편물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
- 수도권(NCR, National Capital Region)내에 마닐라(Manila)항 세관, 마닐라 국제 컨테이너항 세관, 니노이 아키노(Ninoy Aquino)국제공항세관의 3개 세관이 있음

〈필리핀의 세관〉

NO	세관명
1	Port of San Fernando
2	Port of Manila
2-1	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Port
3	Ninoy Aquino Int'l Airport
4	Port of Batangas
5	Port of Legaspi
6	Port of Iloilo
7	Port of Cebu
8	Port of Tacloban
9	Port of Surigao
10	Cagayan De Oro
11	Port of Zamboanga
12	Port of Davao
13	Port of Subic
14	Port of Clark
15	Port of Aparri
16	Port of Limay

* 출처 : 필리핀 관세국(<http://customs.gov.ph/wp-content/uploads/2018/10/DC10292018.png>)

-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TC)
 - 필리핀 관세위원회는 필리핀의 행정 및 입법 기관을 대상으로 관세 및 관련 주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필리핀의 각 협정별 관세율정보 등을 제공함
 - 주요 역할
 - 필리핀 관세법 및 세관법 집행 및 관리
 - 필리핀 관세정책을 개발 및 관련기관에 자문 제공
 - 덤핑 및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 및 심의
 - 긴급수입 제한조치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정부기관에 자문을 제공

- 필리핀 국세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
 - 필리핀 국세국은 필리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산하에 있는 부서로, 필리핀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기관임
 - 조세, 수수료, 요금 등의 각종 세금을 징수하며, 조세법에 따라 세금 징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함
 - 필리핀에서 수입을 하려면 국세부(BIR)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를 등록해야 함
- 수입서비스국(Bureau of Import Services, BIS)
 - 필리핀 통상산업부(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of Philippines, DTI) 산하 수입서비스국(BIS)은 수입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수입규제 품목 / 민감 품목 등의 수입절차를 관리하며 덤핑이나 상계관세,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의 조치를 담당함
 - 주요 업무
 - 자율 수입 품목의 수입량(import level) 및 가격 관리, 수입량의 예측 및 통계 분석, 필리핀 관세 체계 분석, 수입거래 관리 등을 담당
 - 무역구제에 대한 결정 및 해당 물품 관련 수출업자 지원
 - 수입 관련 데이터 생성, 연간 필리핀 수입에 대한 보고, 수입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수입 물품 가격 입증 업무 및 수출거래 가치에 대한 정보 관리
 - 필리핀 관세국 및 각 산업부문들과 협력하여 계정 분류 오류 및 가격 저평가(undervaluation) 관리
 - 외국의 물품 공급자 및 수입자의 이의제기사항에 대한 관리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은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 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모든 수입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청에 등록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청은 부정표시 및 불량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판매용으로 진열된 모든 미등록 수입식품 및 의약품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필리핀 식품 및 의약품국(Bureau of Food and Drugs, BFAD)
 - 식품 및 의약품국(BFAD)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의 산하 기관으로 가공 식품의 안전, 품질, 보관, 라벨링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며, 수입 항구에서의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수입 감시 역할을 수행함

- 필리핀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
 - 필리핀 국립 식품청(NFA)은 일반 쌀의 필리핀 독점수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옥수수의 수입에도 관여하고 있는 식품 유통 관련 기관임. 필리핀에서 민간 곡물 유통의 경우 국립식품청이 발급한 수입허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급 또는 특상품 쌀을 수입할 수 있음

나. 법률체계 및 관련 규제

- 식품 수입 관련 법령
 - 필리핀에서 식품 수입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음
 - 필리핀 관세 및 세관법(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 식품안전법(Republic Act No. 10611)
 - 식품 · 의약품 · 화장품법(Republic Act No. 9711)
-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
 - 수입자는 필리핀 국제국(BIR)의 고객등록 시스템(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 CPRS)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수입면허(CAS)를 획득해야 함. 등록 시 연간 등록비 및 사후 갱신 비용을 지불해야 함
 - 해당 수입 물품이 허가/규제/금지품목 해당 여부 및 규제 내용을 수입서비스국(BIS, Bureau of Import Services)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함
- 품목별 수입허가서
 - 수출국에서 제품을 발송하기 전에 필리핀 현지 수입업체는 영업허가증(LTO) 또는 위생/검역증명서(SPSIC)를 발급받아야 함
 - 즉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수입업체가 필요함. 수입업체는 필리핀의 발급 기관의 규정에 준수하여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함

〈품목별 수입허가서 발급기관〉

품목	발급기관	발급서류	관련규정
가공식품	식품의약품청	영업허가증 (License to Operate, LTO)	Administrative Order 2016-003 FDA Circular 2016-004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농업부	위생/검역 수입 통관증명서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SPSIC)	Administrative Order 9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국가정보 아세안 기초세우기, 2018

- 영업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
 - LTO 발급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청(FDA)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작성한 통합 신청서와 수수료 지급 증명서, 업체 등록 증명서, 업체 소재지 증명서, 제품 리스트, 위치도,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배치도가 필요함
 - 통합신청서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홈페이지 양식 및 〈부록1〉 참조
 - 업체 등록 증명서
 - 개인기업 : 무역산업부(DTI)에 등록한 유효한 인증서
 - 법인 또는 동업회사 :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한 유효등록증, 정관, 해당하는 관련 문서
 - 협력회사 : CAD(Cooperative Development Authority)의 인증서
 - 업체 소재지 증명서
 - 신청서에 작성된 시설 또는 주소를 지원자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 사용 중인 시설의 공증된 임대계약서가 필요함
 - 신청서에 작성된 시설 또는 주소를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 권리증서 사본이 필요함
 - 제품 리스트
 - 제조, 가공 또는 재포장된 제품의 브랜드 이름 목록
 - 유통, 판매되는 제품 리스트
 - 1) 제품이 제조되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 2) 제품 제조회사가 다른 경우, 제품이 마지막으로 포장되는 시설의 회사 이름, 주소
 - 3) 제품이 마지막으로 포장되는 곳과 제조되는 곳이 다른 경우, 제품이 마지막으로 가공되는 시설의 회사 이름과 주소
 - 4) 수입된 제품의 경우 제품 식별 번호의 첨부가 필요함
 - 위치도
 - 주소, 랜드마크, 주변환경, 빌딩의 종류를 나타내는 그림, GPS
 - 1) 제품 제조업자는 제조 공장의 위치도가 필요함
 - 2) 제품 유통업자는 회사 및 창고의 위치도가 필요함
 -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배치도
 - 제품 제조업체는 제조 공장의 도면이, 제품 유통업체는 회사 및 창고의 도면이 필요함

-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부록2> 참고
 - 수입 가공식품은 그 제품이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에 제품등록을 해야 현지 판매가 가능함. 필리핀에 소재한 기업 또는 사업장만 상품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는 최초 발급 시 1년간 유효하며, 갱신한 뒤에는 5년간 유효함
 - 등록된 가공식품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에서 실시하는 유통 후 예찰(검사) 대상이 됨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은 현재 해외 작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음
 - 수입허가 등록 절차

〈수입허가 등록 절차〉

	내용
1	· 수입허가 신청
2	· 식품 및 의약품국(BFAD)허가 등록
3	· 증권거래위원회(SEC) 확인 절차
4	· 통관
5	· 서류 및 샘플 제출
6	· 관세국(BOC) 서류 심사
7	· 수입면허 수령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로 다시 보는 필리핀, 2016

- 2014년부터 새로 도입된 수입면허 취득 절차로 인해 종전에는 관세국(BOC)에만 등록했으나 현재는 국세국(BIR) 등록이 의무화되었음
- 취득 기간은 약 8주임

〈가공식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

서류	설명
통합신청서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서식 사용
제품 라벨	모든 포장 크기/단위의 라벨이 필요함
제품 사진	모든 각도에서 촬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소 2개 각도에서는 등록하려는 제품과 사진 속 제품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서류	설명
기술, 영양, 의학, 건강 관련 주장을 입증할 서류	예시 : 기술 또는 영양 관련 연구보고서, 시장조사 자료, 과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등
견적 송장 (Proforma Invoice)	수출업체가 제공 〈부록4〉 참조
해외대리점 계약서 (Foreign Agency Agreement)	수출업체가 제공 〈부록5〉 참조
대리점 임명장 (Appointment Letter)	수출업체가 제공
판매대리권 계약서 (Distributorship Agreement)	수출업체가 제공 〈부록6〉 참조
수출국 당국이 발행한 위생/ 검역 관련 서류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를 증명하는 유효한 제조업체의 등록인 증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명서 유효한 동식물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유효한 ISO 22000 인증서 유효한 HACCP 인증서 또는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부록7〉 참조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국가정보 아세안 기초세우기, 2018

- 위험도에 따른 가공식품 분류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은 가공식품을 위험도에 따라 두 개로 분류하여 등록 업무를 진행하는데, 카테고리별로 소요 기간과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카테고리 I 은 등록에 약 3~4주가 소요되고, 카테고리II는 등록에 약 3~6개월이 소요됨
- 상세 내용은 필리핀 국립무역저장소(Philippine National Trade Repository)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¹⁾

〈위험도에 따른 가공식품 분류〉

카테고리 I (저위험)	카테고리II(중·고위험)
빵 및 관련 제품, 사탕 및 과자, 비알콜음료 및 음료 믹스 코코아 및 관련 제품, 커피, 차, 프림(Non-Dairy Creamer)양념, 소스, 드레싱, 스프레드 요리용 제품, 젤라틴, 디저트 믹스 유제품, 밀가루, 밀가루 믹스, 녹말, 수산물, 과일, 채소, 포장 육류 제품, 면, 파스타, 호두, 기름, 지방, 쇼트닝, 스낵, 시리얼, 설탕 및 관련 제품	알코올음료, 식품보조제, 차, 병에 담긴 생수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특별 식이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공학/바이오테크 사용) 필리핀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식품

* 출처 : 필리핀 국립 무역저장소(Philippine National Trade Repository)

1) pntr.gov.ph 접속 → 상단 메뉴 중 [Trade Repository] → [Procedures and Documentary Requirements]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식물과 식물제품 수입허가

- 필리핀으로 식물과 식물제품 수입하는 개인과 회사는 수입 전에 식물검역 (Plant Quarantine Service, PQS)을 받아야 하며, 수입 허가 신청서(BPI Q Form No.1)(부록12 참조)을 작성해야 함
- 신선 식품 수입허가 절차

〈신선 식품 수입허가 절차〉

	내용
1	· 수입허가를 발행하기 전에 신청서 평가와 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 PRA)을 함
2	· 작성된 신청서를 평가
3	· 수입허가 발행을 위한 신청서 승인
4	· 신청서가 승인되고 수수료가 지불되면 신청한 수입업자에게 수입허가 4부(원본 1부, 사본 3부)가 발행됨
5	· 원본은 수입항의 식물검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6	· 사본 1부는 약정된 조건과 조건의 준수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시 제출해야 함.
7	· 사본 1부는 수입항의 세관에 제출해야 함
8	· 사본 1부는 PQS에 제출해야 함
9	· 수입업자는 화물 도착 최소 24시간 전에 PQS에 검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로 다시 보는 필리핀, 2016

- 제출서류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검역증명서
 - PQS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원본 카피)
 - 선하증권
 - 적하목록과 세관반입신고서(사본)
- 수입허가나 식물위생검역 증명서가 없는 화물은 해당 서류가 제시될 때까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PQS로 보내지거나 세관에 구류된다. 수입허가나 식물 위생검역 증명서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로 반출되거나 다른 국가로 재수출되거나 파기될 수 있음

○ 보세제도

- 필리핀의 보세공장은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진행하여 국제수지의 개선과 고용증대,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진출 기업에 관세 혜택이 부여됨
 - 외국인자재를 수입·사용함에 있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적용받으며, 관세에 상당한 담보물을 공탁하지 않고도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가공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다른 지역에 유입되는 경우는 이를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됨
 - 복잡한 사무절차와 금리의 부담을 받지 않으나 관세행정권의 확보 차원에서 세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함
-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시 국내 신용장, 은행지불보증, 보세창고어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 지불되어야 할 세금, 관세, 다른 요금들에 각각 상응하는 보증이 필요함
 - 적법하게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물품의 장치기간의 경우 통관 항에 도착한 날짜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장치될 수 있음
 - 공공 보세창고나 개인 보세창고의 사용료는 수입자와 창고 운영인 사이에서 결정되나, 이러한 사용료는 세관원에 의해 지정된 관습적인 보세창고의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이 운송 화물 목록에 의해 필리핀의 다른 구역으로 즉시 운송될 경우, 물품은 검사 또는 평가 없이 운송되며 세관원의 대리료 임명된 수탁인의 승인 아래 국내 신용장, 은행지불보증 채권 등을 담보로 운송됨
- 높은 보세창고 비용
 - 높은 보세창고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필리핀에서 보세창고를 설립하려면 보세창고 협의회인 ACOB의 동의를 있어야 함. 이로 인해 보세창고 신규 오픈이 쉽지 않음
 - 마닐라 무역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보세창고료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최고 수준임

○ 세관현대화·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RA 10863)

- 세관·관세법 개정안인 세관현대화·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RA 10863)이 2016.05.30일 최종 승인됨. 주요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

- 특정 소비 제품들의 약식 신고(informal entry clearance) 허가
 - 5만 페소 이하의 본선인도(Free on Board) 또는 운송인 인도 조건(Free Carrier Arrangement)에 해당하는 상업성 제품(개정 전 2천 페소 또는 500불로 제한)
 - 소량의 개인 소유 제품
- 세관 신고 기간 변경
 - 관세청 통지 15일 이내에 세관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15일 추가 연장가능(개정 전 30일 지급)
 - 평가결과 고지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관세 지불 후 30일 내 물품 수령 가능(개정 전 15일 내로 제한)
- 임시 세관 신고(provisional goods declaration)제도 도입
 - 수입자가 국경에서 납부해야하는 관세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45일 내(45일 추가 연장 가능)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금 지불 후 제품 선 수령 가능
- 세관 모든 절차 자동화
 - 세관 신고, 평가, 납세, 물품 인도 등 수입 및 수출의 모든 절차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자동화 실시로 세관 보세창고의 물품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 도입
 - 저리스크 및 규율 준수 업체에 대해 “우수공인업체” 인가를 하고 동 업체들에 대해서는 빠른 절차(fast lane) 허용
- 압류품 또는 몰수품 상환 가능
 - 경고명령(Alert Order)이 발행 시에만 압류 또는 몰수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 완료 필수
 -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한 각 절차 소요시간 단축
 - 수입자는 부패성 물품을 임치제도(escrow)를 이용하여 판매 가능
 - 수입자는 압류품 또는 몰수품에 대해 최종 단계 전에 관세 지불 또는 상환 가능
- 국가재난사태 선포 시, 구호 물품 관세 및 세금 감면
 - 구호 물품은 임시 세관 신고, 사전도착, 추가비용 지불 없이 운영시간 이외의 통관신고, 특수 상황 이외 검사 미실시 등 허용
- 관세 및 세금 납세 후 3년 이내에 사후감사 실시 및 수입자와 관련 기관들의 기록 검토 가능 권한 부여

- 통과(transit)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법 명시
 - 소비용 물품은 도착 항구에서 관세 지불
 - 자유지역(free zone) 및 보관용 물품은 세금부과 지역 도착 시 관세 지불
- 화물 검사 방법 투명성 확대
 - 검사 시 화물 소유자 또는 대표자 동행 가능
 - 엑스레이 등 비해체(non-intrusive) 기술 도입
 - 물리적 검사는 특이사항이 있거나 요청 시에만 실시
- 관세청 근무자의 근무 조건 변화
 - 평가 담당 관세청 근무자는 최대 3년 이상 평가 업무 불가
 - 추가 수당은 관세청 이외 제3자로부터 수령 불가
 - 관세청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수입규제 조치
 - 필리핀은 수출국에도 동등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기준을 준용함. 민감 품목과 고도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입규제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지는 않은 편임. 그러나 필리핀에서 가장 취약한 농업부문에서는 고율 관세, 쿼터 및 비관세장벽 형성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민감 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MAV(Minimum Access Volumes) 정책에 따라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율이, 쌀 40~50%, 옥수수 35~50%, 가금류 식품, 감자, 마늘, 양배추 40% 등 다양한 농·축산물 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수입 쿼터의 경우 정부의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 업체만 수입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Republic Act No. 650) 지정품목은 쌀, 밀, 생선통조림,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소고기 통조림, 냉동소고기, 펄프, 중고의류(자선단체에 한하여 수입가능), 교과서, 우유 등임
 - 수입 절차상의 제한은 수입관리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로 해당 정부 기구의 승인을 거쳐 관련 라이선스/품질인증마크/품목별 인증서 등을 획득한 후에 공인은행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임
 -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권(license) 제도를 통해 수입 허가권을 보유한 일부 회사만 수입을 허용함
 - 수입 품목 관련 승인 기관 및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자료를 근거로 함

〈필리핀의 수입 관리 품목 리스트(식품류)〉

품목	관련기관
쌀, 옥수수	국립식품청(NFA)
양파, 마늘, 감자, 양배추(종자용)	식물산업국(BPI)
신선 과일 및 채소류	
신선 및 냉동 어류	수산 및 수산자원국(BFAR)
필리핀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농산물 - 옥수수, 가금류/돈육 및 그 제품, 쇠고기는 제외한 육류 및 그 제품	국립식품청(NFA), 동물산업국(BAI)
동물용 사료	동물산업국(BAI)

* 출처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수입 농산물 및 식품에 적용되는 조건 및 식물검역 관련 규제 및 절차와 크게 비슷한 내용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도 적용됨. 필리핀 수입법에 따라 필리핀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과 관련하여 필리핀 조건 및 식물검역 규제를 준수하는 것은 수입업자의 책임임. 집행기관은 상품 및 관련 수출입 서류를 조사하여 규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이 필리핀으로 반입되어도 되는지를 결정할 것임
- 상품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상품은 반출 전에 처리되기를 요구 받거나 통관이 거부되고 폐기처리 혹은 필리핀 국외로 재반출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상품이 필리핀으로 운송되기 전에 규정 준수를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포장 및 용기에 대한 규제
 - 우수 제조관행과 식품의 포장 재질 적합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국제식품규격은 필리핀 식품의약국의 주요 참고 가이드가 되고 있음. 따라서 포장 식품의 경우 국제 식품규격을 준수하면 거의 항상 필리핀의 규제를 준수하게 된다고 보면 됨. 그러나 수입업자는 상품이 소매상점에 판매되기 전에 해당 포장 식품을 식품의약국에 등록하여야 함

2. 통관절차

가. 수출입 통관절차 요약

○ 수출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비고
1	수입자 등록	담당기관 : 필리핀 국세국(BIR)
2	수입상품 수입규제 및 필리핀 HS Code확인을 통한 관세율 확인	담당기관 : 필리핀 관세청(BOC)
3	창고 반입	
4	수입신고서류 제출 및 서류 심사	
5	통관절차	물품 위험도에 따라 Green Lane, Yellow Lane, Red lane으로 분류하여 진행
6	세액납부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주류와 담배)
7	세관 보세구역에서 물품 반출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국가정보 아세안 기초세우기, 2018

○ 수출입 통관절차 요약

- 통관절차 개요

- 수입 통관절차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음. ① 수입 신고 전 준비 → ② 수입 신고 → ③ 심사 및 검사 → ④ 관세 납부 → ⑤ 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입 신고 전 준비

- 수입자는 필리핀 국세국(BIR)의 고객등록 시스템(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 CPRS)에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를 획득해야 함. 등록 시 연간 등록비 및 사후 갱신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무역산업부 수입서비스국(BIS)을 통해 통관절차 규제 내용을 확인해야 함. 수입 물품은 수입 허가/규제/금지품목으로 분류됨

-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해야 함. 관세청 FTA 포털, 트레이드 내비, 필리핀 관세위원회를 통해 HS Code, 협정 세율 및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필리핀은 행정명령 EO812/EO638을 통해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를 규정함
- 수입 신고
 - 필리핀 정부부처가 연계된 단일통관창구(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수입 신고를 시행해야 함. 수입통관 서류 및 요건을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음. 세관 시스템에 수입화물 정보를 입력하며 출력한 후 수입통관을 진행함
 - 수입신고서류 및 품목별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음
 - 1) 필수서류 :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상업송장, 견적송장, 포장명세서 등
 - 2) 추가서류 : 수입규제품목 관련 라이선스, 품질인증마크/품목별 인증 등
- 심사 및 검사
 - 우수 인증 수입업체에는 Super Green Lane제도를 통해 서류 및 물품검사 없이 신속 통관 혜택을 부여함. 그 외 수입업체는 Red Lane(전수검사), Yellow Lane(추가서류검사), Green Lane(서류검사)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함
 - 세관원은 물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샘플검사를 진행함. 송장, 선서진술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을 조사함
 - 단순소비재/단순소비재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통관을 실시함
- 관세 납부
 - 관세 등 조세는 은행(Authorized agent bank)을 통해 송금하거나,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확인 후 반출이 가능함
 - 세관원은 관세상용담보나 관세 납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함. 담보의 경우 국내선하증권, 은행지불보증, 채권 등이 있음
 - 필리핀 과세가격은 거래 가격을 기본으로 결정함
 - 수입 물품에 관세, 부가세(12%), 특소세(Excise Tax), 물품세를 부과함. 특소세는 광물, 석유제품, 자동차, 주류, 담배, 화장품 등에 부과됨
- 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
 - 세관원은 OLRs(On-line release system)로 은행으로부터 관세납부 사실을 통보받은 후 수입자에게 화물을 양도함
- 수입업체 통관 단계별 유의사항
 - 수입 신고 전 준비

- 해당 물품이 필리핀 내 수입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함. 관세국(Bureau of Customs), 은행(Authorizes Agent Bank)에 문의하면 됨
- 수입관리 대상 품목의 공표가 늦어질 수 있어 사전에 무역산업부 수입 서비스국(BIS)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함
- 수입규제 품목 수입 시 인증이 복잡하고 다수의 증빙을 요구함
- 수입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이 필요함
- 수입 신고
 - FTA 양허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수입 신고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품목분류 및 가격평가에 있어 세관별로 상이한 경우가 있음
 - 수입 신고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심사 및 검사
 - 일부 품목은 세관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도착 후 수입허가를 받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원산지 증명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검증 서류를 요구함.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또 생산자와 수출자 정보가 다를 경우 추가 증빙을 요구해야 함
 - 특정품목은 통관 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추가서류 요구 품목 : 비료, 동물성 식품, 식물/식물 생산물 등)
- 관세 납부
 - 신고가격과 거래 가격이 다를 경우 세관에서 신고가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함
 - 신규반입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음
 - 6개의 민감 품목은 최소 시장접근 정책(MAV)으로 규제되며 관세율은 약 20~25%가 부과됨.
 - * 대상 품목군 : 옥수수, 설탕, 돼지고기, 가금류, 커피, 커피추출물
- 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
 - 보세구역 반입 물품은 통관 항 도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장치가 가능함
 - 개인 창고 사용료는 세관 지정 보세창고 이용료를 초과하여 지불할 수 없음
 - 수입자는 수입관련 자료를 수입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3년간 수입업자가 보관한 서류를 검사, 세관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함
 - 항만 사용료 및 컨테이너 종류별 운송비용이 비싼 편임
 - 마닐라 항만 및 해운사에 부두사용료(Port Charge)를 납부

○ 수입 소요기간 및 비용

수입절차	기간(일)	비용(USD)
서류 준비	8	90
세관 통관	2	185
항만 및 터미널 처리	3	300
내륙 운송 및 취급	2	340
합계	15	915

*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 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 필리핀, 2015

○ 수입통관 애로사항

- 식품 수입 전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에 등록해야 하는데 식품 등록의 경우 각 식품의 첨가물과 재료별로 등록해야 함(용량별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됨)
-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식품을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 필리핀은 아직까지는 전산화되지 않은 수입통관 및 검역 과정과 뒤쳐진 통관 시스템 등으로 인해 수입 품목별 통관 검사가 아닌 컨테이너별 수입통관 검사가 시행되고 있음
- 또한, 현지 통관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거의 불가능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지 통관 브로커들의 지인이 통관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항구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실시해야 빠르게 통관이 이루어지는 문제 또한 있음

나. 상세 통관절차

○ 수입 신고 전 준비

- 수입면허(Customs Accreditation Secretariat, CAS) 취득
 -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필리핀 국제국의 고객등록 시스템(Client Profile Registration System, CPRS)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후 국제국(BIR) 산하의 정보조사 사업부서(Customs Intelligence Service, CIIS)를 통해 수입면허(CAS)를 우선적으로 취득해야 함
 - 수입면허(CAS)는 필리핀 재무부가 발급을 담당하며,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SEC)의 법인 등기증, 재무제표, 소득세 납부실적, 각종 유틸리티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함

- 수입업자는 필리핀 세관에 2천 페소의 면허비와 진행비(process fee) 1천 페소를 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수입면허(CAS)의 취득은 현지 업체 및 브로커를 통해 진행이 됨
- 면허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1) 면허신청서(Application Form)
 - 2) 법인등기사본(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 (Proof of Registration of DTI)
 - 3) 회계사의 서명이 포함된 재무제표 사본(Audited Financial Statement)
 - 4) 법인세 납부증명(Income Tax Return of the Company)
 - 5) 각종 공과금 납부증명(Proof of Utility Billing)
- 수입면허의 취득 절차
 - 증권 거래 위원회(SEC)에서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진행(약 4주 소요)
 - 국세국(BIR)에 서류 및 사진 제출
 - Service Provider(세관 승인 브로커)를 통해 고객등록시스템(CPRS) 전산 입력
 - 관련 서류 준비 및 사진 촬영 후 세관에 서류 및 사진 제출
 - 사무실 및 창고 검사
 - 세관 이메일 발송
 - 수입면허 수령
- 신청 지연
 - 수입자 면허의 경우 관세국(BOC)과 국세국(BIR)에 동시에 등록해야 하지만 두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또한 증권 거래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하루에 150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업체 수에 제한을 두고 있고, 주 단위의 사무소에서만 등록을 받고 있어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
-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 확인
 - 수입자는 필리핀산업부(DTI)의 홈페이지를 통해 필리핀의 수입통관절차 및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금지 품목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필리핀에서의 수입통관은 수입허가 품목, 수입제한 품목,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이루어져 있음

- 해당 수입 품목의 수입규제/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규제 품목일 경우 해당 정부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또한 단순소비재인 경우와 단순소비재가 아닌 물품에 따라 수입통관절차가 달라지므로 필리핀 관세국의 BIS에 문의하여야 함
-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
 - 수입자는 해당 물품이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필리핀 관세위원회의 홈페이지, 한국 관세청, FTA 종합포털 등의 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품목의 HS Code와 관세율, 품목의 양허 수준, 원산지 기준 등을 파악해야 함
- 유의점
 - 수입면허 기간 고려
 - 1) 필리핀에 신규 진출하는 업체 중 한국 및 제3국과 수출입 업무를 동반하는 기업은 수입면허(CAS)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수입면허등록 기간을 고려하여 수출입 일정을 잡아야 함
 - 2) 수입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되어야 함
 - 3) 수입면허 등록을 했다고 해서 모든 품목의 수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부 특정 품목은 필리핀의 해당 주무부처로부터 별도의 사전 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함(곡물, 코코넛, 수산물, 의약품, 식음료, 화장품, 광물 등)
 - 4) 또한, 수입자 면허 취득에 대해 2014년부터 바뀐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과거보다 오랜 기간(약 8주)이 소요되며 까다롭게 서류를 검사하므로 미리 유의해야 함
 - 컨테이너의 선적 전 화물검사(Advanced clearance system)
 - 1) 필리핀 세관은 기존에 시행되던 선적 전 화물검사(Advanced clearance system)를 컨테이너 화물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모든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 단, 특수 컨테이너 화물(화학제품 등)의 경우는 수입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관련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3) 선적 전 검사기관으로 필리핀 세관이 승인한 화물검사회사(ACSC)는 총 6개임(Admiral, Bureau Veritas, Cotecna Inspection SA Philippines, Inspectorate, Intertek, SGS Philippines 등임)

- 화물 도착 전에 수입승인, 관세 및 수수료 납부 가능
 - 1) 지정 검사기관 검사를 마친 수입자는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 화물 수입승인 획득과 관세 및 수수료 납부가 가능함
 - 2) 단, 이를 위해서는 수입화물에 대한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서, 화물 수입 가격, 운임, 보험 정보가 명시된 인보이스, B/L, 위조 상품이 아니라는 확인서 등이 갖춰져야 함
 - 3) 화물이 필리핀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은 선적 전 검사서, 관세 및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 후 신속한 수입통관절차를 수행하게 됨
 -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없을 경우, 도착항에서 포괄검사 실시
 - 1) 만일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선적 전 검사확인서(Load Port Survey Report)가 구비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검사 감독위원회(Committee for Accreditation of Cargo Surveying Companies, CACSC)가 인정한 검사기관이 도착항에서 포괄검사(화물에 대한 질량과 품질, 등급, 가격 등 검사)를 실시하며, 관계자들의 확인 및 관세,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
 - 2)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시 하역허가서가 발급되지 못하고 이 기간에 발생한 보관료 등 일체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함
 - 3) 선적 전 검사제도 관련 필리핀 수입자는 이 규정 발효 사실을 수출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수출자는 인근의 CACSC인정 검사기관을 접촉,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와 협조를 제공해야 함
 - 덤프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 여부 확인
 - 1)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물품 수출 전, 해당 품목이 덤프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 덤프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했던 높은 세금을 내야 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함
 - 수입자의 이름을 제대로 기입해야 함. 수출자가 수입자를 잘못 기입하여 수입자 면허 취득 명단에 조회되지 않으면 현지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할 수 있음
- 수입 신고
- 수입 신고 실시

- 수입자는 필리핀의 통관 관련 정부부처가 연계된 단일 통관 창구(National Single Window, NSW)사이트를 통해 수입 신고를 실시하고 수입통관 서류 및 요건을 온라인으로 일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 시스템에 수입화물 정보를 입력한 후 출력하여 현장에 접수하여 세관에 수입 통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됨
- 제출서류
 - 수입 신고 시 제출할 필수 서류로는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상업송장, 견적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이 있으며, 필요 시 수입규제품목 관련 라이선스/품질 인증마크/품목별 인증을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 수입통관 시 필수 제출 서류 이외에도 공공보건, 안전, 국가안보, 국제 협약 준수 및 지역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서류(Supporting Documentation)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식품류의 경우 동물성 제품과 식물성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함

〈품목별 추가 제출 서류〉

품목	추가 제출 서류
동물 제품	• 수의학 증명서 (Clean Report of Findings) • 멸종 위기종에 대한 CITES수입 허가(Exporter Permit form Shipper) • 제품 등록증(CPR)
식물 및 식물제품	• 식물 및 식물제품 수입 허가증 • 식물 및 식물제품에서 파생된 형태 또는 GMO유전자 변형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AO2002에 따라 허가 통제 대상임. • 식물위생증명서 (Phytosanitary certification)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로 다시 보는 필리핀, 2016

- 수입신고서²⁾
 - 수입신고서는 수입자, 화물인수자(consignee), 어음소유자(holder of the bill)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서명은 개인 또는 회사, 기업의 책임자 또는 허가를 받은 통관 대행업자(customs broker)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심사 및 검사
 - 통관 소요시간

2) 〈부록3〉, <http://customs.gov.ph/customs-declaration-form/> 수입신고서 양식 및 작성요령 참조

- 실제 통관 시간은 전산 처리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경우 수입 신고 후부터 통관까지 1일이 소요되며 세관에 서류 제출을 한 경우 2일이 소요되고 세관에서 물품 검사를 요구한 경우 4일이 소요됨
- 물품당 통관 시간은 GL(저위험 품목)일 경우 통관 2시간이 예상되고, RL(고위험 품목)은 4일 정도가 예상됨. 하지만 실제 고위험 품목의 경우 통관 검사가 20일까지 소요되는 때도 있었음
- 3가지 통관절차
 - 정부 기관 인증을 거친 수입규제 품목의 수입신고서는 필리핀 세관에서 신속통관 (Supper Green Lane, SGL)과 저위험 화물통관(Green Lane), 고위험 화물통관(Red Lane)으로 분류되어 통관됨
 - SGL은 우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화물 도착 전에 전자서류로 통관을 신청, 물품 도착 후 추가 서류 및 실제 검사 없이 통관을 진행하는 제도임
 - 그 외 수입업체들은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경우 RL(서류검사 및 물품 검사), GL(서류 및 물품 검사 면제)로 분리되어 수입통관이 실시됨
 - GL의 경우는 현재 적용업체가 130여 개며, GL선정 기업은 주로 다국적 기업, 수입실적 최상위 업체 등 13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음
- 정식통관과 약식통관
 - 과세가격 2,000페소 이상 여부 및 개인·상업적 용도 구분에 따라 정식 (Form Entry) 및 약식(Inform Entry)으로 구분하여 신고함. 약식통관은 개인 배송에 한하며, 이삿짐으로 분류되어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되나 선박 일정 등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배송기간이 길어짐. 또한, 물류 업체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가품이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려움
-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 경제자유구역청(PEZA)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별도의 물품 검사가 없고 수입통관절차 없이 컨테이너를 세관으로부터 인수한 후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수량과 가격을 조사하고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로 통관이 이루어짐
-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품목이 일치하도록 해야 함
 - 수입 신고 내용과 실제 품목 또한 제출 서류상의 기재사항(수입자와 수량, 중량, 품명, B/L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 등)이 상호 정확히 일치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하도록 함. 화물검사 시 서류 및 신고한 내용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밀수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서류와 물품 일치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유의점

•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

- 1)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영업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함
- 2) 위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 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되어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됨
- 3) 반출 허가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음

• 항공 통관과 해상 통관의 유의점

- 1) 항공의 경우, Front Door(Day time 통관)와 Back Door(Night time 통관)로 구분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Back Door 통관(저녁 7시부터 시작)만 가능함
- 2) 해상의 경우 최근(2015년 10월 기준)에는 항구적체가 비교적 완화되어 남항 및 북항 모두 1~3일이면 통관할 수 있다고 하나 예외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함

• 필리핀 세관의 재량권

- 1) 품목분류 및 가격평가에 있어 필리핀 세관의 재량권이 적용되어 세관별로 품목분류 및 가격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수입 신고 과정상 관세 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원산지 검증 시 엄격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 1) C/O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생산자와 수출자의 정보가 다를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 3번 변경 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에도 상대국 세관의 검증 과정에서 생산 공정 세부내용, 원가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현재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원산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함

○ 관세 납부

- 세금, 관세 및 기타 요금 부과

- 필리핀 세관은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세관 검사(Customs Inspection), 관세 분류(Tariff Classification), 관세 평가(Appraisalment) 등을 진행하며, 수입에 따르는 각종 세금, 관세 및 기타 요금을 부과함

- 세관원은 물품의 패키지가 세관에 수입 신고 내용, 송장, 여타의 다른 문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샘플 검사를 실시함
- 세관원은 모든 합리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물품의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하며, 송장, 선서진술서, 제조원 등의 보고서 등을 조사함
- 심사 또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관세 납부 후 물품 반출이 허가되며 관세 등의 조세는 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 확인 후 반출이 가능함
- 관세 납부 확인 후 신고 수리
 - 세관원은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국내 선하증권, 은행지불보증, 채권 등)나 관세의 납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함
 - 수입자는 수입하기 전에 수입신고서를 공인은행(AAB)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을 통해 부과된 세금을 동 은행에 제출해야 함
 - 필리핀의 과세가격은 거래 가격을 기초한 국내 인도 가격(FOB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수입 물품에는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12%), 개별소비세(excise tax) 등이 부과됨. 개별소비세의 경우 주류와 담배 등이 해당됨
 - 필리핀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은 세관에 등록된 수입자 거래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함
 - 한-아세안 FTA 상의 양허관세를 적용할 때도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으나 12% 부가가치세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함
- 신속한 운송을 위한 현금 보증 요구
 - 세관원은 검사받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신속하고 빠른 운송을 위해 현금 보증으로 국내 선하증권, 은행지불보증,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세금·관세 등 기타 지불 요금의 100%임
 - 현금 보증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세금, 관세, 다른 지불 요금 등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운송이 보류됨
 - 불법수입 물품은 국고로 귀속되고 그 물품의 관세, 창고비, 적하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함
- 관세 납부 후 화물 양도
 - 관세의 납부는 수입된 물품이 필리핀 내 유통되기 위해 반입되기 전 처리되어야 하며, 세관은 OLRs(On-Line Release System)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관세 납부 사실을 통보받는 대로 수입자에게 화물을 양도함

- 3년간 자료 보관
 - 수입자는 수입관련 자료를 수입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관은 수입일로부터 3년간 수입자가 보관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 유의점
 - 면세품 재판매 시 정상 관세의 2배를 납부
 - 1) 자본재를 수입할 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게 될 경우 관세 회피의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기업이 5년 이내에 면세품을 재판매할 때는 정상 관세의 2배를 납부해야 함
 - 2)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등의 투자 인센티브기관에 등록된 기업에 자본재를 매각할 경우 5년 이내에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자본재 수입품을 재판매할 때도 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 부두사용료 및 납부방법
 - 1) 수입자는 마닐라 항만 및 해운사에 부두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통상 물류업체가 이를 대납하고 청구서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킴
 - 2) 투자청(BOI)과 경제자유구역청(PEZA)에 등록된 업체들의 경우 EO226 (Omnibus Investment Act)에 의거하여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부두사용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차감되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3) 부두사용료의 경우 PEZA에 등록된 업체들은 면제이며 터미널 핸들링 차지(THC)의 경우 벌크 화물이 아닌 컨테이너 화물에만 부과됨
 - 부두기기사용료(Arrastre Charge)는 필리핀에만 특수하게 존재함. 추가 운반료라고 명시되는 Arrastre Charge의 정식명칭은 부두기기사용료이며 각 항구별, 물품의 중량, 부피, 운반속도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일종의 처리비(Handling Charge)로서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함
 - 육상 운송비용
 - 1) 마닐라 항에서 수입자의 창고 혹은 공장까지의 육상 운송비용이 소요됨
 - 2) 컨테이너 종류별로 화물의 무게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어 지정된 육상 운송비용이 발생하며 간혹 컨테이너 사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기도 함
 - 3) 마닐라 항에 도착한 화물은 체선료(Demurrage)와 보관료(Storage) 모두 통상 도착일을 포함하여 5일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짐
 - 4) 체선료는 해당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운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이며 보관료는 마닐라 항만의 CY(컨테이너야드) 운영자가 청구하는 금액임

- 5) 창고나 공장에 이송된 컨테이너는 즉시 화물을 꺼내고 반납해야 함
- 6) 이틀이 경과하면 해당 해운사에서 컨테이너 반환지연료(Detention Charge)를 청구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사전에 물류회사를 통해 해당 해운사와 합의한 후 컨테이너를 보관해야 함

○ 물품 반출 및 관세 환급

- 물품 반출

- 수입 신고 수리 및 관세 납부(담보제공)가 이루어진 물품은 원칙적으로 부세구역에서 즉시 반출이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 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혹은 납부기한 내에 관세 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함
- 제한 또는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세관은 신고서의 항목이 확인되거나 혹은 확인될 필요가 없을 시 접수 직후 바로 통관함

- 관세 환급 세부 규정

- TCCP의 Section 106항에서 관세 환급(drawback)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국제무역 혹은 연안무역에 이용되는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연료에 부과된 수입 관세에 대해서는 부과된 관세의 99%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급함
- 재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관세 환급(현금) 혹은 관세 환급 예정금액 만큼의 세액공제보증서를 발행해 주도록 규정함

- 관세 환급 대상

-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에 해당되는 품목은 수출제품의 원료, 포장, 장식, 상표 부착 등에 사용된 자재에 한함
- 수출용 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은 실제 수출제품에 사용된 양 만큼에 대하여 관세 환급 혹은 관세 환급 예정금액 만큼의 세액공제보증서를 발행해 주도록 규정하였음
- 환급 신청비는 500페소이며 수입자재를 사용한 제품이 1년 이내에 물품으로 수출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함
- 도시가스 생산과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원유나 역청제(아스팔트 원액)로부터 추출된 석유나 석유류에 대한 관세 환급 혜택이 있음
- 전기업체나 가스업체가 아닌 기업이 원유나 역청제로부터 추출된 석유류를 수입한 후 전기/가스 생산업체에 동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수입 시 부과된 관세의 50%를 환급함

- 관세 환급은 폐소화로 이루어짐
- 실제로 납부된 관세를 서류로 입증
 - 환급 과정에서 수출제품의 제조 및 생산에 실제 사용된 수입자재의 수량 및 가격과 실제 납부된 관세를 서류상으로 입증해야 함
 - 관세 환급 혹은 관세 환급 예정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보증서(Tax credit)는 자재 수입 시 납부된 관세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입자는 해당 자재가 필리핀에서 생산되고 있지 않거나 이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용자재가 없다는 사실을 필리핀의 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에서 확인 받아야 함
 - 수입된 자재는 수입일로부터 1년 안에 제품으로 수출되어야 하고 수출 후 6개월 안에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혹은 세액공제보증을 청구해야 함
 - 같은 수입자재로부터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수출제품이 만들어진 경우의 관세 환급에 대한 배분은 형평성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점
 - 모든 선적을 한꺼번에 진행하거나 휴가일 하루 전에 수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필리핀 세관의 특성상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 환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여 해당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제 한-아세안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서에 도착 후 30일 이내 C/O사후 제출 시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관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

다. 식품 수입 시 통관절차

- 필요 서류
 -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이전 제품 등록라이선스를 발급받기 때문에 검사 등의 별도의 시스템은 없으며, 영업허가증(LTO)와 상품등록인증서(CPR) 두 개의 문서를 제시하면 됨
- 수입식품 모니터링
 -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며, 만약 수입식품에 문제가 생기면 회수명령을 내리고 시장에서 해당되는 제품을 모두 회수함
 - 필리핀으로 수입된 한국 식품의 부적합 리스트 항목은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이 없으므로 따로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음
- 식품 수입 시스템

- 필리핀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 일부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식품 수입 절차

- 1단계 : 수입자는 관련 필리핀 규정 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허가되었거나 등록된 개인 또는 회사만이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할 수 있음
 - 가공식품의 경우 필리핀 식품의약청에서 LTO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LTO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갱신된 LTO는 5년간 유효함
 - 필리핀 식품의약청은 식품의 위험도 분류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며, 고위험도(high risk)로 분류된 식품 업체들은 우선순위로 검사를 진행함
- 2단계 : 수입 적합 여부 검사
 - 관련 규정 기관에서 수입할 수 있는 국가 중 지정된 국가로부터만 식품을 수입 가능한 품목들이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함
- 3단계 : 제품이 수출국으로 부터 발송되기 전,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수입 라이선스 및 허가서를 관련 규정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함
 - 상품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는 초기 수입 이전에 식품의약품청(FDA)에서 발급받아야 함
- 4단계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출국의 규정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함
 - 인증서는 입국 시 통관 및 상품의 수량 검사를 돕는 수입허가서와 함께 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함

○ 과일 및 채소 수입 시 참고 절차

- 식물(과실 및 채소)을 수입하기 전에 식물 산업국(BPI)에 수출자의 수입허가 신청이 필요함
- 수출선적 전 식물 산업국(BPI)에서 사전 수입허가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한국)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수출 대상 품목 식물검사항격증을 신청하여 발행 받아야 함
- 선적분 도착 시 검역 시행 및 수입통관을 완료함
- 수입허가서나 식물검사항격증명서가 없는 선적분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서와 식물검사항격증을 제출할 때까지 세관에 압류 조치됨
-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조치 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부록8〉 참조
 - 발급기관 : 수출자
 - 제출기관 : 수입자
 - 표기언어 : 영문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부록9〉 참조
 - 발급기관 : 수출자
 - 제출기관 : 수입자
 - 제출사유 : 명세, 순중량, 총중량 등 선적된 물품의 단위별 상세정보를 기입하는 문서임. 필리핀 세관에서는 실제 물품의 정보와 기입된 정보가 다를 경우 수입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함
 - 표기언어 : 영문
-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부록10〉 참조
 - 발급기관 :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
 - 제출기관 : 운송인에게 제출
 - 표기언어 : 영문
- 화물운송장(Way Bill)
 - 발급기관 :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발행
 - 제출기관 : 운송인에게 제출
 - 표기언어 : 영문
-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부록4〉 참조
 - 발급기관 : 수출자
 - 제출기관 : 수입자
 - 표기언어 : 영문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부록11〉 참조
 -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와 세관
 - 제출기관 : 수입세관
 - 표기언어 : 영문
-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부록2〉 참조
 - 발급기관 : 식품의약품청(FDA)

- 제출기관 : 수입세관
- 제출사유 : 가공식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 제품 등록을 해야 수입이 가능함
- 표기언어 : 영문

4. 관세제도

가. 법률체계 및 관련 규정

○ 관세제도

- 필리핀은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음.
2008년 1월을 기해 한-아세안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국 교역 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기 시작함

〈필리핀의 FTA 관세율 이행 현황〉

구분	Inclusion List(%)	FTA Rate at 0%(%)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AANZFTA)	99,0	92,90
ASEAN-India FTA(AIFTA)	85,7	57,16
ASEAN-Japan Common Effective Partnership Agreement (AJCEPA)	97,6	67,14
ASEAN-Korea FTA(AKFTA)	97,7	88,09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99,6	98,62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JEPA)	99,7	71,84
ASEAN-China FTA(ACFTA)	96,9	86,85

* 출처 : 필리핀 관세위원회

- 한-아세안 FTA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리핀의 전체 관세항목의 97.7%이며 이행율은 88.09%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관세율 종류

-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과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음
 -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임

-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FTA)이 체결돼 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CO)를 현지세관에 제출해야 함. 현지 세관의 특성상 사후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원산지증명

〈원산지증명 요약〉

항목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ASEAN - 세관 등 국가기관
	서식	· 통일증명서식(FORM AK)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제출면제기준	·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불 이하(상품 또는 우편물)
소급발급		· 소급발급 시 "Issued Retroactively" 표기
원산지 결정기준(부호)		· 일반원칙 - WO : 완전생산기준 - CTH :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또는 RVC 40%: 부가가치기준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 WO-AK(제약당사국) : 완전생산기준 - CTC : 세번변경기준(2단위, 4단위, 6단위) - RVC% : 부가가치기준, Specific Process: 특수공정 수행물품 - Rule 6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부가가치 계산방법	계산방법	· 공제법(BD) : 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 직접법(BU) :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싱가포르
	부가가치기준	· 35~60%
	기준가격	· FOB
	비고	· 직접법과 공제법 중 국가 선택(한국, 필리핀은 공제법) - 직접법 계산 시[원산지재료(VOM) 가격에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운임, 이윤 포함]
제3국 발행 시 송장		· Third country invoicing 13번 란에 체크 표시, 이 경우 7번 란에는 송장 발행회사, 국가명 기재
원산지 검증	검증방법	· (원칙)간접, (예외)직접
	검증주체	· 수출국세관(간접), 수입국세관(직접)
	회신기간	· 2개월(간접), 30일(직접)

항목		내용
	회신주체	· 수출국세관(간접), 수입자 또는 생산자(직접)
	미회신조치	·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근거조항	· 부속서 3 부록 1 제14조, 15조
참고사항		· 상호대응세율(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품목(기획재정부 고시 별표)) - 우리나라는 ASEAN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Normal Track, 일반품목)하였으나 상대방은 동일한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Sensitive List, 민감품목)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주의 사항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를 인쇄하여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관세특혜를 인정함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로 다시 보는 필리핀, 2016

- 원산지증명 개요
 - 한-ASEAN FTA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함
 - FTA 원산지 규정이 비 특혜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 원산지 규정의 구분
 -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 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됨
 - 특혜원산지규정 : 특정국가 간의 관세 상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PS)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의미함
 - 비 특혜원산지규정: 여타 무역 정책상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의미함
- 최종 제조공정이 반드시 수출국에서 수행돼야 원산지 획득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규정에서는 일반원산지증명서와 달리 수출국에서 최종공정이 이루어져야만 원산지로 인정됨
- 협정세율
 - 필리핀 관세위원회(TC)는 관세법 및 세관법에 근거하여 관세율 정보와 수출입 관련 서류 양식, 한-아세안 FTA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 관세분류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간 교역 증진을 위해 2003년 아세안 관세코드(AHTN, ASEAN Harmonized System of Tariff Nomenclature)를 채택함
- TC를 통해 품목 분류 번호(AHTN)와 원산지 선정 요건을 확인한 후 수출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협정관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별함
- TC에서 한-아세안 FTA 관련 행정명령, EO52, EO895, EO812, EO639, EO638 등을 확인함
 - AKFTA 관련 행정명령 EO812는 일반 품목 관세 삭감 규정을 명시하고 EO638은 민감 품목 관세양허를 규정함
- 우리나라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 간의 협정세율 적용 품목, 상대국 세율, 원산지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의 경우 통일서식 ‘Form AK’를 사용하며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FTA포털의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 가능함

5. 통관 관련 기타 참고사항

가. 통관 관련 기타 참고사항

- 필리핀 식품정책
 - 필리핀의 식품정책은 전반적으로 CODEX 가이드라인, 미국 FDA 규정, 이와 유사한 다른 국가 규제기관의 정책을 따름
 - 가공식품 안전업무는 보건부에서, 농산물 안전업무는 농업부에서 담당함

〈농식품 관할 부처〉

부처	산하기관	관할 품목
보건부	식품의약품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가공식품
농업부	동물산업국 (Bureau of Animal Industry)	육류제품, 낙농제품
	식물산업국 (Bureau of Plant Industry)	농작물
	수산물 및 양식자원국 (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어류, 수산물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국가정보 아세안 기초세우기, 2018

○ 무역항 및 공항

- 필리핀 국제공항 개요

- 필리핀에는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NAIA/마닐라 근교 위치)를 비롯해 국제공항이 전국 주요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남북으로 길게 뻗은 데다 7,107개의 섬으로 구성돼 있어 국제공항은 물론 국내공항도 매우 활발하게 운항하고 있음. 필리핀 제2의 도시인 세부(Cebu)의 Mactan International Airport 등 북부 Luzon 섬에 3개를 포함해 국제공항은 총 10개가 있음. 마닐라의 관문인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의 경우 세 곳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음

- 공항 비행거리

- 마닐라와 주요 도시 간 비행 시간은 서울 3.5시간, 동경 4시간, 상해 3.25시간, 대만 2시간, 홍콩 1.5시간, 방콕 3시간, 쿠알라룸푸르 3.5시간, 싱가포르 3시간 정도가 소요됨

- 항공화물 통관

- 필리핀 세관에서는 들어오는 모든 항공화물은 2015년 5월 11일부터 E-IFM(Electronic Inward Cargo Manifest)와 E-CCM(Electronic Consolidator Cargo Manifest)을 통해 통관함
- E-IFM은 항공사 혹은 운송 주체(House Airway Bill은 forwarder)가 적하 목록을 제출해야 함
- 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비행기는 도착 전까지 그리고 비아시아 국가에서 오는 비행기는 비행기 도착 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함

- 국제 항구

- 국제 항구는 주요 도시인 마닐라(Manila)를 비롯해, 세부(Cebu), 바탕가스(Batangas), 잠보앙가(Zamboanga), 일로일로(Iloilo), 다바오(Davao), 샌 페르난도(San Fernando) 등에 위치하고 있음

○ 운송절차 및 흐름도

- 필리핀으로의 운송절차 및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바이어와 운송방법 논의
- 선적일자 확정
- 중량, 부피 추정
- 포워드 예약
- 내륙운송사 예약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작성
 - 관세사의 수출신고 / 통관
 - 내륙운송
 - 공항 / 항구 도착
 - 선적
 - B/L 확인 및 발행
 - 바이어에게 B/L 송부
- 전산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관 지연과 비공식 통관 협의금
- 필리핀 관세국(BOC)의 전산화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통관이 지연돼 여러 국내진출업체가 금전, 시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또 세관 담당자가 빠른 통관 진행방안으로 수입업체에 비공식 통관 협의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수입자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관원들에게 협의금을 지불해 비공식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마닐라시 트럭통행규제 사례
-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2014년 2월 마닐라 시에서는 트럭통행규제를 실시하였으며, 마닐라항 내 화물적체, 내륙운송비의 급격한 인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
 - 2014년 9월 마닐라 시장은 트럭 통행 규제를 잠정적으로 철회하였으나 시내 교통체증으로 혼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규제를 재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 분쟁해결
- 분쟁해결방법에는 소송, 중재, 협상이 있으나 국제소송은 비용이 매우 높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중재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될 수 있으면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비즈니스 관계 유지상 가장 좋음. 주로 결제 과정에서의 무역 사고가 잦은데 선결제, 신용장(L/C), 또는 무역보험으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통관경비
- 통관경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음
 - 제품가격, 운송비, 보험료, 에이전트 수수료, 부두이용료, 추가운반료(필리핀에만 존재), 서류/스텝프진행료, 수입통관료, 관세, 부가세

- 통관 접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화물이 방치된 경우
 - 물품 도착 후 30일 내 통관 접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리핀 세관은 수입자가 인수외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물품을 압류 조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압류해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 화주가 물품을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경매, 기증, 또는 폐기처분 됨. 처분방식은 관할세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밀수품 및 방치화물은 경매 또는 기증 처리되며 안전상 문제가 있는 물품은 폐기처분됨
- 가공식품 인증
 - 모든 가공식품은 시장판매에 앞서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 제품을 등록하며 별도의 식품인증은 없음
 - 제품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품의 기술, 영양, 의학, 건강, 위생/검역에 관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므로, 제품의 안전과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제품의 등록과정에서 이루어짐
- 관세율 조회방법
 -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년 5월 16일 타결됐고 2008년 1월 1일 발효일부로 한국과 아세안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 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함
 - 한국 관세청 FTA 포털 : <http://fta.customs.go.kr/>
 -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 <http://www.finder.tariffcommission.gov.ph/>
 - 관세율은 필리핀 관세위원회(TC) 홈페이지(<http://tariffcommission.gov.ph/>)에서 조회가 가능함³⁾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필리핀 HS Code 검색방법 : TradeNavi - 트레이드내비 접속 후, 맨 위 검색창에서 [국가선택 - 필리핀 - 품목명 기입한 후 검색 클릭]
 - 필리핀 각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 검색 방법 : TradeNavi - 트레이드 내비 접속 후, 맨 위 검색창에서 [국가선택 - 필리핀 - 해당품목 HS Code 기입한 후 검색 클릭 - 하단의 검색 결과 중 ‘세율/원산지’ 부분의 HS Code 부분클릭 - 검색 결과에서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3) TC 홈페이지 → [Tariff Finder] 선택 →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품목 AK FTA 선택 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통관 시 MFN 선택 → HS Code 입력 후 관세율 확인

- 발급방식 : 기관발급(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채택)
- 발급 기관
 - 상공 회의소와 관세청
- 신청 서류
 - 수출신고 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혹은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 발급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및 사용 횟수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사용 횟수 : 1회에 한함
- 무역 기술 장벽/ 보건과 식물위생 장벽(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
 - 필리핀은 수입되는 냉동육 및 도살육의 판매를 위한 그 처리 및 통제에 있어서 국내산과는 다른 이중 평가 기준을 적용함. 특히 주로 수입되는 냉동육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도살육에 비해 더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함
 - 필리핀 농무부는 농산물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들이 동식물 위생 및 검역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PS)허가를 취득한 뒤 그 허가증을 수출자들에게 전달하여 수출자들이 허가증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함. 이를 통해 수출자들이 필리핀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 하려고 할 때 수입자들이 물품의 운반이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식품별 규격 기준

〈주요 식품별 규격 기준〉

품목	세부 품목	정의
과자류	· 우유를 주원료로 만든 과자류 (Milk-based Confectioneries) · 밀가루를 주원료로 만든 과자류 (flourbased Confectioneries)	· 캔디, 카라멜, 토피사탕, 초콜렛바를 포함한 설탕 및 감미료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단 음식을 총칭 · 상온에서 오래 상하지 않으며 수분 활성도가 0.85이하인 제품

품목	세부 품목	정의
열대과실주 (tropical fruit wine)	-	포도나 다른 과실 또는 식물의 발효 가능한 부분부터 자연 발효된 알코올성 음료를 뜻하며, 부피당 7~24%의 알코올을 함유하며 추가적인 성분이 함유될 수 있음
사탕수수 와인 (Sugar cane wine)	-	깨끗하며 잘 익은 사탕수수로 소비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말함
견과류 제품 (Pili Nut Products)	-	- Spilt kernel products : 견과류를 볶고, 국가에서 인증한 감미료로 만들어진 걸쭉한 시럽과 섞은 제품 - Ground kernel products : 종피가 없는 전체 또는 깨진 견과류는 갈아서 기름을 추출한 후에 다른 성분들과 혼합되는 제품
훈제생선 (Smoked fish)	- 냉동생선(chilled fish) - 포를 뜯 훈제 생선 (filleted smoked fish) - Split smoke fish - Whole smoked fish	- 냉동생선(chilled fish) : 4℃ 이하에서 보관된 신선한 생선 - 포를 뜯 훈제 생선(filleted smoked fish) : 뼈를 발라낸 생선의 허리 살을 훈제처리한 생선 - Split smoke fish : 생선 머리부터 꼬리까지 배면을 따라 잘린 생선으로 훈제처리한 생선. - Whole smoked fish : 내장이 제거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훈제처리한 생선
건과일 (Dried tropical fruits)	-	깨끗하고 잘 익은 망고, 파파야, 파인애플, 잭푸르트로 소비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말함
감귤류 과일 음료 (Citrus beverage products)	- Calamansi - Dalandan	- 필리핀 감귤류 과일로 분류된 과일을 가지고 소비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말함 - 산성식품 : pH 4.6 또는 그 이하인 제품 - 필리핀 감귤류 과일
망고음료 (Mango beverage products)	-	신선하고 잘 익은 망고(Mangifera indica Linn)로 만들어졌으며, 즉석음료 (ready to drink, RTD), 농축음료, 파우더 형태의 음료, 퓨레, 식품첨가물을 함유하지 않고 적절하게 포장된 망고 음료들을 포함
발효유 (Fermented milk)	-	성분변화가 없으며, 침전물이 생기지 않게 제조된 발효유제품을 말하며, 발효 이후에 열처리를 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제품에서는 미생물이 유통기한까지 살아있어야 함
어류가공품 (Thermally processed fish products)	-	신선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생선으로 가공된 제품을 말함

* 출처 : 식약처, 필리핀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 규격 체계, 2016

1. 관리·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
 - 소개
 - 필리핀 농업부(DA)는 필리핀의 전반적인 농업과 수산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 필리핀 농업과 수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 관리, 농업 관련 마케팅 지원 서비스, 농업 현장 관리 및 재무 관리, 농업 관련 전반적인 정부 계획 수립 및 법률 수립, 정부 정책 연구 개발 지원 및 프로젝트 개발과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검역과 관련된 산하기관 및 업무
 - 필리핀 농업부는 8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그중 통관 검역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 : 필리핀의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모든 수입 신선 과일 및 채소는 BPI의 식물 질병 및 바이러스 체크를 거쳐야 함
 -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 필리핀의 산 동물과 육류, 동물성 식품 및 기타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함. 가축 예방 및 방역, 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수산 및 수산자원국(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BFAR) : 필리핀의 수산물 및 수산 자원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수산물의 수출입 관련 업무, 수산물 가공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해양 수산 자원의 모니터링 작업과 생산에 관한 업무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 농수산물표준사무국(Bureau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tandards, BAFPS) : 신선농산물 및 수산물의 안전, 품질, 보관, 표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소개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 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가공식품 및 가공축산물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의 관할임

나. 법률체계

○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 규제

- 행정명령 26호(AO26), 육류 및 육가공품의 수입에 대한 수정된 규칙 및 규제 기준(Revised Rules, Regulations and Standards Governing the Importation of Meat and Meat Products into the Philippines), 2005년 9월
- 행정명령 26호는 농무부가 인증하는 수입업자가 육류 및 육가공품을 수입 하기 전에 동물검역증서(Veterinary Quarantine Clearance, VQC)를 취득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동물검역 증서는 발행일로부터 60일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없음
- 동물검역 증서는 양도될 수 없고 증서를 발행받은 수탁인만이 사용할 수 있음. 선적 일회, 혹은 선하증권 한 부당 동물검역서가 필요함
- 농무부는 회석되지 않는 불순물이 중량의 0.15%이하를 차지하는 무단백질 수지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식품 수입 규제

- 이하의 상품 및 요건을 만족한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만이 필리핀에 수입이 가능함
- 30월령 이하의 소를 도축한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강한 소를 도축하여 뼈를 발라내고 각종 분비선을 제거한 근육살
- 중추신경계 조직이나 특정 위험물질을 제거한 고기
- 도축일이나 가공 일자가 포장용기 라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살아있는 동물 수입 규제

- 살아있는 동물 수입 조건은 살아있는 가축에 대한 필리핀 수입 보건 규약 (Philippine Import Health Protocol for Live Cattle)에 명시되어 있음. 해당 규약의 구체적인 수입 규정 및 조건은 동식물 검역소 수의국(APHIS Veterinary Services)이 제공하고 있음
- 육류 및 육가공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업자들은 가축이 운송되기 전에 동물 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으로부터 동물검역서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애완동물 사료 수입에 대한 규제

- 육류 및 육가공품 수입에 대한 사항과 유사함
 - 가공된 개 및 고양이 사료의 외국 제조업자 및 필리핀 수입업자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승인을 신청하고 동물 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에 등록해야 함
 - 필리핀에 반입되는 모든 애완동물 사료는 관련 규제기관의 검역인증서와 함께 반입되어야 함
 - 상품이 운송되기 전에 동물 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의 동물 사료부(Animal Feeds Division)가 발행한 수의검역서를 취득해야 함

○ 생선 및 해산물 수입 규제

- 수산물 수입업자는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⁴⁾
- 생선(신선, 냉장, 냉동) 및 수산품의 수입은 농무부 장관이 공공의 복지와 안전을 고려하여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증한 경우에만 수입될 수 있음. 통조림 제조 및 가공 목적으로 수입되고 기관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신선/냉장/냉동 생선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만 이러한 인증 의무가 면제됨
- 이외의 모든 수산 수입품은 공화국 법 8550호 67조의 위해 분석 및 중요 관리점(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함
- 유통 및 추가 가공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반입되는 모든 생선 및 수산가공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규제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국제보건증명서(International Health Certificate)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 증서는 필리핀에 운송 완료되는 즉시 제반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국제보건증명서는 다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어야 함
 - 1) 생선 및 수산품은 냉동되기 전의 상태가 크기 별로 등급이 나누어진 신선한 품질의 상품이어야 함
 - 2) 수산품은 가공 공장 및 냉동 선박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가공되어야 함
 - 3) 냉동 수산품은 운송 중 영하 18°C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함
 - 4) 생선 및 수산품은 기생충 검사를 위해 육안 검사를 받아야 함. 기생충에 오염된 생선은 배치에서 제거되어야 함

4) 관련규정 : 어업 규정(Fisheries Code) 공화국법 8550호(RA 8550), 어업행정명령 195호에 근거)

- 또한 국제 보건증명서는 다음의 실험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이 결과는 아래와 같은 지표생물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1) 총 생균수 10/g
 - 2) 대장균 10~100/g
 - 3) 살모넬라균 25g 샘플에서 미검출
 - 4) 시겔라균 미검출
 - 5) 비브리오 대장균 미검출
- 수산품은 유헤액 및 기름, 연료, 기타 위험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생적인 환경에서 포장되어야 함
- 다음의 내용이 포장 및 제반 서류에 포함되어야 함
 - 생략 없이 표시된 원산지국가
 - 생산 및 수산품 품종의 무게 및 내용물
 - 공급자 주소
 - 수산 및 수산 자원국(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의 검사 인증 도장(추가 가공을 목적으로 대용량으로 수입된 냉동 수산품은 상기 요구사항에서 면제됨)
- 청과물 수입에 대한 규제
 - 모든 수입 청과물은 식물 산업국(BPI)의 식물위생 통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인증은 수입 허가증으로 간주됨. 이 허가증은 필리핀 수입업자가 운송을 한 번 할 때마다 적용됨
 - 청과물은 출발지 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PC)와 함께 수송되어야 함. 청과물은 수출되기 전에 수입허가를 취득하여야 함. 선적일은 수입허가를 득한 날짜보다 빨라서는 안 됨
 - 필요시 특정 해충을 통제하기 위한 냉장처리를 한 경우, 사과, 포도, 오렌지, 감자, 양파, 마늘의 수입을 허용함
-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규제
 - 식품 첨가물은 필리핀 식품법과 식품 의약국이 만든 규제를 준수하여야만 함.
 - 식품 의약국은 식품 첨가물을 “가공 식품의 구성요소가 되는 모든 물질 혹은 가공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질”로 정의함. 따라서 가공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준비, 포장, 처리, 운송, 보관 과정에서 사용되어 직, 간접적으로 해당 식품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질은 식품 첨가물에 포함됨

○ 항산화제 섭취 제한량

- 산화작용에 의한 품질 저하, 산패, 변색을 지연시킴으로써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섭취 제한량/최고 섭취량은 다음과 같음

〈항산화제 섭취 제한량〉

항목	섭취 제한
아스코르브산	• GMP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 GMP
부틸 히드록시아니솔	• 0.02%
아스코르브산 칼슘	• GMP
디라우릴치오디프로피오네이트	• 0.02%
에리소르빈산	• GMP
에톡시퀸	• 칠리 파우더 및 파프리카의 변색 방지를 위해 100ppm 허용
레시틴	• GMP
갈산프로필	• 0.02%
아스코르브산나트륨	• GMP
에리소르빈산 나트륨	• GMP
염화 제1주석	• 통조림 캔으로 계산하여 11~20 ppm
티오디프로피온산	• 0.02%
삼차부틸하이드로퀴논(TBHQ)	• 0.02%
알파 토코페롤	• GMP
토코페놀(혼합 농축물)	• GMP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Ⅱ), 2016

○ 주요 식품류의 안전 기준

구분	내용
우유 및 유제품	• PNS/BAFPS 36:2008 (Philippine National Standard for Fresh Milk), FDA A.O. No.132 s. 1970 (Regulation Prescribing the Standard of Identity and Quality of Milk and Milk Products, B-4,12-01) 및 기타 해당 식품 규격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우유 기반 전통과자(pastillas 및 yema)의 생산에 사용되는 우유와 유제품은 건강한 동물에서 얻어야 함 • 우유와 유제품은 규제기관 및 당국이 요구로 하는 위생 조건에서 생산되어야 함 • pastillas 및 yema의 제조는 우유 또는 유제품의 두 가지 형태(액상유, 분유)로 이용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설탕 및 기타 감미료	· 테이블설탕, 옥수수 시럽 및 다른 유사한 식품을 포함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
알류	· yema에만 적용, 신선한 알이어야 하며, PNS/BAFPS 35:2005 (Philippine National Standards for Table Egg)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과 기타 적용 가능한 식품 규격을 준수해야 함
버터, 마가린 및 기타 유사 식품	· FDA A.O. No. 243 s. 1975 (Regulation: B-4 Definition and Standards of Food; B-4,18 Margarine)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식품 규격을 준수해야 함
과일, 채소, 견과류, 근채류	· 신선한 상품 또는 보존을 포함하고 모든 해당 식품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함
물	· 깨끗한 음용수는 제과 제품 가공단계와 제조 및 모든 전처리에 사용되어야 함
맛과 향미 물질	· 모든 맛과 향미물질은 2절에서 정의된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에 의해 식품 등급으로 인증해야 함
기타 성분	· 전분, 코코아가루 및 다른 성분을 포함할 수 있음. 사용하는 모든 성분은 식품 등급 품질이 모든 해당 규격에 적합해야 함

* 출처 : 식약처, 필리핀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 규격 체계, 2016

○ 검역 심사 종류

〈검역 심사 종류〉

검역 심사 종류	내용	통관절차
SGL (Super Green Lane)	· 필리핀 500대 기업의 수입 물품 및 FEZA에 등록된 기업의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통관유형으로, 수입업자가 화물이 도착하기 전 전자 통관신고를 하면 화물 도착 후 서류나 실물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할 수 있음	· 화물 도착 전 전자서류로 통관신고 · 도착 즉시 서류 및 실물 검사 없이 통관
GL (Green Lane)	· 양호한 수입 기록을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통관유형으로, 서류나 실물 검사 없이 통관할 수 있지만, 통관 후 세관의 회계조사가 진행됨	·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 관세청 사후 회계조사
RL (Red Lane)	· 수입 기록이 불량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통관유형으로, 서류 검사는 물론이고 실물 검사까지 까다롭게 진행함	· 화물 도착 전 통관신고 · 실물 및 서류검사 · 관세청 사후 회계조사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 필리핀 인삼음료, 2017

2. 품목별 검역절차

가. 농산물

- 신선농산물 검역 절차
 - 담당기관
 - 필리핀 농업부(DA)산하의 식물산업국(BPI)이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을 규제함
 - 식물위생증명서(보건 검역증)
 - 신선농산물 수출 시 원산지에서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PC)가 필요함. 위생 증명서는 입국 시 수입허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 요건
 - 현지 수입업체가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출 대상 품목 식물검사항격증을 신청하여 발행받아야 함
 - 과실 및 채소 수입 절차
 - 도착 시 검역 실시(병해충 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 후 수입통관을 완료함
 - 수입허가서나 식물검사항격증명서가 없는 선적분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허가서와 식물검사항격증을 제출할 때까지 세관에 압류 조치됨
 - 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조치 될 수 있음

나. 축산물

- 축산물 검역 절차
 - 검역기관
 - 축산물은 본래 필리핀 농업부(DA)산하 동물산업국(BAI)의 관할이나, 가공 축산물은 필리핀 식약청에서 담당함
 - 보건검역증
 - 필리핀에 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이 발행한 보건검역증을 동반하여야 함
 - 현지 수입업체 요건
 - 필리핀에 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업체가 동물검역서(VQC)와 상품등록인증서(CPR, 가공축산물만)를 발급받아야 함

- 검역 절차
 -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음
 - 1) 검역요청서(Request for Inspection, RFI), 보충서류 제출
 - 2) 검역비 납부
 - 3) 항구에서 RFI, 보충서류 심사
 - 4) 물품검역
 - 5) 수입 최종 도착지 결정
 - 6) 검역보고서 제출
 - 7) 냉장보관창고로 이동
 - 8) 육류검역증명서(Certification of Meat Inspection) 발급

다. 수산물

- 수산물 검역 절차
 - 검역기관
 - 필리핀 농업부(DA) 산하 수산 및 수산 자원국(BFAR)가 관할함
 - 보건검역증
 - 필리핀에 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이 발행한 보건검역증을 동반하여야 함
 - 현지 수입업체 요건
 - 필리핀에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업체가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검역 절차
 - 선적분이 도착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을 실시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함
 - 서류가 부족할 경우 제출할 때까지 세관에 압류 조치됨
 -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조치 될 수 있음

라. 가공식품

- 가공식품 검역 절차
 - 검역기관
 - 가공식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의 관할임

- 보건검역증
 - 필리핀에 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출국의 규제기관이 발행한 보건검역증을 동반하여야 함
- 현지 수입업체 요건
 - 필리핀에 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입업체가 영업허가증(LTO)과 상품등록인증서(CPR)가 필요함
- 검역 절차
 - 선적분이 도착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검역을 실시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함
 - 서류가 부족할 경우 제출할 때까지 세관에 압류 조치됨
 -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반송 혹은 폐기조치 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식물위생증	동물검역증서(VQC)	보건검역증
대상제품	농산물(과실, 채소 등)	육류 및 육가공품	가공식품
발급기관	식물 산업국(BPI)	동물 산업국(BAI)	수출국 규제기관
제출기관	수입세관		
표기언어	영문		

1. 관리 · 법률체계

가. 법률체계

○ 필수 표기내용

- 원산지, 브랜드, 로고, 물리적 · 화학적 구성성분, 순중량이나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위반 시 5,000페소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됨
- 수입식품의 라벨링에는 식품의 이름, 제품에 사용된 재료(사용된 양이 큰 순서대로/첨가제, 향료, 방부제포함), 순 내용물 및 건조된 중량, 생산자(포장자)나 유통업자의 주소(수입 물품의 생산국과 필리핀 수입자(유통업자)의 주소 등이 표기되어야 함

○ 라벨링 규정

- 필리핀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알기 쉽게 필리핀 내 공식 언어(영어)로 표기해야 함
- 위반 수입 상품은 적정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고 벌과금(5만~5십만 페소)이 완납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됨
- 개별상품에 원산지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 포장 상자에 표기를 허용하고 있음.
- 모든 성분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부합하게 표시해야 하며, 주요 안내 부분은 소비자가 구입 시 잘 볼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함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은 라벨링의 내용이 필리핀 식품 및 의약품국(BFAD)의 기준에 적합한지 세밀하게 검토함⁵⁾
 - 각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적 성분 내용은 수입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평가할 때 식품 및 의약품국(BFDA)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이 표기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됨
 - 신청 서류를 식품의약품청(FDA)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가 검토하여 제품 등록을 승인하며 4,000~10,000페소의 비용이 발생하고, 약 90영업일의 기간이 소요됨

5) 식품 및 의약품국(BFDA) 식품 라벨링 규정은 www.bfad.gov.ph에 포함된 AONo. 88-B (1994) 참조

2. 표시사항

가. 기본표시사항

○ 필리핀 식품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필리핀 식품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항목	설명
1	제품명	· 상품명에 구체적이어야 하며,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야 함
2	상표명 또는 상표	· 등록된 상표명이 있다면,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표명을 라벨에 표기
3	성분 목록	·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나열 [첨가제, 착향료, 보존제 포함]
4	중량	· 실 중량, 건조 중량
5	업체 상호와 주소	·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상호와 주소를 표기. 수입식품은 원산지도 표기
6	제품번호	· 제품 포장용기에 양각으로 새기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표기
7	보관조건	· 실온보관 이외 조건이 필요한 제품은 보관조건을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기
8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 날짜, 월, 연도순으로 표기 · 혼란을 막기 위하여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월은 문자로 표기
9	식품 알레르기 정보	· 성분 목록 바로 아래에 분명하고 눈에 띄게 표기
10	사용[섭취]방법	· 식품의 적절한 활용 또는 섭취방법에 대하여 설명
11	영양정보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칼로리를 표로 표기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국가정보 아세안 기초세우기, 2018

○ 제품 특성별 표시사항

- 다음의 제품은 위의 필수 표기 사항 이외의 추가정보를 라벨에 표기해야 함

〈필리핀 식품라벨링 추가 기재 요소〉

	항목	설명
1	포장가공육	· 제품가공에 사용한 육류의 종류
2	생수	· 제품명과 제조업체 주소, 물 종류
3	특별식이식품 (당뇨환자용 등)	· 비타민, 미네랄, 기타 성분
4	식음료제품	· 라벨사본을 미리 제출하여 제품등록에 사용함. Codex, 식품의약품청(F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5	어류 및 수산식품	· 원산지명, 어류의 품종, 무게와 내용물, 공급자 주소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FTA로 다시 보는 필리핀, 2016

나. 표기방식

○ 필리핀 라벨링 상세 표시사항

- 표기언어 및 글자 크기

- 식품라벨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영어 또는 타갈로그어로 표기(영어와 타갈로그어 혼용 가능). 수출용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가 사용되어야 함. 수입식품의 경우, 외국어로 표기된 정보는 반드시 영문 번역을 첨부

- 상품명 및 명칭

- 제품명은 구체적이고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야 함
- 식품 기준상 특정 식품에 대해 제품명 또는 이름이 설정된 경우, 그중 하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함
- 일반적인 경우 또는 제품 이름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혼동되지 않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함
- 식품의 성격과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식품의 제품명과 함께 혹은 가까운 곳에 그러한 추가적인 단어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예 : 건조, 동결건조, 농축, 훈제 등)
- 식품의 제품명 및 명칭은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에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패널과 관련 있는 가장 큰 패널(예 : 상표 또는 상표명)과 관련이 있는 크기여야 함

- 상표 또는 상표의 사용

- 등록된 상표(명)이 있다면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표(명)를 라벨에 표기
- 시설에 등록된 상표명 또는 상표가 있는 경우, 해당 상표권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상표명 또는 상표를 해당 상표의 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추가 가공을 할 경우 표시할 수 없음
- 사용된 브랜드명 또는 상표는 제품 이름과 함께 표시되어야 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 혼동 혹은 어떤 점에서든 그 성격이나 본질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 동일 제품 분류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이미 등록된 상표명 또는 AO No.2005-0016 AO No.2005-0016에 근거한 공적 도덕에 위배되거나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상표명과 동일한 브랜드 이름은 허용되지 않음
- 동일한 브랜드 소유자가 허가한 경우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

- 제조업자, 재포장업자, 포장업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및 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
 - 식품의 제조업자, 재포장업자, 포장업자, 수입업자, 무역업자 및 배급업자의 이름과 주소는 현지에서 제조된 제품의 라벨에 표시해야 함
 - 포장된 제품이 라벨에 표시된 사람 또는 회사에 의해 제조되지 않은 경우, 이름은 “Manufactured for” 또는 “Packed for”와 유사한 표현으로 기재되어야 함
 -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자와 원산지 국가의 완전한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
 - 외국 브랜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외국 회사의 허가 하에 제조한 제품의 경우, 외국 회사의 이름과 주소는 현지 회사에서 사용된 것보다 크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함
 - 제2국에서 가공되어 식품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경우, 가공되는 제2국은 라벨링 상의 원산지국으로 간주함
- 순 내용물 및 순중량
 - 순 내용물은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혹은 정보패널에 미터법과 같은 국제적 단위로 기재되어야 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함
 - 1) 액상 식품의 경우, 부피 기준
 - 2) 고체 식품의 경우, 무게로 표시함. 단, 해당 식품을 번호별로 판매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해야 함
 - 3)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 중 하나를 선택함
 - 액체 매질(소비되기 전에 버려지는)에 포장된 식품은 물이 빠진 순중량으로 기재되어야 함
 - 다중 단위 소매 패키지의 경우, 외부 패키지의 내용량에 대한 설명은 개별 단위의 수, 각 개별 단위의 순 내용물 및 괄호 안의 다중 단위 패키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제조일자, 유통기한
 - 상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은 일, 월, 년 순으로 기재함.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날짜와 연도는 숫자로 기재하며, 월은 문자로 기재함(예 : 01Jan12)
- 수입 제품의 라벨링
 - 수입 물품은 필리핀 내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알기 쉽게 필리핀 내 공식 언어(영어)로 표기해야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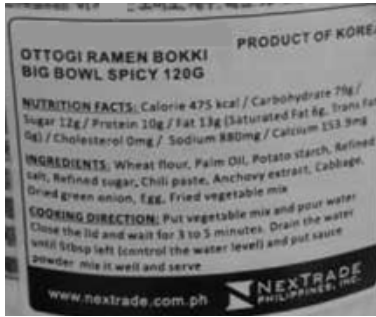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라벨링에는 원산지, 브랜드, 트레이드마크, 물리적/화학적 구성성분, 순중량이나 크기, 제조업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위반시 5,000페소 벌금 및 6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됨)
- 수입식품의 라벨링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식품의 이름, 제품에 사용된 재료(사용된 양이 큰 순서대로/첨가제, 향료, 방부제포함), 순 내용물 및 건조된 중량, 생산자(포장자)나 유통업자의 주소(수입 물품의 생산국과 필리핀 수입자(유통업자)의 주소 등임

다. 기타 유의사항

- 영양 및 의학적 성분
 - 각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적 성분 내용은 수입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서를 평가할 때 식품 및 의약품국(BFAD)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이 표기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됨
- 영양 및 건강 정보와 광고
 - 특정한 식이요법을 위해 마케팅 되는 식품(예를 들어 당뇨병자 식품)의 라벨은 식품 의약품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식품의 비타민 및 무기질, 기타 식이특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
 - 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 광고에 대한 일반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권한을 가짐. 식품의약품청(FDA)은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는 식품광고의 영양 및 의약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모니터할 책임이 있음. 식품의약품청(FDA)은 모든 제조업체, 유통업체 혹은 광고업체에 부정확하거나 소비자를 호도하는 영양 및 의약 정보를 광고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광고업체가 거짓정보 사용을 중단하라는 식품의약품청(FDA)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 법과 규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청(FDA) 라벨 견본 제출
 - 식품의약품청(FDA)은 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라벨 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라벨의 내용은 국제 식품규격과 식품의약품청(FDA)의 요건 상,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세히 검토됨. 이러한 라벨에 포함된 영양 및 의학적 정보는 식품의약품청(FDA)이 필리핀으로 수입되기

위한 외국 상품, 특히 건강보조제, 유아식품 및 특수 식이요법을 위한 식품 등의 상품에 대한 등록 신청서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임. 진위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를 담은 라벨이 붙은 상품은 필리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3. 라벨링 샘플

표 기 항 목	표 기 내 용	라 벨 링 사 진
품 명	영어로 제품명 표기	
영양성분	칼로리를 먼저 기재한 뒤, 영양성분을 높은 함유량 순으로 기재	
원재료	영어로 표기	
조리방법	조리 방법 설명	
제조업체	제조업체 이름 기재	
수입 유통업체	수입 유통업체의 이름을 기재	

부록1. 식품의약품청(FDA) 영업허가증(LTO) 통합 신청서

영업허가증 통합신청서(원문)

[illegible]

영업허가증 통합신청서(국문)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신청서 양식	5. 원산지 & 고객		
문서 추적 번호 기술 (선택사항)				
	신청 양식 현황			
	일반 정보 :			
	설립 정보			
	제품 정보			
	부가 정보			
	원산지 & 고객			
	신청 정보			
1. 일반 정보				
11. 제품 센터 :				
	해당 문서는 2016년 7월 29일 오전 9시 42분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 출처 :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www.fda.gov.ph)

*필리핀 FDA 홈페이지(www.fda.gov.ph)의 우측 상단에 Search에서 Integrated Application Form을 검색하여 나오는 Excel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하면 되며, 각 엑셀의 셀마다 자동 양식이 완성되어 있으니 좌측 상단부터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작성하면 됨.

부록2.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 상품등록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상품등록인증서(원문)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Healt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ivic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City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PHILIPPINES

FDA Registration No.: FR-4000001612231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High Risk Food Product)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Republic Act No.3720, otherwise known as the Food, Drugs and Devices, and Cosmetic Act, as amended by Executive Order No. 175, and Republic Act No. 9711, otherwise known a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and other applicable laws, rules and regulations, the registration of the High Risk Food Product described hereunder is granted approval.

Product Name: LUNCHEON MEAT - HAM
Brand Name:
Packaging:
Company Name:
Company Address:

Company LTO:
Manufacturer Name and Address:

The company hereby ensures that they shall respond and cooperate fully with the FDA with regard to any subsequent post-marketing activity initiated by the FDA. Further, the company sha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each batch/lot of the product continues to meet all the legal requirements, and conforms to all the standards and specification of the product declared to the FDA, including compliance to the list of obligations enumerated at the reverse side of this document.

The authorization is subject to suspension, cancellation, or recall should any violation of FDA laws, and its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involving the product be committed.

Issued on 27 August 2017 and valid until 27 August 2022 .

BY AUTHORITY OF THE DIRECTOR GENERAL


PILAR MARILYN M. PAGAYUNAN
Director IV, 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

Remarks: Declare "Serving Suggestion" near picture of the prepared product on the label.

FDA-0264719

상품등록인증서(국문)

필리핀

보건부

식품위생과 약품에 관한 법률

Civic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 Muntinlupa City

FDA 등록 번호 : FR-4000001612231

상품등록인증서

(고위험 음식 제품)

다음의 고위험 식품의 등록은 2009년 식품의약품국법-행정명령 제175호와 공공법 제9711호와 기타 적용 가능한 법과 규칙에 의해 개정된 식품, 의약품 및 장치와 화장품법-공공법 제3720호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제품명 : 런천미트 - 햄

브랜드명 :

포장 :

기업명 :

기업 주소 :

기업 LTO :

제조업체명 및 주소 :

본사는 FDA에 의해 시작된 모든 시판 후와 관련하여 FDA와 전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본사는 제품의 각 집단/많은 제품이 본 문서의 뒷면에 열거된 의무 목록에 대한 준수를 포함하여 모든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및 FDA에 신고된 제품의 모든 기준 및 특징이 일치하는지를 보증합니다.

보류, 취소 혹은 리콜에 대한 본 허가는 제품에 관련된 FDA 법률과 제품의 시행규칙의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 8월 27일에 발행되어 2022년 8월 27일까지 유효합니다.

기관장의 권한으로

PILAR MARILYN M. PAGAYUNAN

Director IV, 식품 규제 및 연구 센터

비고: 라벨 위의 준비된 제품의 사진 근처 "제공 제안"을 신고하십시오.

FDA-0264719

* 출처 : 한국육류유통 수출협회(<http://www.kmta.or.kr/m/export/ph.php/314>)

부록3. 필리핀 수입신고서와 작성요령

필리핀 수입신고서와 작성요령(원문)

- 1 Write your Surname, first name and middle name.
- 2 Select your gender by checking it and write your birthday in the said format.
- 3 Write your citizenship and occupation or profession.
- 4 Write your passport number also the date and place of issue.
- 5 Write your address in the philippines and abroad.
- 6 Write your flight number, airport of origin and the date of arrival at the box provided.
- 7 Indicate your purpose/nature of travel to the philippines by checking on the choices.
- 8 Write the number of accompanying members of your family.
- 9 Indicate the number of baggage you checked-in and hand carried.
- 10 Answer the questions by yes or no by checking the box corresponds to your answer.
- 11 Please sign the dully accomplished form to certify that the declaration is true and correct.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Finance
BUREAU OF CUSTOMS

CUSTOMS DECLARATION

All arriving passengers must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If travelling with a family, only one (1) declaration is required to be made by the head or any responsible member thereof. Please fill-up completely and legibly.

SURNAME / FAMILYNAME		FIRST NAME	MIDDLE NAME
SEX ☐ MALE ☐ FEMALE		BIRTHDAY (MM / DD/YY)	
CITIZENSHIP		OCCUPATION / PROFESSION	
PASSPORT NO.		DATE AND PLACE OF ISSUE	
ADDRESS (Philippines)		ADDRESS (Abroad)	
FLIGHT NO.	AIRPORT OF ORIGIN	DATE OF ARRIVAL	

PURPOSE / NATURE OF TRAVEL TO THE PHILIPPINES

1. ☐ Balikbayan	4. ☐ Business
2. ☐ Returning Resident	5. ☐ Tourism
3. ☐ Overseas Filipino Worker	6. ☐ Others(Specify)

NO. OF ACCOMPANYING MEMBERS OF THE FAMILY:

NO. OF BAGGAGE: Checked-in _____ Pcs. Handcarried: _____ Pcs.

GENERAL DECLARATION: (Please read important information at the back)

1. Are you bringing in live animals, plants, fishes and/or their products and by-products? (if yes, please see a customs Officer before proceeding to the Quarantine Office). ☐ Yes ☐ No

2. Are you carrying legal tender Philippine notes and coins or checks, money order and other bills of exchange drawn in pesos against banks operating in the Philippines in excess of PHP 10,000.00? ☐ Yes ☐ No

If yes, do you have the required Banko Sentral ng Pilipinas authority to carry the same? ☐ Yes ☐ No

3. Are you carrying foreign currency or other foreign exchange-denominated bearer negotiable monetary instruments (including travelers checks in excess of US\$ 10,000.00 or its equivalent? (if yes ask for and accomplish Foreign Currency Declaration Form at the Customs Desk at Arrival and Departure areas). ☐ Yes ☐ No

4. Are you bringing in prohibited items/firearms ammunitions and part thereof, drugs, controlled chemicals or regulated items (VCDs, DVDs, communication devices, transceivers)? ☐ Yes ☐ No

5. Are you bringing in ☐jewelries ☐ electronic goods and ☐ commercial merchandise and/or samples purchased or acquired abroad? ☐ Yes ☐ No

ALL PERSONS AND BAGGAGE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Section 2210 and 2212 Tariff &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as amended)

I HEREBY CERTIFY UNDER PENALTY OF LAW THAT THIS DECLARATION IS TRUE AND CORRECT	DATE OF LAST DEPARTURE FROM THE PHILIPPINES
SIGNATURE OF PASSENGER	

FOR CUSTOMS USE ONLY

PRINTED NAME & SIGNATURE OF CUSTOMS OFFICER	CODE NO.	LANE NO.	DATE
---	----------	----------	------

필리핀 수입신고서와 작성요령(국문)

1. 성, 이름 그리고 중간 이름을 차례로 기재하십시오.
2. 성별란에 본인의 성별을 표시하시고, 생년월일란에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3. 본인의 국적, 직종, 직업을 기재하십시오.
4. 여권 번호와 여권 발행 국가 및 일자리를 기재하십시오.
5. 필리핀 현지 주소와 본국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6. 주어진 란에 항공편명, 기항공항과 입국일을 기재하십시오.
7. 주어진 선택지에 체크하여 방문 목적/특성을 표시하십시오.
8. 동반 가족 인원수를 기재하십시오.
9. 동반 수하물의 수량을 기재하십시오.
10. 질문에 대한 답을 예, 아니오 칸에 표시하여 답변하십시오.
11. 정자체로 서명하여 본 신고가 진실하며 사실임을 증명하십시오.

세관 신고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가족의 대표 혹은 책임 있는 구성원이 작성한 (1)장의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모든 항목을 정자체로 기입하십시오.			
성/가족명	이름	중간이름	
성별	생년월일 (MM/YY)		
국적	직업/직종		
여권 번호	여권 발행 국가 및 날짜		
주소(필리핀 현지)		주소(해외)	
항공편명	출발 공항	도착날짜	
필리핀 방문 목적/특성			
1. ☐ 발릭바얀 4. ☐ 사업 2. ☐ 거주민 귀국 5. ☐ 관광 3. ☐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6. ☐ 기타 (세부사항)			
가족 동반자 수:			
동반 수하물 수: 부칠 짐: _____개 기내 휴대: _____개			
일반 신고서: (뒷면의 중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살아있는 동물, 식물, 어류 및 생산물, 부산물을 ☐ 네 ☐ 아니오 휴대하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검역소를 통과 하기 전에 세관 직원을 방문하십시오) 2. 필리핀 내의 은행이 아닌 곳에서 페소로 환전된 ☐ 네 ☐ 아니오 필리핀의 지폐, 동전, 수표, 법정화폐 및 교환 통화를 PHP10,000.00을 이상 휴대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Banko Sentral ng Pilipinas의 ☐ 네 ☐ 아니오 허가를 받았습니까? 3. 외화 및 외국 통화 무기명 지급수단(여행자 수표 ☐ 네 ☐ 아니오 포함, 미화 10,000달러 혹은 동일 가치의 것)을 소지하십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세관에서 외화 신고서를 요청하여 작성하십시오.) 4. 금지물품 (총기, 탄약류 또는 마약류, 제조 화학물), ☐ 네 ☐ 아니오 혹은 규제물품 (VCD/ DVDs, 송수신기,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5. 보석, 전자기기,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 ☐ 네 ☐ 아니오 수취한 제품을 휴대하십니까?			
모든 개인들 및 수하물은 어떠한 때에도 검문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세 & 세관 규정의 2210과 2212항에 따름)			
본인은 본 신고가 사실임을 법에 따라 증명합니다.		필리핀 최종 출국일	
본인 서명			
세관 제출용			
세관 담당자 성명 & 날인		코드명	레이н 넘버
			날짜

* 출처 : 필리핀 관세청(<http://customs.gov.ph/customs-declaration-form/>)

부록4.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견적송장 견본(원문)

PROFORMA INVOICE					
Invoice No			Date		
Bill To: [Company Name] [Contact Person] [Address] [City/State/ZIP Code] [Country] [Phone/Fax]			Ship To: [Company Name] [Contact Person] [Address] [City/State/ZIP Code] [Country] [Phone/Fax]		
Total Gross Weight	Transportation	Pay To: [Bank Name] [Bank Account Name] [Bank Account #]		Terms of Sale:	
Total # of Pieces	Currency				
Description	Qty	UOM	Unit Price	Total Amount	
Notes	Subtotal				
	Freight Cost				
	Insurance Cost				
	Total Invoice Value				
Name		Signature		Date	

견적송장 견본(국문)

견적송장					
송장 번호			날짜		
청구: [회사명] [담당자] [주소] [시/주/우편번호] [나라] [핸드폰/팩스]			배송: [회사명] [담당자] [주소] [시/주/우편번호] [나라] [핸드폰/팩스]		
총 중량	교통	지불: [은행명] [은행계좌명] [계좌번호]		매매 조건	
총 수량	통화				
설명	수량	UOM	단위당 가격	총량	
노트	소계				
	수송비				
	보험비				
	총 송장 가격				
성명	서명		날짜		

* 출처 : Free Word Templates(<https://freewordtemplates.net/invoice/proforma-invoice.html>)

부록5. 해외대리점 계약서 견본(Foreign Agency Agreement)

해외대리점 계약서 견본(원문)

Sample Documents

FOREIGN AGENCY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this _____ day of _____, _____ by and between _____, a _____ corporation with offices at _____,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called "Manufacturer") and _____ ("Distributor"), with offices at _____.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I. ASSOCIATION

Distributor shall act as an exclusive distributor of Manufacturer's _____ as described in attached Exhibit A ("Products") throughout the countries of _____ (the "Territory").

II. DUTIES

Distributor agrees to actively and diligently promote the sale of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during the Term hereof. Manufacturer shall refer to Distributor inquiries for Products in the Territory.

Distributor agrees to promote in the Territory the Manufacturer's names and the Products during the Term hereof. Distributor agrees to notify Manufacturer of any leads of interest granted for any products.

III. ASSISTANCE BY MANUFACTURER

Manufacturer agrees to furnish Distributor with reasonable quantities of Manufacturer's catalogs, manuals, advertising literature and other sales aids that may be available by Manufacturer. Any such sales aids provided shall be in English. Manufacturer further agrees to provide Distributor with reasonable home office support and technical assistance upon terms and conditions to be agreed upon from time to time

해외대리점 계약서 견본(국문)

견본 서류

해외 대리점 계약서

이 계약은 미국 _____ 에 영업소를 둔 _____ 기업
(이하 “제조사”)와 _____ 에 영업소를 둔 _____ 기업
(이하 “판매사”) 사이에 _____ 연 _____ 월 _____ 일에 체결되고, 효력을 갖는다.

양 측은 이하의 내용에 합의한다:

I. 제휴

판매사는 제조사의 독점 판매사로서 첨부된 별지 A(“상품”)에 명시된 바와 같이 _____
 (“지역”)에서 _____를 행한다.

II. 의무

1. 판매사는 본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제품들을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홍보할 것에 동의한다. 제조사는 해당 지역의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사의 조사를 참고하기로 한다.
2. 판매사는 본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제조업자의 이름과 제품으로 홍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판매사는 모든 제품에 대한 모든 이익 창출 건에 대해 제조사에게 통지할 것을 동의한다.

III. 제조사의 지원 사항

제조사는 이용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 목록, 설명서, 홍보 문구 및 기타 판매전략의 합리적인 양을 제공하기로 동의한다. 제공되는 모든 판매전략은 영어를 사용한다. 나아가 제조사는 판매사에게 매 건 별로 합의되는 약관에 따라 본사 차원의 합리적인 지원과 기술 원조를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 출처 : Scribd

(<https://www.scribd.com/doc/96351417/Foreign-Agency-Agreement-Sample-Format-Only>)

부록6. 판매대리권 계약서 견본(Distribution Agreement)

판매대리권 계약서 견본(원문)

DISTRIBUTION AGREEMENT

AGREEMENT made as of the _____ day of _____, 20____, by and between *NAME OF SUPPLIER*, having its business address at _____(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LIER") and *NAME OF DISTRIBUTOR*,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TRIBUTOR").

WITNESSETH

WHEREAS

- A. SUPPLIER is the producer of certain wines from the state of *STATE* as more particularly identified on the price list attached hereto, and made a part hereof, as schedule 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ducts");
- B. DISTRIBUTOR desires to secure from SUPPLIER, and SUPPLIER is willing to grant to DISTRIBUTOR, the exclusive right to sell and distribute SUPPLIER'S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the exception of the state of *STATE* and direct retail, airline or consumer sales and sales exported out of the country from SUPPLIER'S *STATE* wine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rritory").

NOW THEREFORE, it is mutually agreed as follows:

- 1. SUPPLIER hereby appoints DISTRIBUTOR as its sole and exclusive distributor for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the Products in and throughout the Territory. DISTRIBUTOR will maintain, or cause to be maintained, a sales staff for the distribution of products handled by DISTRIBUTOR, including the Products, and DISTRIBUTOR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mote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SUPPLIER'S Products.
- 2. SUPPLIER will not ship the Products, or any other wines bearing the same or similar trademark, signature or identification anywhere on the package, to the Territory except under the order or by the direction of DISTRIBUTOR. It will refer to DISTRIBUTOR any and all orders or inquiries for the Products that it may receive for shipment to the Territory, or orders which are intended for eventual shipment to the Territory.
- 3. SUPPLIER will fill promptly and to the best of its ability all orders for the Products received from DISTRIBUTOR. The price to DISTRIBUTOR shall be based on delivery to DISTRIBUTOR'S warehouse and shall include a mutually negotiated delivered price to said warehouse. SUPPLIER and DISTRIBUTOR shall negotiate any price increases for the Products at least 60 days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any such increase. DISTRIBUTOR shall have the right to order one months supply of the Products at the current price prior to any increase. Payment in U.S. dollars shall be made by DISTRIBUTOR 90 days from the date of delivery to DISTRIBUTOR'S warehouse.

4. DISTRIBUTOR and SUPPLIER shall agree on an annual basis, or more frequently if required, as to the prices at which DISTRIBUTOR shall sell the Products to its customers. SUPPLIER will furnish to DISTRIBUTOR, promptly upon request, any and all authorizations that may be required by any governmental authority in connection with the sale and distribution of the Products in the Territory, provided that SUPPLIER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or maintaining said authorizations.
5. Pursuant to paragraphs 3 and 4 hereof, SUPPLIER and DISTRIBUTOR shall agree on SUPPLIER'S price to DISTRIBUTOR and DISTRIBUTOR'S price to its customers. In the event that SUPPLIER and DISTRIBUTOR cannot agree on either price within 30 days of commencement of the negotiations, the prices then in effect for each of said prices will be increased by an amount equal to the change in the Consumer Price Index--All US over a period of months equal to the number of months since the last price increase for each price.
6. SUPPLIER warrants, represents and agrees that all shipments of the Products sold or shipp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of first quality, suitable for beverage consumption, properly bottled and packaged in *STATE*, free from foreign matter, whether or not prejudicial to health, and will be bottled and packaged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in effect within the Territory.
7. SUPPLIER will, upon demand, promptly execute such documents and perform such acts as may be necessary so as to prevent any products labeled in imitation or simulation of the Products from being distributed in the Territory.
8.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be for a period of two years commencing on *DATE*, and terminating on *DATE*, and shall thereafter continue in effect unless either party shall notify the other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at least 12 months written notice prior to any specified termination date. Either party shall have the option to terminate this Agreement after six months of the notice period by paying to the other party a sum equal to one-half of the case volume of the previous calendar year multiplied by \$*DOLLAR* per case. However, in the event of a breach of any of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90 days written notice provided said notice shall set forth the breach being claimed as the basis for termination. If the offending party cures the breach being claimed within said 90-day period, the notice of termination shall be void and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and force and effect.
9.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7 hereof, SUPPLIER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60 days written notice in the event that DISTRIBUTOR shall:
 - a. be declared bankrupt or enter a voluntary petition for bankruptcy or in any way enter into a compromise or agree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 b. fail to meet at least 90 percent of the mutually agreed upon sales performance goals set forth in Schedule B, attached hereto and made a part hereof.

- c. fail to maintain in good standing all Federal and state licenses and permits necessary for the proper conduct of its business;
 - d. change or in any way be affected by a change in the majority ownership of its business.
10. DISTRIBUTOR, upon request from SUPPLIER, will furnish SUPPLIER with available sales and depletion reports and details of all promotional and sampling programs with respect to the Products. DISTRIBUTOR will discuss with SUPPLIER any proposed changes in its distributor network at least 30 days prior to any such change.
11.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SUPPLIER shall repurchase, or cause its successor representative to purchase, as of said termination date, DISTRIBUTOR'S then existing inventory of SUPPLIER'S Products at DISTRIBUTOR'S laid-in cost, provided DISTRIBUTOR has properly stored and maintained the inventory of the Products in a saleable condition.
12. This Agreement i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annot be changed orally, and neither party has made any representations or promises to the other which are not expressed in this Agreement.
13. No waiver of a breach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unless made in writing, and no such waiver shall be deemed a waiver of any other existing or subsequent breach. No modif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of any effect unless set forth in writing.
14. All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re made subject to all applicable laws, regulations, rules or requirement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r agencies of said Government, and in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each of the parties hereto agrees to comply therewith.
15. All notices shall be sent prepaid either by mail or facsimile addressed to the respective parties at the address hereinabove set forth, unless they shall otherwise notify in writing.
16. This Agreement is an *STATE* contract and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STATE*.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then in effect, and judgment up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or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17. If arbitration is required to enforce or to interpret a provision of this Agreement, or otherwise aris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the prevailing party shall be entitled, in addition to, other rights and remedies that it may have, to reimbursement for its expenses incurred with respect to that action, including court cost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 at trial, on appeal, and in connection with any petition for review.

18. This Agreement shall not be assigned by either party hereto.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SUPPLIER

DISTRIBUTOR

By: _____

By: _____

Title: _____

Title: _____

4/4

판매대리권 계약서 견본(국문)

판매대리권 계약서

이 계약은 _____에 영업소를 둔 *공급사 기업명* (이하 '공급자'로 표기한다.)와
_____에 본사가 위치한 *판매사 기업명* (이하 '판매사'로 표기한다.)
사이에 ____일, ____월, 20____에 체결되었다.

전 문

서문

A. '공급사'는 본서에 첨부된 가격표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명*에서 생산된 특정한 와인의 제조사이며 본서의 별지 A(이하 '제품'으로 표기한다.)를 작성하였다.

B. *주명*과 직접 소매, 항공 및 소비자 판매, '제조사'의 *주명*의 와이너리(이하 '지역'이라고 표기한다.)로부터의 수출의 건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판매사'의 제품을 독점 판매, 유통할 권리에 대해 '판매사'는 '제조사'에게 권리 확보를 요청하고, '제조사'는 '판매사'에게 기꺼이 제공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항목들은 상호 합의된다.

1. '공급사'는 본 계약에 정의된 바에 따라 '판매사'를 해당 지역에서의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유일하고 독자적인 판매사로 지정한다. '판매사'는 '판매자'에 의해 처리되는 제품과 제품들의 유통을 위한 판매직원을 유지하거나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판매사'는 '공급사'의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공급사'는 '판매사'에 의한 주문된 지역 외에는 제품 및 기타 와인의 표면 어떠한 곳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서명 및 표지를 날인하여 배송하지 않는다. '공급사'는 요청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제품 배송 주문 및 문의, 혹은 최종 목적지를 지역으로 하는 주문의 경우 '판매사'에게 안내한다.
3. '공급사'는 '판매사'로부터 접수된 모든 제품의 주문을 신속하고 최선으로 처리한다. '판매사'에 대한 가격은 '판매사'의 창고로의 배송을 기준으로 하며 창고배송의 건에서 상호 합의된 배송 비용을 포함한다. '공급사'와 '판매사'는 제품의 가격 인상 시에, 해당 인상 가격의 발효일에 최소 60일 선행하여 논의해야 한다. '판매사'는 모든 가격 인상의 건에서, 가격 인상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품을 1개월분을 현행 가격으로 주문할 권리를 갖는다. '판매사'는 '판매사'의 창고로 배송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달러로써 비용 지불을 완료해야 한다.

4. '판매사'와 '공급사'는 1년 주기 계약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주기를 단축하여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가격으로 합의할 수 있다. '공급사'가 인증의 취득과 유지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공급사'는 제품을 지역에서 판매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인증을 '판매사'가 요청하는 즉시 제공한다.
5. 본서의 3절과 4절에 따라, '공급사'와 '판매사'는 '판매사'에 대한 '공급사'의 가격과 소비자에 대한 '판매사'의 가격에 동의해야 한다. '공급사'와 '판매사'가 두 항목의 가격에 대한 논의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시, 상기 가격의 항목에 적용되는 가격들은 각 가격의 직전 인상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미국 전역의 변화와 동일한 양으로 인상된다.
6. '공급사'는 본 계약 하에 판매 혹은 배송되는 제품의 모든 배송이 *주명*에서 소비에 적합한 형태로, 올바르게 용기 포장 및 전체 포장되어 최상의 품질을 갖도록 보증, 대표, 동의한다. 이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이물질도 포함하지 않으며 지역의 법, 규정, 요청에 따라 용기 포장 및 전체포장 되도록 한다.
7. '공급사'는 지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모방 및 모조품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서와 조치를 신속히 작성, 수행한다.
8. 본 계약의 기간은 *날 짜*에서 개시되어 *날 짜*에 종료되는 2년간이며, 한 당사자가 어떠한 명시된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선행하여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종료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양측 당사자는 모두 6개월의 통지 기간 이후 다른 당사자에게 전년도 총생산량의 1/2에 각 건당 \$*액수*이 곱해진 총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이 위반의 발생했을 시, 양 측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90일 이전에 서면통지로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상기 통지는 계약사항 위반을 종료의 원인으로 명시해야 한다. 유책당사자가 제기된 위반사항을 90일의 기간 내에 교정할 경우, 종료의 통지는 무효가 되며, 본 계약은 완전한 효력으로 유지된다.
9. 본서의 7절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사'는 '판매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딪치면 60일의 서면통지 기간으로서 계약을 종료할 권리를 갖는다.
 - a.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파산 신청한 경우, 채권자 이익을 위해 화해 및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경우
 - b. 본서 이후에 첨부되며 본서의 일부인 별첨 B에서 설명하는 상호 합의된 목표 판매 실적의 최소 90퍼센트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c. 사업의 적합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연방 및 주 면허와 허가를 존속하지 못한 경우
 - d. 사업의 주요 소유권의 변경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종류로의 영향을 받은 경우
10. '판매사'는 '공급사'의 요청에 따라, '공급사'에게 유효한 판매 및 소모 보고서와 제품에 관계된 모든 홍보 및 시연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판매사'는 유통망에 적용될 모든 변화를 개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공급사'와 논의한다.
 11. 양 측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될 시에, '판매사'가 제품의 재고를 판매 가능한 상태로 저장 및 유지하였다는 전제하에, 상기 종료일에 '판매자' 제품의 잔여 재고를 '판매사'의 매입비용으로 '공급사'가 재구매하거나, 후임 대표가 구매하도록 한다.
 12. 본 계약은 양측 당사자들 간의 완전 합의 조항으로, 구두로 변경될 수 없으며, 양측 당사자 모두 다른 당사자에 대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및 계약을 제기하지 않았다.
 13. 본 계약의 위반에 대한 어떠한 면제조건도 서면으로 제기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해당 면제조항은 어떠한 기타 위반 및 추후 위반의 면책조항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 본 계약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서면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4.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미국 정부 또는 상기 정부 기관의 준거법, 규정, 규칙 및 요구사항에 종속되며, 본 계약을 수행함으로써 양측 당사자는 이를 지킬 것을 동의한다.
 15. 상기에 명시된 주소로 다른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보낼 시에는, 메일 또는 팩스 모두의 경우에 선불의 형태로 보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 본 계약은 *주명*의 계약이며 *주명*의 주 법에 따라 지배 및 해석되어야 한다.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논쟁과 요구 및 계약의 위반은 미국중재협회의 시행규칙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주명*의 중재로 해결될 수 있으며, 중재자 또는 중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17. 만약 중재가 본 계약 조항의 강화 및 해석을 요구할 경우, 혹은 본 계약에 종속되는 사항에 관련해 발생할 경우, 승소 당사자는 기타 권리 및 구제력에 더해, 재판 비용 및 재판 및 상고를 위한 적절한 변호인단 선임 비용과 재심청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해당 행위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상환한다.

18. 본 계약은 양측 당사자에게 할당되지 않는다.

이를 증명하는바, 양측 당사자는 상단에 명시된 기간으로부터 본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급사

판매사

계약인: _____

계약인: _____

직 위: _____

직 위: _____

4/4

* 출처 : SAP&DC(sapdc.org/documents/Distribution_Agreement.pdf)

부록7.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자유판매증명서(원문)

[별지 제3호 서식]



212, Mokdongjuangang-ro, Yangcheon-gu, Seoul, Korea, Tel: +82-2-2640-1307,

Fax: +82-2-2640-1360

Serial No : MFDS FID -

Page No :

CERTIFICATE OF FREE SALES

TO WHOM IT MAY CONCERN :

MM/DD/YY

MFDS certifies that the following products are freely sold without any restriction under the FoodSanit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 and address of production establishment :

Country of destination :

Name and address of consignor :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Remark :

Sincerely Yours,

Director of General Services Division
Seoul Regional Food & Drug Administr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자유판매증명서(국문)

한국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전화번호: +82-2-2640-1307, 팩스: +82-2-2640-1360

시리얼 번호 : MFDS FID -

페이지 번호 :

자유판매증명서

관계자 제위 :

MM/DD/YY

MFDS는 다음 제품이 한국의 식품위생법의 어떠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생산지명 및 주소 :

목적 국가 :

위탁자 성명 및 주소 :

수탁인 성명 및 주소 :

비고 :

행정지원과장
서울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
대한민국

- 배상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admRuLsInfoP.do?admRuLSeq=2100000018880#AJAX>)

부록8.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견본(원문)

COMMERCIAL INVOICE				
Vendor/Exporter:	Invoice Number:		Date of shipment:	
	Letter of Credit Number:		AWB/BL Number:	
	Currency:		Country of Origin	
	Conditions of Sale / Terms of Sale:			
Consignee:		Importer:		
Transportation -- Via: -- From:	Total Number of Packages -- Total Net Weight: -- Total Gross Weight:		Total Invoice	
Product Description	Qty	Weight	Unit Price	Total Value
These commodities, technologies, or softwares were ex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Diversion contrary to United States law prohibited. We certify that this commercial invoice is true and correct.				
Name	Signature		Date	

상업송장 견본(국문)

상업송장				
판매사/수출업자	송장 번호:		선적일:	
	신용장 번호:		AWB/BL 번호:	
	통화:		원산국:	
	매매조건:			
수탁인		수입사		
수송	총 포장 수량		총 액	
-- 경유:	-- 총 순중량:			
-- 출발:	-- 총 중량:			
제품 설명	수량	중량	단가	총 가격
본 상품, 기술 혹은 소프트웨어는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부터 수출되었습니다. 미국법에 반하는 변화는 금지됩니다. 저희는 본 상업 송장이 진실되며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명	서명		일자	

* 출처 : Free Word Templates(<https://freewordtemplates.net/invoice/commercial-invoice.html>)

부록9.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포장명세서(원문)

PACKING LIST

① Seller Gil Dong Trading Co., Ltd.			⑧ Invoice No. and date 8905 HC 3108 Aug. 15, 2012.		
② Consignee(or For account & risk of Messrs.) Monarch Products Co., Ltd. P.O.Box 208 Bulawayo, Zimbabwe			⑨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Monarch Products Co., Ltd. P.O.Box 208 Bulawayo, Zimbabwe		
③ Notify Party Same as above.			⑩ Other references Country of Origin: Republic of Korea		
④ Departure date Aug. 20, 2012.					
⑤ Vessel/flight Phoenix					
⑥ From BUSAN, KOREA					
⑦ To Bulawayo, Zimbabwe					
⑪ Shipping Marks	⑫ No.&kind of packages	⑬ Goods description	⑭ Quantity or net weight	⑮ Gross Weight	⑰ Measurement
MON/T Bulawayo LOT NO C/NO,1-53 MADE IN KOREA	4200DX420D Material, As per Monarch Products Indent No T,858	Nylon Oxford	60,000M 1208.06Kgs.	1,317kgs	24.5CBM
					⑱ Signed by

포장명세서(국문)

포장명세서

① 판매자 길동 무역 주식회사		⑧ 송장번호 및 날짜 8905 HC 3108 2012년 8월 15일					
② 수취인(또는 이해당사자) 모나크 프로덕트 주식회사 P.O.BOX 208 블라와요, 짐바브웨		⑨ 구매자(수취인과 다를 경우) 모나크 프로덕트 주식회사 P.O.BOX 208 블라와요, 짐바브웨					
③ 착하통지처 상동		⑩ 기타 참고사항 원산지 국가 대한민국					
④ 출발일 2012년 08월 20일							
⑤ 선박/항공 피닉스						⑥ 출발지 대한민국 부산	
⑦ 도착지 블라와요, 짐바브웨							
⑪ 화인 MON/T Bulawayo LOT NO C/NO.1-53 MADE IN KOREA	⑫ 제품 종류 및 개수 4200DX420D Material, As per Monarch Products Indent No T,858	⑬ 제품 설명 Nylon Oxford	⑭ 수량 또는 순중량 60,000M 1208.06Kgs.	⑮ 총 중량 1,317kgs	⑰ 부피 24,5CBM		
					⑱ Signed by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uTrade/mode_new/n_kobz_mode_t_ver.jsp?gb=MODE&k_id=1&i_class_cd=02&class_cd=02&back=true&seq_no=1464&page=1&gb=MODE&i_class_cd=02&i_class_cd2=0000&searchKey=&searchField=mode_nm&searchField3=&dept=1)

부록10.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선하증권(원문)

① Shipper/Exporter ABC TRADING CO. LTD. 1, PIL-DONG, JUNG-KU, SEOUL, KOREA		⑪ B/L No. ; But 1004			
② Consignee TO ORDER OF XYZ BANK					
③ Notify Party ABC IMPORT CORP. P.O.BOX 1, BOSTON, USA					
Pre-Carrage by	⑥ Place of Receipt BUSAN, KOREA				
④ Ocean Vessel WONIS JIN	⑦ Voyage No. 1234E	⑫ Flag			
⑤ Port of Loading ⑧ Port of Discharge ⑨ Place of Delivery ⑩ Final Destination BUSAN, KOREA BOSTON, USA BOSTON, USA BOSTON, USA (For the Merchant Ref.)					
⑬ Container No. ISCU1104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s)	⑭ Seal No. Marks & No	⑮ No. & Kinds of Containers or Packages 1 CNTR	⑯ Description of Goods LIGHT BULBS (64,000 PCS)	⑰ Gross Weight 4,631 KGS	Measurement 58,000 CBM
⑱ Freight and Charges	⑲ Revenue tons	⑳ Rate	㉑ Per	㉒ Prepaid	㉓ Collect
㉔ Freight prepaid at	㉕ Freight payable at	㉖ Place and Date of Issue May 21, 2007, Seoul Signature			
Total prepaid in	㉗ No. of original B/L				
㉘ Laden on board vessel Date May 21, 2000 Signature		㉙ ABC Shipping Co. Ltd. as agent for a carrier, zzz Liner Ltd.			

선하증권(국문)

① 송하인/수출업자 ABC TRADING CO. LTD. 1. 필동, 중구, 서울시, 한국		⑪ B/L No. ; But 1004	
② 수화인 TO ORDER OF XYZ BANK			
③ 통지인 ABC IMPORT CORP. P.O.BOX 1, BOSTON, USA			
공장-부두까지의 운송수단	⑥ 반입장소 부산, 한국		
④ 선명 WONIS JIN	⑦ 항차 1234E	⑫ 선박의 국적	
⑤ 선적항 부산, 한국		⑧ 양륙항 보스턴, 미국	
		⑨ 배달장소 보스턴, 미국	
		⑩ 최종목적지(For the Merchant Ref.) 보스턴, 미국	
⑬ 컨테이너 번호 ISCU1104 Total No. of Containers or Packages(in words)	⑭ 봉인 번호 화인 & 번호	⑮ 컨테이너 혹은 기타 포장물의 종류 및 개수 1 CNTR	⑯ 품명 LIGHT BULBS (64,000 PCS)
		⑰ 총 중량 4,631 KGS	부피 58,000 CBM
⑱ 운임	⑲ 운임톤	⑳ 운임단가	㉑ 용적단위
㉒ 선불	㉓ 후불		
㉔ 운임 선불조건	㉕ 운임 착불	㉖ 발행 장소 및 날짜 5월 21일, 2007년, 서울 서명	
총 운임 합계	㉗ B/L 원본 발행 매수		
㉘ 선적 날짜 날짜 5월 21일, 2000년		㉙ ABC Shipping Co. Ltd. 운송업자의 대리인으로써, zzz Liner Ltd.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uTrade/mode_new/n_kobz_mode_t_ver.jsp?gb=MODE&k_id=1&i_class_cd=02&class_cd=02&back=true&seq_no=950&page=1&gb=MODE&i_class_cd=02&i_class_cd2=0000&searchKey=&searchField=mode_nm&searchField3=&dept=1)

부록1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원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Original(Duplicate/Triplicate) (Additional Page)					
Reference No.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Page _ of _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원산지증명서(국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원본 (부분) (추가 페이지)					
참조 번호.					
5. 품목 번호	6. 송장상의 표시 및 번호	7. 송장 번호 및 타입, 상품 설명 (적절한 곳에 수량을 표시하고 수입국의 HS코드를 포함하세요.)	8. 원산지 기준 (기재요령 참고)	9. 총 무게 혹은 다른 수량 및 가격 (RVC 기준이 적용될 때는 FOB만 사용)	10. 송장의 수 및 날짜
11. 수출자 선언 아래에 서명한 본인은 위의 세부사항과 진술이 사실 이고, 모든 제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본 물품에 대한 한국-ASEAN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조항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했음을 신고합니다. (수입국) 장소 및 날짜, 권한 있는 서명자의 서명			12. 증명 진행된 통관절차에 기반하여, 수출자 신고가 사실임을 이 문서로써 증명합니다. 장소 및 날짜, 증명 담당자의 서명과 날인		
13. ☐ 제 3국 송품장 ☐ 전시 ☐ 연결원산지증명서					

* 출처 : 관세청(http://www.customs.go.kr/download/ftaportalkor/_down/FTA_13_VE.pdf)

부록12. 식물 산업국(BPI) 수입허가 신청

식물산업국 수입허가 신청(원문)

BPI Q FORM No. 1

Republic of the Philippines
Department of Agriculture
BUREAU OF PLANT INDUSTRY

PLANT QUARANTINE SERVICE
M a n i l a

Application for Permit to Import
Plants/Plant Products

(Date)

The Director
Bureau of Plant Industry
M a n i l a

S i r :

I/WE _____
(Name, Address and Telephone No. of Applicant)

_____ hereby request for issuance of Permit to Import for the
following plant/plant products.

Common Name : _____

Scientific Name : _____

Quantity * : _____

Purpose of Importation : _____

Place of Origin or Source of _____

Plants/Plant Products : _____

Name, Address & Country of Exporter : _____

Means of Conveyance : _____

Flight No./Voyage No. : _____

Port of Entry : _____

Final Destination (Exact Location : _____

and Sketch where plants

are grown) _____

Expected Date of Arrival : _____

(Signature of Applicant/Authorized Representative)

STAMP OF THE SERVICE

(Name & Designation of Applicant/
Authorized Representative)

- * For Plants - No. of Pieces
* For Plant Products - Weight in Kilos

식물산업국 수입허가 신청(국문)

식물산업국 양식번호 1

필리핀 공화국
농무부
식물산업국

식물 검역 업무
마닐라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 수입허가를 위한 신청서

_____ (날짜)

식물산업국장
마닐라

귀하께 :

나/우리는 _____

(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로써 해당 식물 제품의 수입을 위한 허가증의 발행을 요청합니다.

일반명 : _____

학명 : _____

수량* : _____

수입 목적 : _____

식물 제품의 원산지 또는 주재료 : _____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국가 : _____

운송수단 : _____

비행기 또는 선박번호 : _____

통관항 : _____

최종목적지(정확한 위치 _____ 및 식물 성장지에 대한 요약)

예상도착일 : _____

(신청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서명)

소인

(신청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의 성명과 직함)

* 식물용 - 수량

* 식물제품용 - 무게(킬로그램)

* 출처 : 필리핀 농무부 식물산업국

2018년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II

태국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제2장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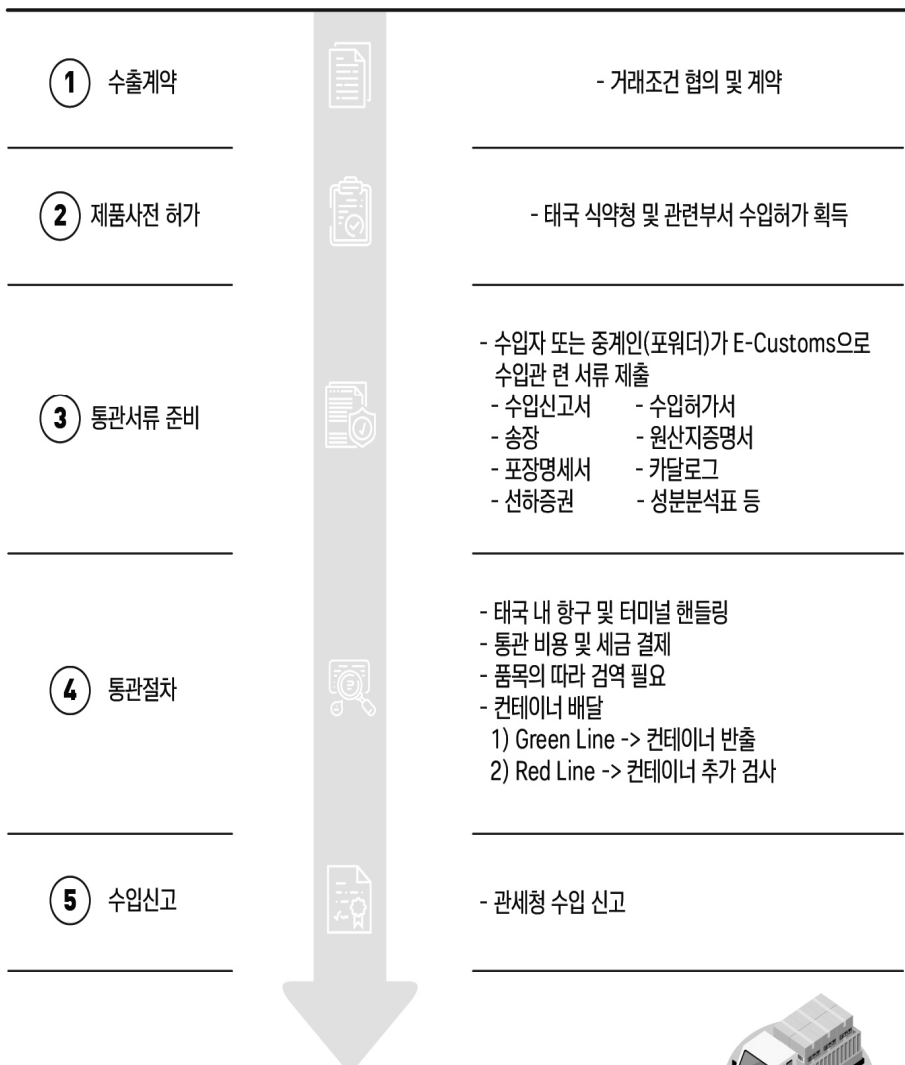
제3장 검역제도

제4장 라벨링 제도

제5장 별첨

목 차		
	제1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281
	제2장 통관제도	282
	1. 관리 · 법률체계	282
	2. 통관절차	282
	3. 단계별 수출업체 유의사항	284
	4. 제출서류	287
	5. 관세제도	295
	제3장 검역제도	305
	1. 관리 · 법률체계	305
	2. 품목별 검역절차	305
	3. 제출서류	307
	제4장 라벨링 제도	310
	1. 관리 · 법률체계	310
	2. 식품분류	310
	3. 표시사항	313
	4. 라벨링 샘플	314
	5. 라벨링 승인절차	320
	6. 기타 수입 규제	321
	제5장 별첨	324

제 1 장 농식품 수출 프로세스



관세법 및 수입요건 구비를 잘 확인하여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물품별 수출입 제한고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총리와 내각은 무역 등 제반 경제정책에 대한 기획, 수행, 감독 등의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서 무역 및 투자 관련 업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가짐
- 분야별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농업협력부, 산업부, 보건부, 에너지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중앙은행 등이 각각 소관별로 수행함

나. 법률체계

- 상무부는 상품무역 관련 기본법인 ‘물품수출입법’(The Export and Import Goods Act)을 재무부와 협의 하에 입안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외무역을 총괄함
- 산하의 ‘대외무역협상국’(The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은 다자 및 양자 간의 무역협상 업무 등에 있어 주무부서로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대외무역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다양한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등과 광범위하게 협의함

2. 통관절차

가. E-Customs System 등록

- 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는 온라인 전자세관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 시스템에 등록하려면 수입업자(개인 또는 사업체)가 ‘디지털 인증서’¹⁾를 소지해야 함
- 디지털 인증서가 발급되면 수입자는 전자세관 시스템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시스템에 직접 등록(즉, 회사 사무소에서)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등록 할 수 있음. 전자세관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등록 할 때 다음 작업이 필요함
 - ① 전자세관 소프트웨어가 회사 IT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디지털 인증서가 확인되어야 함
 - ② 수입업자는 태국 세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1) 디지털 인증서는 전자 문서 발신자의 신원과 인증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 서명 파일이며, 수입 및 수출 등록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운영에 사용되고 있어 태국의 모든 회사에서 필수적임

- ③ 전자세관 시스템과의 메시지 교환의 정확성 및 준비 여부를 테스트해야 함
- ④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통신 및 IT 사무국에서 e-세관 등록 ID를 발급함

나. 신고서 제출

- 수입 통관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 세관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임
- 화물 도착 전에 또는 화물 도착 시 운송 업체는 전자식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 보고서를 전송하고 전자세관 시스템에 정보를 명시함. 오류가 없으면 e-Customs 시스템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 보고서 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응답 메시지를 운송 업체에 전송함
- 화물이 항구 또는 입항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업자 또는 세관 중개인은 수입 신고서를 전자세관 시스템에 제출함

다. 신고서 확인 및 검수

- 신고자와 수입업자가 작성한 모든 관련 서류(적색 라인의 경우)는 확인·검수의 대상이며, 전자세관 시스템은 주어진 데이터를 검증하고 결재 번호를 발행함. 전자 시스템은 전송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품 신고서를 녹색 라인 또는 적색 라인으로 지정함
- 적색 라인(위험도가 높은 선적)의 경우 수입 통관을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는 다음과 같음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상업송장(Invoice)	카탈로그 및 제품성분 등 기타 관련 문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라. 수입 관세 및 세금 납부

- 해당 관세 및 세금(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며, 수입 관세 및 세금 지불은 직접 지불, 전자지불 시스템 두 가지 방법이 있음

마. 화물의 검사 및 방출

- 마지막 단계는 세관에서 화물을 검사하고 최종적으로 방출함

- 녹색 라인의 경우, 수입자는 확인된 신고서와 지불 영수증과 함께 창고에서 상품 방출을 위해 제출함. 이 단계에서 화물 데이터는 미리 결정된 선택 기준에 따라 선별되어 적색 라인(철저한 물리적 검사가 필요함) 또는 녹색 라인(방출 허가)여부를 판단함. 녹색 라인으로 분별되어 지면 세관의 개입이 없이 바로 화물 상태가 항만 당국과 수입업자/세관 중개인에게 전자 방식으로 전송됨
- 적색 라인의 경우 미리 결정된 선별 기준에 따라 화물이 적색 선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되고, 항만청은 컨테이너의 방출 전에 실질적 물리적 검사를 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열어보고 검사함

3. 단계별 수출업체 유의사항

가. 관세법 위반

- 우리 수출기업과 투자기업을 비롯해 태국 진출 외국기업이 통관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음. 아울러 관세법 위반 시 세관과의 벌금 액수에 대한 타협 과정, 장기성, 불투명성 및 결과 예측의 어려움과 그에 따르는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음
- 태국 관세법상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으며, 밀수, 부정무역, 탈세의 경우 물품가액의 4배 벌금 및 징역 10년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의 경우 5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 수입요건 위반 물품의 경우 물품을 몰수하거나 물품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관세법 위반자와 세관이 이에 대해 합의하면 세관은 기소를 하지 않고 벌금만 부과할 수 있으며 태국 관세청은 벌금액에 대한 내부 양정기준을 갖고 있음. 내부 양정기준상 관세탈루의 경우 부족세액 추정 외에 관세 부족세액의 2배, 부족 부가가치세의 1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세관과 합의되지 않고 법원으로 이송 시 법원은 관세법에서 정한 벌금액에 대한 경감 권한이 없음. 또한 관세법상 밀수 등 적발 시 세관 직원에 대해 매각대금의 25%(탈세 적발 추정 시 추정세액의 10%)의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음
- 이처럼 과도한 벌금, 벌금형량 협의에 의한 기소중지 제도, 법원의 벌금 경감 권한 부재, 과도한 포상금제도와 같은 4가지 요인이 맞물려 업체가 세관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즉, 과도한 포상금 제도로 태국 세관직원은 사소한 오류조차도 엄격히 문제 삼으며 심지어 통관 당시 잘못된 신고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가 통관 이후 일시에 추정시효 10년 치를 일괄적으로 추정 통보하기도 함

- 세관 직원은 통상 처음엔 벌금액을 부족세액의 2배로 통보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 넘기겠고, 이 경우 4배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범칙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 수입자는 적절한 타협을 시도하고 조기에 종결지으려고 하나 세관과의 벌금 협의 과정이 길고 세관의 재량이 많아 지속적으로 세관직원에게 선처를 요구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음. 또한 세관 벌금 양정기준상 경미한 과실 여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벌금이 면해지는 신고오류의 경우 이를 증빙하면 부족세액의 10%만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과세가격, 품목분류 오류 신고의 경우 웬만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입 요건 미구비의 경우 예외 없이 물품 물수 또는 물수에 갈음하는 추정만 규정
- 따라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칙이 매우 세고, 업체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자는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품목분류 유의사항

-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해 사후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는 우리 업체가 통관과정에서 겪는 가장 빈번한 애로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해외로부터 태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의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입업체에서는 당연히 관세가 적은 HS Code로 제품을 분류하여 통관하려고 하지만 이 경우 태국 세관에서는 수입업체가 탈세의 목적으로 HS Code를 잘못 분류했다는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태국 수입 규정상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화물 검사를 하므로 화물검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통관전이라도 탈세 목적으로 고의로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하고 부족관세액의 2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불필요하게 벌금을 내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관대행 관세사와 함께 정확한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애매한 경우 태국 세관으로부터 HS Code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해 태국관세청 서울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 한국 관세청 평가분류원 담당자로부터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임. 이 경우 추후 세관과 업체 간의 분쟁 발생 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분류 결정 논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다.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 대비

-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 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 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음. 사후 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BOI(태국 투자청)의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 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정임
-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 심사가 이루어지며, 사후심사 이전에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수입신고 상 오류가 없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 및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 사후 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라. 수입요건 구비

-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 여부를 참작하는 규정이 없음. 반면에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 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음. 수입 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다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 사소한 실수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 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으며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로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수입 전 수입 물품에 어떤 요건이 없는지 철저히 챙겨봐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 상의 변동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함

마.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유의사항

- 태국 세관에서는 FTA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FTA 협정상의 발급기준에 맞게 발급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오류내용이 정정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시 수입자가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나 태국 세관은 중요 오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보완 제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검증요청 및 회신 절차에 의해 처리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통관 불편을 야기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주요 오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번란] 송하인 주소와 송장상의 주소 상이
 - [3번란] 선명/편명 기재 누락
 - [6번란] 포장표시 및 번호 기재 누락 또는 선하증권(B/L)과 기재내용 상이
 - [7번란] 포장수량, 종류가 송품장 내용과 상이
 - [8번란] 원산지 기준 표기방식 누락
 - [9번란] 총중량, FOB 가격이 수입 시 제출된 송품장, 패킹리스트, B/L과 상이
 - [11번란] 장소, 일자, 서명(수출자) 기재 누락
 - 제3국 송상 표기 누락
 - FOB 가격란에 CIF 가격을 기재 또는 송품장 가격과 불일치
 - 소급발급 문구 기재 누락
- FTA 특혜신청 물품 외에도 태국 세관은 세율 적용, 감면 적용 등에 있어 수입자가 신청한 내용과 인보이스,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상 모순이 없는지를 꼼꼼히 심사하고 사소한 오류인 경우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경향이 있어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제출서류

가. 제출 서류명

- 수입 통관을 위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5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ir Waybill)	6	수입허가서(Import License)*
3	상업송장(Invoice)	7	카탈로그 및 제품성분 등 기타 관련 문서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1	원산지 증명서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제출기관	수입국가 관세청
		제출사유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 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함
		표기언어	영문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수출자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			참고 번호. 한국 / 아세안 자유 무역 특혜 관세 원산지증명서 (선언서와 증명서의 결합) FORM AK 발행국가 뒷면 확인						
2. 수입자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									
3.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			4.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						
5. 제품 번호	6. 물품표시 및 일련번호	7.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8. 원산지 결정기준	9. 물품 총중량 및 FOB가격	10. 송장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			
11. 수출자 신고 모든 상품은 -----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래 서명자는 위의 내용과 진술이 정확하다고 선언합니다. ----- (국가) ----- 더불어 -----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한국 / 아세안 자유 무역 특혜 관세 상품에 대해 규정 된 원산지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 (수입국가) ----- 신청일자, 장소, 서명			12. 인증 수출업자의 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입니다. ----- 발급 장소, 일자, 서명, 발급기관 인장						
13. ☐ 제3국 송품장 ☐ 전시 ☐ 연결원산지증명서									

2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선박회사 및 항공사
		제출기관	수입국가 관세청
		제출사유	매수인에게 선적통지 목적 및 수입국가 관세청에 필수 제출 서류임
		표기언어	영문

Consignor

BILL OF LADING

Logem

Consigned to order of

Logem International Co., Ltd

75/61 Richmond Tower, 17th Floor
Sai Sukhumvit 26, Sukhumvit Rd.

Klongton Klongtoey,

Bangkok 10110 Thailand.

Tel : (662) 259-5640-5

Fax : (662) 259-5646-7

Email : logem@logem.co.th

Notify address

SAME AS CONSIGNEE

COPY

NON - NEGOTIABLE

Place of receipt	BANGKOK, THAILAND
Ocean vessel	Port of Loading
KMTC SINGAPORE V.1805N	BANGKOK, THAILAND
Port of Discharge	Place of Delivery
BUSAN, KOREA	BUSAN, KOREA

Marks and Numbers
Containers and Seal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Gross Weight

Measurement

26 BOXES

(CFS/CFS)

SAID TO CONTAIN

26 BOXES (CFS/CFS)

(4,000 EA)

KGS

323.000

M3

4.290

CONTAINER NO.:

SKHU830816721793

INVOICE NO. CH18040501

N.W.: 300.00 KGS.

SHIPPED ON : KMTC SINGAPORE V.1805N

ON BOARD : 23/04/2018

"FREIGHT COLLECT"

TWENTY-SIX BOX(ES) ONLY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consignee

All of Original BIs
SURRENDERED
Logem International Co., Ltd.
CERTIFIED TRUE AND CORRECT

LOGEM INTERNATIONAL CO., LTD.

Declaration of Interest of the consignee
in delivery (Clause 6.2)

Declared value for delivery (as per contract)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the consignee (Clause 7 and 8)

The goods and instructions are accepted and dealt with subject to Standard Conditions printed overleaf.
Takers in charge in apparent good order condition, unless otherwise noted herein, at the place of receipt for transport and delivery as mentioned above.
One of this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must be surrendered duly endorsed in exchange for the goods. In Witness Whereof the original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and all its copies and data have been signed in the number stated below,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be void.

Freight amount	Payable at BUSAN, KOREA No. of Original TB/Ls ZERO	Place and Date of Issue BANGKOK, THAILAND 23/04/2018 Stamp and signature
Goods Insurance through, if the under signed ☐ not covered ☐ Covered according to endorsed policy		
For delivery of Goods please apply to: SUNYANG LOGISTICS CO., LTD. Tel No : 82-2-705-5423, Fax No. : 82-2-705-5425		Logem International Co., Ltd

3	상업송장 / CI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수출업체
		제출기관	수입국가 관세청
		제출사유	상품에 대한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의 역할이며, 수입국가 관세청의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임
		표기언어	영문

COMMERCIAL INVOICE

(1) SHIPPER / EXPORTER ABC CORPORATION 120, SAMSUNG - DONG, GANGNAM - GU, SEOUL, SOUTH KOREA TEL : +82-2-000-0000 / FAX : +82-2-000-0000		(5) NO. & DATE OF INVOICE ABCCI 2015 - 001 MAY 19, 2015	
(2) BUYER / IMPORTER DEF CORPORATION 110, FLOWER ROAD, NEW YORK, U. S. A TEL : + 1 - 123 - 456789		(9) NO. & DATE OF L/C T/T REMITTANCE BEFORE SHIPMENT	
(3) CONSIGNEE SAME AS ABOVE		(10) NOTIFY PARTY SAME AS CONSIGNEE	
(4) PORT OF LOADING BUSAN, SOUTH KOREA	(5) FINAL DESTINATION NEW YORK, U. S. A	(11) REMARKS 1) FREIGHT COLLECT BY OCEAN 2) H. S. CODE NO. : 1234 - 00 - 0000 3) NO. OF BILL OF LADING : ABC012345678	
(6) CARRIER HAPPY VESSEL V.50E	(7) SAILING ON OR ABOUT MAY 25, 2015		
(12) MARKS AND NO. PKGS DEF CORP. NEW YORK C/ NO. 1 ~ 2 ITEM NO.	(13) DESCRIPTION OF GOODS MOTORCYCLE GLOVES MG - 001 MG - 002 TOTAL : //////////////////////////////////// * SAYS : US DOLLARS TWENTY TWO THOUSAND FIVE HUNDRED ONLY. * ORIGIN OF COUNTRY : REPUBLIC OF KOREA (R. O. K)	(14) Q'TY 1,000 PRS 1,000 PRS 2,000 PRS	(15) UNIT PRICE (USD/ US\$) FOB KOREA US\$10.50 US\$12.00
			(16) AMOUNT (USD/ US\$) US\$10,500.00 US\$12,000.00 US\$22,500.00
(17) TEL. NO. ; + 82-2-000-0000 FAX NO. ; + 82-2-000-0000		(18) SIGNED BY	

4	포장명세서 / PL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수출업체
		제출기관	수입국가 관세청
		제출사유	수출 상품의 가격, 수량, 무게 등 상품 포장상태를 나타내며, 상업송장 (인보이스)과 마찬가지로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임
		표기언어	영문

PACKING LIST

(1) SHIPPER / EXPORTER ABC CORPORATION 120, SAMSUNG - DONG, GANGNAM - GU, SEOUL, SOUTH KOREA TEL : +82-2-000-0000 / FAX : +82-2-000-0000		(8) NO. & DATE OF PACKING LIST ABCCI 2015 - 001 MAY 19, 2015	
(2) BUYER / IMPORTER / APPLICANT DEF CORPORATION 110, FLOWER ROAD, NEW YORK, U. S. A TEL : + 1 - 123 - 456789		(9) REMARK	
(3) CONSIGNEE SAME AS ABOVE		(10) NOTIFY PARTY SAME AS CONSIGNEE	
(4) PORT OF LOADING BUSAN, SOUTH KOREA	(5) FINAL DESTINATION NEW YORK, U. S. A	(11) TERMS OF PAYMENT & DELIVERY 1) FREIGHT COLLECT BY OCEAN 2) H. S. CODE NO. : 1234 - 00 - 0000 3) NO. OF BILL OF LADING : ABC012345678	
(6) CARRIER / VESSEL HAPPY VESSEL V.50E		(7) SAILING ON OR ABOUT MAY 25, 2015	
(12) SHIPPING MARK DEF CORP. NEW YORK C/ NO. 1 ~ 2 ITEM NO.	(13) DESCRIPTION OF GOODS AND / OR SERVICES MOTORCYCLE GLOVES		
	(14)	(15) NET-	(16) GROSS-
	Q'TY	WEIGHT	WEIGHT VOLUME
		(KGS)	(KGS) (CBM)
BOX NO. 1 - MOTORCYCLE GLOVES			
	420.000	500.000	0.212
		(1,200 X 420 X 420 MM)	
(1) MG - 001 X 1,000 PRS (200 PRS X 5 CARTONS)			
BOX NO. 2 - MOTORCYCLE GLOVES			
	420.000	500.000	0.212
		(1,200 X 420 X 420 MM)	
(1) MG - 002 X 1,000 PRS (200 PRS X 5 CARTONS)			
TOTAL : FOB BUSAN, SOUTH KOREA			
	840.000	1,000.000	0.424
	KGS	KGS	KGS
TWO (2) BOXES OF MOTORCYCLE GLOVES			
* SAY : TWO (2) BOXES ONLY. * CONTAINER & SEAL NO. : ABCD1234567 / EF891000 * ORIGIN OF COUNTRY : REPUBLIC OF KOREA (R. O. K)			
(17) TEL. NO. ; + 82-2-000-0000 FAX NO. ; + 82-2-000-0000		(19) SIGNED BY ABC CORPORATION <i>K. D. HONG</i> K. D. HONG / MANAGING DIRECTOR	

5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포워딩 업체 - 대부분 포워딩 업체를 통해 수출/입을 진행하므로, 수입자 측에서 작성함
		제출기관	수입국가 관세청
		제출사유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임
		표기언어	태국어/영문

Import Declaration 수입신고서				Customs Form 99/1			
Inspection Instruction 검사 설명 (1)				Import Declaration Type 수입신고 종류 (2)		Import Declaration No. (3) 수입신고 번호	
Importer (Name, address & phone no.) 수입자(이름, 주소 & 연락처) (5)				Total Duty/Tax Payable 총 관세/미지급 세금		Duty and Tax (Baht) 세금/비율	
				Guarantee (Baht) (12) 보증/비율			
				Import Duty 수입 관세 (6)			
				Excise Tax (7) 소비세			
				Interior Tax (8) 내부세			
Name and No. of Customs Clearance Card 통관 카드 번호 및 이름 (13)				Other Taxes and Fees (10) 기타 세금			
Customs Broker 통관 중개인 (14)				VAT (9) 부가세			
Bill of Lading No. 선박송편 번호 (17)				Mode of Transport 운송편 (18)		Duty/Guarantee Payment Reference No. 관세/보증금 참고 번호 (16)	
Name of Carrier 운송인 (19)				Arrival Date 도착일 (20)			
Shipping Mark and No. 화인 번호 (21)				Package Type and Quantity 포장 종류 및 수량 (22)			
				Country of Origin 원산지 (23)		Code 코드	
				Arrival Port 도착항 (25)		Code 코드	
No. of Package (in numbers) 포장 개수 (in words) (in words) (27)						Exchange Rate 환율 (28)	
						Code 코드	
Item No. (29)	Tariff (30) 관세	Value (Foreign Currency) (33) 가액(외국통화)	Import Duty Rate (36) 수입관세율	Fee 비용 (39)	Excise Goods Code 소비세 코드 (41)	Excise Tax 소비세 (43)	VAT Base 부가세 (45)
	Statistic Unit Code (31) 통계 코드	Value (Baht) (34) 가액(바트)	Import Duty Payable 미지급 수입세 (37)	Other Taxes 기타세 (40)	Excise Tax Rate 소비세율 (42)	Interior Tax 내부세 (44)	VAT 부가세 (46)
	Privilege Code (32)	Net Weight (35) 순중량	Quantity 수량 (38)	Type of Goods (47)			
	Import Permit or Certificate 수입 허가 및 증명서 (48)			제출 종류 (49)			
Total/Carryforward 총계/이월(50)				Total Duty Charge (51) 총 관세비용			
THB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given above is true and complete. I understand that legal penalties may be imposed for making false or incomplete statements herein. 본인은 위에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허위 또는 불완전한 진술을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E-Signature 전자성명 (52)				Submission Date 제출일 (53)			

6	수입허가서 /Import License (알코올 및 담배 수입 허가서)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소비세국
		제출기관	수입국가 관세청
		제출사유	품목에 따른 수입허가서를 받아 수입 시 제출이 필요함
		표기언어	태국어

เล่มที่ 2558

เลขที่ 2100-58-243-10993

สท.ชลบุรี 2



แสดงไว้ในที่เปิดเผย

ใบอนุญาตขายสุรชนิดสุรที่ผลิตในประเทศ

2558/2100-58-243-10993

บ.อ.02-04

พ.ศ. 2558

ที่ทำการ สำนักงานสรรพสามิตพื้นที่ชลบุรี 2

อาศัยอำนาจตามความในมาตรา 5 และ 21 แห่ง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ยาสูบ พ.ศ. 2509 ซึ่งแก้ไขเพิ่มเติมโดย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ยาสูบ (ฉบับที่ 3) พ.ศ. 2512

เจ้าพนักงานอนุญาตให้ _____ เลขประจำตัวผู้เสียภาษีอากร _____

ชื่อ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 _____ บริษัท _____ เลขประจำตัวผู้เสียภาษีอากร _____

ตั้งอยู่เลขที่ _____ หมู่ที่ _____ ตรอก/ซอย _____ ถนน _____

ตำบล/แขวง _____ อำเภอ/เขต _____ บางละมุง _____ จังหวัด _____ ชลบุรี _____

หรือนายสุรชนิดสุรที่ผลิตในประเทศออกแสดงเพื่อขาย ประเภท _____ สาม _____ ได้ชำระเงินค่าธรรมเนียมใบอนุญาต

เป็นเงิน 40.00 บาท ใบอนุญาตฉบับนี้ให้ขายสุรชนิดสุรที่ผลิตในประเทศ หรือนายสุรชนิดสุรที่ผลิตในประเทศ

ที่ผลิตในประเทศ ออกแสดงเพื่อขายได้ตั้งแต่ 6 กรกฎาคม 2558 ถึง 31 ธันวาคม 2558

ผู้ได้รับอนุญาตต้องปฏิบัติตามกฎหมาย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ระเบียบ ข้อบังคับ คำสั่ง และเงื่อนไขของใบอนุญาตฉบับนี้

ใบอนุญาตฉบับนี้ให้แสดงไว้ในที่เปิดเผย ณ 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ตามใบอนุญาตนี้ ออกให้ ณ วันที่ 6 กรกฎาคม 2558

1816163

(ครั้งที่ 1 : 2,000,000 ฉบับ พิมพ์ที่ โรงงานพิมพ์ กรมสรรพสามิต)





เจ้าพนักงานสรรพสามิตชำนาญงาน

เจ้าพนักงานผู้ออกใบอนุญาต

* 출처 : Manga Carta Law Firm 홈페이지

7	제품 카달로그 및 제품성분 등 기타 관련 문서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수출업체
		제출기관	수입국가 관세청
		제출사유	수출 상품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임
		표기언어	영문



980 Tapscott Rd.
Toronto, ON M1X 1C3 Canada
Tel: (905) 752-1823 Fax: (905) 752-1820
www.nutralab.ca

CERTIFICATE OF ANALYSIS

Product Name:	Milk Thistle 150mg	Version:	001
Dosage Form:	Hard Capsule	Product Code:	BKC1130401NCC
Capsule Size/Type/Color:	#1, clear 2 piece capsule	Batch Number:	NEMT153B
Powder Source:	Silybum marianum	Description:	Brown colored powder in clear gelatin capsule
Date of Manufacture:	April, 2015	Shipping and Storage Conditions:	Keep at room temperature in dry containers and protected against high temperature, moisture and light.
Shelf life:	3 years, subject to storage conditions		
FINISHED PRODUCT TESTING			
TEST	LIMIT	RESULT	METHOD
Potency			
Milk Thistle (80% Silymarin)	150.00 mg $\pm$ 5%	150.0 mg	Input
Providing Silymarin	150.00 mg $\pm$ 5%	150.0 mg	UV
Physical			
Average Total Capsule Weight	141.25 mg/cap $\pm$ 10%	141.65 mg/cap	USP<2091>
Individual Fill Weight	363.00 mg/cap $\pm$ 10%	365.30 mg/cap	USP<2091>
Weight Variation	Meet USP requirement	Complies	USP<2091>
Disintegration	$\leq$ 45 min	7 minutes	USP <2040>
Microbiology			
Total plate count	$\leq$ 10 ⁵ cfu/g	< 10 cfu/g	USP <2021>
Yeast and Mold	$\leq$ 10 ³ cfu/g	< 20 cfu/g	USP <2021>
Escherichia coli	Absent	Absent	USP <2022>
Salmonella species	Absent	Absent	USP <2022>
Staphylococcus aureus	Absent	Absent	USP <2022>
Heavy Metals			
Arsenic	< 7.5 ppm	< 0.01 ppm	ICP/MS
Cadmium	< 4.8 ppm	0.007 ppm	ICP/MS
Lead	< 7.5 ppm	0.02 ppm	ICP/MS
Mercury	< 15.4 ppm	< 0.005 ppm	ICP/MS

Prepared by:

Simon Ng
QA Associate
April 28, 2015

Approved by:

Peter Chan
QA/RA Supervisor
April 28, 2015

Please Print and Sign Name/Date

* 출처 : <http://produxpro.my/>

5. 관세제도

가. 관리체계

- 법률의 개정은 관세청에서 주도하며, 발의된 법안은 사전에 주의회(the Council of State)에서 검토를 거친 후 입법부(National Legislative Assembly)의 최종 검토를 통해 발효됨

나. 법률체계

- 관세 기본법인 관세법은 1926년에 제정(Customs Act B.E. 2469)된 이후 수정을 거듭하였으며 최근에는 2015년 12월 관세법 「the Customs Act B.E. 2557 (2014) No. 21」이 개정됨
- 태국의 경우 관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1987))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에 대해서는 태국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함
- 태국은 통일 상품분류에 관한 협약(HS) 가입국으로 2008년 7월에 개정된 관세율 표는 HS코드 8단위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 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 관세율 표는 총 8,301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 관세일반

- 태국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관세율, 협정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등으로 구성됨. 기본세율 및 실행관세율은 태국이 회원인 다자 또는 양자 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 협정세율과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협정세율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 간 협정세율 등이 있으며,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 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별도로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태국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th)에 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감면세 대상품목, 화학물질목록, 철장제품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를 유형별(기본, 실행, 협정세율 등) 통합 검색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국내외 무역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관세를 표는 재무부에서 제정하고 공표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 연결된 통합 관세를 조회화면에서 수출입 관세율, 관세 감면 여부 등을 태국어와 영어로 확인 할 수 있음
- 관세를 조회화면은 호(Heading), 소호(Subheading), 품명(Description), 법정세율(Statutory Rate), 경감세율(Duty Reduction), 전자수입 허가대상(Electronic Permit) 여부로 나뉘어 있으며, 경감세율 열에서 WTO 세율, FTA 협정관세, 관세 감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관세청 통합관세를 조회 홈페이지에서 사과(Apple)인 HS 코드 '0808.10.00'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조회하면, 아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8년 현재 기본세율 10%이며 상호대응관세로 인해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음
- 하단 조회화면에서 'Notification'을 클릭하면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협정 및 국내 규정을 볼 수 있으며, 사례의 경우 'Asean-Korea FTA B.E. 2555'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 조회화면]

999 : 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Celling Rate)

Heading	Subheading	Description	Statutory Rate			Notification	Start Date	End Date	Electronic Permit
			ad valorem rate %	specific rate					
				Unit	Baht				
08.08	0808.10.00	- Apples	60	kilogram	50.00	พ.ร.บ.ศ.ฉบับที่ 6 พ.ศ. 2560	01/01/2017	thereafter	Click for details

000 :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Section 12 of 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General Rate)

Heading	Subheading	Description	Duty Rate			Notification	Start Date	End Date	Electronic Permit
			ad valorem rate %	specific rate					
				Unit	Baht				
08.08	0808.100000	- Apples	10	kilogram	3.00	พ.ร.บ.ศ.ฉบับที่ 12 พ.ศ. 2560	13/11/2017	thereafter	Click for details

AK1 : ASEAN-KOREA : Detail

Heading	Subheading	Description	Duty Rate		Notification	Start Date	End Date	Electronic Permit	
			ad valorem rate %	specific rate					
				Unit					Baht
08.08	0808.100000	- Apples	** Exempted		ASEAN-KOREA (New2560)	13/11/2017	thereafter	Click for details	

** Please Check Countries granted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 from Tariff Schedule annexed to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FTA 협정세율 조회화면]

Heading	Subheading	Code	Description of goods	Unit	Imported until 31 December 2012	Rate of duty										Countries granted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
						at common tariff	Specific Rate/Tariff	at common tariff	Specific Rate/Tariff	at common tariff	Specific Rate/Tariff	at common tariff	Specific Rate/Tariff	at common tariff	Specific Rate/Tariff	
	0804.30.20	00	-- Mango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Malaysia and Laos
	0804.30.30	00	-- Mangoe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Malaysia and Laos
08.05	0805.10.00	00	-- Fresh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and Laos
	0805.10.00	00	-- Citru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and Laos
	0805.20.00	00	-- Mandarins (including tangerines and satsumas), Clementines, satsumas and similar citrus hybrid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Indonesia and Laos
	0805.40.00	00	-- Grapefruit, including pomelo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0805.50.00	00	-- Lemons (Citrus limon), Citrus sinensis and Citrus aurantiifolia, Citrus latifolia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Laos, for Korea not for Lemons (Citrus sinensis, Citrus aurantiifolia)
08.06	0806.90.00	00	-- Other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and Laos
	0806.10.00	00	-- Fresh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0806.20.00	00	-- Dri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Malaysia, and Laos
08.07	0807.11.00	00	-- Watermelon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and Malaysia
	0807.19.00	00	-- Other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Cambodia, Korea, and Malaysia
08.07	0807.20.10	00	-- Marsh blackberries (Rubus idaeu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Malaysia and Laos
	0807.20.90	00	-- Other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0808.10.00	00	-- Apple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08.08	0808.30.00	00	-- Pears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Exempted	All Countries except Korea not for pears

예) www.customs.go.th 접속 후 '사과' HS code : 0808.10.00 검색 후 기본세율 및 협정세율 확인

❖ 2017년 11월 관세법 개정안 발표

- 2017년 5월 17일 관세법 개정안(Custom Act B.E. 2560(2017))이 발표되어 개정법안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되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과세 가격 결정(관세 평가) 제한 시간 지정
-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완화
- 불법 통관에 대한 추정 책임자 범위 확장
- 과세가격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기간 제한
- 불법 통관 적발 시 제공되는 보상금액 상한 지정
- 관세 환급 기한 테드라인 연장
- 관세 부족분에 대한 월별 추가 징수 금액 상한 규제
- 사후 심사(Post Clearance Audit)기간 제한
- 컨테이너 자유 장치 기간(Custom Free Time) 축소

라. 비관세제도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전통적인 관세에 의한 무역장벽 이외에 무역절차, 제도 및 규제 등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반면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반해 통관절차, 표준, 인증 등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성상 소관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 개별 기업이 직접 대응하여 나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상품수출입법[Export and Import of Goods Act, B.E. 2522(1979)]이 경제안정, 공공복리, 공중보건,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풍속 기타 국가적 이해가 있을 경우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MOC)가 내각의 승인을 받은 후 수입과 수출에 필요한 적절한 규제와 제한을 발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 조치는 관보에 고시되어 있음

❖ 주요 비관세제도

- 태국의 주요 비관세장벽은 수입허가제도(Import Licensing)와 수량 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임
- 태국에서는 화학 및 의약품, 미완성 의류, 기념비 또는 건축물, 중고자동차 등 16개 품목 군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의 보고서에서 32개 품목 군으로 조사되었던 것에 비해 대상 품목이 축소된 것임
- 태국에서의 옥수수, 대두, 콩가루 등 사료 원료(feed ingredients) 수입 통관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지만, 유제품 원료가 포함된 사료제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수입 요건이 부과되어 미국 기업들이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 품목에 대한 불투명한 관세를 할당(Tariff Rate Quota)과 가격 통제(price control)는 태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지연시킴
 - 태국은 무지방유, 대두, 콩가루, 감자 등을 포함한 일부 관세를 할당 제품에 대하여 국내 구매요건(purchase requirement)을 부과함
- 최근 태국에서는 영유아 조제식품 및 관련 물품의 마케팅 규제법을 발의 중인데, 규제 대상과 마케팅 활동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국제표준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서 통상 마찰이 예상되고 있음
 - 이 법안에서는 유아용 조제분유, 영아 및 유아의 이유식, 기타 조제식료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의 상표명, 포장, 마크의 사용, 교육,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제한 등이 포함됨
 -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아용 이유식에 대한 규제를 1년 이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 태국은 세계보건기구의 이유식 마케팅 규정(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de of Marketing of breast-Milk Substitutes)과 같은 관련 국제표준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또한 특정 물품과 용역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는 권한을 무역경쟁위원회(the Trade Competition Board)에 위임하고 있음

- 가격 상한제 대상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설탕,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등 주요 농산품과 석유가스, 의약품, 학생복, 음향기기 등이 있음
- 이 품목들에 대한 가격은 연간 주기로 공시되지만 가격정책에 대한 검토체계는 불투명하게 운영됨
- 실질적으로는 석유가스, 항공, 통신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독점공급자를 통해 내국 시장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태국에서는 무연 휘발유,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일부 제품에 높은 소비세 (excise tax)가 부과되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차량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10% 내지 50% 범위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 주류에 수입관세와 소비세, 그리고 기타 추가 요금이 부과되면 누적되는 세금 부담은 약 400%에 달함
- 미국은 2011년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에도 여전히 태국 관세 당국의 재량권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태국 관세당국의 재량으로 WTO 관세평가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에 근거하여 과도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관행을 없앨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 미국 기업들은 부정부패, 통관비용의 부정확성, 벌칙 체계의 불투명성 등을 태국 통관관행의 심각한 문제로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정보공개에 투명성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수출자들은 태국 관세청(the Customs Department)에 관세 관세법령의 변경을 공표하고 입법 공표 및 의견 수렴 기간을 두도록 촉구하였음
- 태국 관세당국의 과도한 위법 단속 포상금 역시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돼오던 바, 태국 정부는 최근 관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관공무원에 대한 특혜와 관련된 규정들을 수정하였음
- 위법 단속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15%로 축소하고, 지급액 상한선을 새로 도입(건당 500만 바트)하였음

❖ 표준 및 품질표시(기술인증 등)

- 태국의 독자적 인증제도
- 국제표준(IEC)의 인증 시험소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태국의 표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정식 수입 전에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행정적인 문제로 신제품 출시 등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용품 등 10개 카테고리 109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에서 정한 강제 표준(강제 인증, 필수 인증, Compulsory Standard)을 획득해야 함
- 강제 표준 공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 TISI의 규격을 따를 때만 정부조달 상의 혜택을 주고 있음. 다만, TISI에서 인정한 CE마크 등 일부 외국 인증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함께 수입 통관 시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수입 시 검사는 한번이 아닌 매번 수입 시마다 검사를 요구해 수입 절차를 번거롭게 하기도 함
- 특히, 태국 내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기준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 시는 반드시 TISI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 및 공장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됨
-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태국 산업표준원(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함. 승인 수수료는 건당 1만 바트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증에 통상 45~90일 내외로 소요되나 시험기관의 일정 및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일이 빈번함
- 제출 서류 목록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세금납입증명서, 여권 및 노동허가증, 선적서류, 카탈로그, 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 품질 관리확인서, 매뉴얼 등임

① LPI 태국 수입식품 신고제도(필수인증)

LPI(License Per Invoice) 태국 수입식품 신고제도		
시행일	2014년 9월	 สำนักงาน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อาหารและยา กรมโรงงา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
발행 기관	Thail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링크	www.fda.moph.go.th	

- 태국은 2014년 말부터 수입식품신고제도(License Per Invoice, LPI)를 시행함. 이는 수입업체가 태국으로 수입하는 식품을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Thailand'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ai FDA)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이에 따른 수입식품신고 절차는 다음 같음
- ㉞ 태국 식약청에 수입식품 신청서 서류 제출
- ㉟ 식약청 승인 후 수입유통식품 식별번호 발급

- ㉠ 선적 진행 및 선적서류정보 확인
- ㉡ 식품 제조회사의 보증서 신고
- ㉢ 선적정보를 수입식품신고(LPI) 전자시스템입력
- ㉣ 선적서류 통관업체 제출
- ㉤ 수입 진행

② 할랄 인증(권장인증)

할랄 인증(Halal)		
시행일	1982년	
발행 기관	태국 이슬람 중앙회 CICOT (The Central Islamic Committee of Thailand)	
링크	1년~2년(제품의 따라 상이)	

-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에 발행된 태국 할랄 인증기관 전문의에 따르면, 태국의 할랄 식품에 관한 표준 및 규정은 상위체계인 『태국농업표준-할랄식품 (TAS 8400-2007)』 표준과 하위 체계인 태국중앙이슬람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서로 구성됨
- 평균적으로 한 제품이 최종 할랄 인증을 받기까지는 약 60일 소요되나, 인증 절차 진행 과정 중 문제 발생 시에는 6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태국 이슬람위원회의 할랄 인증수수료는 통상 품목당 1,000바트
- 심사비는 규모에 따라 10,000바트~20,000바트

❖ 태국의 Labeling(Mark) 제도

- 태국은 공산품에 대해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품목이 11개 산업 74개 품목으로 그리 많지는 않으며 동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소비자 보호의 일반적 취지 외에 사실상 태국상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정 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원산지 모국어로 된 라벨 5부와 태국어 라벨 1부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또한 태국의 The Industrial Product Standard Act에서는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 및 관련부품, 액세서리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로써 산업표준원(TISI)으로 하여금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 명목으로 성능검사 및 인증서를 요구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입 및 국내 생산품에도 적용됨

마. 소비세

- 소비세(Excise Tax)는 국내물품 여부를 불문하고 ‘사치’로 간주되는 특정 범위의 물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세법(Excise Tariff Act B.E. 2527)에 따라 세입청(The Revenue Department)에서 부과와 징수를 주관함
 -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간접세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를 보완하기 위해 부과함
- 2013년 4월 24일 소비세법이 개편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친환경 차량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류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음
- 차량의 엔진 용량, 탄소 배출량과 연료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주류에 대해서도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달리 부과함
 - 주류세 개정내용 ※ 아래 주류 및 담배 개정 참고
- 소비세는 수입 물품의 경우 CIF 가격을 기준으로 내국물품의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류를 제외하고는 ‘수입관세*[소비세율/(1-1.1*소비세율)]’의 방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함
 - 소비세는 종가세, 종량세 또는 둘 가운데 산출 세액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선택세 중 하나임
- 태국 정부는 2017년 9월 16일부터 주류, 담배, 음료수(당분 음료, 커피, 차) 및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신 소비세를 적용해 점차 해당 품목의 전반적인 소매가 인상 효과 발생
 - 태국 정부는 소위 ‘죄악세(Sin Tax)’ 대상인 담배 및 주류 소비세율 산정에 권장 소비자가격 및 중량을 모두 고려하기로 함. 이는 과거 가격 또는 중량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장도가격 또는 CIF을 반영해 세율을 산정하던 것과는 차별됨.
 - 태국 정부는 신 소비세 적용으로 인해 연간 120억 바트(3억6228만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들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소비세 품목별 세율 수준]

품목	소비세율	
	가치에 근거	수량에 근거
요트 및 보트	30%~50%	
전기통신	30%	
배터리	30%	
일부 전기제품	30%	

품목	소비세율	
	가치에 근거	수량에 근거
크리스탈 유리제품,	30%	
향수와 화장품	20%	
경마장,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30%	Square metre / 3,000바트 회당 / 1,000바트
골프	30%~50%	
카펫 및 타일	30%	
대리석 및 화강암	30%	
무알콜 음료	30%	Litre 당 20~100바트
석유 및 석유제품	50%	Litre / Kg 당 20바트
오존파괴물질	30%	3,000바트
차량	40%~80%	
오토바이	30%	
담배제품	90%	piece / gm 당 5바트
주류	30%	litre 당 1,000바트~3,000바트
게임용 카드	60%	100장 / 500바트

* 출처 : EXCISE TAX ACT, B.E. 2560 (2017)

① 주류 및 담배

- 새로 개정된 특별소비세는 2017년 9월 16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류 및 담배에 대한 변경 사항 및 영향은 아래와 같음
 - 캔맥주 당 0.50바트, 병맥주 당 2.66바트가 각각 인상될 것이며, 주류(alcohol)에 부과되는 세금은 최대 30바트까지 증가
 - 고가 맥주의 경우, 세금은 0.99~2바트 정도 감소
 - 수입 와인에 대한 세금은 병당 최소 110바트 인상될 것이며 담배는 팩 당 2~15바트 인상
 - 저렴한 담배 브랜드의 경우 세금은 팩 당 4~15바트, 고가 담배는 팩 당 2~10바트가 부과 될 예정

② 설탕세

- 2017년 태국 소비세국(Thai Excise Department)은 설탕 소비를 줄이고 건강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음료에 대한 소비세 세금을 최초로 시행함. 새로운 소비세 설탕 세금이 부과되는 음료는 다음과 같음.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없고 맛이 없는 인공 광천수, 탄산음료 및 탄산 청량음료
 -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또는 향료가 첨가된 미네랄 생수 및 탄산 청량음료 및 기타 무알콜 음료
 - 과일 및 야채 주스
 - 커피 및 차
 - 에너지 드링크
 -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음료 중 자동판매기에서 판매 되는 것
- 입법부에 의해 새로운 “Excise Tax B.E. 2560(2017)”에 따라 통과된 새 규정은 2017년 9월 16일에 발효됨. 새로운 소비세가 개정되기 전에는 수입 음료에 CIF 기준 가격의 20% 종가세가 부과되었음. 개정된 소비세법은 이전의 종가세가 20%에서 10%로 낮아지고 설탕 함량에 대한 특정 세금이 도입되는 특별 세금 및 종가세를 모두 갖춘 혼합 세율 시스템을 도입. 또한 새로운 소비세법에 따라 세금은 CIF기준 가격 대신 “권장 소매가”로 계산됨
- 100ml 당 6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는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소비세 부서는 음료 업계가 2년 동안 음료 소비세에 대해 기존 세율을 적용 받는 동안 제조 공식을 재구성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2년 후, 설탕 함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은 소비세 비율표에 따라 증가할 예정(별첨4)

1. 관리 · 법률체계

가. 관리체계

- 공중보건부에서 검역 절차 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농업 협력부에서는 식물검역법을 통해 식물검역원의 임무 및 권한, 식물 수출입, 유통, 보관기준 설정, 처벌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부 농무국(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식물검역을 관할함
- 공공보건부의 식품의약품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식품 안전을 관할함

나. 법률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검역법(Plant Quarantine Act B.E. 2507 (1964))이며, 수입금지 및 제한 등은 장관 규칙 또는 공고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음

2. 품목별 검역절차

가. 식물

- 식물검역법에 따라 식물 및 식물 제품의 수입은 그들의 경제적 중요성 및 원산지 장소의 해충 및 질병에 대한 보급에 따라 금지, 제한 및 비 금지 물질의 3가지 그룹으로 분류됨
- 1) 금지물질(prohibited materials)
 - 벼속 식물,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코코넛, 카사바, 흙, 유기질 비료, 식물병해충, 면화속 식물, 수생양치류, 이끼
- 2) 제한물질(Restricted materials)
 - 금지 지역산이 아닌 벼속 식물, 생벼풀, 벼싻, 고무나무속 식물, 감귤속 및 금귤속 식물 및 코코넛
 - Saccharum속 식물, 커피속 식물, 고구마, 면화속 식물, 담배, 옥수수, 카카오, 바나나속 식물, 감자, 땅콩, 파인애플, 차나무속 식물, 오일팜, 토마토, 파파야, Aleurites속 식물, 타로, 소맥, 대두, mung bean, 수수 및 난과 식물

3) 그 외 물질(Unprohibited materials)

- 금지 및 제한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그 외 물질을 말하며, 수입 허가 및 식물 검역 증명서는 수입 시 요구하지 않음. 그러나 수입된 금지 물질은 입국항에서 검사를 위해 통보해야 하며, 식물 검역 병해충 및 질병이 발견되면 모든 물질을 검사하고 검역 처치 또는 파기함
- 수출 가능한 신선품목 : 감(단감), 배, 사과, 포도, 멜론(참외), 복숭아, 감귤, 딸기, 채소종자(고추,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토마토

나. 축산물

○ 축산물

○ 수입 전 절차

- 1) 수입자는 최소한 수입일 15일 전에 수입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청서(양식 번호 1/1)를 제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 2)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이하 “DLD”)는 동물 건강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수입허가서 발급 전에 원산지 국가의 동물 질병 상태를 검사함
- 3) 수입자는 DLD가 정한 가축 건강 요구 사항에 따라 수입된 동물의 제품을 준비, 검사, 시험 및 인증하기 위해 수입허가서를 원산지국가의 수의 당국에 보내야함
- 4) 수입업자는 최소 3일 전에 해당 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입국항의 Animal Quarantine Station(이하 “AQS”) 수의사에게 정확한 도착 일을 확인해야 하며, AQS 수의사는 수입 관세 수속 직후 예비수입허가증(양식 번호 6)을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5) 수입 동물에 대한 일반 검사를 위해, 수입된 동물 제품에 대해 원산지 국가에서 영문으로 발급된 위생증명서를 AQS 수의사에게 수입 전 제출되어야 함

○ 수입 후 절차

- 1) AQS 수의사는 서류를 확인 후 수입면허증 발급(양식 번호 7)
- 2) 수입업자는 “Animal Epidemics Act B.E. 2499(1956)”에 따라 규정된 수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다. 수산물

- 1) 수입업자는 어류검사국(Fish Inspection Office)에서 수입 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는 입국항에서 주정부 수산청[Provincial Fishery Office(FIO 권한을 위임 받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음

Form Ror 1/1	허가 서류, 신분증 사본, 양도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수입자를 대리하는 경우)
수생 생물 수입 요구서류	수입업자가 수생 동물 거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양 동물 거래 허가증 사본 (Aor 6)
사본 ID 카드	건강 진단서 사본
(사본) 거주등록증 / 회사등록증	기타 관련 서류

- 2) 요청 양식은 최소한 7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가 수입된 살아있는 수생 동물 또는 죽은 수생 동물을 수산부의 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역을 위해 보유하기를 원할 경우 승인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함
- 3) 요청 양식이 제출되면 FIO 직원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등록하고 검사하며, 수입된 수생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함. 살아있는 수생 동물은 외래종일 수 없음
- 4)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반송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최종 서류심사 후 근무일 기준 3일 내에 다음과 같은 공식 서류를 발급함
 - ① 태국으로의 일부 해양 동물 수입 허가(Fisheries Act B.E. 2490)
 - ② 태국으로의 동물 허가증 또는 양식 6(Animal Epidemic Act B.E. 2499)
- 5) 요청이 승인된 후 수입업자는 수생 동물 또는 수산물이 도착하기 하루 전에 날짜, 시간, 항공편, 선박 번호 또는 다른 운송 수단 등의 수입 정보를 확인해야 함

라. 냉장&냉동 육제품

- 냉장&냉동 육제품 수입은 농업협동조합부 축산국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고 원산국으로부터 건강 증서를 받아야 하며, 도착 즉시 이 제품 화물은 입국항의 동물검역국의 검사를 받아야 함. 소독, 표본 채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KG당 가금류는 10바트, 다른 육제품은 5바트임

3. 제출서류

가. 제출 서류명

- 검역 시 일반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1	FORM 1-1	2	phytosanitary certificate(식물위생증명서)
---	----------	---	------------------------------------

1	Form 1-1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수입자 작성 및 신청)
		제출기관	해당 검역소
		제출사유	식물 및 축산물 검역을 위한 필수 신청서
		표기언어	태국어/영문

〈신청서 Form 1-1 샘플〉

กรมปศุสัตว์ 10/0

กรมปศุสัตว์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แบบคำขออนุญาตนำสัตว์/ซากสัตว์ เข้า ออก ผ่าน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태국을 통해 동물 수입, 수출, 통과를 위한 신청 양식

เขียนที่.....
 주소.....
 วันที่.....เดือน.....พ.ศ.....
 일.....월.....년.....

เรียน.....
 To 예게.....

ด้วยข้าพเจ้า นาย/นาง/น.ส.....สัญชาติ.....อาชีพ.....
 I am Mr./ Mrs./ Miss 본인은 Nationalty 국적 Occupation 직업

ที่อยู่ประเทศไทย.....
 Address in Thailand 태국 내 주소.....

โทรศัพท์เบอร์.....โทรภาพเบอร์.....
 Telephone No. 전화번호 Fax No. 팩스 번호.....

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พาสปอร์ต เลขที่.....ออกให้โดย.....วันหมดอายุ.....
 I.D. No/ Passport No. ID 번호 / 여권 번호 Issue by 발행처 Expire Date 만료일

มีความประสงค์จะขอ นำสัตว์/ซากสัตว์ เข้า ออก ผ่าน 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 โดยทาง.....ดังนี้คือ
 would like to import, export, pass animals/ animal remains through the kingdom by.....
 as the following items.....다음과 같은 품목을 ~로 의해서 태국을 통한 동물의 수입, 수출, 통과를 요청합니다.

เดินทาง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ป.....โดยพาหนะชื่อ / เลขที่.....
 Departure from Thailand to 태국으로 By ~로 의해서

เดินทางมาจากประเทศ.....โดยพาหนะชื่อ / เลขที่.....
 come from 어디로 부터 By ~로 의해서

นำไปพักกักกันดูอาการ ณ.....
 quarantine at ~에서 검역을

นำผ่านไปยังประเทศ.....โดยพาหนะชื่อ / เลขที่.....
 pass Thailand through ~을 통해 태국을 통과 By

ข้าพเจ้าขอรับรองว่าจะปฏิบัติตามระเบียบและเงื่อนไขของกรมปศุสัตว์ทุกประการ
 I hereby certify that I will follow every set rule and condition of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본인은 축산 개발부의 모든 규칙과 조건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ลงชื่อ.....ผู้ขออนุญาต
 Sign 서명 Applicant 신청자

บันทึกข้อความเกี่ยวกับการตรวจสัตว์/ซากสัตว์และอื่นๆ.....

2	식물검역증 /Phytosanitary Certificate	항 목	내 용
		발급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출기관	수입국가 검역소 또는 관세청
		제출사유	해당 수입 건에 대한 질병 및 감염에 대한 증명이 필요함
		표기언어	영문

〈식물검역증 샘플〉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PHYTOSANITARY CERTIFICAT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f _____ No. _____ TO : The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_____	
DESCRIPTION OF CONSIGNMENT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 _____ 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_____ 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 : _____ Distinguishing marks : _____ Place of origin : _____ Declared means of conveyance : _____ Declared point of entry : _____ 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 _____ Botanical name of Plants : _____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lants, plant products or other regulated articles described herein have been inspected and/or tested according to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are considered to be free from the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and to conform with the current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including those for regulated non-quarantine pests.	
ADDITIONAL DECLARATION	
DISINFESTATION AND/OR DISINFECTION TREATMENT	
Date : _____ Chemical (active ingredient) : _____ Concentration : _____	Treatment : _____ Duration and temperature : _____ Additional information : _____
 Place of issue : _____ Name of authorized officer : _____ Date : _____ (Signature)	
* No financi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is certificate shall attach to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r to any of its officers or representatives.	

제 4 장 라벨링 제도

1. 관리 · 법률체계

- 태국의 식품산업은 식품법[Food Act B.E. 2522(1979)]과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규정한 법에 의해 관리되며, 일반적으로 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허가와 함께 규격화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태국법에 규정
- 육류, 과일류 및 채소와 같은 주요 식품에 대해서는 일부 농산물 관리청과 협력 관리 기관에서 수입허가와 함께 열처리 위생처리 증명서를 요구함

2. 식품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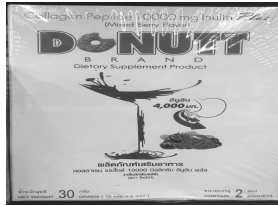
가. 특별통제식품 (Specifically – Controlled Food)

- 총 4개의 품목 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식품 등록이 필수이며 품질 규격, 세부항목, 포장, 라벨링 같은 필수요소 등이 식품법[The Food Act B.E 2522(1979)]에 의거하여 지정되어 있는 특별통제식품에는 현재까지 7가지 타입의 식품이 포함되어 있음
- 특별통제식품의 경우 사전에 FDA로부터 라벨에 대한 승인 및 식품등록이 필요하며, 모든 라벨에 대한 고시는 No. 194 B.E. 2543(2000)을 준수하여야 함
- 태국에서 소비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의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특별통제식품은 라벨 부착 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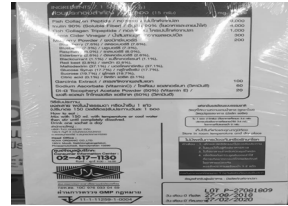
번호	구 분
1	유아용 변형 우유 / 유아 및 어린이용 플로우업 변형 우유
2	유아용 식품 및 유아 및 어린이용 플로우업 변형 우유
3	유아 및 어린이용 보충 식품
4	시클람산 나트륨 또는 시클람산 나트륨을 포함한 식품
5	식품 첨가물
6	다이어트 식품
7	스테비올 배당체 (Steviol glycosides)



스테이블 배당체



다이어트 식품



나. 규격화된 식품(Standardized Food)

- 규격화된 식품의 경우, 제품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 규정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특성과 라벨은 보건복지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하며, 다음의 39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되어 있음

번호	그 룹	번호	그 룹	번호	그 룹	번호	그 룹
1	커피	11	두유	21	식초	31	로얄 젤리
2	식용 소금	12	드링크 워터	22	버터	32	용기에 담긴 제품
3	비타민 강화 쌀	13	생선 액젓	23	치즈	33	식품 보충제
4	알칼리를 함유한 달걀	14	꿀	24	기 버터	34	음료수
5	크림	15	땅콩 오일	25	마가린 및 유지 스프레드	35	소 우유 (Cow Milk)
6	전해질 음료	16	버터 오일	26	간장	36	플레이버드 밀크
7	초콜릿	17	팜 오일	27	잼	37	유제품
8	차 / 허브차	18	코코넛 오일	28	젤리 및 마말레이드	38	요거트
9	특정 소스	19	지방 및 기름	29	반 가공 식품	39	아이스크림
10	얼음	20	천연 미네랄워터	30	식품용 소금물		



커피 라벨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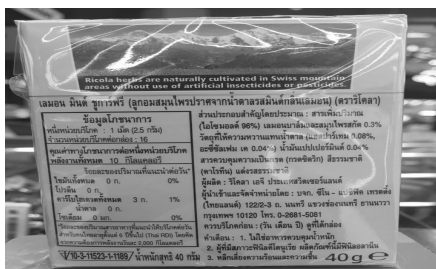


드링크 워터

다. 표준 라벨링이 요구되는 식품(Food with labeling)

- 위의 두 가지 분류보다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구매자의 건강에 커다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식품이 이에 해당되며 11가지 타입의 식품이 이 분류에 포함됨

번호	구 분
1	빵
2	용기에 담긴 소스
3	껍질 벗긴 쌀가루 (Husked rice flour)
4	일부 고기 제품
5	착향료
6	가공된 젤라틴 및 젤리 디저트
7	풍선껌 및 사탕
8	즉석조리식품 및 즉석식품
9	특별 목적 음식
10	조식식품
11	유전자 변형을 통한 일반 식품



사탕 라벨링



용기의 담긴 소스 라벨링

라. 일반 식품(General Food)

- 식품등록은 요구되지 않으나, 일반 식품은 위생상태, 안전성, 라벨링 및 광고 내용이 관리, 감독이 되고 있음

3. 표시사항

가. 기본 표시사항(일반)

구 분	필수 / 선택	샘플 사진
1) 제품명	필수	
2) 식품 시리얼 번호	필수	
3) 수입자 정보	필수	
4) 식품용량	필수	
5) 재료정보	일부 유형 생략 가능	
6) 알레르기 정보	필수	
7) 식품첨가제	필수	
8) 인공조미료	필수	
9) 유통기한	필수	
10) 경고문	필요시	
11) 보관방법	필요시	
12) 섭취방법	필요시	

나. 용어정의

- 영양라벨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임
- 영양성분 : 영양성분 표기 규정은 태국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67 B.E. 25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을 라벨에 나타내어야 함

다. 표기방식

- 영양성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는 선택사항임
- 라벨링이 가능한 공간에 따라, 세로 및 가로로 표기 가능
-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권장됨

라. 유의사항

- 태국 라벨은 수입되기 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반입 이전에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태국 FDA에 의해 압수될 수 있음

- 태국 FDA는 특별통제식품(Specifically-controlled food)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된 라벨을 요구함
- 그 외의 카테고리에 속한 식품은 제조사 또는 수입처에서 라벨 부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

4. 라벨링 샘플

가. 유아용 우유제품 라벨링(특별통제식품)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 사진 (좌 : 우유 / 우 : 분유)
품 명	Hi-Q1 plus		
원 료	우유 56% 탈지유 2.1% GOS시럽 0.8% 팜유, 카놀리유, 코코넛유, 옥수수유 0.61%	무기질 0.07% 비타민 0.04% 프락토올리고당 0.04% DHA 0.0137% 타우린 0.01%	
제조업체 (수입처)	Dumex Thailand Co., Ltd.		
영양표시	지방 3.5g 콜레스테롤 10mg 단백질 3g 탄수화물 8g 당류 5g 나트륨 40mg 포테시움(칼륨) 150mg		

1) 용어정의

- 영양라벨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 영양정보임
- 영양성분 : 영양성분 표기 규정은 태국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67 B.E. 25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을 라벨에 나타내어야 함

2) 표기방식

- 영양성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는 선택사항임
- 라벨링이 가능한 공간에 따라, 세로 및 가로로 표기 가능
-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권장됨

3) 유의사항

- 모유의 중요성과 유·소아를 위한 모유 수유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태국 FDA는 아래의 내용을 라벨에 포함되도록 보건부 공시를 변경하였음
 - 모유는 충분한 영양분을 가진 유아의 최고의 식품
 - 변형된 우유는 의사, 간호사에 의해 추천된 것
 - 정확하지 않은 조제와 혼합은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음
- 위의 3가지 내용은 가로로 바탕과 색깔 대비를 이루어 표기해야 하며 첫 번째 내용은 읽기 쉽게 굵은 글자로 표기해야 함

나. 프리미엄 라벨링 (규격화된 식품 품목(액젓))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 사진
품 명	Premium Fish Sauce	
원 료	생선 70% 소금 27% 백설탕 2%	
제조업체	Marine Resources Development Co., Ltd.	
영양표시	지방 0g 단백질 3g 설탕 <1g 나트륨 1,520mg	

1) 용어정의

- 프리미엄 정의 : “프리미엄”은 식품의 품질, 표준 또는 특성이 같은 유형의 식품보다 우수함을 나타냄
- 영양라벨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임
- 영양성분 : 영양성분 표기 규정은 태국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67 B.E. 25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을 라벨에 나타내어야 함

2) 표기방식

- 영양성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는 선택사항임
- 라벨링이 가능한 공간에 따라, 세로 및 가로로 표기 가능
-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권장됨

3) 유의사항

- 태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또는 제품 수입자는 “공중보건공고 No. 365 Re”에 따라 품질 기준 및 명시된 특성으로 충족시켜야 함
- 수출자는 프리미엄이라는 용어 사용을 원할 때, FDA측으로 명시된 조건에 맞게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영양 정보 라벨링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 사진
품 명	Dehydrated Strawberry(건조 딸기)	
원 료	딸기 80% 설탕 20%	
제조업체	Doi Kham Food Products Co., Ltd.	
영양표시	지방 0g 콜레스테롤 0mg 단백질 1g 탄수화물 21g 설탕 15g 나트륨 10mg	

1) 용어정의

- 영양라벨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 영양정보임
- 영양성분 : 영양성분 표기 규정은 태국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67 B.E. 25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을 라벨에 나타내어야 함

2) 표기방식

- 영양성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는 선택사항임
- 라벨링이 가능한 공간에 따라, 세로 및 가로로 표기 가능
-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권장됨

3)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종류의 식품은 의무적으로 영양분 라벨을 부착하여야 함
 - 특정한 영양분이 요구되는 식품
 - 영업촉진을 위한 영양적 가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

- 특정 집단의 소비자(예 : 학생, 임원, 노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 FDA에 의해 지정된 식품

라. 영양성분(GDA) 라벨링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 사진
품 명	Pocky(스낵류)	
원 료	밀가루 39% 탈지유 3% 설탕 30% 화이트 버터 2% 야채지방 15% 코코아원료 2% 코코아 분말 6% 우유분말 1%	
제조업체	Ezaki Glico Co., Ltd.	
영양표시	지방 9g 단백질 4g 탄수화물 32g 설탕 18g 나트륨 85mg	

1) 용어정의

- 영양라벨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임
- 영양성분 : 영양성분 표기 규정은 태국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67 B.E. 25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을 라벨에 나타내어야 함

2) 표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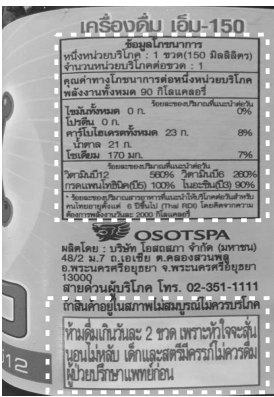
- GDA 라벨에는 제품의 영양가와 에너지, 설탕, 지방 및 나트륨에 대한 권장 일일 소비량이 포함되어야 함
- 라벨링이 가능한 공간에 따라, 세로 및 가로로 표기 가능
-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잘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좋음

3) 유의사항

- 2011년 8월 기준으로 태국 FDA는 식품 포장지 앞면에 GDA(Guideline Daily Amounts)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며, “Notification No. 374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에서 표기된 식품은 다음과 같음

번호	구 분	번호	구 분
1	Fried or baked potato chips	9	Filled wafer
2	Fried or baked popcorns	10	Cookies
3	Rice crisps or extruded snack	11	Cakes
4	Roasted or salt roasted or flavored peanuts	12	Pies, pastry, both with and without stuffing
5	Rice crisps or extruded snack	13	Noodle, a sheet of rice noodle (Guay-Jub), wheat noodle, rice vermicelli and mung bean vermicelli.
6	Roasted or salt roasted or flavored peanuts	14	Kao Tom(Boiled rice) and Joke(Porridge rice)
7	Chocolate and similar kinds of products	15	Chilled and frozen ready- to- eat meals
8	Crackers or biscuits;		

마. 카페인 함유된 음료수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 사진
품 명	M-150	
원 료	타우린 200mg 커피 50mg 이노시톨 25mg 나이아신 아마이드 20mg 판도텐산 5mg 비타민B6 5mg	
제조업체	OSOTSPA Co., Ltd.	
영양표시	지방 0g 단백질 0g 탄수화물 23g 설탕 21g 나트륨 170mg	

1) 용어정의

- 영양라벨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임
- 영양성분 : 영양성분 표기 규정은 태국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67 B.E. 25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을 라벨에 나타내어야 함

2) 표기방식

- 영양성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는 선택사항임
- 라벨링이 가능한 공간에 따라, 세로 및 가로로 표기 가능
-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권장됨

3) 유의사항

-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367)B.E 2557”에 따르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는 아래와 같은 경고 메시지를 표기하여야 함
 - “가슴 두근거림 및 불면증을 피하기 위해 매일 2병 이상 마시지 마시고, 어린이와 임산부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질병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에 의학적 조언을 구해야 함”
 - 붉은 붉은 색 글꼴을 사용하고, 높이는 직사각형으로 2mm 이상이어야 함. 흰색 배경으로 프레임 색상 대비 선택

사. 아이스크림

표기항목	표기내용	라벨링 사진
품 명	빙그레 수박맛 뽕따	
원 료	물 73.67% 설탕 9.36% 과당 8.13% 옥수수 시럽 6.65% 수박 시럽 0.99%	
제조업체 (수입업체)	프로타이	

1) 용어정의

- 영양라벨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임
- 영양성분 : 영양성분 표기 규정은 태국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367 B.E. 255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양성분을 라벨에 나타내어야 함

2) 표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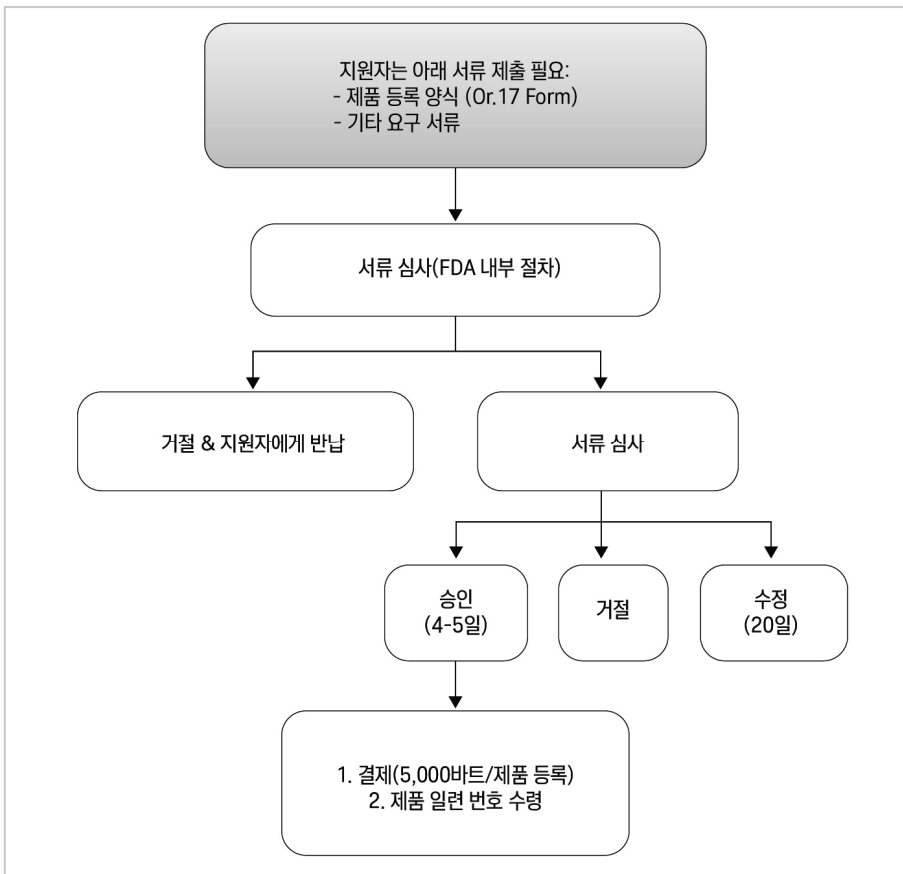
- 영양성분 라벨링은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외국어는 선택사항임
- 라벨링이 가능한 공간에 따라, 세로 및 가로로 표기 가능
- 필수 표시사항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권장됨

3) 유의사항

- 아이스 구조화 과정을 돕기 위해 첨가 된 식품 첨가물을 함유 한 아이스크림일 경우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해야 함
 - “아이스 구조화를 위한 프로틴 종류 III HPLC 12 가 사용됨”이라는 문구와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연락처 및 웹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맥락의 문구를 남겨야 함

5. 라벨링 승인절차

가. 승인절차 도식표



6. 기타 수입 규제

가. 오염물질이 포함된 식품²⁾

- 식품은 다음과 같은 규격 이상의 오염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함

1. Metal		
Tin	250	mg/kg
Zinc	100	mg/kg
Copper	20	mg/kg
Lead	1	mg/kg with the exception for foods that contain high amount of natural lead. Such foods shall seek the approval from FDA.
Inorganic Arsenic	2	mg/kg for fish and seafood
Total Arsenic	2	mg/kg for other foods
Mercury	0.5	mg/kg for seafood and not more than 0.02 mg/kg for other foods
2. Aflatoxin	20	mg/kg
3. Other contaminants shall be subjected to FDA approval.		

나. 부분 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사용 금지안

- 새롭게 추가된 부분 경화유 사용 금지안은 지난 2018년 1월까지 WTO 공고 시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7월 13일에 Royal Gazette에 공표가 되어 6개월(180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나서 2019년 1월 9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임(별첨1)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번 새로운 요구사항(requirement)으로 인해 태국 내 판매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식품의 부분 경화유 사용이 금지되지만 수출목적으로 식품제조에 사용되어지는 부분 경화유는 허용됨
 - 한국에서 수출하는 식품의 부분 경화유 사용을 주의해야 하며, 새로운 제조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한 트랜스지방 제한 정책으로 대체 오일인 팜유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2) 관련 법령 : Ministerial Notification No. 98 of B.E. 2529 (1986) and Ministerial Notification No. 273 of B.E. 2546 (2003)

다. 태국 영·유아 식품 정보 라벨링 규정

-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는 연령에 따른 올바른 영·유아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마케팅 축진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영·유아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방식 및 정보 처리 내용과 규정 절차 조건”(별첨2)을 공지하였으며, 이 공지는 2018년 6월부터 시행중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영·유아 식품 수입, 판매, 생산 및 제조업자는 식품의 정보를 표기할 때 유아용 식품 사용량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영·유아 식품은 포장 단위별 용량을 월 단위로 표시하고 모유를 먹지 않고 영·유아 식품만 먹일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분류함
- ① 출생 ~ 생후 3개월
$$\text{포장 단위(통, 박스 등)} = 2.7\text{kg/월} \div \text{포장 단위별 용량(kg)} = \text{포장 단위 수량/월}$$
- ② 생후 3개월 ~ 6개월
$$\text{포장 단위(통, 박스 등)} = 4.5\text{kg/월} \div \text{포장 단위별 용량(kg)} = \text{포장 단위 수량/월}$$
 - 아기가 모유를 먹지 않고 영유아 식품만 먹을 경우 한 달 평균 비용 계산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 * 예상 비용 (바트/월) = 포장단위수량/월 × 식품가격(통, 박스 등)
- 라벨링 표기에 포장 단위별 용량을 월 단위로 표시하고 출생~생후 3개월, 생후 3개월~6개월, 생후 6개월 이상으로 나누어 식품 라벨에 표기해야 함
- 식품 정보에 영·유아 식품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사항도 함께 표기해야 함
 - 현재 한국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분유의 라벨링은 조유량 및 사용법 대한 표기만 있어 수출업자들은 이에 유의하여 본 공지에 맞는 라벨링 표기를 준비해야 함

라. 태국 과·채류 생산과정 및 생산·보관 시설 관리 및 라벨링 표기 강화

-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는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체 공급 과정에 있어서 소비자를 위한 과일, 채소류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386) B.E.2560 (2017) Re : The Requirements for Production Processes, Production Equipment, Storage and Labeling of such Fresh Fruits or Vegetables”을 공지하였으며, 이 관보의 내용은 2018년 8월부터 시행됨 (별첨3)

- 동 규정의 목적은 과·채류의 생산, 원물 수령, 검사, 완제품 생산, 라벨링, 기록 등의 전 생산 과정에서 미생물, 물리적, 화학적 위험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등을 적극 도입하려는 데 있음
- 이에 2018년 10월 27일 이후 태국으로 수출되는 생과실 8개 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받은 재배지(과수원 또는 온실)에서 생산된 생과일만 수출 가능하며 해당 재배지는 사전 등록이 필요함
 - * 생과실 8품목 : 복숭아, 포도, 참외(멜론), 사과, 배, 감(단감), 딸기, 감귤
 - * 참외(멜론포함) : 태국 검역관이 한국에서 국외생산지검역 실시
 - * 감귤 : 오렌지더멧이병에 대한 관리 실시 및 태국 검역관이 한국에서 국외생산지 검역 실시
- 본 공지는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의 주요 과일(딸기, 귤, 포도, 사과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수출업자들은 이에 유의하여 준비해야 함

마. 태국 수입쿼터제

- 2018년 기준 태국의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음
 - * 우유, 인스턴트 우유, 밀크파우더(저지방), 신선/냉동 감자, 양파, 양파 파우더, 양파씨, 마늘, 마늘 파우더, 코코넛, 건조통간, 커피, 커피조제품, 그린티, 블랙티, 후추, 옥수수, 쌀, 콩, 건조 코코넛, 콩기름, 야자수 오일, 야자수씨 오일, 코코넛 오일, 설탕, 콩비지, 가는 건조 코코넛

별첨 1) 부분 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사용 금지안 (개정안)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B.E.....,

Re : 식품에 사용되는 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 (No. 3)

설득력 있는 수준의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부분 경화유에서 나오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관상 동맥 심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5절 및 6절(5)의 첫 번째 단락의 권한에 의해 Food Act B.E. 2522 (1979)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제1항 1993년 12월 28일자 식품에 사용되는 금지 물질에 관한 규정 2536 (1993)에 관해 다음 사항은 The Public Health No. 151 B.E.의 통고 2항에 의거하여 2.13항으로 추가된다.

2.13 수출용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 경화유

제2항 공고는 관보에 공표 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끝.

별첨 2) 태국 영유아 식품 정보 라벨링 규정 (개정안)

보건부 공지 No.386, 2017년

제1조

“생산()”은 원재료를 공급자에게 공급 받아 포장하거나 과일 및 채소를 공급 받지 않고 직접 포장소재지에서 원재료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별 및 포장()”은 과일 및 채소를 수확 후 판매하기 위해 선별, 포장하는 관리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청소, 손질 및 코팅 등은 관리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본 공지에 해당하는 “과일 및 채소”는 붙임1.을 참조.

제2조

제1조에 해당하는 과일 및 채소를 선별, 포장하는 생산업자는 반드시 GMP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1. 과일 및 채소 수입업자는 생산과정 및 생산·보관 시설의 태국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우수관리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다.(아래와 동급 기준, 또는 아래기준 이상의 인증서도 제출가능)
 -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Fresh Fruit and Vegetables(CAC/RCP 53-2003)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BRC Global Standard for Food Safety : British Retail Consortium, Issue 7, January 2015
 -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for any Organization in the Food Chain (ISO 22000 : 2005)
 - International Food Standard (IFS) Version6
 - Thai Agricultural Standard(TAS 9035-2553 or TAS 9035-2010) Re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for Packing House of Fresh Fruits and Vegetables or Thai Agricultural Standard(TAS 9039-2556 or TAS 9039-2013) Re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for Ready-to-eat Fresh Pre-cut Fruits and Vegetables
 - New Zealand Food Regulations 2015 under New Zealand Food Act 2014
2. 과일 및 채소 수입업자는 생산과정 및 생산·보관 시설의 태국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발급 기관은 아래와 같다.
 - 생산국가의 담당 정부 관리기관 또는
 - 생산국가의 담당 정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기관 또는
 - 공인된 검사 및 인증기관의 회원이며 국제인증기구 또는
 - 식약청이 공정한 기관

제4조

포장용기 사용은 용기 관련 보건부 공지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

방사선(Radiation)은 방사선 관련 보건부 공지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 2조의 생산업자 또는 제 3조 수입업자는 식품의 라벨링은 반드시 태국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여도 된다. 기본적인 라벨링 표기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1.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본사의 이름과 주소를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1.1. 국내 생산 과일 및 채소의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본사의 이름과 주소를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1.1.1. 생산·제조업체를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producer)” 혹은 “(produced by)”라고 표기한다.

1.1.2. 본사의 정보를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 “(head office)”라고 표기한다.

1.2. 수입 과일 및 채소의 경우 “(importer)” 혹은 “(importer by)”라고 표기하고 수입업체의 이름과 국적도 함께 표기해야한다.

2. 생산지 번호 혹은 수입지 번호는 사각형틀 안에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기입하며 숫자 크기는 2mm 보다 작으면 안 된다.

3. 생산 기호코드 혹은 형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

제2조의 생산업자 또는 제 3조의 수입업자의 과일 및 채소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기관담당자에게 보여줄 제 6조의 라벨이 준비되어야 한다.

제8조

식품생산 허가증이 있는 업체, 제2조의 태국 식약청에 등록된 있는 생산업자 또는 제3조의 수입 허가증이 있는 수입업자는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1년 내에 공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제9조

아래 공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1.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과일 및 채소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2. 즉시 조리 가능(Ready to cook) 및 즉시 섭취 가능(Ready to eat) 과일 및 채소는 식품 라벨 공지를 참고한다.

제10조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1년 후에 시행된다.

공지일 : 2017년 8월 2일

관보일 : 2017년 8월 25일

보건부 장관

별첨 3) 태국 과채류 생산과정 및 생산·보관 시설 관리 및 라벨링 표기 강화(개정안)

관보 공지, 2018년

영·유아 식품에 대한 정보 제14조에 의거 마케팅 광고와 제 18조에 의거 마케팅 프로모션의 경우 식품에 대한 적절한 규칙, 절차, 조건 및 세부 사항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마케팅 촉진을 방지한다.

2017년 영·유아 식품 마케팅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16조 2항 및 3항에 의거 마케팅 규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건부 장관이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1. 이 공지는 “2018년 영·유아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및 정보 처리 내용과 규정 절차 조건”이라고 한다.
2. 이 규정을 관보공지를 시점으로 30일 후에 시행된다.
3. 영·유아 식품 수입, 판매, 생산 및 제조업자는 식품의 정보가 아래와 같이 유아용 식품 사용량과 비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3.1. 영·유아 식품은 포장단위별 용량을 월단위로 표시하고 모유를 먹지 않고 영·유아 식품만 먹을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분류한다.
 - 3.1.1. 출생 ~ 생후 3개월까지
$$\text{포장 단위(통, 박스 등)} = 2.7\text{kg/월} \div \text{포장 단위별 용량(kg)}$$
$$= \text{포장 단위 수량/월}$$
 - 3.1.2. 생후 3개월 ~ 6개월
$$\text{포장 단위(통, 박스 등)} = 4.5\text{kg/월} \div \text{포장 단위별 용량(kg)}$$
$$= \text{포장 단위 수량/월}$$

3.2. 아기가 모유를 먹지 않고 영·유아 식품만 먹을 경우 한 달 평균 비용 계산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예상 비용 (바트/월) = 포장단위수량/월 × 식품가격(통, 박스 등)

4. 영·유아 식품 수입, 판매, 생산 및 제조업자는 식품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 4.1. 출생 ~ 생후 3개월 아기에겐 분유만 먹이는 경우 평균 2.7kg/월이 필요하고, 포장 단위별 용량(중량) ...kg/1통과 ...통/월이 필요하며 이를 ...바트/월로 표기한다.
 - 4.2. 생후 3개월 ~ 6개월 아기에겐 분유만 먹이는 경우 평균 4.5kg/월이 필요하고, 포장 단위별 용량(중량) ...kg/1통과 ...통/월이 필요하며 이를 ...바트/월로 표기한다.
 - 4.3. 생후 6개월 이상 된 아기는 모유수유와 개월 수에 따른 음식을 병행하여 먹이면 좋고 분유를 먹여야 할 경우 비용과 건강 문제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
출생 ~ 생후 6개월 영·유아 식품 라벨에 4.1., 4.2. 그리고 4.3.의 내용을 필수로 표기해야 된다. 4.3.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식품 라벨에 표기해야 된다.
5. 영·유아 식품 수입, 판매, 생산 및 제조업자는 식품정보에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주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5.1. 아기의 안전을 위해 식품 준비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 5.2. 젓병 및 젓꼭지를 사용하기 전에 끓는 물에 5분쯤 삶거나 젓병 소독기를 소독해야 한다.
 - 5.3. 분유는 물을 끓이고 적정 온도로 식혀야 한다.
 - 5.4.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적정 양을 준비하고, 먹다가 남은 것을 나중에 다시 아이에게 주는 것은 좋지 않다.
6. 위 4. 5.번 조항은 한눈에 보기 쉬운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7. 영·유아 식품 수입, 판매, 생산 및 제조업자는 영·유아 식품 유통 판매점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8. 위 7번 조항의 판매점을 제외하고 임산부 및 소비자가 식품 수입, 판매, 생산 및 제조업자에게 식품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내의 정보를 알려 줄 수 있다.
 - 8.1. 질문에 대한 정보만 질문자에게 직접 정보를 준다.
 - 8.2. 질문자가 식품 수입, 판매, 생산 및 제조업자에게 다시 연락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 8.3. 질문자에게 정보를 주면서 영·유아 식품 광고나 판촉을 할 수 없다.

보건부 공지일 2018년 3월 30일

Mr. Piyasakol Sakolsatayatorn

보건부 장관

관보 공지일 2018년 5월 4일

별첨 4) 설탕 함유량에 따른 소비세 비율표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02.01	Artificial mineral water, soda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nd without flavor	14	Liter	0
02.02	Mineral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added with sugar or other sweeteners or flavor;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but not including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under category 02.03			
	(1) Mineral water and carbonated soft drink added with sugar or other sweeteners or flavor;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but not including fruit juice or vegetable juice under category 02.03.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September 1, 2019 –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wheth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October 1, 2021 –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3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4	Liter	1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3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4	Liter	5
02,03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1)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October 1, 2019 –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10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October 1, 2021 –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3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10	Liter	1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3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10	Liter	5
	(2) Unfermented and no alcohol added fruit juice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 with or without sugar or other sweeteners added as define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5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October 1, 2019 –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0,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October 1, 2021 –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3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0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
	(d)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5
02,04	Beverage concentrates to be used with beverage vending machine, which beverage be produced therein for distribution at retail area.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1) Beverage concentrates to be used with beverage vending machine, which beverage be produced therein for distribution at retail area. However, the sugar content measurement will be in accordance with criteria, methods, and conditions defined by the Director General			

September 16, 2017 – September 30, 2019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2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3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October 1, 2019 – September 30, 2021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0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2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but less than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Category	Product Description	Excise Tax Rate		
		Ad Valorem Rate(%)	Sugar Content Level	
			Unit	Bath/Unit
	(f) Contain sugar over 1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
October 1, 2021 – September 30, 2023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2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16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but less than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e) Contain sugar over 14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
October 1, 2023 onwards				
	(a) No sugar or contain sugar less than 6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9
	(b) Contain sugar over 6 grams but less than 8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no matter contain sweetener or not	0	Liter	16
	(c) Contain sugar over 8 grams but less than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30
	(d) Contain sugar over 10 grams per 100 ml of beverage	0	Liter	44